

정의로운 대한민국

PART 2

대표 및 특화공약



정의로운 대한민국

“

국민월급 300만원, 복지임금 100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

PART 2

대표 및 특화공약





인사말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이 ‘국민의 노동조합’, ‘시민의 협동조합’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정부도 거대양당도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절실한 이때, 오히려 노동개약으로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해답은 바로 이 책자에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환경과 공동체가 공존할 수 있는 비전과 대안을 담았습니다.

정의로운 경제, 정의로운 복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현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정치기득권, 재벌기득권, 금수저기득권, 불로소득기득권, 교육기득권 등 5대 기득권을 해체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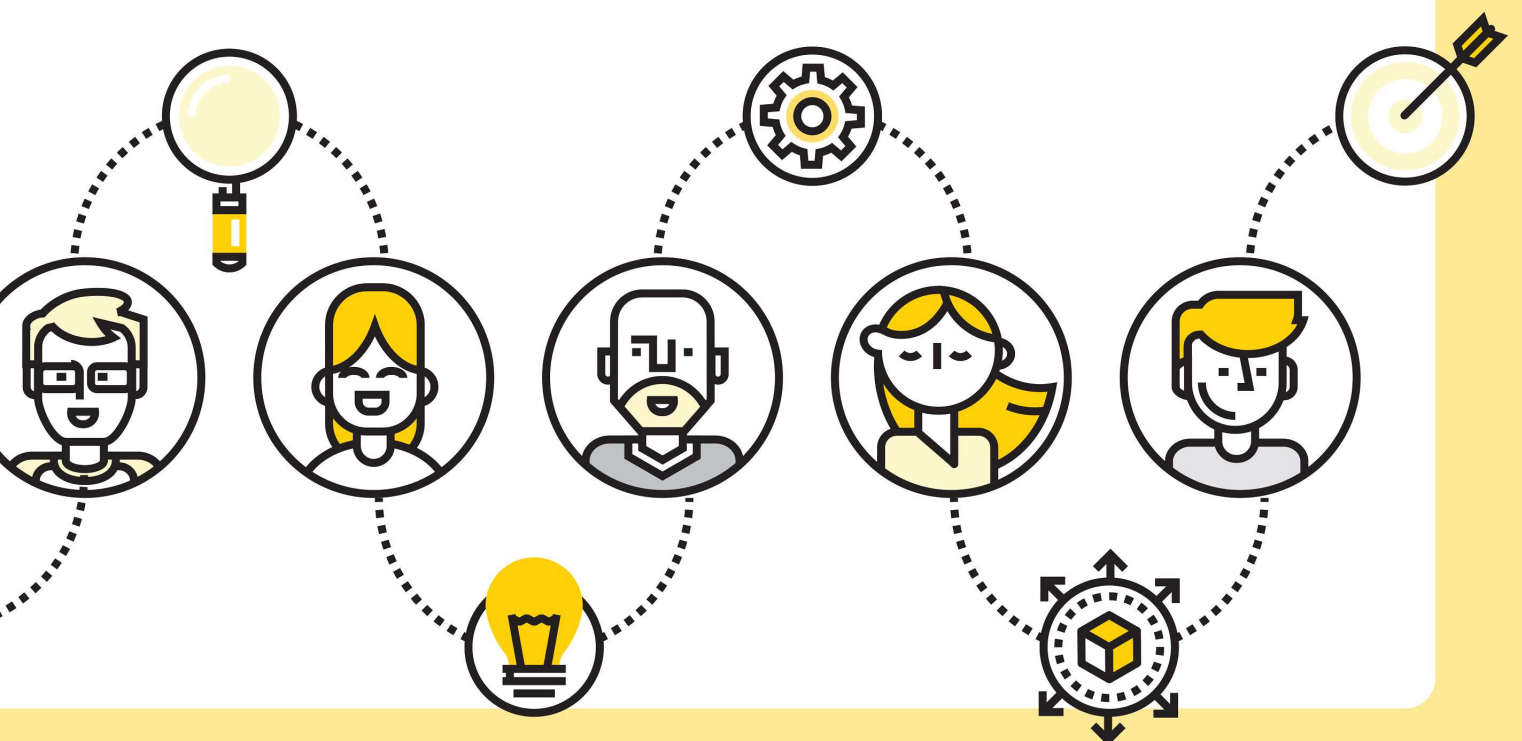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반생과 골목사장,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

농어민과 도시소비자가 서로 연대할 때만, 땅의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가능합니다. 정의당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또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실천하겠습니다.

2016. 3. 31

정의당 상임대표 심 상 정





발간사

정의로운대한민국을 향한 정의당의 약속

20대 총선이 최악의 '깜깜이 선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 어느 당이 어떤 정책을 내놓았는지도 모르고 총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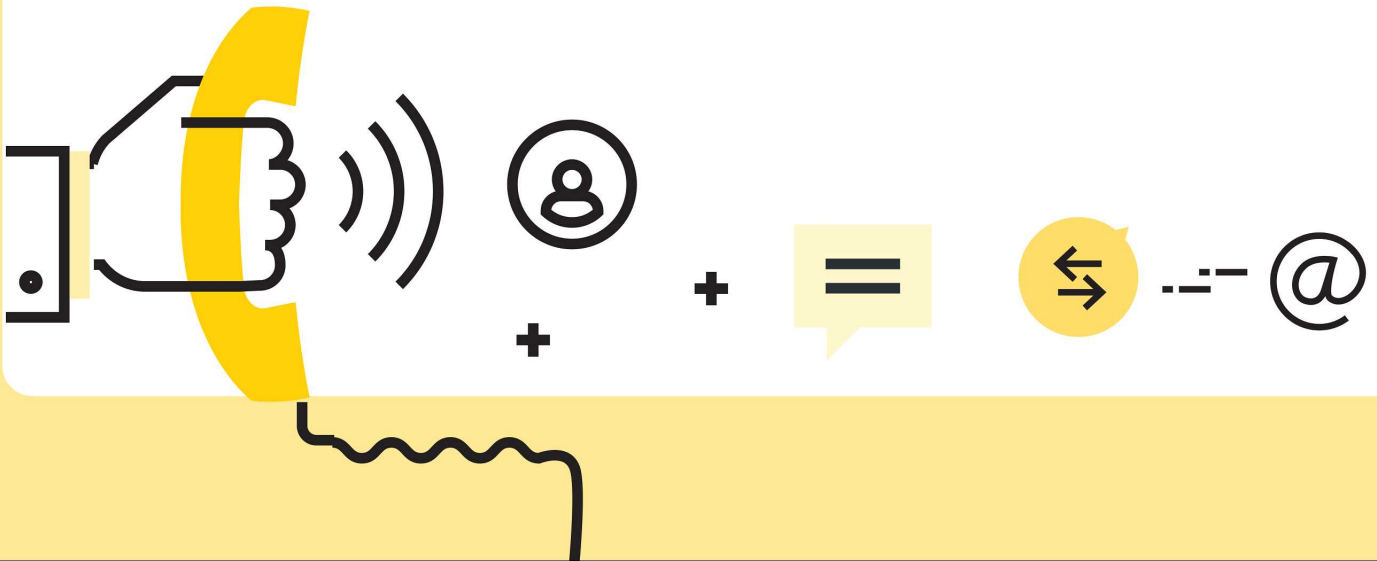
정책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의에 기반한, 국민이 아니라 계파가 우선인 낡은 정당체제가 이런 진풍경을 낳았습니다. '조직'과 '바람'에 의존하는 거대정당들에게 정책을 기대하는 것은 사치일지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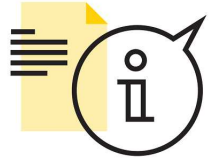
하지만 정의당은 다릅니다. 다른 당들이 공천을 가지고 막장드라마를 펼치는 동안 정의당은 그러거나 말거나 분야별 공약을 차근차근 발표했습니다. 다른 당들이 부실한 공약, 재탕삼탕 공약으로 공약집을 채울 때 정의당은 국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공약을 고민했습니다.

정의당의 공약은 이 시대 낭떠러지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건네는 작지만 튼튼한 동아줄입니다.

정의당의 청년공약은 노량진 학원가에서 컵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청년에게 내놓는 공약입니다. 정의당의 노동공약은 계약종료를 앞두고 마음 졸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내놓는 공약입니다.

정의당의 보육공약은 눈치 보며 칼퇴근해 어린이집으로 뛰어가는 워킹맘을 향한 약속입니다. 정의당의 교육공약은 학원비 걱정하는 학부모, 등록금 고지서 앞에 두고 한숨짓는 대학생과의 약속입니다. 정의당의 주거공약은 전세금 올려주지 못해 이삿짐을 싸는 세입자와의 약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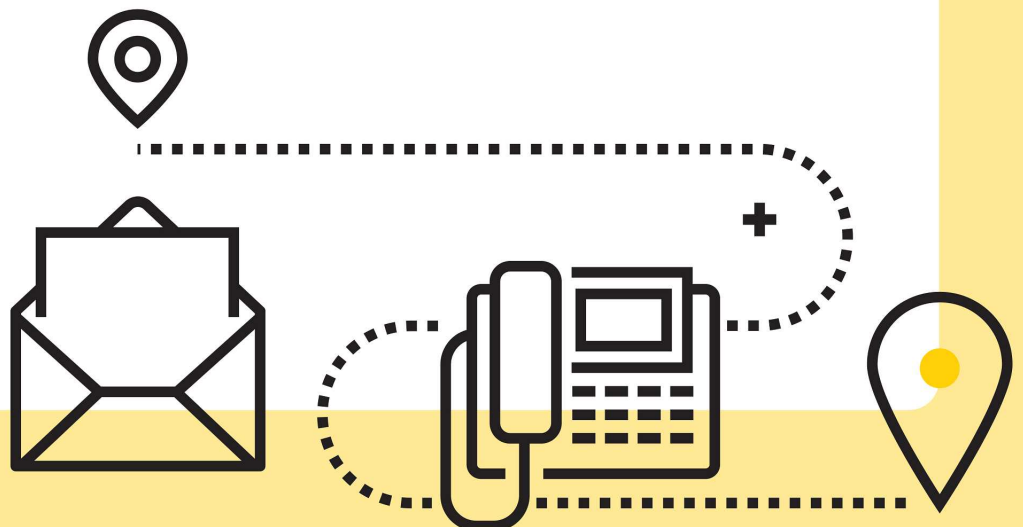
정의당의중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은 복합쇼핑몰 입점에 폐업을 준비하는 상인에게 건네는 다짐입니다. 정의당의 농업공약은 개방과 가격폭락에 속 타는 농민에게 내놓는 맹세입니다. 정의당의 동물복지공약은 좁은 케이지 속에서 자라는 닭과 돼지, 위험에 노출돼있는 갈angnya에게 내놓는 약속입니다.

정의당의 이번 총선 공약은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정책연구위원, 당 부설 연구소 미래정치센터, 의원실 보좌진을 비롯한 당내외 정책단위가 6개월 넘는 작업을 통해 내놓은 결과물입니다. 지난 진보정당의 정책적 성과를 잇는 한편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정책적 진보를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고군분투한 정책단위 구성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 공약을 선거용으로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20대 의정활동의 지침서로 사용할 것입니다.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공약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낭떠러지에 내몰린 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3. 31

정의당 정책위의장 김 용 신





불평등 해소, 정의로운 대한민국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미래는 나아질 것이란 희망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재벌주도 수출경제에서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건 '고용 없는 성장', '임금 없는 성장'입니다. 임금 인상률은 경제 성장률과 생산성 증가율을 못 따라가고 해고는 이미 일상입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과 비교해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노동소득분배율은 9.7% 하락했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는 경제 민주화와 복지가 화두였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재벌개혁은 실종되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생정책은 실종되고 복지공약은 파기되었습니다. 가계소득은 오르지 않고 가계부채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불평등 해소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정의로운 경제', '정의로운 복지', '정의로운 전환'
그리고 '5대 기득권 해체' 등 4대 과제를 실천해
정의롭지 못한 대한민국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정의당은 최저시급 1만원, 평균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고
2025년까지 소득격차를 서유럽 수준인 5배로 줄이겠습니다.

정의당은 불평등한 GDP 성장이 아니라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를 추구합니다. 재벌개혁으로 골목경제를 살리고 조세개혁으로 소득격차를 줄여가겠습니다. 시장의 정의를 넘어 '인간적 가치들의 회복'과 '훼손된 존엄성'을 치유하겠습니다. 소수를 위해 다수가 불모로 잡힌 정의롭지 못한 경제를 정의롭게 바꾸겠습니다.

정의당은 또 하나의 월급, 복지임금을 통해
2025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를 달성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생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평생복지, 교육·주거·의료 등을 책임지는 기초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GDP의 10.4% 수준인 복지지출을 2025년까지 OECD 평균인 21.6% 수준으로 늘리겠습니다.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로 책임복지를 실현하고, 가계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민생개혁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겠습니다.

정의당은 미래를 여는 선도정당으로서 대한민국에 인권·생태·안전·평화의 가치를 더하겠습니다.

정의당은 1인당 GDP가 올라갈수록 자살률도 올라가는 성장의 역설에 맞서 시대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경제적 평등에 더해 더 생태적이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고, 더 인권적인 사회가 될 때 더 많은 국민들이 행복해집니다. 모든 차별이 사라진 평등사회, 2040 한국 탈핵과 안전사회, 안보 민주화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체제로 한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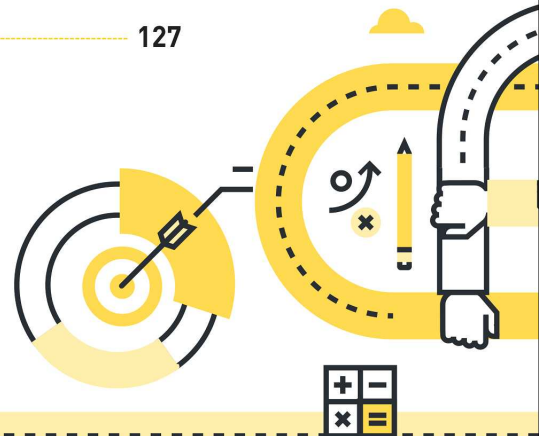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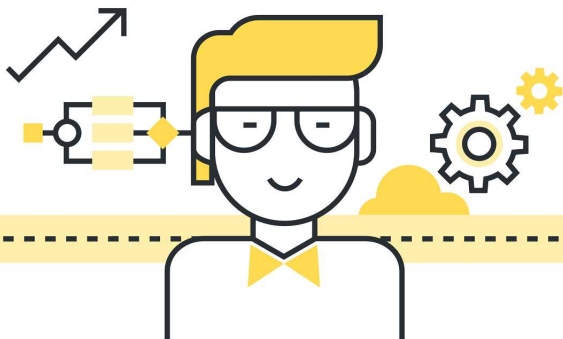
정의당은 불의한 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국민의 노동조합, 시민의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정의당은 기득권 해체를 통해 불평등이 불안을 낳고, 불안이 불공정을 낳고, 불공정이 불신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체 형성을 통해 힘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힘을 키우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과 연대에 기반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PART 2 대표 및 특화공약

인사말	2
발간사	4
정책기조	6
4대 정책과제 정의로운 경제	13
정의로운 복지	41
정의로운 전환	81
5대 기득권 해체	101
대표공약 국민월급 300만원	116
복지임금 100만원	117
특화공약 5시 퇴근제	120
유급 휴일 휴가제	121
청년디딤돌 급여	122
직장내 괴롭힘 방지	123
건강보험료 인하	124
두루누리 II 신설	125
통신비 인하	126
CEO 임금상한제	127



초과이익공유제	128
사회복지제도 도입	129
증여세 재계산제도	130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	131
핀란드형 보육	132
탈핵 2040	133
동물권 보장	134
한국형 모병제 전환	135
청년 취업농 지원	136
공천무한책임제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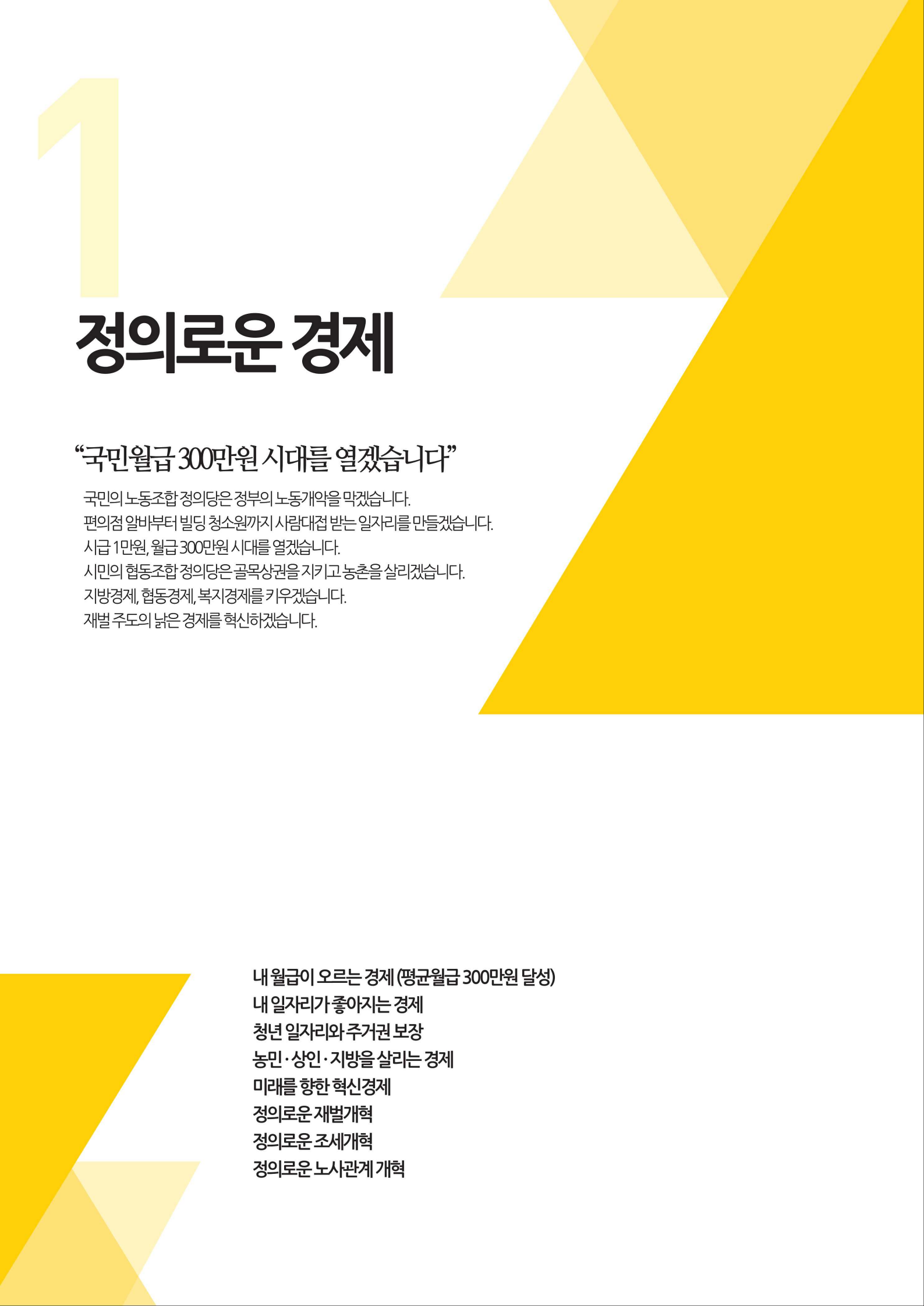
국민눈높이공약	139
20대 총선 10대 정책	147
정의당 VS 새누리당	195
공약발표자료	203
19대 국회의정활동 보고	323



정의당 20대 총선
4대 정책과제



정의로운 경제
정의로운 복지
정의로운 전환
5대 가득권 해체



1

정의로운 경제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의 노동조합 정의당은 정부의 노동개악을 막겠습니다.
편의점 알바부터 빌딩 청소원까지 사람대접 받는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시급 1만원, 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시민의 협동조합 정의당은 골목상권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겠습니다.
지방경제, 협동경제, 복지경제를 키우겠습니다.
재벌 주도의 낮은 경제를 혁신하겠습니다.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 (평균월급 300만원 달성)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청년 일자리와 주거권 보장
농민·상인·지방을 살리는 경제
미래를 향한 혁신경제
정의로운 재벌개혁
정의로운 조세개혁
정의로운 노사관계 개혁

1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 (평균 300만원 달성) 최저임금 1만원, CEO 임금상한제, 원하청 초과이익공유제

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으로 저임금 일자리 일소

진단

- 2013년 최저임금은 전일제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35%, 중위임금 대비 43%에 불과해 비교 가능한 OECD 회원국 중 각각 20위, 21위로 하위권
- 지난해 8월 기준 최저임금 수혜자(최저임금의 90~110%)는 182만명이고, 최저임금 미달자는 222만 명(전체 노동자의 11.5%)으로 이들은 모두 취약계층 노동자
 - 여성, 학생과 저학력층, 청년과 고령자,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영세사업체,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과 일용직, 무노조 사업장, 비조합원 등
- 최저임금 근로감독(2015.1~9월) 결과, 감독 규모와 적발 건수는 점점 감소해 행정감독이 부실함을 반증. 최저임금 미달 488건 중 사법처리하는 고작 3건(0.6%)에 불과 (참여연대)

약속

-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최저임금 결정절차 개혁
 -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공익위원 선출하고, 회의 공개 등 결정 절차 개선
- 최저임금 위반 기업 공시제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근로감독 강화
- 가사사용인, 수습노동자, 장애인노동자 등에 대한 적용제외, 감액규정 삭제

② 공공·대기업 CEO 및 임원 대상 임금상한제(최저임금 연동) 도입

진단

- 2014년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최고액을 받는 경영자들의 보수는 24억5000천만원으로 일반직원들의 35배, 최저임금의 180배 (한겨레신문)
- 2014년 1조 7,546억원 적자를 보고 2015년 초 사무직 1,500여명을 명예퇴직으로 내보낸 현대중공업의 이재성 전 회장은 퇴직금 24억3천만원을 포함해 모두 37억원을 수령
- 전체적인 소득격차와 임금격차를 해소하려면, 장기적인 조세제도나 복지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나, 단기적으로는 대기업 임원보수 제한을 통해 그 폐해를 일부나마 완화할 필요

약속

- 공기업/대기업 CEO와 고위임원은 최저임금 연동 임금상한제 도입
 - 2016년 기준 공기업은 10배(약 1억5천만원), 대기업은 30배(약 4억5천만원)로 설정
 - 2014년 기준 4억 초과 근로소득자는 총 11,500명이고 이들의 근로소득 총 8조 9,351억원. 최고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4억 초과분은 4조 3,3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2014년 기준 323개 공기업 중 이사장 연봉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한 곳은 총 130곳

③ 대기업-하청·협력업체간 초과이익공유제로 임금격차 해소

진단

- 2012~2014년 대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율과 매출액 세전이익율은 4.4~4.7%과 3.0~4.0%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3.1~3.2%, 2.4~2.7%으로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 집중. 대기업이 누리고 있는 초과이익은 불공정거래에 연유하거나 비용절감 등을 위한 협력기업의 공동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성과를 함께 나누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
- 대기업-하청·협력업체간 수익성 격차가 늘면서 기업 간 임금 및 노동조건 격차도 확대
 - 자동차 대기업 직원의 평균 월급에 비해 1차 부품협력업체들의 월급은 절반, 3차 협력

업체는 1/3 수준. 전자, IT업종 역시 대기업은 평균 월급이 493만원이나 1차 협력업체는 263만원, 2차 협력업체는 253만원, 3차 협력업체는 172만원 (2013년 한국노동연구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은 원가절감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목표를 달성할 경우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했으나 실효성은 미미. 이에 수탁-위탁 기업 간에 합의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위탁기업(원청기업)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함께 나누는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할 필요

약속

- 위탁기업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배분규칙에 따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 모델인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
- 정부가 초과이익공유제의 확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이익 공유제 추진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초과이익공유제 확산 추진본부 설치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초과이익공유제를 시행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조세 감면
-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관련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 대기업 초과이익 공유의 일정액은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에 사용하도록 유도

2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비정규직 제한, 해고 규제, 노동시간 단축, 성별 격차 해소

① 비정규직 사용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일자리 정상화

진단

- 작년 8월 현재 비정규직은 868만명(45%)이나 정부 통계는 사내하청 등은 제외
 - 사내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

- 기간제) 286만명(14.8%)으로 14~15 %대에서 고착화
- 시간제) 2002년 8월 81만명(5.9%)에서 2015년 8월 224만명(11.6%)로 꾸준히 증가
- 간접고용) 파견·용역근로·사내하청 등은 197만명으로 OECD에서 최고 수준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못 받는 4인 이하 사업체 노동자는 348만(전체 노동자의 19.1%)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4). 감시단속 노동자를 비롯하여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육 등의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유급휴일, 근로시간 및 휴게 등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배제

약속

- 모든 사업장과 노동자의 동등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근로기준법의 전면적 적용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간접고용 형태도 차별적 처우 금지
- 기간제 사용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사용기간 역시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
 - 차별적 처우의 범위 확대, 차별시정제도의 전사업장 적용과 노동조합에 신청권 부여
 - 정규직과 노동조건에 차이가 있는 무기계약직, 중규직 등 변종 고용형태에 대한 규제
- 단시간 노동자의 법정근로시간 이내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 등 처우 개선
- 파견법은 파견대상업무의 단계별 축소 → 하도급 업무 등 직업안정법 적용 확대 → 상시 지속업무에 대한 파견업 금지 등 3단계에 걸쳐 폐지
 - ① 도급업체 변경시 노동조건 승계 명문화, ② 불법파견·하도급업체 공시의무제 도입, ③ 마등록 불법파견노동자 사용 시 원청업체 즉시 고용 의무화, ④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임금인상을 이유로 단가인하를 요구할 수 없도록 명문화
 - 근로기준법의 사용자 개념 확대로 원·하청 공동사용자성 인정으로 파견노동자 보호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 확대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② 공공부문과 재벌 대기업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진단

- 2014년 정부부문 노동자는 222만명(13.0%)이고, 민간부문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는 516만명(30.3%)로, 둘을 합치면 전체 노동자의 43.3%로 노동시장에 큰 영향 (통계청)

-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003년 23만명(18.8%) → 2012년 36만명(20.5%) → 2014년 33만명(18.1%)으로 변화. 기간제 등 직접고용은 감소했으나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은 불변
 -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에서 일시·간헐적 업무와 정규직 전환 예외 조항을 폭넓게 허용
- 2015년 3월 현재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 459만명 중 비정규직은 182만명(39.5%). 직접고용 90만명, 간접고용 92만명(노동부). 10대 재벌 노동자 130만명 중 비정규직은 49만명(37.7%), 기간제 등 직접고용은 9만명,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은 40만명

약속

- 공공기관에 간접고용 상한제, 간접고용 현황 공시제 도입하고 상시·지속적 일자리면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
 - 공공기관 정원과 표준인건비제의 합리적 조정, 경영평가와 기관장평가 반영 등
- 지난 4년 동안(2009~2013년)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증가액 234조원의 1.7%인 4조원이면, 탈법적인 사내하청 4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연봉도 1천만원씩 인상 가능
 - △ 법률로 정규직 전환 강제, △ 고용형태 공시제와 공공조달계약 입찰 등 연계 유도, △ 대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확정 판결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등

③ 쉬운 해고 규제, 3대 괴롭힘 방지, 4대보험 강화로 고용안정

진단

- OECD(2013) 고용보호지수에서 정규직 해고제한은 22위(2.17점)로 낮은 고용보호 수준
 - 개별해고 제한은 34개국 중 12위(2.29점), 집단해고 제한은 30위(1.88점)
- 매년 노동자 3명 중 1명꼴로 일자리를 바꾸고 한해 이직자가 562만명의 고용불안 성장
 - 근속년수 1년 미만(31.9%) 터키(34.9%)에 이어 2위. 10년 이상 20.1%로 꼴찌 수준
- 직장인의 86.6%가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직장 괴롭힘 1건이 개인과 회사에 초래하는 피해 비용은 최소 1,548만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년 조사결과)

약속

- 일반해고와 정리해고에 대한 규제를 동시에 강화하는 법령 개선
- 회사에 의한 괴롭힘(정리해고 추진용, 노조 와해용, 성과압박형 등), 직장상사와 동료에 의한 괴롭힘, 감정노동 관련 고객에 의한 괴롭힘 등 3대 괴롭힘 방지 제도화
- 1년 미만 퇴직자도 퇴직금 보장,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 지급, 아르바이트와 특수 고용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확대로 고용안전망 확충

④ 모두에게 연간 유급휴가 30일 이상, 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

진단

-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2014년 2,124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2,228시간)에 이어 2위
- 법정 초과근로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 357만명(19%)
 - 2014년 단시간 노동자(36시간 미만) 16.2%, 36시간 이상 52시간 이하는 64.8%
- 장시간 노동체제는 ① 노동비용을 줄이려는 기업의 욕구, ② 근로기준법의 독소조항과 고용노동부의 탈법 행정, ③ 왜곡된 임금체계와 포괄임금제 등이 맞물린 결과

약속

- 법정 초과근로 한도인 주 52시간을 넘어 주당 최장 68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 고용노동부의 탈법적 행정해석을 시정하도록 강제
-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실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하는 근로기준법의 독소 조항 개정
 - ① 단시간 근로 관련 1주의 의미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 ② 포괄임금계약의 금지, ③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연장근로 규정 삭제, ④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시간(임산부와 18세 미만은 12시간 이상) 보장, 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 지급, ⑥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제한, ⑦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규정 삭제 등
- 모든 노동자에게 연간 30일 이상 유급휴가(공휴일/국경일 유급 휴일화, 6개월부터 연차휴가

부여, 여름휴가 1주일 의무제 실시) 보장

-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5시 칼퇴근법(9to5) 도입
- 연 1,800시간 노동시간상한제 관련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법」 제정
- 하루에 한 시간 씩 더 일하고 주 4일만 근무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제 도입

⑤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경력단절 방지로 여성 일자리 개선

진단

- 2013년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은 OECD 평균 보다 중졸이하는 12.1% 높고, 고졸은 8.4%, 대졸은 17.4% 낮은 수준. 고학력 여성은 자녀출산과 양육 등 경력단절로 인해 취업을 포기하고, 저학력 여성은 생계를 위해서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취업
- 2013년 우리나라의 남녀간 임금격차는 36.6%로 남자가 100만원 받을 때 여성은 63만원의 임금 수준. OECD에서 조사한 11개국의 남녀 간 임금 격차는 평균 15.5%
- 2015년 고용노동부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인 2,900개 사업장 점검한 결과, 여성근로자 비율은 평균 37.41%, 여성관리자 비율은 평균 19.37%에 불과

약속

-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비정규직 고용 개선으로 여성 일자리 개선
- 성별 고용·임금실태 공시제 도입과 페널티 강화 등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 공기업·대기업에 5% 청년 의무고용 도입 시 채용 인원의 30% 이상 여성할당 병행
- 임신휴직 도입, 파파쿼터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정착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과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직장 문화 선진화

3

청년 일자리와 주거권 보장

5% 청년고용할당제, 청년디딤돌 급여, 고시원/옥탑방 탈출

❶ 공기업 · 대기업 5% 청년고용할당제와 여성/고졸/지방 기회균형채용

진단

- 2015년 9월 현재 전체 실업률은 3.2%이나 청년(15~29세) 실업률은 8.5%. 청년 실질실업률(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잠재취업가능자+잠재구직자+실업자)은 작년 상반기 현재 22.4%
 -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은 60대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 특히, 고졸 취업자의 상용직 비율은 42.8%, 월평균 임금은 145만원으로 대졸 이상(188만원)의 77.3%
- 청년들이 취업 시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은 월 200만 원 이상의 임금, 근로시간 준수, 정규직 여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1~7차년도 자료)
-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3%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 △ 2016년말로 끝나고, △ 민간기업에 적용되지 않으며, △ 비정규직로 채용도 무방하고, △ 취업취약계층(고졸, 여성 등)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한계

약속

-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5%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
 - 2014년 공공부문 정원 300,599명 기준 5% 고용할당 시 약 1만5천개 일자리
 - 2014년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 459만명 기준 5% 고용할당 시 약 23만개 일자리
- 청년 고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고졸 이하, 전문대 졸업자, 지방대 졸업자 등에게 할당하고, 여성 취업자의 비율도 30% 이상으로 하는 기회균형채용제도를 도입

② 미취업 청년(15~34세)에게 '청년디딤돌 급여' 지급으로 구직활동 지원

진단

-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식 실업자를 포함한 청년 취업애로계층은 116만명에 달하나, 재작년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청년은 29만 3천명에 불과함. 또한, 고용노동부가 시행중인 '청년성공패키지' 사업은 신청자가 6만 7천명에 불과해, 둘을 합해도 80만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공식적인 실업안전망 밖에 있음.
- 청년성공패키지는 연간 13만명을 대상으로 2~3개월 동안 최대 40여만원씩 지원함. 하지만 청년성공패키지는 청년들에게 충분한 일자리 탐색의 기회와 내실 있는 직업훈련의 제공으로 적절한 일자리를 연계하는 것보다, 일자리의 질에 상관없이 당장의 고용률을 올리는데 치중하고 있어 실제 청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함.

약속

- 15~34세 미취업자 중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청년디딤돌급여 지급
 -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월 50만원, 연간 최대 540만을 제공하는 청년급여는 청년세대의 위기에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단순 소득지원이 아닌 구직활동을 지원
 - 민간위탁 학원 중심의 정부 정책과 달리 공공 위주의 내실 있는 직업훈련과 연계
- 자발적 이직자와 아르바이트 재학생,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
- 1년 미만 퇴직자에게도 퇴직금 보장

③ 청년공공임대, 주거비 지원으로 반지하·옥탑방·고시원 탈출

진단

- 전국 청년들의 14.7%는 주거빈곤 상태에 처해 있음. 서울지역 청년(만 19~34세) 5명 중 1명은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하나 옥탑, 고시원 등에 거주하고 있음. 서울지역 주거빈곤 청년은 2010년 기준 52만 3,869명으로 전체 청년 229만 4,494명 중 22.9%를

차지함. 청년 1인가구(34만가구)의 36.3%(12만3591가구)가 주거빈곤 상태임. 대학생주거
권네트워크(2013)에 따르면, 대학가 주변에 위치한 고시원, 하숙, 원룸 등의 소형 주택은
대형 주택보다 평당 임대료가 더 비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킴.

- OECD 국가들은 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2%이나, 우리나라는 5%로 매우 낮은 수준임. 입주자 선정 역시 가구원 수가 많고 지역 내 거주기간이 길수록 유리함.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서울시 SH공사가 보유한 12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세대주 16만 1363만명 중 10대는 162명(0.1%), 20대는 2790명(1.7%), 30대도 1만 6,269명(10.1%)에 불과함.

약속

-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OECD 평균 수준인 12%를 목표로 매년 15만호 이상 공급
 - 건설과 매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절대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늘리고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며, 협동조합 등을 통한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
 - 임대료가 비싼 정부의 뉴스테이 대신 임대료를 대폭 낮춘 ‘정의스테이’를 건설하고, 청년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고시원과 원룸, 다세대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해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특히, 1~2인 청년가구를 고려해 소형 평형을 확대 공급
- 청년들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 주택공사 보증 보증금 안심대출과 함께 현행 주거급여의 대상과 금액을 확대
 - 지역별 공정임대료를 도입하고, 영세임대업자, 청년 1인가구, 영세중계업자가 상생하는 사회적 임대시장을 만들며, 세입자의 권리 등 주거정보를 교육하는 주거지원센터 설치

4

농민·상인·지방 살리는 경제

식량자급률 법제화, 골목상권 보호, 지역특화산업 육성

① 식량자급률법제화, 청년 취업농 육성 등 농민과 농촌 살리기

진단

-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13년 기준 23.6%로 매년 하락
- 1980년대 이후 농업 구조조정과 수입개방은 농업의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켜왔으며,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의 점진적 감소 등 농가경제의 위기 초래
-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39%대에 이르고 후계농업인이 없는 농가가 90%
- 1991년에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97.4%였으나 2013년에는 62.5% 수준
- 환경보전기능(홍수조절·대기정화·토양유실 방지)과 사회경제적 순기능(농촌공동체 유지·전통문화 계승), 자연경관 유지 및 생태보전 기능 등 다원적 경제가치 약 83조원(2004년)

약속

- 중장기 식량자급률 50% 달성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적정농지 확보 법제화
-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적정가격보장제 도입,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부활로 가격 지지
- 청년취업농지원제도 도입과 귀농귀촌 지원대책 강화로 신규 농업인력 적극 육성
-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1마을 1공동생활주택(그룹홈) 등 농촌 생활환경 개선
- 지역먹거리체계 구축, 농촌형 마을기업, 공동급식 등 지속가능한 농촌형 일자리 창출
- 시장개방으로 이익을 얻는 산업에 무역이득 부담금제를 도입해 농업 피해보전 의무화

② 재벌대기업 규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

진단

- 수출 재벌대기업 위주의 경제전략이 지속되면서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성장 둔화와 기술개발 투자여력 약화, 계층적인 하도급 분업생산구조의 최말단에 위치한 영세 소기업의 퇴출, 제조업의 창업률 저하 현상이 고착화
-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의 대표적 원인인 하도급 납품단가 결정제도는 ① 협력사업 성공 시 혁신이익은 대기업이 가져가고 협력기업은 기본이익만 제공, ② 협력기업의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보상 미흡 및 투자유인 부족, ③ 원자재 가격 인상분에 대한 낮은 납품가격 반영률, ④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단가 인하로 하청업체의 수익성 악화, 투자위축
- 중소기업협동조합 수는 901개이고 조합원 업체 수는 6만5,558개로 전체 산업조직화율은 2.1%, 이 가운데 제조업 조직화율은 9.5%에 불과. 일본은 조합수가 4만7,207개이고 조직화율이 70.5%.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조직률이 낮은 것은 중소기업이 단체에 가입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는 것이 원인
- 「공정거래법」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예외 규정이 있으나, 까다로운 사전인가절차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실제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 하지만,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구매, 공동판매 및 공동연구개발이 필요
- 일본과 대만이 중소기업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중소기업에게 사업조합 단위로 공동납품·공동해외진출·공동기술개발 등을 허용했기 때문. 독일의 하도급거래 관련법도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행위를 카르텔 적용에서 제외하여 허용

약속

- 중소기업인 보호를 위해 재벌대기업의 갑질(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 중소기업인 보호를 위해 재벌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규제
- 대기업의 초과이익, 혁신이익을 공유하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R&D 기술혁신 등 맞춤형 지원
- 중소기업인 카드수수료 인하, 사회보험료 지원, 골목상권지원센터 설립 등 보호, 육성
- 「공정거래법」, 「대리점공정화법」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소상공인단체 등에게 납품단가 협의, 원가산정, 납품물량 조정 등에 있어 재벌 대기업과 대등한 교섭권 보장

③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지역균형선발로 지방경제 활성화

진단

- 그동안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지역발전정책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거나, 지방정부가 유사한 특구를 경쟁적으로 남발하면서 선택과 집중에 실패.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여전히 심각하며 수도권으로 청년층 등 인구집중 현상 지속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산업과 뿌리산업을 육성하거나 풀뿌리 사회적경제와 지역밀착 복지경제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보다, 대규모 국제 스포츠행사 같은 메가 이벤트나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 토건사업 등 단기 일자리에 치중

약속

- 국가적 컨트롤 타워를 통해 미래산업과 뿌리산업의 전략적 배치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협의를 통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구
 - 관 주도의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체계 구축
- 지역 과학기술역량에 따라 공공 R&D 투자 확대 등 맞춤형 지원
 - 지역 특화대학 지원 및 외국 및 다른 지역과의 실질적인 협력 및 공동 연구 활성화
- 지역별 제조업 첨단연구소 설립과 혁신 클러스터 구축으로 뿌리산업 활성화
 - 스마트공장 설립과 연계해 지역 내 고교, 대학을 통한 인재육성 전략 수립
- 풀뿌리 사회적경제, 복지경제와 지방 기화균형선발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 광역시도별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조성 and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지정
 -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주민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
 - 공기업 · 대기업 청년고용할당 시 지방대 졸업자 등에 대한 기화균형채용제도 도입

5

미래를 향한 혁신 경제

사회적경제, 강소기업, 복지경제, 평화경제, 탈핵경제

❶ 사회적경제 GDP 10% 달성 - 법 제정과 인프라 구축

진단

-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의 강화를 위한 상생과 호혜, 연대의 기본원리로 운영되는 경제 영역임.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확산은 단순히 일자리 창출을 넘어 양극화 해소와 함께 공동체 복원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이 될 것으로 보임.
- 이에 사회적 경제의 고용 및 복지 개선, 건강한 공동체 조성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원칙과 목적에 따른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고 함.

약속

-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 위원회’ 설치하고 목표 달성을 관장
 - 주요정책 및 5년 단위 기본계획, 매년 시행계획 수립과 이행을 심의·조정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조성, 지원
- 정부 부처 간 통합적, 효과적 정책추진을 위해 ‘한국사회적경제원’ 설치
 - 해외사례 연구 및 국내연구 지원, 학교교육 및 시민교육, 유관 종사자 교육·훈련
- 광역시도는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광역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지정, 운영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 강구
 - 금융 수급 및 전달체계 구축, 재화·서비스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 지원
 -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체계 촉진과 세제, 재정, 금융, 행정 등의 지원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 발의 (2014.11.11.)

② 저출산-고령화 관련 공공 사회서비스 산업 전면 확대

진단

-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내수진작에 영향을 미쳐 불균형한 한국경제를 조정하는 데에 꼭 필요한 산업이며, 국민의 복지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현재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으로 광의의 사회서비스는 연평균 5.7% 이상 인력수요가 늘고, 특히 돌봄과 보건복지 분야의 성장 폭이 클 것으로 전망
-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300만명이나 월 평균 임금은 202만원 수준이며, 저임금 비중이 39.2%. 돌봄 · 재활 · 상담 분야는 113만원, 저임금 비중 70% (2013년, 전국사업체 조사)

약속

- 공공사회서비스 확대, 민관협력으로 통합적, 공익적 공급체계 구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생산과 복지가 결합해 지속 가능성 제고
 - 사회적 경제 조직과 사회서비스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새로운 사회서비스 사업의 발굴을 위한 지원 및 정부의 공공조달 등을 통한 간접지원 확대
- 노후설계 등 신규 사회서비스 확충, 서비스 향상을 위한 R&D 투자로 일자리 창출

③ 기초연구 투자와 지역 R&D 네트워크로 강소기업 육성

진단

- 정부 R&D 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이 여전히 낮으며, 상향식의 고위험 · 창의적 연구 보다 미래부가 투자방향 및 우선순위에 개입하여 추격형 · 단기성과형 연구지원
 - OECD ‘과학기술전망’(2014)은 한국의 공공 R&D는 실용연구와 기술개발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으며, 현대경제연구원(2015)은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 R&D 생산성이 2012년 기준 1조원 투입 시 132억원 기술료 수입 발생에 그친다고 분석
- 2015년 창조경제 예산은 총 8.3조 원에 달하나, 창조경제센터 등의 사업은 기존 중소기업 지원센터와 전혀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중복지원 등의 문제 발생

- 지역별 과학기술역량 진단(KISTEP) 결과, 수도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은 민간 부문 R&D 강점 지역으로 나타난 반면, 충청권은 공공 부문 R&D 강점 지역이었고, 강원권과 제주권은 공공 R&D 약점지역으로 평가
- 수도권 연구원 수는 전체의 63.3%, 서울지역 아공계 고급인력 배출 비중은 46.4% 차지

약속

-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폐지, 민간위원장 중심 범정부 과학기술위원회 구성, 정부위원은 실무자 위주로 구성하되, 결정참여 제한 등 결정구조 재정립
- 2018년까지 기초·원천기술 R&D 투자 비중을 45%로 확대해 도전적·창의적 ‘기초연구 역량 강화’ 중심의 R&D 환경을 구축하고 자유공모형 상향식 연구비 비중 확대
- 기존 중장기 R&D 투자전략 재평가를 통해 기초연구에서 상용화까지 가치사슬 단계별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전략원천기술 및 핵심부품 선정 및 자립화
- 지방자치단체별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맞춤형 홍보 등 원스톱지원, 대학 아공계학과 및 연구기관, 지역기업을 연결하는 과학기술 네트워크 구축
- 지역 특화대학 지원 및 지역기업체 지역인재 우선 채용. 강원권과 제주권에 대한 공공 R&D 투자를 확대, 외국 및 다른 지역과의 실질적인 협력 및 공동 연구 활성화

④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등 경제공동체로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

진단

- 남북경협 효과와 의의는 진보는 물론 보수도 인정하나 현실은 큰 지체와 후퇴.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남한의 개성공단 철수 등으로 난관이 조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역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대북 지렛대의 확보를 위해서도 경협은 활성화를 기할 필요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유라시아 대륙경제시대 구축의 효과는 ① 잠재성장률 1% 이상 증가 및 남북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본격화되면 5% 정도의 성장 가능, ② 북한경제 역시 발전해 일방적인 흡수통일로 인한 경제적 격차와 그에 따른 부작용 예방, ③ 남북 간 평화체제 구축 및 주변국과의 협력 제고로 국방예산 절감

약속

- 개성공단의 발전적 유지와 5.24조치 해제를 통한 남북 경제협력의 우선적 복원 남한 쌀과 북한 지하자원 교환 등 남북 교류협력의 전면화
-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체결로 남북의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침해를 제도적으로 방지
- 남북경제공동체를 바탕으로 유라시아 대륙과의 인프라 연결과, 환동해-환황해, 한반도-동북3성-연해주 경제권 형성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의 가교 역할 수행
-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등으로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협력 자율성 보장 및 남북관계 불가역화를 제도화

⑤ 탈핵 2040과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면 확대와 집중 육성

진단

- 우리나라는 전력수요 과다 예측 → 핵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발전설비 확대 →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전력소비 확대의 정책적 악순환을 반복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 핵발전소 밀집도 국제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핵발전소 보유국이며, 핵발전소 밀집도는 세계 2위
- 전 세계 핵발전소 설비 비중은 2012년 6%에서 2040년 4%로 감소, 화석연료는 65%에서 36%로 감소, 신재생에너지는 28%에서 54%로 증가 (BNEF의 「뉴에너지 아웃룩 2015」)
-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 재생에너지 공급비중 꼴찌. OECD 평균 17.4%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2.1%에 불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역시 33위를 차지로 OECD 평균 32.8%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1.7%에 불과
 - 특히, 2012년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고, 대규모 사업자에게 유리한 공급의무할당제를 도입. 환경성과 수용성이 높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사업성 확보 곤란

약속

- 2040년까지 노후원전 폐쇄, 신규원전 중단으로 탈핵 실현

-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폐지 석탄화력발전소의 대안으로 저탄소, 저갈등 전원인 천연가스 발전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징검다리 발전원으로 활용
- 대형 신재생에너지는 공급의무화제도로, 소형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다차원적 발전 확대

6

정의로운 재벌 개혁

재벌의 불공정 갑질, 골목상권 진출, 지배구조 개혁

① 재벌 대기업의 갑질(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진단

- 불공정한 갑을관계의 대표적인 6대 갑질은 ① 대리점업계의 밀어내기 판매 강요 행위, ② 가맹점업계의 고가 인테리어 강요 행위, ③ 제조하도급에서 부당한 원가산정 요구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④ 건설하도급에서 추가공사비 미정산 행위, ⑤ 대형유통점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반품 행위, ⑥ 기술설명회 등을 빙자한 기술 편취와 탈취 행위 등
- 이와 관련 입법화는 △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업체와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등은 부분적 반영,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조달청장에 게도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질,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하도급법에만 일부 적용하고 집단소송제 도입은 미처리, △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는 미처리 등의 문제

약속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 한도 증액, 집단소송제 도입
-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 폐지 및 당사자, 협동조합, 공익적 시민단체에 고발권 부여
- 하도급 계약 정보공개, 대기업의 공공입찰 시 중소기업과의 공정거래 현황 및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과 근로조건 향상 입증 요구

② 재벌 대기업의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규제

진단

- 대형마트와 할인점의 문어발식 확장은 국내 유통업의 89.5%를 담당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 최근에는 대형마트, SSM에 이어 복합쇼핑몰, 대기업의 상품공급점(변종 SSM), 드럭스토어 등이 잇달아 신규 출점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가중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14년 11월 발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복합쇼핑몰 주변 소매점의 매출은 평균 46.5%(연평균 약 1억6천만원)나 감소, 업종별로는 음식업종은 79%, 의복 신발가죽제품은 53%, 개인서비스업 42%, 이·마용업 38%가 감소
- 2007년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되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영위해오던 업종에 대거 진출. 이후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가 부활하였으나, 대기업의 동의가 없으면 적합업종으로 선정될 수 없고, 만일 선정되더라도 대기업의 진출을 막을 강제수단이 없는 한계

약속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으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한편, 주변 소상공인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허가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 또한, 의무휴일제를 월 4회로 확대하고 위반 시 등록 취소 및 과태료 증액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을 대기업의 사전승인 없이 중소기업청장이 ① 해당사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 → 불이행 시 사업이양 명령으로서의 주식처분, 기업분할명령, 임원사임, 영업양도 등 필요한 조치 강구

③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금산분리 강화

진단

-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순환출자가 상당수 감소하였으나 순환출자 해소가 재벌의 소유구조의 개선을 가져왔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61개 대기업집단 중 순환출자가 있는 경우는 8개 그룹, 이 중 순환출자가 총수의 지배권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는 현대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 현대산업개발 등 3곳에 불과

- 비지배주주의 감시기능 강화 관련 소액주주 등이 독립적으로 사회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집중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재계의 반발 등으로 제도화되고 있지 못한 상황
- 금산분리 강화 관련 금융계열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은 진척이 없으며, 산업자본이 은행자본 보유하도록 축소하도록 「은행법」을 개정하였으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등 금융개혁을 발미로 관련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음.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하였으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비판 제기

약속

- 순환출자 해소 관련 「공정거래법」 상의 폭넓은 예외규정을 없애고, 위반 시 의결권 제한이 아니라 주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도록 강제하여 제재 강화
-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①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② 소액주주와 함께 근로자대표 추천 이사 선임, 감사위원의 전원 분리선출제도 도입, ③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의무적 시행과 다중대표소송제의 도입
- 금산분리 관련 ①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추진, ②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대주주 범위에 특수 관계인 및 주요 주주를 포함, 대상 법률에 특가법 상의 횡령, 배임을 포함, 부적격 대주주로 판명될 경우 매각명령 등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도입으로 보완, ③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규제완화 반대

7

정의로운 조세개혁

법인세와 소득세 강화, 사회복지세와 탄소세 신설

①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과 사내유보금 과세 도입

진단

- 현재 법인세의 주요 문제점은 ① 지난 MB정부 출범 후부터 거의 매년 30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법인세 최고세율 3% 인하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가 가장 큰 원인 ②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고, 전체 국민소득에서 기업소득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 ③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담배세, 연말정산 등 개인에 대한 세금부담은 늘어난 반면 기업에 대한 세금은 제자리걸음
- 사내유보금은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투기형 자산 증가에 따른 이자 및 배당수익이 증가. 2009년 MB 감세 이후 사내유보금은 더욱 증가하여 2015년 3월 말 기준 30대 재벌기업 산하 268개 기업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710조 3,002억원 수준

약속

- 법인세 최고세율을 MB감세 이전 25%로 회복. 연간 8조원 수준의 신규재원 마련
- 사내유보금 중 업무무관 자산의 운용수익(이자, 배당, 임대료 수익 등)에 대한 10% 할증 과세 도입. 10% 할증과세 도입 시 매년 3조원의 추가 세입 기대

② 소득과 자산에 대한 공평과세로 소득·자산 불평등 완화

진단

- 우리나라의 조세·이전지출 등 정책수단에 의한 소득재분배 개선비율은 9.17%로 OECD 32개국 평균치인 34.23%의 1/4에 불과, OECD 32개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 (2014년

국회 입법조사처)

- 금융소득과세) 2015년 초 정몽구 부자 현대글로비스 주식 팔아 1조 1,500억원이 넘는 소득을 얻었음에도 세금은 20%만 부담, 주식양도소득은 누진세율이 아닌 20% 단일세율을 적용하기 때문.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 종합소득자는 전체의 0.3%인 13만명에 불과
- 부동산보유세) 우리나라 국민순자산은 1.1경원(2013년말 기준)이며, 이 중 가계순자산은 6,365조원(가구당 3.3억원)이고, 77%가 부동산 자산(통계청, 2015.5). 2013년 공시가격(공시지가) 기준 상위 1%가 전체 부동산의 16%, 상위 10%는 46%를 차지하여 자산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 반면, 2013년 부동산 보유세는 약 10조원으로, 과세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 대비 실효세율은 0.233%에 불과
- 임대소득세) 전월세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임대소득 과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부동산 부자들의 임대료 착취가 심화됨. 소득세법상 전세보증금에 대해선 3주택자 이상에 한해 간주임대료를 계산,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85㎡, 3억원 이하는 2016년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월세소득도 주택보유와 상관없이 연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2016년까지는 비과세임. 무엇보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대상이 아니라서 매우 저조(등록 민간임대주택 68만 가구, 전체의 8%)한 실정
- 상속세) 2013년 전체 피상속인 수 28만 2,232명 중 실제 상속세를 납부한 피상속인은 6,275명, 2.2%에 불과. 과도한 상속공제로 인해 고액상속 중에서도 다수가 상속세 전무. 상속재산 50~100억 중 9명, 30~50억 중 13명, 20~30억 중 28명, 10~20억 699명이 상속세를 한 톨도 안낸 상황.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나, 상속재산 10~100억대의 실효 세율은 12%, 상속재산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효세율은 35%에 불과
- 소득세) 현행 소득세 세율은 MB부자감세를 둘러싼 여야 간의 대립과 그 과정에서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세율구간 격차가 기형적일 정도로 불규칙하고 복잡해서 대다수 국민들은 소득세 세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신뢰도 낮은 상황. 최고세율 38%는 그 아래 세율인 35%와 3%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최고세율로서의 의미가 별로 없고, OECD 중 동구권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40~50% 수준

약속

- 금융소득 과세) ①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누진세율 적용하고 상장주식양도소득 부과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인하 ②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하여 연간 2조원의 신규 자원 확보
- 부동산 보유세) 과세표준에 공정시장가격비율 적용하지 않으며, 누진세율을 강화. 표준지와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결정제도를 개선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향상
- 임대소득세) 현행 3주택자 이상에게 적용되는 전세소득 과세를 확대하고, 월세 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폐지. 임대차등록제를 의무화
- 상속세) 복잡한 상속공제 기준을 낮추고 증여세 재계산제도를 강화하며, 세대생략 상속·증여에 대해 할증과세 강화
- 소득세)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등 누진세 강화와 세율 구간의 합리적 정비

③ 대기업, 부유층에 사회복지세 도입으로 복지자원 확보

진단

- 세계 최대의 노인빈곤율 등 부끄러운 복지수준에도 불구하고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0.4%로 조사대상 28개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고 OECD 회원국 평균 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국민소득이나 인구구조 등 사회경제적 여건을 감안한 복지지출 국제비교지수에서도 최하위
- 누리사업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팽팽게임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고, 국고보조복지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으로 인해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

약속

-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액의 10~20% 해당하는 사회복지세 신설로 20조원의 공공복지 추가재원 마련

④ 탄소세(기후정의세) 도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수단 강화

진단

-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목표관리를 위한 정부의 조치 의무가 명문화되고 친환경적 조세제도의 운영 근거 마련. 그러나 후속조치 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저탄소 정책을 추진하는데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
- 1990년대 초반부터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영국 등에서 시작하여 현재 유럽의 10여개 국가들이 탄소세 관련 세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본과 호주도 시행 중

약속

- 탄소세(기후정의세)법 제정으로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기후변화 관련 산업 육성과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 확대

8

정의로운 노사관계 개혁

사회적 논의기구, 산별교섭 제도화, 노조 교섭권 강화

① 노동, 경제 문제를 다룰 새로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진단

- 현재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는 양대 노총의 하나인 민주노총이 빠져있고, 지난해 노사정 합의 이후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악 추진으로 인해 한국노총 역시 불참하고 있는 상황
- 그동안 노사정위원회는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노동자의 이익 보호보다 오히려 정부와 재계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추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작동

약속

-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대신해 노동, 경제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② 산별교섭 제도화와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진단

- OECD(2004), ILO(2004)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이 높거나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을수록, 전국이나 산업 수준에서 단체교섭이 이뤄지고 조정이 원활할수록 임금불평등이 낮으나,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 노조 조직률은 31위, 단체협약 적용률은 34위
-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을 담은 산별교섭 제도화는 노동자 임금격차 축소와 보편적인 노동 조건 향상 등에 있어 유력한 방안의 하나로 활용 가능하나, 아직 노동조합의 산별 전환에 조응하는 안정적인 교섭구조가 없고 산별 교섭구조의 제도화 미흡
- 한편, 기업의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대상에 초기업 노조를 모두 포함시켜, 산별교섭을 무력화시키고 기업별 노사관계를 고착화시키고 있음. 산별노조의 사업장 지부가 소수노조일 경우 산별교섭에 참여할 수 없으며, 산별교섭에 참여하더라도 다수노조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산별교섭에 대한 참여의 권리를 박탈당해 대각선 교섭도 불가능

약속

- 미조직 노동자 보호를 위해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 산업별 교섭구조 안착을 위해 사용자단체 구성 및 교섭 의무화
-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 산별노조 제외. 사용자의 기업별노조 특혜 행위를 부당노동 행위에 포함

③ 노조 무력화 금지와 공정한 노사분쟁 조정체계 구축

진단

- 1990년대 들어 줄어들던 파업이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상황 악화에 따른 사업장 단위 노사관계 악화로 다시 증가하였음. 최근 파업발생 건수와 파업손실 일수가 감소한 것은 노조 조작물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낮고, 사용자가 힘의 우위를 점한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
- 이에 따라 노동자 개인이 법적 구제절차에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 노동위원회가 집계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초심) 건수는 1990년 1,134건, 2000년 3,918건, 2010년 9,266건에 이어 2013년 1만 1,152건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
- ‘파업발생건수 대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건수’를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1988~2002) 때는 4.2~6.4배, 노무현 정부(2003~2007년) 때는 2.0~8.2배, 이명박 정부(2008~2012) 때는 8.7~20.0배로 꾸준히 증가.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파업유도→직장폐쇄→용역폭력→제2노조 결성→기존노조 무력화의 패턴이 반복 (김유선, 한국의 노동 2016)

약속

- 노동조합 파괴를 막고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해 △ 부분적 직장폐쇄 금지, △ 파업에 대한 손해·가압류 금지, △ 용역인력의 노사관계 개입 금지
- 노동자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①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및 위상 강화, 준사법 기구로서의 전문성과 합리성 제고 방안과 ② 노동법원 도입 방안을 검토, 추진

2

정의로운복지

우리의 복지국가 달성 목표는 OECD 평균입니다.

세계 경제규모 11위 대한민국.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공공복지영역을 확대하고, 민간복지의 공공성은 강화할 것입니다.
영유아에서 노후까지 더 많은 복지와 함께 질 좋고 공평한 복지로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평생복지 5대 분야]

태아·영유아 “생애 첫 출발은 평등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해야 합니다”
청년 “사회진출의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겠습니다”
중장년 “서민들의 가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노년 “생애 마지막은 누구나 여유로워야 합니다”

[기초복지 5대 분야]

공공·무상의료 “더 이상의 메르스 참사는 없어야 합니다”
공공안심주거 “집 없는 서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국가책임교육 “학생들이 행복한 창의·협동교육이 필요합니다”
장애인권리보장 “기본권과 자립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선진복지기반 “사회안전망·사회서비스가 좋아야 선진국입니다”

[복지증세 분야]

“연 50조원, 복지 책임증세”

1

태아·영유아

생애 첫 출발은 평등해야 합니다

① 산모·영유아 방문간호사제 도입, 핀란드형 마더박스 제공

진단

- 고령산모의 출산이 증가하고, 인공수정의 증가에 따른 다태아 임신 증가로 산전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출생아수의 감소에 따라 태아기부터 건강한 아기를 출생하고자 하는 관심이 높아져 산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2012.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 2013년 서울시는 3개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서울시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해가고 있음. 이는 호주시드니에서 효과가 입증된 프로그램으로, 영유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기틀이라는 점에서 간호사가 지속적인 가정 방문을 통해 산모 및 아이의 건강관리, 산모의 양육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건강관리 사업임. 시범사업 당시인 ‘2013 대한민국 지역사회복지대상’ 광역지방자치단체부분 대상을 받아 그 효과성을 이미 인정받음. 이에 따르면, “산모는 모유수유율 증가, 엄마와 아이의 상호 작용 및 애착도 증가, 산후우울증 감소, 영유아는 발달지연 등 지체아 감소, 가족은 영유아 발달에 좋은 가정환경 제공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특히 건강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2014. 서울시보도자료)”

약속

-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제도 도입
 - 1단계: 전국 건강취약지역 / 2단계: 전국 확대
- 핀란드형 마더박스 선물
 - 핀란드는 모든 출산가정에게 100만원 상당의 마더박스 제공
 - 출산시 양육에 필요한 종합물품을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핀란드형 마더박스 선물

②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기간 확대, 파파쿼터제 도입

진단

- 2012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를 보면, 취업미혼여성의 임신 및 출산 후 일을 그만둘 계획인 이유는 ‘아이 양육 문제 때문’으로, 이와 관련한 응답이 97%를 차지함
- 여성 취업자 1,000만명 시대, 20대 후반까지는 70% 내외의 비교적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다가 30대 초반에 51.8%로 급속하게 하락함.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30대 초반에 경력 단절을 겪음
- 2014년 육아휴직 사용자는 여성이 7만 3,412명,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4년 3,421명으로 10년 전 181명보다 크게 증가했으나,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의 비중은 4.5%로 여전히 낮은 수준임

※ 해외사례

(스웨덴) 부부가 총 1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음. 이 중 2개월씩 반드시 부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함. 나머지 12개월은 엄마 아빠든 어느 쪽이든 가능하며 이 기간에 소득의 80% 정도를 정부가 수당을 주고 세금도 감면해 줌.

(노르웨이) 육아휴직 47주를 사용하면 임금의 100%를, 57주를 사용하면 임금의 80%를 지급. 47주 중에는 출산 전 휴가 3주를 제외하고 엄마와 아빠에게 각각 12주가 할당되며, 20주는 공동으로 사용 가능함

(독일&일본) 육아휴직 14개월 중 2개월 이상이 남성에게 의무 할당됨.

- 2013년도 조사에 의한 이미 법으로 보장된 가족돌봄 휴직제도를 알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이 40%를 넘지 못하고 있는 등 휴직제도의 사용이 저조함

약속

- 육아휴직 파파쿼터제 도입
 - 육아휴직기간 중 3개월은 아빠 의무할당제 실시
-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기간 확대
 -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상·하한선 현실에 맞게 인상
 - 파파쿼터제 기간만큼 육아휴직 기간 확대

- 가족돌봄 휴가제도 도입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 가족돌봄 휴가제 도입

③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수 해소 및 민간어린이집 서비스 강화

진단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은 16만명으로 전체 보육아동의 10.6%에 불과함(현원, '14.12월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부족으로 국공립 대기자 수는 26만 명에 달해 서울시의 경우 입소에 1년, 길게는 3년까지 소요되고 있음
 - *서울 국공립 대기자수 9만9천명 (14년 9월, 서울시 보도자료) / 서울 제외 16개 시도 국공립 대기자수 15만8천명 (15년 2월, 박원석의원실 제출자료)
- 국공립어린이집은 원아수에 상관없이 인건비와 운영비가 고정적으로 지원됨. 이에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에 따라 부모선호도가 매우 높으나, 수요에 비해 공급률이 매우 낮음
-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90%가 민간보육시설 이용 중.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10.3%에 불과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20명 이하의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24.4%,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중이 51.8%를 차지함
- 보육교사 처우도 심각한 문제임. 2012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월 평균임금은 155만원에 불과함.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임금은 월평균 188만원인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145만원, 가정어린이집은 138만원을 받고 있음
 - *2012년 유아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교사 임금은 214만원임
- 최근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보육교사의 자질과 인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양성과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열악한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양성과정을 개편한다 하더라도 질 좋은 보육환경을 기대하기 어려움

약속

- 공공 비중 확대
 - 국공립 대기자수 26만명 해소
 -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에 국공립 우선 설치
 - 민간매입, 리모델링 전환, 공원 활용, 공공기관 유휴공간,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 등
- 민간 공공성 확대
 - 교사 처우 개선 : 1단계로 교사임금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인상
(월 평균 155만원→188만원 '12년기준)
 - 우수교사 양성시스템 도입 : 교사 양성과정 개선 / 원장·교사 교육훈련 지원 강화
 - 국공립 전환 시 인센티브 부여 : 원장 자격 일정기간 동안 유지, 보육교사 고용승계 등
 - 지역 보육거점센터 운영 : 민간어린이집에 필요한 교재, 기자재 대여 등 지원 강화
- 지원방식 개선
 - 보육시설 운영 비용 현실화 : 표준보육비용 100% 지원
 - 바우처 지급이 아니라 시설 직접 지원으로 전환

평생복지 5대 분야

2

아동·청소년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해야 합니다

①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 및 어린이 건강담당의사 실현

진단

- 201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이나, 6~18세의 경우 건강보험보장률이 53.9%로 떨어져 건강보험 기능이 취약한 상황임

- 또한 아이가 아플 때 부모들은 동네의원을 찾아가 약만 처방받고 끝인 경우가 대부분임. 부모들에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약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발달하고 있는가,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고 건강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가임
- 한국의 보건의료는 공공성이 취약해 지역주민의 예방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욕구를 해소할 1차보건의료서비스는 취약한 반면, 수익성이 좋은 대형병원서비스만 과잉공급되어 있어서 의료의 질적 수준이 낮은 상황임. 이로 인해 성장발달단계에 있는 아이들조차도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의료시스템이 부재함. 아플 때만 병원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제대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상담해 주며 교육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이 필요함. 또한 고액진료비가 발생하는 입원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 보장하는 방안 필요함

약속

-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 도입
 - 병원비 부담이 큰 입원비 전액 국가 책임
- 0~12세 어린이 건강담당의사제 도입
 - 0~12세 등록 아동에게 해당 지역 소아과, 가정의학과, 소아정신과 등이 1년에 2회 주기적인 건강검진, 상담, 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
 - 아동이 아파서 치료가 필요할 경우 부모들이 자연스레 담당 의사를 찾게 되므로 관내 소아과, 가정의학과도 이익이 되고, 부모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맡고 있는 주치의가 있어서 일상적인 전화상담이 가능하고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음

②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없는 안전사회 실현

진단

- 학대로 인해 아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음.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의 아동학대 신고는 총 17,791건으로 전년 대비 36.0% 증가

-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여전히 부모에 의해서 발생함.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늘고 전문적 개입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이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례판단, 조치결정, 서비스제공, 사례종결까지 모두 담당할 뿐만 아니라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상황. 2014년 기준으로 상담원 수는 364명에 불과해 상담원 1인당 약 2.5만명(아동인구수 910만 기준)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셈. 아동인구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담원은 4,932명으로 상담원 1인당 약 1,860명을 담당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임. 과도한 업무는 아동학대 사례 개입의 질적 저하 및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음. 아동 보호전문기관도 2014년 51개소에 불과(2016년 55개소로 일부 확대)
-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여전히 부모에 의해서 발생함.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약속

- 아동학대 신고시스템 정비
 - 가정체벌과 학교체벌 금지의 엄정한 적용
 - 장기결석 · 미취학 아동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정기 점검 실시
 -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인 경우 부모 동의 없이 전학 가능
 -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업무 부여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및 인력 확충
- 학교폭력 없는 배움터 실현
 - 올바른 사이버활용 교육과 친구맺기 교육(학교폭력 빈번한 신학기초에) 집중 실시
 - 초 · 중학교 중심으로 어울림 프로그램 확대
 - 학교사회복지사 확대, 전문상담교사 확충
 - 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적용 학교의 확대

③ 생애 첫 노동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 보장

진단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2016)에 따르면, 현재 알바를 하고 있는 고교생 가운데, 부모한테 용돈을 받지 못해 교통비·통신비·급식비·간식비 등을 스스로 벌어서 쓰는 경우가 29.0%에 달함
- 2013년 기준 근로 청소년은 대략 22만 여명 정도로 15~18살 중고생의 3분의 1 이상이 알바를 경험함. 단순 경험이나 추가적인 소비를 위한 일시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닌, 일상 생활과 생계 유지를 위해 상시적으로 일을 해야만 하는 근로 청소년도 있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향 연구, 2014)에 따르면, 업무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은 25.0%에 그쳤으며, 임금채불,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임금 관련 부당한 처우를 경험한 비율은 31.9%로 나타남
- 반면,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받은 경험은 중학교 15.8%, 고등학교 16.8%(일반고 14.8%, 특목고·자율고 13.4%, 특성화고 27.3%)에 그쳤음. 또한, 2014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특성화고 등에 총 241개소의 안심알바신고센터가 설치되었음. 그러나 상당수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음

약속

- 현재 학교 위주에서 학교 밖 청소년 등으로 노동인권교육 확대
-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에 연간 10시간 이상의 노동인권교육 제도화
- 안심알바신고센터의 확대 및 운영 개선,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화
- 권리구제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지원체계 구축
- 사업주 대상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사전 예방, 포괄상담 등 청소년 역량 강화

3

청년

사회진출의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겠습니다

① 미취업 청년에게 디딤돌급여 지급으로 구직활동 보장

진단

-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식 실업자를 포함한 청년 취업애로계층(공식실업자, 잠재구직자, 구직단념자,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등)은 116만명에 달하나, 재작년에 고용보험에 가입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청년은 29만 3천명에 불과함. 또한,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청년성공패키지’ 사업은 신청자가 6만 7천명에 불과해, 둘을 합해도 80만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공식적인 실업안전망 밖에 있음
- 청년성공패키지는 연간 13만명을 대상으로 2~3개월 동안 최대 40여만원씩 지원함. 하지만 청년성공패키지는 청년들에게 충분한 일자리 탐색의 기회와 내실 있는 직업훈련의 제공으로 적절한 일자리를 연계하는 것보다, 일자리의 질에 상관없이 당장의 고용률을 올리는데 치중하고 있어 실제 청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함
- OECD 주요 국가들은 고용보험 이외에도 실업부조를 운영하여, 고용보험 밖의 실업자들에게 최소생계를 보장하는 한편 구직훈련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OECD 24개국 중 13 개국이 실업부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실업부조가 없더라도 상당수는 부조 성격의 제도를 실업보험 내에 포함하고 있음. OECD 국가 가운데 실업부조 제도가 전무한 국가는 한국 이외에는 미국, 멕시코 등 소수임

약속

- 15-34세 미취업자 중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청년디딤돌급여 지급
 -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월 50만원, 연간 최대 540만을 제공하는 청년급여는 청년세대의 위기에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단순 소득지원이 아닌 구직활동을 지원
 - 민간위탁 학원 중심의 정부 정책과 달리 공공 위주의 내실 있는 직업훈련과 연계

- 자발적 이직자와 아르바이트 재학생,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
- 1년 미만 퇴직자에게도 퇴직금 보장

② 국가표준등록금 도입으로 진짜 반값 등록금 실현

진단

- 2015년 기준 대학 등록금은 국립대 418만원, 사립대 734만원, 국립 전문대 272만원, 사립 전문대 597만원임. 박근혜 정부는 반값등록금을 공약하였으나,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장학금을 주는 방식임
 - 국가장학금 4조원과 교내외 장학금 3.1조원으로 등록금 총액 14조원의 절반을 부담
 - 정부는 공약 완성했다고 밝히나, 학생과 학부모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부담은 0.8%로, OECD 평균 1.2%보다 낮은 수준
 - 대학 이상 고등교육의 수혜자는 정부와 기업으로 이들이 대학 재정을 부담할 필요성
- 우리나라는 전체 대학생의 80% 이상이 사립대학에 다니고 있으며, 국공립대에 비해 고액의 등록금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따라서 대학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립대학의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여야함
 - 전국 154개 4년제 사립대학의 2014년 결산 결과, 사립대의 적립금은 8조 1872억원
 - 예산편성 시 예상 수입은 18조 2,145억원인데, 실제 결산결과 수입은 18조 9,262억원
 - 예산편성 시 이월금 규모는 1,646억원이나, 실제 결산결과 이월금은 7,532억원

약속

- 국가표준등록금 도입으로 모든 대학교의 등록금 반값 실현
 - 전년도 전국 가구당 가처분소득(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설정하며, 2014년 4/4분기 기준 전국 2인가구 이상의 월평균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350만원
 - 2015년 일반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 734만원에 비해 대학 등록금은 384만원 인하
- 법인세와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사립대학의 무분별한 적립금 및 과도한 이월금 조정

③ 반지하·옥탑방·고시원 탈출을 위한 주거지원

진단

- 전국 청년들의 14.7%는 주거빈곤 상태에 처해 있음. 서울지역 청년(만 19~34세) 5명 중 1명은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하나 옥탑, 고시원 등에 거주하고 있음. 서울지역 주거빈곤 청년은 2010년 기준 52만 3,869명으로 전체 청년 229만 4,494명 중 22.9%를 차지함. 청년 1인가구(34만가구)의 36.3%(12만3591가구)가 주거빈곤 상태임. 대학생주거권 네트워크(2013)에 따르면, 대학가 주변에 위치한 고시원, 하숙, 원룸 등의 소형 주택은 대형 주택보다 평당 임대료가 더 비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킴
- OECD 국가들은 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2%이나, 우리나라는 5%로 매우 낮은 수준임. 입주자 선정 역시 가구원 수가 많고 지역 내 거주기간이 길수록 유리함.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서울시 SH공사가 보유한 12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세대주 16만 1363만명 중 10대는 162명(0.1%), 20대는 2790명(1.7%), 30대도 1만 6,269명(10.1%)에 불과함

약속

- 반값 공공임대주택인 '정의스테이'를 건설하고, 청년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고시원, 원룸, 다세대주택 매입 후 리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 만 19세 이상 단독 세대주에게 월세 보증금에 대해 안심대출제도 도입, 주거급여 확대
- 지역별 공정임대료를 도입하고, 영세 임대업자, 청년 1인 가구, 영세 중계업자가 상생하는 사회적 임대시장을 만들며, 주거정보를 교육하는 주거지원센터 설치

④ 공기업·대기업 5% 청년고용할당제와 여성/고졸/지방 기회균형채용

진단

- 2015년 9월 현재 전체 실업률은 3.2%이나 청년(15~29세) 실업률은 8.5% 청년 실질 실업률(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잠재취업가능자+잠재구직자+실업자)은 작년 상반기 현재 22.4%

-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은 60대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 특히, 고졸 취업자의 상용직 비율은 42.8%, 월평균 임금은 145만원으로 대졸 이상(188만원)의 77.3%
- 청년들이 취업 시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은 월 200만원 이상의 임금, 근로 시간 준수, 정규직 여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1~7차년도 자료)
-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3%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 2016년말로 끝나고, △ 민간기업에 적용되지 않으며, △ 비정규직로 채용도 무방하고, △ 취업취약계층(고졸, 여성 등)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한계

약속

-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5%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
 - 2014년 공공부문 정원 300,599명 기준 5% 고용할당 시 약 1만5천개 일자리
 - 2014년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 459만명 기준 5% 고용할당 시 약 23만개 일자리
- 청년 고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고졸 이하, 전문대 졸업자, 지방대 졸업자 등에게 할당하고, 여성 취업자의 비율도 30% 이상으로 하는 기화균형채용제도를 도입

평생복지 5대 분야

4

중장년

서민들의 가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① 저소득층 부채탕감과 악성 부실채권 규제

진단

- 지난해 3/4분기말 현재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23.2조원(1.41%) 규모이며, 부문별로는 기업여신 부실이 20.9조원(90.1%), 가계여신 2.2조원, 신용카드채권 1천억원
 -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5.3조원으로 여신정상화(1.6조원) > 대손상각(1.5조원) > 담보처분

등을 통한 여신회수(1.3조원), 매각(0.8조원) > 기타 출자전환 등(0.1조원) 순

- 2011년~2015년 상반기 은행권이 매각한 부실채권은 총 34조 2,175억원이며, 공적자산관리 회사에 매각된 부실채권은 2조7,374억원(전체의 8%)에 불과한 상황
 - 민간자산관리회사(22.7조원), 대부업체(1조7,637억원), 저축은행(1조6,785억원)에 매각
 - 청년(20~35세)이 차주인 부실채권을 매각한 규모는 총 4,019억원인데, 민간자산관리 회사가 1,718억원이고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에도 각각 866억원/650억원을 매각
- 2010년~2015년 3월 바은행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총 4,121억 원을 대부 업체 등에 매각함. 매각가는 120억원으로 미상환원금 대비 2.9% 수준 (강기정 의원실)
- 은행에서 매각한 부실채권이 민간자산관리회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재매각되는 과정에서 채무자는 자신도 모르게 채권자가 대부업체 등으로 바뀌면서 부당한 추심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음.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신청을 한 채무자 중 약 54%는 채권자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로 총 채무금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 (국회입법조사처)

약속

- 채무자 중심의 대책으로 채무자의 회생 및 신용회복을 통한 경제활동 정상화
-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 악성 부실채권 규제 및 저소득층 악성채무에 대한 탕감

① 은행권의 부실채권 처리 감독 강화

- 개별 은행의 내부규정에 불과한 부실채권 매각기준, 매각절차 등의 사항을 법제화
- 파산·면책·사망자 채권, 소멸시효 완성 채권, 개인 채무자회생 및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개인신용회복 또는 확정이 결정된 채권 등은 매각 금지

② 소멸시효 완성채권 거래, 추심 금지

-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는 물론 이런 채권을 사고파는 것도 금지

③ 저소득층 부실채권 탕감

- 공적기금에서 상환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소각
- 은행에서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대신 대손상각 등의 방법으로 부담하는 방안 검토

- 채무자 우호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채무자 우호적인 채무조정단체 설립

① 파산절차에 중지명령제 도입(파산 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강제 집행, 담보권 실행, 채권 추심 등의 행위를 금지·중지할 수 있는 제도)

② 압류 불가능한 자산의 범위 및 수준 재정비

- ③ 1가구 1주택인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사정이나 과중한 채무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주택을 보전하면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 ④ 무담보채무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채무자의 조기 회생을 도모
- ⑤ 신용불량 등록기간의 축소 및 절차 간소화

● **지자체별 금융복지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저소득층의 신용회복 및 자립 지원**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5개월간 321명의 파산 면책을 도왔으며, 면책된 부채의 총 규모는 580억 원임. 면책 상담을 신청한 사람들의 83%가 무직이거나 기초생활 수급자로 평균 소득은 46만 원인 반면, 평균 부채 액수는 연체 이자까지 붙어 1억 원이 넘는 상태였음. 이들이 센터에 신청 한 후 파산 면책을 받을 때까지 3개월 가량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파산 면책을 하는 기간이 1년 가까이 소요된다는 점과 비교해 매우 신속한 절차임. 이들 중 상당수가 다시 빚의 덩어리에 빠지지 않도록 임대 주택 입주 혹은 생계비 보조, 일자리 지원 등의 복지 혜택을 받게 되었음

-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상 최고상한이자 일치 및 20%로 인하
- 부동산 담보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DTI 규제를 시행령 대신 법제화

② 4대 가계비(통신비·주거비·의료비·교육비) 절감

진단

- **교육비** 2014년 9월 발표한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 14년째 1위를 차지함. 2012년 기준 GDP 대비 공교육비 구성에서 초·중·고등학교의 정부부담은 3.2%(OECD 평균 3.5%), 고등교육의 정부부담은 0.8%(OECD 평균 1.2%)임
 -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은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기.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미 시행
 - 반값 등록금 역시 국가장학금을 전체 대학 재학생의 42.7%가 혜택을 받는 수준
- **주거비** 2014년 현재 700만 가구 이상이 전월세 세입자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98만 호)을 고려하더라도 600만 가구 이상이 민간임대주택에 살고 있음. 전월세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RIR)은 20.3%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부담은 29%에 달함
 - 전체 주택 대비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은 5.5%로 OECD 평균인 12%에 훨씬 미달
 -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임대주택 증가폭이 줄어들고, 민간 주도의 뉴스테이 건설에 치중
- **의료비**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0% 수준에 불과하여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이 매우 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이 65%에서 62%로 후퇴하면서, 가계의 연간 보건의료비 직접 지출은 2008년 157만원에서 2014년 205만원으로 증가함

- 통신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단말기 유통구조를 갖고 있음. 값비싼 휴대폰, 고가 요금제로 통신비는 OECD 3위이며, 가구당 가계 통신비는 월 14만 7천원에 달함.
 - 통신 3사의 수조원에 달하는 마케팅비와 삼성이 주도하는 고가폰 중심의 시장
 - 통신 3사는 월 11,000원의 기본요금을 부과하는데 전체 규모가 연간 7조원

약속

- ① 교육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진짜 반값 등록금 등 (교육공약 ②, ③ 참조)
- ② 주거비) 전월세 상한제, 주거급여 확대, 반값 공공임대 확충 등 (주거공약 ①, ②참조)
- ③ 의료비) 건강보험료 개편, 의료비 상한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 등 (의료공약 ① 참조)
- ④ 통신비) 휴대폰 통신비 기본요금 폐지로 4인 가구 기준 월 4만4천원, 연 53만원 절감

평생복지 5대 분야

5

노년

생애 마지막은 누구나 여유로워야 합니다

- ① 부양의무제 폐지, 공적연금하나로 OECD 수준 적정소득 보장

진단

-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빈곤률은 2013년 49.6%로 OECD 국가 중 1위이고, 33개국 평균 12.1%의 4배에 달함(OECD, 2014). 게다가 2007년 44.6%, 2011년 48.6%로 노인빈곤률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도 매우 큰 문제점임
- OECD 33개국 가운데 20개 국가의 노인빈곤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며, 국민연금제도가 확충되고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임을 감안하면 더욱 문제임 (주은선, 공적연금특위 공청회 발표문, 2015)

- 우리나라 노인이 빈곤한 가장 큰 이유는 공적연금이 여전히 미비하기 때문임. 우리나라는 공적이전소득이 노인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의 1/3에도 미치지 못함. 국민연금의 평균 실질소득대체율은 명목소득대체율의 하락으로 2015년 현재 24.2%에서 2050년에는 오히려 20.4%로 떨어지는 것으로 전망됨. 또한 현재 전업주부, 학생 등 1,012만명 이상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공적연금 대상자가 아니며, 공적연금 대상자 중에서도 납부예외자 457만명, 장기체납자 113만명 등 570만명이 사실상 배제되어 있는 상황임
- 빈곤층 지원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에게 부양의 책임을 떠넘기는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117만명(2010년 기준)이 절대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탈락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약속

- 부양의무제 폐지로 빈곤 해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부양의무제 폐지
- 공적연금 하나로 OECD 평균 수준 노후소득보장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우선 50%로 인상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두루누리2 도입(사회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 기초연금 확대 :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한 지급방식 폐지. 기초연금 대상·급여 확대

② 공공장기요양서비스, 공공실버주택, 노후문화 지원 확대

진단

- 우리나라 평균기대 수명은 82.4세(2014년, 통계청)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 지속 및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이 약 37.5%에 이름
- 전 세계적으로 노인을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고령친화도시, 노인친화 지역사회 체계 구축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노인보호 형태도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와 함께 노인가구주가구, 노인부부가구, 독거노인가구 등 가구

특성별로 주택 선호 유형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 반면, 현재의 주거정책은 노인부양가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가구의 욕구에는 부합되지 못하는 상황임(보건사회연구원 2014)

- 2014년 노인장기요양통계연보에 따르면, 장기요양시설 1만 6,543개 가운데 국공립은 228개 (1.4%), 법인은 3,667개(22.2%)에 불과. 나머지는 개인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또한 종사자들의 처우도 열악한데, 방문요양의 경우 인건비가 시급 7,125원에 불과함

약속

- 공공장기요양서비스 확대
 - 공공장기요양시설 확대 및 장기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 공공실버주택 도입
 - 임대아파트 공급 시 한 동을 실버주택으로 설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두어 서민층 노인도 종합적인 건강·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물리적 환경도 구축
- 노후문화 지원
 -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회참여사업 개발 및 지원

6

공공 · 무상의료

더 이상의 메르스 참사는 없어야 합니다

① 건강보험하나로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진단

-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60% 수준에 불과하여 가계의 직접 병원비부담이 매우 큼.
 - ※ 가계의 보건의료비 직접 지출 연간 157만원(2008)→205만원(2014)으로 증가
 - ※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건강보험의 보장률 후퇴(65%→62%)한 결과 가계의 직접 의료비 부담 증가
- 병원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의 위협이 커 민간의료보험으로 가입이 급격히 늘고 있어 가계의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 전체 국민의 74.3%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2012년), 1인당 평균 월 83,854원 지출
 - ※ 가구당 평균 4.64개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가구당 민간의료보험료 지출도 월 25만원(2008) → 34만원(2012)으로 급증
-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무려 16.6조원(2015.8)인데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 흑자 재원만을 활용하더라도 1년 반 이상 완전한 의료보장이 가능

약속

-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실시
 - 건강보험 보장률 80% 이상 확대
 - 병원비 부담이 큰 입원 보장률은 90% 보장

② 전국민 건강담당의사 도입, OECD 수준으로 보건의료 인력 확충

진단

- 2015년 메르스로 인해 최종 186명의 메르스 환자 발생, 38명 사망
- 메르스의 확산은 방역당국의 무능력뿐만 아니라, 한국 보건의료체계가 가진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 현상임. 메르스 전파 매개는 작동되지 않은 방역체계와 밀집된 병실과 응급실 등 혼잡한 병원환경임. 또한 공공의료체계 및 병원인력 부족, 3차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 등도 메르스 확산을 불러온 원인 중 하나임
-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개선 없이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취약함

약속

- 전국민 건강담당의사 도입으로 국민건강 증진
- OECD 수준으로 간병, 간호 등 보건의료 인력 확충

③ 의료민영화 반대, 국민건강 보장

진단

- 박근혜 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영리병원 허용, 해외의료진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을 경제살리기 정책으로 포장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를 영리화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만을 더욱 가중시키는 정책임. 영리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미국식 영리 의료제도를 지향하여 결국 국민의 의료비 지출을 천문학적 수준으로 늘릴 것임
※ 2014년 국민의료비 지출 7.6%(한국) vs 17.5%(미국)
- 또한 정부는 노후 실손의료보험 허용, 민간의료보험의 표준약관제도 폐지, 보험료 인상 제한 규제 폐지 등으로 국민의 민간의료보험 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 중

약속

- 의료영리화 추진 법안 중단
 - 서비스산업발전법, 해외의료진출,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영리화 추진법안 중단
-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공적 규제 강화
- 혁신형 공공병원 확충, 기존 지방의료원은 국립병원으로 전환

7

공공안심주거

집 없는 서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① 주거급여 확대, 반값임대 공정주택

진단

- 2014년 현재 주택보유율은 58%로 756만 가구가 전월세 세입자이며,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98만호)을 감안하더라도 600만 가구 이상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RIR)은 2014년 현재 20.3%이며, 저소득층은 29%임
- 현재 저소득층 주거정책은 장기공공임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지급 위주로 진행하고 있음
 - 주거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법 개정, 주거급여법 제정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국토부로 이관되었음. 지원대상은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82만원 이하(중위소득의 43%) 가구가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고려하면 적용대상이 많지 않음. 2015년 7월 이후 85만 가구에 0.8조원 지급됐고, 2016년은 예산 1.2조원, 가구수 81만 가구로 전년보다 축소되었음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재고량이 전체 가구의 5%에 불과하지만 호당 1.5억원의 건설비용이 소요되면서 공급확충에 어려움이 있음. 게다가 정부와 지자체 등이 LH, SH 등 공기업 부채를 이유로 공공주택을 뉴스테이, 공공임대리츠 등의 수익사업으로 전환시키면서 공공주택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

약속

- 지원대상 소득 하위 20% 이하로 확대, 지급액 평균 11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20% 무주택자로 확대 (장기적으로 소득 하위 40% 무주택자)
 - 급여액을 월평균 11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별/가구원별 지원액 상향조정
 -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 중위소득의 43%이하 ⇒ 60% 이하로 상향 △ 부양의무자제도

폐지, △ 생계급여 기준과 연계 등 독소조항을 개선하여 실제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

※ 정당별 주거비 지원방안 비교

구분	새누리당 (현행)	더불어 민주당1)	정의당	
			단기	중장기
지급대상	중위소득의 43% 이하	소득 하위 15% 이하	소득하위 20% 이하	소득하위 40% 이하
지급기준	생계급여 기준임대료	무주택자	무주택자2)	무주택자
평균지급액	월11만원	월11.5만원	월20만원	월20만원

주1) 19대 총선공약 2) 저소득층(소득 하위 40% 이하)의 자가점유율은 47.5%(국토부, 주거실태조사, 2015)

※ 소요 자원 추정

구 분		수혜 가구	주거급여		추가소요
			월평균	연간	
현행(2016)		81만	11만원	1.2조원	-
정의당 제안	단기	167만	20만원	4.0조원	2.8조원
	중장기	334만	20만원	8.0조원	6.8조원

● ‘반값임대 공정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등 연간 15만호 공공임대 공급

- 주택시장 안정 및 무주택자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20% 확충이 필요함. 2016년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은 공공 11.5만호, 뉴스테이는 2.5만호로 총14만호로 향후 연간 15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 ①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급, 용적률 완화, 공공주택 사업 국민연기금 참여 확대 등 지원, ②공공택지 공급대상을 비영리단체, 사회적 협동 조합 등으로 확대, ③주거복지 기능을 전담하는 주택청 신설, ④공기업의 주택사업자 역할을 박탈하고 택지개발, 토지비축 등 토지금고의 역할 강화, 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 시 지자체에게 당사자보다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선매권제 도입 검토

※ 반값 임대 공정주택(서울 기준)

공급 면적	분양가격 (환매조건부)	토지임대 건물분양 (50년 임대)	토지건물 임대 (50년 임대)	전세 (50년 임대)	분납임대 (50년 임대)
10평	7,000만원	4,500만원 (월6만원)	월18만원	5,250만원	2,100만원 (월12만원)
18평	12,600만원	8,100만원 (월11만원)	월32만원	9,450만원	3,780만원 (월22만원)
25평	17,500만원	11,250만원 (월16만원)	월44만원	13,130만원	5,250만원 (월31만원)

주 1) 토지비는 서울 수서공영주차장 부지, 혁신파크 부지의 평균치(평당1,200만원)에 용적률 (500%)을 적용한 값으로 평당250만원임.

2) 건축비는 실제도급가액과 공정임금 지급을 전제로 하며 평당450만원임.

3) 금리는 3% 기준(기준금리 1.5%).

4) 전세가는 월세 기준 전환률 4% 임.

5) 분납임대는 입주 시 주택가격의 30%, 입주 후 4년,8년차에 40%를 납부하고, 10년 차에 30%만 분양전환 시 감정가격 기준으로 납부함.

② 전월세 상한제 도입 ·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 공정임대로 도입

진단

-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전세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근본대책은 없고, 전세자금 대출 확대 등의 금융비용 지원에 집중하고 있음

약속

-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5%로 규정하고 있는 임대료 상승률을 3.3%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 세입자가 요구하면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지방정부가 개별주택에 대한 공정임대료를 산정 고시
- 세입자들의 전세금 반환 안정성을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정 소득 수준 이하에 대해서는 국가 보조를 통해 의무가입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완화, 취급 은행 확대 등 세입자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③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로 아파트값 거품 제거

진단

-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수도권, 지방대도시의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고분양가가 책정되며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음
- 근거 없이 부풀려진 기본형 건축비로 인해 공공아파트조차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함.
2015년 기본형 건축비는 평당 558만원으로 서울시가 공개한 장지, 발산, 상암 아파트 건축비의 2배 수준임
-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연이은 사법부의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이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특히 기본형 건축비는 수십만 채 아파트 건축비용을 결정하는 주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모양과 품질을 알 수 있는 설계도면과 시방서도 공개되지 않고 있음

약속

-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전면 확대
 -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아파트까지 확대 시행
 -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및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적정 분양가를 유도
- 유형별 표준주택 · 표준건축비 마련
 - 유형별 표준주택을 마련, 소비자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표준주택에 따른 표준건축비를 제시
- 설계내역, 원하도급내역, 원하도급대비표 등 분양원가 상세 공개(공공아파트)
 - 사업주(공기업)가 예정가격 산출을 위해 작성한 설계내역, 건설사와 계약한 원도급내역, 건설사(원도급사)가 하도급사와 계약한 하도급내역, 도급내역과 하도급내역을 비교할 수 있는 원하도급 대비표 등을 인터넷에 상시 공개
 -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분양원가를 알기 쉽게 가공, 분석한 자료를 공개

8

국가책임교육

학생들이 행복한 창의·협동교육이 필요합니다

①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100% 국가책임제

진단

- 누리과정은 우리 자녀들의 생애 초기 기회균등을 위한 조치임.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약속해 놓고 국고지원을 하지 않은 채, 시도교육청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2002~2004년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할 당시 국고지원한 점과 대비됨
- 박근혜 대통령의 무책임으로 보육대란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음. 교육청은 누리과정 때문에 지방교육채가 급증하는 등 재정여건이 더 어려워짐. 교육청 소관이 아닌 어린이집에 재정을 투입하느라 초·중·고 학교에 필요한 지원을 제 때에 하지 못하는 교육대란의 위기가 이어짐. 대구교육청은 누리예산 마련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를 매각한 바 있음

약속

- 20대 국회 최우선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해 보육대란과 교육대란 예방
- 지방교육재정교부율 1% 상향 + 특별교부금 1% 하향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2.1조 확보
- 당장 올해는 중앙정부 추경재원 및 일반예비비에서 2.1조원 긴급 투입
- 유보통합이 교육부로 일원화되면 관련 재원 및 조직을 이관하고 교육부에 2차관제 도입

② 무상급식 확대, 고교 무상교육 도입, 진짜 반값 등록금

진단

- 무상급식) 무상급식은 눈칫밥 설움을 없애고 자라나는 자녀의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조치임.
현재 초등학교는 대부분 무상급식은 하고 있으나, 중학교는 부산·인천·대전 등에서 부진한데, 이는 초·중학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도록 한 헌법정신에 위배됨
 - 경남은 무상급식의 시초이나, 홍준표 도지사로 인해 무상급식 중단 사태 발생
 - 무상급식 관련 국고지원이 없고, 지자체와 교육청 부담. 박근혜 정부는 개선방안 전무
- 고교 무상교육)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무상이나, 고등학교는 학부모가 납입금을 부담하고 있음. 무상교육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한 기본 조치임
 - 고교 무상교육은 대선공약이었으나, 현재까지 국고지원은 전무해 사실상 공약 파기
 -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
- 반값 등록금) 대학 등록금은 2015년 기준으로 국립대 418만원, 사립대 734만원, 국립전문대 272만원, 사립 전문대 597만원임. 박근혜 정부는 반값등록금을 공약하였으나,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장학금을 주는 방식임
 - 국가장학금 4조원과 교내외 장학금 3.1조원으로 등록금 총액 14조원의 절반을 부담. 정부는 공약을 완성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학생과 학부모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부담은 0.8%로, OECD 평균 1.2%보다 낮은 수준
 - 대학 이상 고등교육의 수혜자는 정부와 기업으로 이들이 대학 재정을 부담할 필요성

약속

- 무상급식비 50% 국고지원(연 2조원), 지자체가 정치적 결정으로 지원 중단해도 국고지원분만큼 무상급식 실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정부·지자체·교육청 협력
- 고교 무상교육은 4년간 단계적으로 확대. 농산어촌, 도시 1학년, 도시 1~2학년, 도시 전 학년 순으로 확대 (다만, 사립 특목고와 자사고는 제외)
 - 최종 4년째 기준으로 국고 지원 2.3조원, 도시의 고등학생 자녀 1인당 년 170만원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경감
- 국가 표준등록금으로 진짜 반값 대학등록금 실현 (청년정책 ② 참조)

③ 초중학교 혁신학교 2배, 일반 고교 강화, 대학균형발전

진단

- 초중학교) 2015년 3월 현재 혁신학교는 전국 810개 교로 초등학교 461교, 중학교 256교, 고등학교 86교, 유치원 3교, 특수학교 4교임. 2009년부터 시작한 혁신학교는 암기식 수업에서 토론·활동형 수업으로, 줄세우기 시험에서 성장 중심 평가로 혁신하여 자녀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창의력, 문제해결력을 증진하고 학생과 선생님·학부모의 만족도 높음
 - 혁신학교는 한반 25명의 교실에서 선생님의 보다 적극적인 학생지도
 - 혁신학교는 인근 학교로 노하우 전파하여 모든 학교와 동반성장하는 정책
 - 지역 차원의 혁신교육자구는 서울 10곳과 경기 20곳이며, 기초지자체와 교육청의 새로운 협업 모델임. 학급당 학생 수 개선, 창의인성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 고등학교) 외고·국제고·자사고로 대표되는 고교서열화로 인해, 대다수 일반고 학생들이 차별받고 있음. 교육의 기회균등을 저해하고, 사회 역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2015년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 수는 31.3명이나 특목고는 24.4명.
 - 일반고는 1천 537교, 특목고는 148교(외고 31교, 국제고 7교), 자사고 49교
- 대학교)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소득수준 등 가정배경과 대학서열이 연결되어 패자부활전 없는 불평등한 신분사회의 성격을 띠고 있음
 - ‘고른 기회’ 대입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모집인원의 11%로 제한

고른 기회 대입전형 : (정원내) 국가보훈대상자, 만학도 및 주부, 농어촌학생, 지역고교, 저소득층,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 등 대상자, 서해5도 학생, (정원외) 농어촌학생, 저소득층,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 등 대상자, 서해5도 학생

 - 박근혜 정부는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하면서 기초학문이나 지방대를 축소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과 우려

약속

- 초등혁신학교 2배로 확대, 단계적으로 모든 초중학교를 혁신학교로 전환

- 일반고 1학년부터 한반 25명으로 특목고 수준 개선, 모든 일반고에 교수학습활동 지원비
년 1억원 추가 지원, 일반고 진로교육 강화 및 교육과정 다양화,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설립목적 준수
- 고른 기회 대입전형을 모집인원의 11%에서 20%로 두 배 확대
- 대학 균형발전, 대학 연합의 통합전형 및 공동 교육과정
- 기초학문과 지방대 육성하면서 합리적인 대학 개편

9

장애인 권리보장

기본권과 자립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①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으로 자립생활 강화

진단

- 현재 장애유형은 15개이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6등급(보건복지부 등록 기준)으로 나뉘져 있음. 중증장애인은 1~2급 장애인,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호흡기·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3급까지 포함(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장애인등급제는 행정편의적 정책의 대표적 예로 장애인을 천편일률적으로 등급화하여 개인의 욕구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맞춤형 복지 시대로 나아가는 현 시대 상에도 맞지 않고, 인권 침해적 요소도 상당함
-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장애인 욕구에 맞는 개별지원체계를 구축한 대안 마련 병행

약속

- 현재 1~6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장애인등급제 폐지
-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전면 개정

②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탈시설·지역거주 종합정책 수립

진단

- 지난 시기 한국 장애인정책의 중심은 수용시설 중심의 반인권적 정책이었음.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정한 ‘장애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와 통합’을 이루려면, 시설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탈시설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또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역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이를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기 결정권과 주체성을 가지고 직업생활, 사회생활을 비롯한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약속

- 탈시설을 위한 초기 지원 체계 마련
 - 탈시설 정착금 제도화 및 인상,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지원체계 마련
- 주거 및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 공공임대주택 및 장애인주택개조사업 확대
 -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도입 등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 교육, 이동, 건강, 정보접근권 보장
 -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체계 강화
 - 저상버스 100% 도입 등 장애인이동권 강화
 -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장애인 정보접근권 및 문화향유권 보장

③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의무고용제 개편, 새로운 고용모델 발굴

진단

- 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임금소득의 부재는 장애인을 빈곤의 나락에 떨어뜨리는 가장 큰 문제임. 따라서 고용을 보장해 주고, 고용되었을 시 적정임금까지 보장해 주는 정책은 매우 중요함
- 현재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무고용제의 실효성 문제임. 특히, 공공부문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상황이기에 이를 선도하기 위한 보다 강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함
- 이와 함께 노동조건 개선의 문제가 매우 중요함. 현재 장애인은 최저임금법 적용제외대상임. 장애인 노동자를 최저임금 특례대상으로 두는 국가들이 있긴 하나 원천적으로 적용제외

시키는 경우는 한국과 일본이 전부임. 최저임금제가 서구에서 주로 여성 및 아동 등 취약 노동자 계층을 지나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출발했음을 상기해 본다면, 생산성을 근거로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으로 삼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다고 할 수 있음

- 새로운 장애인 고용모델 발굴 역시 필요. 스웨덴 삼할그룹과 같은 장애인공기업을 중앙에서, 혹은 지방정부에서 새로운 고용모델로 접근하고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약속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 현재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으로 남아 있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폐지
- 장애인 의무고용제 개편
 -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
- 새로운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발굴
 - 장애 친화 공기업 설립

10

선진복지기반

사회안전망·사회서비스가 좋아야 선진국입니다

① 전국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진단

- 사회보험은 전국민의 1차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 줌. 그러나 2015년 통계청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의 경우 국민연금 82.0%, 건강보험 84.8%, 고용보험 82.4%의 가입률을 보이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36.9%, 건강보험 43.8%, 고용보험은 42.5%로 나타나 정규직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함
-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경우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저소득 직장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임. 특히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기준소득월액의 9%)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및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체납 및 납부기피 요인으로 작용함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 자동차, 성·연령 등에 건강보험료 부과로 실제 소득보다 과중한 건강보험료 부담. 반면, 일부 고소득층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부담하지 않고 무임승차 사례 발생

※ 소득이 없는 노부부 3억 집한 채 딸랑 있다고 건강보험료 12만원 부과 / 소득이 전혀 없었던 송파세모녀 건강보험료 5만원 vs 연간 7,000만원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0'원

약속

-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② 복지담당 공무원 확대로 찾아가는 국민복지 실현

진단

- 복지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가 한국 3,919명임. 반면, 영국 284명, 호주 806명임(2005년 기준). 이는 복지공무원의 과도한 업무 증가, 복지서비스 질 저하로 연결됨
- '13년 현재 17개 중앙부처에서 총 292개 복지사업을 수행 중이며, 지자체에서도 약 4만개의 사업을 시행 중. 중앙부처 292개 복지사업 중 지자체를 통해 170개 사업(58%)이 전달되는 상황(관계부처합동.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 2014.8)
- 증가하는 복지업무는 대부분 지자체를 통해 주민에게 제공되고 있음. 상황이 이러다 보니, 갈때기 현상이라고 하여 모든 복지 관련 업무들이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담당공무원에게 몰리는 상황임
- 복지공무원 확충으로 찾아가는 복지시대 실현

약속

- 선진국 수준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공무원 대폭 확대
- 기준인건비제 개선, 신규선발 충원 / 행정직 사회복지업무 유도 위해 승진 시 우대, 가점 부여 등 인사 조직제도 개선 / 사회복지직 상위직급 확대

③ 질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로 생애주기별 복지강국 진입

진단

- 저출산 및 고령화 가속, 여성 경제활동 증가, 가족 역할 및 구조 변화, 국민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사회서비스산업은 고용 없는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있음
- 반면,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대부분 민간에 의해 공급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 종사자 처우의 열악함, 시설 운영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사회서비스 단가 및 인건비 >

구 분	활동지원	노인돌보미	가사간병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
사업내용	중증장애인 자립(일상+사회)생활 지원	노인의 일상(가사활동, 주간보호) 지원	저소득층 생활안정(간병+가사 지원)도모	출산가정 산후관리 지원	일상(신체+가사활동)생활 지원
시간당 단가	8,810원	9,800원	9,500원	최대 800,000원 (12일)	43,500원 (4시간)
인건비 (사급)	6,610원	7,425원	7,125원	6,818원	7,440원

*자료: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 2015.

- 사회서비스의 민간 의존은 수익이 좋은 대도시로의 밀집을 불러오는 반면, 수익이 낮은 농어촌 지역은 시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불러옴. 임정기(2010)에 따르면, 수익성 및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평균시설수 6.9개로 대도시 12.3개소의 절반 수준임
- 2013년 현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05년 이후 증가한 취업자의 약 42%(81만명)가 사회 서비스산업에서 창출되었으나 여전히 전산업 대비 고용 비중은 5.4%(2011년)로 OECD 평균(10.2%)의 절반에 불과

약속

- 질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
 - 민간부문에서 종사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 전환 및 창출로 좋은 일자리 제공과 함께 이용자에게 좋은 서비스 제공

11

연 50조원의 복지 책임증세!

● 정의당 복지증세[안]

주요 세목	주요 내용	연간 추가 세수
사회복지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에 10~20% 부과세	20조원
법인세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원상회복	8조원
	이자 배당 소득 등 사내유보금 할증과세	3조원
소득세	5-15-25-35-45% 세율체계로 개편	3.4조원
	주식양도소득 누진세율 적용 등	2조원
	3주택 전세소득 과세, 월세소득 종합과세 실시	3조원
재산세	과세표준 누진세율 상향,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 등	8.5조원
종부세	현 시가표준액 대비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 2배로 강화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최대 5억으로 제한해, 실효세율을 강화	1.6조원
	증여세재계산제 적용, 세대생략 할증과세 50%로 강화	추계 미정
합 계		49.5조원

① 소득·법인·상속증여·증부세에 부과하는 사회복지세 신설(연 20조원)

진단

- 모든 정치세력들이 복지 확대를 주장하나, 그에 걸맞는 책임 있는 복지재정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특히 박근혜 정부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영유아 보육 완전 국가책임제, 고교무상교육 실시 등 대표적인 복지공약을 잇따라 파기해 왔음
-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민부담률이 매우 낮는데, 2013년 기준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GDP 24.3%에 불과해 OECD 평균 34.1%에 비해 무려 9.8%나 부족, 2015년 GDP 약 1,546조를 적용하면 OECD 기준 약 151조원이 부족분인데, 이는 2015년 중앙정부 복지지출(보건·복지·고용) 120조원 보다 더 많은 자원임
- 정의당이 도입하려는 사회복지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추가로 부가되는 세금으로(surtax), 여기서 조성되는 세입은 모두 복지에 사용되는 목적세임
 - 이미 우리나라는 1970년대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세, 80년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세, 1990년대 WTO 가입에 따른 농어촌 지원을 위한 농어촌특별세 등의 목적세를 도입한 바 있음

약속

- 안정적인 사회복지 재정을 위해, 사회복지세 및 사회복지교부금 신설
 - 사회복지세법 제정(2013. 6. 27 법안 발의),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액의 10~20% 해당하는 사회복지세 신설 시 연간 20조원의 공공복지재원 마련

② MB 감세 법인세율 회복, 과다 사내유보금 과세(연간 11조원)

진단

- 현재 법인세의 주요 문제점은 ① 지난 MB정부 출범 후부터 거의 매년 30조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법인세 최고세율 3% 인하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가 가장 큰 원인
 ②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고, 전체 국민소득에서 기업소득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 ③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담배세, 연말정산 등 개인에 대한 세금부담은 늘어난 반면 기업에 대한 세금은 제자리걸음

- 사내유보금은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투기형 자산 증가에 따른 이자 및 배당수익이 증가. 2009년 MB 감세 이후 사내유보금은 더욱 증가하여 2015년 3월 말 기준 30대 재벌기업 산하 268개 기업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710조 3,002억원 수준

약속

- 법인세 최고세율을 MB감세 이전 25%로 회복. 연간 8조원 수준의 신규재원 마련
- 사내유보금 중 업무무관 자산의 운용수익(이자, 배당, 임대료 수익 등)에 대한 10% 할증 과세 도입. 10% 할증과세 도입 시 매년 3조원의 추가 세입 기대

③ 소득세 누진세율 강화, 금융소득 임대소득 종합과세 강화(연간 8.4조원)

진단

- 현행 세율은 MB부자감세를 둘러싼 여야간의 대립과 그 과정에서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 이었고, 소득세 최고세율 38%는 그 아래 세율인 35%와 3%p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최고세율로서의 의미가 별로 없고, OECD 국가 중 동구권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가 소득세 최고세율이 40~50% 수준임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임
- 2015년 초 정몽구 부자 현대글로비스 주식 팔아 1조 1,500억원이 넘는 소득을 얻었음에도 세금은 20%만 부담, 주식양도소득은 누진세율이 아닌 20% 단일세율을 적용하기 때문.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 종합소득자는 전체의 0.3%인 13만명에 불과
- 전월세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임대소득 과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부동산부자들의 임대료 착취가 심화됨. 소득세법상 전세보증금에 대해선 3주택자 이상에 한해 간주임대료를 계산,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85㎡, 3억원 이하는 2016년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월세소득도 주택보유와 상관없이 연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2016년까지는 비과세임. 무엇보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대상이 아니라서 매우 저조 (등록 민간임대주택 68만가구, 전체의 8%)한 실정

약속

- 현행 소득세율 [6-15-24-35-38%]체계에서 [5-15-25-35-45%] 체계로 개선으로 연간 3.4조원 정도의 세수증대
- 주식양도소득도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누진세율 적용하고, 상장주식양도소득 부과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인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로 연간 2조원의 신규 재원 확보됨
- 현행 3주택자 이상에게 적용되는 전세소득 과세를 2주택자 이상으로 확대하고, 월세 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폐지해 종합과세를 실시 등 3조원 추가 세수 확보

④ 부동산 보유세 2배 강화와 상속·증여세 대폭 강화(연간 10.1조원)

진단

- 우리나라 국민순자산은 1.1경(2013년말 기준)이며, 이 중 가계순자산은 6,365조원(가구당 3.3억원)이고, 77%가 부동산 자산(통계청, 2015.5). 2013년 공시가격(공시지가) 기준 상위 1%가 전체 부동산의 16%, 상위 10%는 46%를 차지하여 자산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 반면, 2013년 부동산 보유세는 약 10조원으로, 과세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 대비 실효 세율은 시가표준액 대비 0.233%에 불과함. 또한 2013년도 공시가격(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비율(한국감정원 공시가격 및 국토교통부)은 아파트(공동주택)는 71.5%, 단독주택은 59.2%, 개별토지는 61.2%로 부동산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비율은 65%임
- 2013년 전체 피상속인 수 28만 2,232명 중 실제 상속세를 납부한 피상속인은 6,275명, 2.2%에 불과. 과도한 상속공제로 인해 고액상속 중에서도 다수가 상속세 전무. 상속재산 50~100억 중 9명, 30~50억 중 13명, 20~30억 중 28명, 10~20억 699명이 상속세를 한 톨도 안낸 상황.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나, 상속재산 10~100억대의 실효세율은

12%, 상속재산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효세율은 35%에 불과

한편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은 2012년 미취학 아동 7명에게 각각 25억 상당의 주식을 증여했으나 신약개발로 주식 시세가 1,000억원까지 급등. 한편 최근 5년간 18세 미만 미성년자 3,717명에게 증여된 부동산만 1조 4254억 원에 달하고, 2014년 기준으로 10세 이하 임대사업자는 817명이고, 10세~20세 임대사업자는 2,288명임

약속

- 현 시가표준액 4,342.1조원 대비 부동산 보유세 10.1조원의 실효세율 0.233%를 대폭 인상함.(부동산 보유세 관련 증가분 8.5조원)
 -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으로 현실화(공정시장가격비율 적용 축소 등)하고 2008년 이전 종부세 수준의 누진세율을 강화함(약 4조원 추가 세수 확보)
 - 표준지와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결정제도를 개선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현행 평균 65%에서 80%로 상향시킴.(부동산 관련세 증가분 약 4.5조원)
- 현행 복잡한 상속공제를 배우자 유무에 따라 3억 내지 5억으로 단순화. 만약 상속인 중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함. 이 경우 상속증여세 1.6조원 추가 세수 확보됨
- 증여세 재계산제도를 강화하며, 세대생략 상속·증여에 대해 할증과세 강화(세수 미정)
 - 증여 후 일정 시점 이후 가격이 폭등한 경우 증여세 재계산제 적용을 강화해 주식, 부동산 등 고액 편법 증여 과세 강화
 - 미성년자 등 세대를 건너뛴 상속 및 증여 시 할증과세를 현행 30%에서 일괄 50%로 강화함

3

정의로운 전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시대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경제적 평등에 더해
더 인권적이고, 더 생태적이고,
더 평화로운 사회가 될 때
더 많은 국민들이 행복해집니다.

여성이 마음껏 일하고 안전한 사회
장애인 복지, OECD 꼴찌에서 평균으로
인권 존중, 정의로운 대한민국
한국탈핵 2040, 생명 존중 사회
평화와 상생의 한반도, 안보 민주화
정치개혁,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의로운 문화예술과 언론개혁

1

여성이 마음껏 일하고 안전한 사회

① 여성이 마음껏 일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진단

-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57%로 OECD 32개국 중 30위 (2015년)
 - 20대 후반까지는 70% 내외의 비교적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이다가 30대 초반에 51.8%로 급속하게 하락한 후 첫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절반 정도가 취업 중단
 - 2014년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은 4.5%로 여전히 여성이 주로 육아 부담
- 남녀 간 임금격차는 36.7%(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3만원)로 OECD 최악
 - 2013년 기준 OECD가 조사한 11개국의 남녀 간 임금격차는 평균 15.5%
 - 여성 비정규직은 30대 초반 33만명 → 40대 초반 51만명 → 50대 초반 59만명으로 증가
- 여성노동자가 많은 서비스업은 감정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스트레스와 피해도 심각

약속

- 사회서비스 종사자 임금 인상과 질 좋은 일자리 보장
 - 사회서비스 노동자 임금을 준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교통비, 수당 등 처우 개선
 - 감정노동에 대한 사업장내 예방조치 및 인격적 노동문화 형성, 노동자 보호 의무화
- 임신부터 육아까지 일·가정 양립 정착으로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소
 - 임신부터 보육까지 국가책임제 : 임신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제 도입, 핀란드형 마더 박스 선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대기자 27만명 해소) 및 민간어린이집 수준 향상
 - 임신·육아·돌봄 3대 휴가제 확대 : 출산전후 휴가 90일 → 120일로 확대, 아빠 육아 휴직제 3개월 의무사용제 도입 및 육아휴직급여 인상, 가족돌봄 휴가제도 신설
-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남녀 차별 없는 고용
 - 성별 고용·임금실태 공시제 도입과 페널티 강화 등 적극적인 고용개선조치 강화
 - 공공부문부터 직무평가·직무분석을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기준 마련

②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진단

- 성폭력 범죄 발생은 2009년 17,242건에서 2014년 29,517건으로 증가
 -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결과, 응답자의 40.5%가 피해 경험. 여성 72.6% > 남성 27.5%
- 지난 2011~2013년 데이트폭력 범죄자는 총 20,449명으로 연평균 6,800명, 일평균 18명
 - 2013년 4월부터 경범죄처벌법으로 스토킹 처벌이 가능하나 10만원 이하 벌금이 고작
 - 국민 10명 중 7명이 온라인에서 스토킹을 당하는 등 온라인 폭력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
- 여성 건강을 해치는 과도한 미용·성형산업 확대와 각종 광고 증가

약속

- 형법상 성폭력 개념·범위 확대 등 성폭력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 가정폭력에 대한 초기 응급대응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자립지원
 -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등 예방 강화 및 피해자 유급 휴가·휴직 도입
- 신종 3대 폭력(데이트폭력, 스토킹, 온라인 폭력) 대응체계 강화
 - 한국형 클레어법 도입(데이트폭력전과 정보공개) 및 데이트폭력 대응 강화
 - 스토킹범죄처벌특별법 제정으로 스토킹 행위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규정
 -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개념 확장, 여성가족부에 온라인 인권교육본부 설립
- 여성의 몸과 성을 상품화하고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관행 개선
 -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과도한 미용·성형산업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 여성인권 침해성 광고·방송 규제, 마른체형 선호 광고 및 성형수술 간접광고·홍보 제한
 - 외모를 중시하는 기업 채용 관행 개선, 고용 시 용모차별 규제(입사지원서에서 삭제)

③ 다양한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진단

- 한부모 가구의 44%가 하루 10~12시간 일하면서도 빈곤률은 37.8%에 달해, 전체 가구 빈곤률 16.5%와 비교해 2배 이상을 웃도는 수준 (통계청 가계금융 복지조사, 2012)
- 2015년도 상반기 외국인 주민은 총 174만 1,919명며, 이들 중 3분의 1에 달하는 이주 여성들은 체류가 불안정한 상태. 현재 결혼이주여성 100명 중 8명 불법 체류 신세
- 여성장애인 중 1/3이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이며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67.3%
 - 성인장애인 결혼률은 52.8%이며 이중 유자녀 비율은 90.1%이나 관련 정보와 지원 부족
- 여성농민은 농가인구의 51.6%, 농업주종사자 인구의 53.3%를 차지하나, 10.6%만 본인 명의 농지를 소유. 11.1%만 농산물 판매로 발생한 수입을 본인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
- 2015년 8월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70%가 여성이며 정착 노력에도 일부는 부적응 현상

약속

-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책 마련 및 비양육자의 양육비이행 강제조항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이주여성의 체류권 보장, 취업이주여성의 노동권과 인권 강화
- 여성장애인의 모성권과 건강권 보장 및 의료체계 확립, 자립생활과 접근권 보장 지원제도
- 여성농민을 생산의 주체로 인정하고 걸맞는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 위한 법제도 정비
-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생활을 위한 임신·출산·양육 지원 및 치유, 의료 지원

2

장애인복지, OECD 꼴찌에서 평균으로

① 장애인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OECD 평균 수준으로 예산 확대

진단

-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지출은 2011년 기준 GDP 대비 0.49%로 OECD 평균 2.19%의 5분의 1 수준이며, OECD 조사국 30개국 중 멕시코와 터키에 이어 28위로 꼴찌 수준
- 대규모 수용시설 중심의 장애인 정책은 인권침해적이며 장애인의 개인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정책임. 장애인 복지 체계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등급제는 행정편의적 정책으로서,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며, 지역사회 거주 종합대책 및 장애인 복지예산을 OECD 평균 국가로 만들기 위해 국회 내 특위 및 포럼을 구성해 종합로드맵 마련

약속

- 현재 1~6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장애인등급제 전면 폐지
-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전면 개정
- 국회 내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거주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특위 또는 포럼 구성
 - 탈시설을 위한 초기 지원체계, 정착금 제도화 및 인상,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지원체계
- 복지증세를 통해 장애인복지 지출을 2011년 0.49%에서 OECD 평균인 2.19% 확대
-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도입, 활동보조인 임금 현실화 및 월급제 보장
- 반값임대 공정주택 확대, 주거급여 2배 확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확대

②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기본권 보장

진단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이 실현되려면, 이동 보장, 교육 보장, 의료 보장, 직업 생활 보장 등에 관한 정책이 필요함. 또한, 장애인 반곤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역시 폐지해야 함.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효성 있게 개편하며 장애인화공기업 등 새로운 장애인고용모델을 발굴할 필요성
- 장애인의 문화생활 및 건강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인가족 지원을 확대해 장애로 인해 가족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또한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는 장애여성과 정신장애인 등 성별과 장애유형에 따른 인권보장 필요성

약속

- 시내버스 저상버스 100% 운영, 시외버스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지원
- 특수교육 법정 정원 확보 및 정규직 교사 채용, 장애인 욕구에 맞는 평생교육체계 구축
- 멀티미디어 저작물에 대한 시·청각장애인 접근권 보장, 중장애인 의사소통지원체계 강화
- 다양한 문화공간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확대, 장애인 문화생활 향유권 보장
-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확대, 의료비 지원 강화, 공공재활병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 장애인가족 지원 법제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가족지원서비스 체계적 정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장애인정책의 부양의무제 폐지로 장애인 반곤사각지대 해소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장애인화 공기업 설립 등 새로운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발굴
- 성인지적 자립생활 기반을 마련과 생애주기별 정책 수립, 장애여성의 모성권·건강권 보장
- 정신장애인 인권보장, 인권교육 확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

3

인권 존중, 정의로운 대한민국

① 국민 기본권 보장과 잃어버린 민주주의 회복

진단

-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로 전 국민에 대한 감시와 사찰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 역시 국가정보원이 민간포털을 포함해 인터넷에 대한 상시적인 사이버사찰 우려
-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도·감청, 개인 이메일 및 SNS 등에 대한 감시 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음. 2012~2014년 총 3,042만 1,703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지만, 정작 국민들은 수사기관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가져갔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
- 최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 또는 위법·불법행위에 대한 의견 등 여론형성을 방해하는데 악용되고 있음

약속

-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 폐지,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등 권한 폐지, 해외정보·대북정보 전담조직으로 재편
-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정
- 집시법의 절대적인 집회 금지구역 폐지, 주도도시 주도요로 지정 축소
-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형법의 모욕죄 관련 처벌 조항 폐지

② 인권 선진국 기반 마련 및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진단

- 학교교육과정 및 공공기관에서의 인권교육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의 연속성, 실효성 등에서도 한계
- UN 인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 관련 법률 제정을 권고하였으며, 박근혜 정부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포함시켰으나, 아직 차별금지법은 국회 계류 중
- 노인의 재혼 내지 동거, 장애인공동체, 미혼모 가정, 동성 가정, 비혼 커플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존재함에도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전무(全無)
- 일부 종교단체는 동성애혐오를 조장하는 활동을 조직적으로 진행. 2014년 중앙일간지에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최소 11건의 광고가 16회 이상 게재

약속

- 교육기관 · 공공기관에 인권교육 의무화,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교육원 설치
- 평등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평등대우법(차별금지기본법) 제정
- 프랑스의 동거 가구를 위한 파스(PACS)제도와 같은 「동반자등록법」 제정
 - 이성간 혼인에 의한 가족구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권 보장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조장 광고 규제, 사회적 약자 대상 혐오범죄 발생 시 가중처벌
- 숙련도와 상관없이 국내 취업을 허용하는 노동비자 도입 (도입 전 고용허가제도 개선)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
- 예방정책 마련, 교육홍보 강화, 치료의약품 공급 등 감염인 인권 · 건강권 보장
- 현행 성전환자 성별변경 조건 완화 및 의료 · 복지지원 확대,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

4

한국탈핵 2040, 생명존중사회

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한국탈핵 2040

진단

-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은 전력수요 과다예측 → 대규모 발전설비 확대 → 공급과잉에 따른 전력수요 충족을 위해 전력소비 확대의 악순환 반복
-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핵발전소 보유국이며, 핵발전소 밀집도는 세계 2위, 10기 이상의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국가 중에서 핵발전소 밀집도는 세계 1위
- 반면, 재생에너지공급비중은 OECD 최하위인 34위이며, OECD 34개국의 재생에너지공급 비중은 평균 17.4%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2.1%에 불과

약속

- 2040년까지 핵발전소의 점진적 축소를 통한 한국탈핵 실현

도약기	전환기	완성기
2016~2020년	2021~2030년	2031~2040년
핵발전소 2기 폐쇄	핵발전소 10기 폐쇄	핵발전소 13기 폐쇄

※ 설계수명이 만료된 노후원전 폐쇄를 원칙으로 하고, 완성기에는 모든 핵발전소 폐쇄

- OECD·독일 수준의 전력수요관리 및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발전용연료 불공정과세 조정
- 대형 신재생(공급의무화) 및 소형재생(발전차액지원) 등 재생에너지의 다차원적인 발전
 - 100kW이하 태양광, 비태양광 1MW이하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비율 확대 및 에너지다소비산업 재생에너지 의무소비제도 도입
- 사용 후 핵연료는 재처리 금지, 고준위핵폐기물은 사용 후 핵연료 총량 결정 이후 진행
- 방사능 파폭 취약계층인 영유아·어린이·청소년 건강을 위해 방사능안전 공공급식법 제정
- 국가공공토론기구를 구성해 환경성과 사회성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수립
- 기후정의세 도입, 기후변화영향조사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② 4대강 복원,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시스템 구축

진단

- 총 22조원을 투입한 4대강 사업은 △ 부실한 설계·시공으로 인한 대형 보의 안전성, △ 정체수역으로 인한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 △ 자연환경 훼손으로 인한 주민피해 및 생태계 파괴, △ 졸속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건설공사의 비리담합 등 각종 문제 발생
- 박근혜 정부는 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산지관광특구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제·개정 추진. 환경훼손 논란에도 국립공원 설악산에 케이블카사업 추진

약속

- 치유와 회복을 위한 「4대강 복원 특별법」 제정
 - 하천변 난개발을 초래하는 「친수구역활용특별법」 폐지, 생태친화적 사업으로 변경
 - 물기본법 제정으로 유역 중심의 지속가능한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물관리시스템 구축
- 산악관광특별법·해양관광특별법 등 개정·저지로 보호지역에 대한 지속가능성 확보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사업 원점 재검토, 민간공동조사단을 구성해 객관적 조사 실시
- 노후화고 기능을 잃은 방치된 댐 철고, 강 생태계 복원을 위한 대책 마련

③ 환경은 깨끗하게, 우리 몸은 건강하게

진단

- 2014년 암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 당 151명으로 사망원인 1순위. 암 발생 원인은 개인 생활습관 외에 발암물질 노출로 인한 직업 및 환경 위험 요인도 높은 비중
- 핵발전소와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들은 낮은 수준의 방사능·전자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 역학조사 결과 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
- 가슴기 살균제 사건 같은 환경피해 사고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가해 기업과의 오랜 소송으로 인해 정서적, 육체적으로 소모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2차, 3차 피해로 고통 받는 경우가 발생

- 최근 5년간 환경오염망 측정결과, 국가산업단지 지역의 VOCs, 중금속,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대부분 물질의 농도가 국내 주요도시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

약속

- 「발암물질 등의 관리 및 암 예방법」을 제정해 체계적인 발암물질 관리
- 방사능과 전자파를 환경유해인자로 지정해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관리
- 환경오염 피해 발생 시 정부가 신속한 피해구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해 사업장 오염물질의 총량관리 강화

④ 또 하나의 가족,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진단

- 우리나라의 법률체계상 동물은 생명을 지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물건(동산), 형법상 재물에 해당되어 타인 소유의 동물에게 해를 가한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
- 1988년 오스트리아와 1990년 독일, 2002년 스위스 등은 민법을 개정하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 권리의 주체와 객체로만 분류하던 2분법적 체계에서 권리의 주체인 사람과 권리의 객체인 물건, 그리고 생명이 있는 동물로 분류하는 3분법적 체계로 전환
-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전체의 21.8%에 달함. 「201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물고통 최소화를 위한 법제화에 찬성하는 비율이 94.1%로 나타나는 등 국민들의 생명윤리 의식 강화
- 동물복지는 동물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고 고통의 최소화되는 행복한 상태로, 동물에게 적절한 주거 환경의 제공, 영양분의 제공, 질병 예방 및 치료, 학대금지 등을 포괄

약속

-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 개정
 - “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②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 동물복지법 법제화 및 실험동물법 등 관련 법률에 동물보호 및 복지적 가치 강화

-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전부개정, 동물정책기본법으로서의 위상과 역할 강화
- 동물살상금지 명시 및 동물학대유형 구체화, 길고양이 / 동물원동물 / 야생동물 등 보호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동물복지행정 일원화 및 동물구조핫라인 설치
-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에 우리동네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 공공기관 ‘육류 없는 채식의 날’ 실천으로 채식식단 선택권 부여
- 감금사육(공장식축산)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10개년 계획 마련

5

평화와 상생의 한반도, 안보 민주화

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담대한 실천

진단

-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증강되고 있으나, 정부는 실효성 부재의 즉자적 정책 남발하고 있음. 정부는 4차 핵실험 이전에도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하면서도, 북의 핵능력 증강을 막을 어떤 실효적 정책도 추진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
-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발생 원인인 한반도의 전쟁과 정전체제, 그리고 동아시아의 냉전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박근혜 정부도 ‘동북아평화구상’을 내세웠으나, 핵심적 안보현안을 해결할 적극적 정책도 실천도 부재
- 위기에 빠진 비핵화와 남북관계를 바꾸기 위해 ‘평화공존’과 ‘접근을 통한 변화’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평화상생의 한반도와 동아시아’라는 목표를 향해 담대하고 다양한 노력 필요

약속

-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담대한 실천 추진
 - (가칭) ‘신 2.29합의’ 등 여건 조성 → 비핵화 6자회담, 평화협정 4자회담 병행

- 남·북·미·중 한반도 평화선언, 북·미 적대관계 청산과 수교, 북·일 과거사 청산과 수교
- 동아시아 차원의 전통적·비전통적 다자안보협력 증진 : 평화공동체의 토대 형성
 - 동북아 3+3 비핵지대화 (남·북·일에 대한 미·중·러의 안전보장과 핵군축 명기)
 - 중장기적으로 군비 동결과 군축 추진, 해양·영토 분쟁의 합리적 해결 구추
 - 핵발전소, 황사 등 비전통적 안보협력 강화, 동북아 외교·국방·경제 협의체 상설화
- 남북교류협력 부활 및 활성화·제도화,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체결 등 경제공동체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철회와 재가동,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② 평화환경 조성을 주도하는 중견국 외교

진단

- 미·중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는 협력과 갈등의 이중주를 연주하고 있음. 한반도와 관련해서도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면서도, 미·중은 한반도 문제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또 한반도 문제로 양국 관계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도록 ‘관리’에 힘입
-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느 한쪽 편에 쉽사리 힘을 싣는 것이 아니라 균형외교를 전개해야 함.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지정학적 이익을 노려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 이익을 공유, 확대할 수 있도록 조화외교를 일관되게 전개할 필요

약속

-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 사이 균형외교 전개
- 대륙세력 대 해양세력의 대결구도를 예방해 대중 동맹의 전초 기지로 전략 예방
- 지정학적 대립 대신 지정학적 공동이해 추구를 제창·선도하는 조화외교
-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불평등한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 전면개정
- 한일 위안부 재협상, 철저한 과거사 반성에 기초한 평화·미래 지향의 신한일관계 정립
- 제3세계 발전 기여외교, 무분별한 대외파병 금지와 세계적 비핵화·평화군축에 이바지
- 유라시아 대륙경제 시대 구축, 대륙과 해양의 가교가 되는 한반도

③ 안보 민주화 실현, 한국형 모병제로 전환

진단

- 예비역 장성을 국방장관으로 임용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국방의 관리·운영을 사조직이 주도, 주류 군맥에 의한 군파(군+마파) 형성으로 대규모 방산비리 초래
- 인구감소 등으로 현재 62만 명의 한국군은 2025년에는 50만 병력 유지도 어려운 실정
 - 병력 숫자 유지를 위해 군대 내 부적응이 예상되는 자원까지 무리하게 징병
 - 2014년 기준 군대내 특별관리가 요구되는 ‘관심병사’ 8만6000명으로 전체의 20%
- 징병된 병사에게 가장 전문성이 요구되는 최전방의 전투 임무를 떠맡기는 비합리성
 - 부대배치와 직무에서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이 박탈된 비전문가 집단

약속

- 국방장관과 주요직위에 민간인 임용을 일명 군파방지법으로 의무화
 - 특정 군맥의 군 운영에 대한 영향력 차단을 위한 육·해·공군 순환보직제도 도입
- 군 병력 2025년까지 40만으로 감축하고 예비군 정예화로 현역 병력 부족 보완
 - 징집률 76%선 유지로 신체허약 및 부적응 우려자는 과감하게 군 입대 차단
-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에 대한 방어적 충분성을 확보하는 2025 목표군 개념
 - 핵심전력 위주로 구조조정, 지휘체계의 단순화·간편화로, 간부위주로 병력구조 전환
- ‘한국형 모병제(의사 모병제)’로 주요 전투임무를 직업군인으로 전환
 - 징병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2025년까지 전방부대는 전원 직업군인으로 전환
 - 고숙련 직업군인 위주로 병력을 재편하면서 방어개념을 현대적으로 전환

④ 입대부터 전역까지 군복 입은 시민의 권리 보장

진단

- 고졸 입대자의 경우 입대 연령 미달과 입영 대기로 졸업 후 입대까지 평균 24개월이

소요되지만 군 미필자라는 이유로 취업에 불리하여 88%가 실업상태로 대기. 대졸자도 실제 군복무 기간에 복학대기, 군복무로 인한 스펙 보완을 합하면 총 손실기간은 31개월

- 지휘관이 임명한 군 장교가 재판장이 되는 군사법원은 헌법상의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 침해. 군 인권감독관 설치가 미뤄지면서 외부의 군 인권실태 감시 장치 부재. 군 부적응자에 대한 집단 따돌림이 만연되어 있으며 부적응자를 격리수용하는 그린캠프 운영
- 군 의무복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자 합리적 대우 필요. 국방부 전직교육은 단기복무 부사관에 미제공, 사병에 대한 진로 컨설팅은 아예 부재

약속

- 청년 생애주기에서 군 복무로 인한 총 손실을 획기적으로 감축
 - 맞춤형 군 입대로 18세 군 입대 보장 및 고졸 우선권 부여
 - 부대별 모병제도로 원하는 부대와 주특기 선택
 - 청년정책, 병역정책, 취업정책을 상호융합하여 청년 생애주기 모델 재구성
- 군사법원 폐지하고 군은 기소권만 유지, 인권 감독관 국회 소속으로 설치
 - 그린캠프를 폐지하고 전문병원에 위탁진료 및 재활 활성화, 현역 부적합자 조기 전역
- 군복무 사병에 대한 체계적 진로·취업 컨설팅 정책 신설

6

정치개혁,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① 국민을 닮은 국회, 국민을 살리는 정부

진단

-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42.8%의 득표율로 50.7%의 의석을 차지했으며, 민주통합당은 36.5%의 득표율로 42.3%의 의석을 차지함. 국민의 지지를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이 절실하나, 선거구 획정은 지역구 기득권 유지를 위해 비례대표를 축소함

-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능력 대응이 빚은 인재였으며,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부패한 관피아와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주요 원인임. 세월호 사고는 여전히 잔상규명조차 안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혁신 역시 미비

약속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개혁으로 국민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한 국회 구성
 - 대선 결선투표제로 다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 (피)선거연령 인하 등 참정권 확대
 - 양당 중심의 교섭단체제도 폐지, 국정감사·국정조사 상설화, 예결특위 상임위원회 전환
- 무능정부, 부패정부, 무책임정부에서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책임지는 정부로 혁신
 - 국가 차원의 재난안전협업체계 구축과 관피아 방지, 국민 안전 관련 전문성 강화
 - 김영란법 강화로 부정부패 차단, 부정청탁 방지, 세금낭비성 특수활동비 축소
 - 무분별한 규제완화 반대 및 질적인 규제평가제도 도입으로 효율성과 안정성 추구

②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미래 전환

진단

-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1년째 되는 해이지만, 여전히 주민이 아니라 관료가 주도하고, 민주성이 아니라 효율성이 중심이 된 반쪽짜리 단체 자치에 불과.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지방자치에 대한 간섭과 통제가 강화되고 지방재정 압박이 가중
- 박근혜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는 더 심화. 지방은 이제 ‘식민지’를 넘어 착취할 자원조차 남지 않은 황무지로 전락.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회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

약속

- 지방재정 확충, 재정자주권 실현 및 지방분권·주민참여 확대
 -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사업 국가책임제
 -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자치구에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 중앙-지방협력회의 제도화,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조정제도 폐지
- 과감한 사무이양과 자치 행정권/인사권/조직권/입법권 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 지방의회와 주민참여 예산낭비 근절, 민직접참여제도 확대 및 요건완화
- 일자리-교육-복지를 통한 지역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 지역특화 미래산업과 뿌리산업 육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 지역 과학기술역량 강화,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 풀뿌리 사회적경제 육성
 - 지역발전특별회계 혁신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민은행 설립 및 지역금융 활성화
 - 정부책임형 대학개혁으로 지방대 육성, 공공의료벨트로 서울-지방 의료격차 해소

7

정의로운 문화예술과 언론개혁

① 문화예술인 기본권과 문화예술의 정의로운 전환

진단

- 2015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일을 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0.7%에 불과. 예술활동으로 월 100만원 정도의 수입, 그 중 36%는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 전무
- 문화예술분야의 기본재원인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 규모는 2004년 5,273억원에서 2014년 1,547억원으로 급감해 2017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
- 문화산업의 성장과 함께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커지고 있음. 유통독점자본의 각종 불공정 행위는 창작자들의 권리를 축소시키고,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을 가로막는 요인
-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문화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나 개인간·계층간·지역간 문화격차

약속

- 문화예술인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보장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쳐 세분화된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확대
 - 예술인복지법에 ‘근로자 의제’를 신설하여 문화예술 노동자로서 기본권 보장
 - 예술인복지 예산 대폭 증액, 젊은 예술인에 대한 ‘준예술인제도’ 신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문화재단의 예술인 정착지원제도 현실화
- 정부·지자체 정책에 문화영향평가 전면화, 문화예술의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보장
- 사행성산업 수익을 재원으로 한 문화예술진흥기금 확충,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제도 확립
- 문화예술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문화콘텐츠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개선
- 초중고부터 대학까지 문화예술교육 개편,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문화기본선 도입으로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 및 전문성 강화

② 노동과 시민을 위한 언론·ICT 생태계 조성

진단

-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지상파 방송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으며, YTN 같은 보도전문 채널과 보수 일방적인 종편채널 역시 방송의 공정성이 논란이 되고 있음. 방송통신심위원회 역시 정치심, 편파심, 공안심을 통해 제작·편성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전반적으로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등 미디어산업 변화에 따라 유료 방송통신업자의 공적 책무를 강화할 필요
- 2015년 11월 현재 국내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수는 2000만명을 돌파해 국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로 자리 잡음. ICT 분야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서비스화가 시급함. 또한 누구나 차별 없이 인터넷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망 중립성 확보해 자본력에 따라 망 제공을 달리하는 차별을 금지

약속

- 언론 공공성 강화와 개혁으로 ‘언론독립 공정보도’ 실현
 - 지상파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강화, YTN·연합뉴스·이리랑국제방송 정상화 및 중편 규제
 - 미디어 이용자 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 유료 방송통신사업자의 공적 책무 강화
 - 지역방송 발전 및 공공성 강화, 신문 진흥과 지역신문 활성화
 - 포털과 인터넷 언론의 여론 다양성 확보, 신문·방송광고의 불법영업 근절
 - 방송콘텐츠산업 비정규직 남용 제한, 출판산업 진흥과 노동자 권리 보호
-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는 ICT 생태계 조성으로 ‘정보인권강국’ 실현
 -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지정으로 통산·방송요금 부담 경감 및 정보격차 해소
 - 국내 기업이 역차별 받지 않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일명 ‘구글세’ 입법화
 - 방통위 등 일반적 행정심의 폐지,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 폐지로 표현의 자유 보장
 -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보장 및 정보인권법 제정으로 프라이버시권 보장
 - 보편적 망중립성 확보, 오픈소스 프로젝트 지원사업 강화, 웹표준 도입 지원책 강화
 -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ICT노동자들을 위한 ‘ICT 노동인권센터’ 설립

4

5대 기득권 해체

국민의 모습을 닮은 정의당이
불의한 기득권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우리는 사회각분야의 기득권을 해체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존 정치의 특권과 재벌의 불법행위, 금수저의 특혜와 각종 불로소득,
학교서열에 따른 기득권을 혁파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은
기회가 공정하며,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는 나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치 기득권 폐지
재벌 기득권 근절
금수저 기득권 근절
불로소득 기득권 환수
교육 기득권 혁파

1

정치 기득권 폐지

불량정치 퇴출, 세비 최저임금연동제, 교섭단체 기득권 폐지

“정치인 특권과 양당 기득권을 버려야
국민들이 더 행복해집니다.”

① 돈/금수저/부정축재/무자격/부도덕 5대 불량정치 퇴출

진단

-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19대 국회의원만 15명에 달하는 등 우리 정치의 고질병인 부패한 ‘돈정치’, 국회의원 자녀와 친인척, 인턴 및 지인, 지역구 인사 자녀에 대한 취업 청탁 비리인 ‘금수저정치’, 의원실 보좌직원 열정페이와 월급상납, 쌀 판매나 시집 강매 등 ‘부정축재정치’, 국회의원 본인 및 아들 병역기피와 소득 세금 탈루 등 ‘무자격정치’, 성추행과 논문표절 같은 ‘부도덕정치’ 등이 대표적인 불량정치임. 또한 5대 불량 정치 등으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해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어도, 해당 후보를 공천했던 정당은 그 책임을 전혀 지고 있지 않음

약속

- 20대 총선 5대 불량정치 공천 배제 등 ‘국민 눈높이 공천’ 실시
- 재보궐 공천 포기와 선거비용의 50% 부담 등 ‘불량공천 무한책임제’ 실시
- 20대 국회 5대 불량정치 퇴출과 불량공천 무한책임제 관련 법안 입법화

② 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상한제, 비업무용 의원특권 폐지

진단

-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OECD 주요 20개 국가 중 구매력 기준으로 일본과 미국에

이어 3위, 국민소득 대비 상대적 기준으로도 일본(5.66배)과 이탈리아(5.47배)에 이어 5.27배로 3위로 장차관을 포함해 고위공직자의 급여가 높은 편임. 또한 교섭단체 간에 의사일정을 포함 국회 운영 전반을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한편, 국회의 행정부 감시와 입법권 강화를 위한 제도와 기구의 뒷받침이 취약함

약속

- 국회의원 세비와 고위 공직자(장차관급 이상) 보수에 최저임금 연동제 도입
 - 5배 적용 시 현 최저임금(시급 6,030원, 월급 126만원) 기준 연봉 7,562만원
- 국회 교섭단체 특권 전면 폐지와 모든 원내 정당에 국회운영 협의권 부여
- 상시 국정감사 운영, 상임위 국정조사권 부여, 행정입법 심사 지원 전담부서 설치

③ 총선 지지율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 등 결선 투표제 도입

진단

- 현행 단순다수대표제로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 승자독식 선거구제로, 투표 가치의 불평등성을 극대화해 ‘표의 등가성’을 심각히 훼손함. 이로 인해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계층별 대의 반영과 이해관계 조정도 취약하고, 영호남 지역 주의 정치구조 등 정치적폐 청산의 장애가 됨은 물론, 정책과 비전 중심의 정당 혁신도 어렵게 하고 있음. 또한 단순다수대표제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경우 사표로 인해 각 정치세력별 비전과 정책 경쟁을 제약함은 물론,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는 대통령 선출에 있어 근본적 한계로 작용함

약속

-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이 지지한 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 대통령선거는 정책 중심의 경쟁과 연합정치 기반 형성을 위한 결선투표제 실시

2

재벌 일가 기득권 근절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와 배임·횡령 등 유전무죄 근절

“재벌 총수와 일가의 기득권을 규제해야
서민경제, 국민경제가 살아납니다.”

① 재벌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행위 근절

진단

- 재벌의 사익편취 행위는 이사 또는 총수일가가 지배권을 이용하여 기업의 이익이나 자산을 빼돌리는 행위로, 부당주식 거래와 회사기회 유용 일감몰아주기가 대표적임. 특히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는 재벌 일가의 ‘편법 증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왔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임. 2015년 경제개혁연구소 분석에 의하면 삼성·현대차 등 5대 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와 회사기회 유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이 13조 8,088억원으로 추정됨. 그럼에도 2015년 기준 삼성·현대차 등 5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50%가 넘는 계열사가 112개에 달하고 있음

약속

- 정상거래비율, 한계지분율에 대한 차감 없이 거래비율 전체 증여세 적용
- 규제대상 지분 요건 20%로 하향 등 공정거래법상 부당이익 적용 대상 확대
- 특가법상의 업무상 배임·횡령죄의 특례 조항(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적용

② 조세포탈, 횡령, 배임 행위 형량 강화 등 유전무죄 근절

진단

-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과 조현준 사장은 분식회계, 탈세, 횡령, 배임, 위법 배당 등 7939억원 규모의 비리 혐의로 기소되어 올해 1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됨. 한화 김승연 회장은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201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최종 선고 받음. 이재현 CJ 회장은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 받음. SK 최태원 회장은 계열사 자금 465억을 횡령함 혐의로 2014년 징역 4년을 최종 선고 받았으나, 2015년 생애 두 번째 사면을 받아 형기 중에 풀려남. 또한 재벌 일가는 형기 중에도 일반 국민과 달리 황제면회에 이어 형집행 정지나 가석방 또는 특별사면을 받고 있음

약속

- 재벌 등 이득액 50억 이상 배임 횡령죄는 특가법상 집행유예 불가능하도록 함
- 재벌 일가의 황제면회와 황제노역 금지, 형집행정지와 가석방 및 사면 제한
- 횡령·배임 등 특가법 상 징역형 이상 선고 받은 자는 기업체 임원 등록 제한

3

금수저 기득권 근절

편법·거액 증여 환수, 금수저 취업청탁 근절, 병역 철저 검증

“금수저의 특권과 반칙 규제는
정의로운 공정사회의 시작입니다.”

- ① 주식, 부동산 등 거액 편법 증여 증여세 환수 대폭 강화

진단

- 2015년 재벌닷컴에 의하면 상장사 주식 1억원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는 366명이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가치는 1조원을 상회함. 이중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은 2012년 미취학

아동 7명에게 25억 상당의 주식을 증여했으나 신약개발로 주식 시세가 1,000억원까지 급등. 또한 2013년 기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예금계좌는 1천320개로 예금액이 2,012억원에 달하고, 심지어 5억원 이상 예금계좌도 92개로 예금액이 1,696억원임. 한편 최근 5년간 18세 미만 미성년자 3,717명에게 증여된 부동산만 1조 4254억 원에 달하고, 2014년 기준으로 10세 이하 임대사업자는 817명이었고, 10세~20세 임대사업자는 2,288명임

약속

- 증여세 재계산제 적용 강화로 주식, 부동산 등 고액 편법 증여 과세 강화
- 미성년자 등 세대를 건너뛴 상속 및 증여 시 할증과세를 일괄 50%로 강화
- 부동산 상속 · 증여 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반영해 과세

② 공기업 금수저 취업청탁 근절 및 사학재단 친인척 취업 특혜 제한

진단

- 김무성, 신기남 의원 등 국회의원 6명은 자녀, 친인척 취업 인사청탁 의혹이, 최경환 의원과 김진표 전의원 등 6명은 인턴 및 지인 지역구 인사 자녀에 대한 취업 청탁 비리 역시 각종 의혹이 제기된바 있음.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권모 전 운영실장은 합격자 10~15%는 고위공직자들의 취업 청탁이 있었다고 고백한바 있음. 또한 일반 민간기업의 경우 이력서에 부모의 직업과 재산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친인척 중 고위 공직자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지난 2005년부터 2015년 까지 서울, 경기, 광주, 충남, 전남 등 5개 지역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및 이사 등 임원의 친인척 192명이 해당 학교 교직원으로 채용되는 등 사학의 친인척 취업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음

약속

- 고위 공직자 자녀 취업 현황 신고 의무화 등 공직자윤리법 강화로 취업청탁 방지
- 고위 공직자 취업 청탁에 의한 부당 채용을 한 공기업 및 민간기업 처벌 강화

- 이력서에 부모 및 친인척 직업과 재산 기재를 금지하는 표준이력서 사용 의무화
- 사립학교의 교원임원 채용 교육청 위탁 의무화, 채용 비리 징벌적 조치 강화

③ 고위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군 면제 철저 검증 및 불이익

진단

- 2015년 병무청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 중 병역 면제자는 2,568명으로 면제율은 일반 병역 면제율 6% 대를 훨씬 상회하는 10.3%이고,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녀 중 군 면제자는 784명이고 국적상실 사유도 30명이나 됨. 19대 국회의원 중 병역 면제자는 질병 17명, 장기대기 5명, 고령 3명 등 수형자를 제외하고도 25명에 달함. 또한 국회의원 아들 중 병역 면제자는 질병 19명과 국적 상실 2명 등 총 21명임. 이중 김태환 의원은 자신과 장남 및 3남 모두 병역 면제이고, 이현재 의원은 자신과 장남 모두 병역 면제임

약속

- 고위 공직자 병역 사항 집중 관리 4급 이상으로 확대, 1급 이상은 병역 공개
- 직계비속이 외국 국적 취득으로 군 면제시, 1급 이상 고위 공직 공무담임권 제한
- 고위 공직자 아들 질병사유 병역 면제시, 복수 의료기관 공증과 주기적 재검 실시

4

불로소득 기득권 환수

고소득 전문직 탈루 방지, 부동산과 금융 불로소득과 환수

“땀의 가치를 짓밟는 각종 불로소득은
철저하게 환수하겠습니다.”

① 약덕 고액 상습 체납, 고소득 전문직 세금탈루 징벌적 조치

진단

-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고액·상습 체납자(5억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자)는 2,226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3조 7832억원(1인당 평균 17억원)에 달함. 또한 2014년도 의사·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270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1인당 평균 9억 7천만원(소득적출률 32.9%)의 소득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전문직을 포함 870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의 1인당 소득 누락은 11억 5천만원(소득적출률 43.1%)에 달함. 한편 국세청은 2015년 역외탈세 혐의자 223명을 조사하여 1조2,861억 원을 추징한 바 있음

약속

- 1억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은닉 재산 추징 및 징벌적 처벌 강화
-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 관리 대상자 확대 및 집중 관리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
- 일본 수준(2~3배)으로 세무조사 비율 확대, 조세범칙조사(일명 세무사찰) 강화
- 조세회피처 등 기업 및 사주 일가의 역외 탈루 행위에 대한 추징 및 처벌 강화

②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젠트리피케이션 부당이익 방지

진단

- 2013년 기준으로 상위 1% 부동산 부자는 1인당 평균 32억원(공시가격)의 부동산과 평균 5.5채, 11.86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상위 1% 땅부자는 평균 4만제곱미터, 40억원의 토지를 보유하는 등 부동산 자산 격차가 매우 심각함. 그러나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가 실거래가 대비 평균 65%(단독주택 72%, 단독주택 59%, 개별토지 61%)에 불과함에도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공시가격 기준으로도 0.233%에 불과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전세보증금의 경우 3주택 이상에만 간주임대료로 과세하고, 월세소득의 경우 주택보유와 상관없이 연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음
- 서울의 서촌, 망원동, 상수동, 경리단길, 삼청동, 연남동의 공통점은 임대료가 저렴한 도심 지역에 젊은 예술가들과 상인들이 정착하면서 다양한 문화 공간이 형성되었다는 점과 이후 높아진 임대료와 건물주의 재계약 거부로 지역 상인들이 쫓겨나고 있는 점임(일명 젠트리피케이션)

약속

- 부동산 부유층 세율 인상 등 공시가격 대비 부동산 실효세율 강화
- 공시가격/지가 조사평가를 지방정부로 이양해, 실거래가 80% 수준으로 과세
- 전세소득 과세는 2주택 이상으로 확대, 월세소득은 종합소득 과세로 전환
- 상가임대차영향평가 제도화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젠트리피케이션(도심재생으로 인한 상권 변화와 임대료 인상 등으로 원주민이 내쫓기는 현상) 방지

③ 주식과 금융 불로소득 환수, 금과 고가미술품 등 양도소득세

진단

- 2015년 초 정몽구 부자는 현대글로비스 주식 팔아 1조 1,500억원이 넘는 소득을 얻었음에도 세금은 20%만 부담, 주식양도소득은 누진세율이 아닌 20% 단일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종합소득자 역시 전체의 0.3%인 13만명에 불과함

- 2014년부터 한국거래소를 통해 금 거래가 양성화되었지만, 금거래의 대부분은 지하경제에서 거래되고 있고, 기타 귀금속과 보석류, 고가 미술품 역시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음

약속

- 주식양도소득도 누진세율 적용하고, 금융소득 1천만원 이상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 금, 은 등 귀금속류와 보석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실시

5

교육 기득권 혁파

특목 · 자사고 폐지, 대학 서열화 혁파, 학력 간 임금격차 해소

“창의와 협동의 교육을 가로막는
교육 기득권을 혁파하겠습니다.”

① 특수 목적 상실한 특목고, 자사고 등 교육 기득권 혁신

진단

- 2015년 기준 특목고는 총 143개로 전체 고교의 6.1%이고, 이중 외고는 31개 학교에 20,863명의 학생이 있는데 ‘특수 재능 분야에서의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본래 설치 목적과 다르게 ‘입시전문학교’로 전락해 고교 서열화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전국의 자사고는 49개고가 있고 이중 서울에 25개 자사고가 집중되어 있는데 자사고 역시 입시 비리, 회계부정, 교육과정 비정상 등 재지정 평가에서 취소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학교들이 속출한 바 있음

약속

- 설립 목적에서 벗어난 외국어고와 자사고 등은 일반고로 전환, 고교 서열화 폐지

② 창의 교육을 포기하고, 서열화에 안주하는 대학 기득권 혁파

진단

- 자사고, 특목고를 정점에 둔 ‘고교 서열화’ 체제는 서울대, 연고대 등을 정점에 둔 ‘대학 서열화’ 체제와 맞물려 있으며, 학원재벌, 사학재단, 서울대, 조·중·동 보수언론 등이 연결돼 교육기득권을 독점하고 있음. 조·중·동 등 각종 언론은 대학 평가 지표들을 개발하여 대학 서열화를 조장하고, 2014년 213개 대학에서 언론 홍보를 위한 지출액은 1,392억 원으로 매년 증가함.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5)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응답함. ‘한국 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의 유무에 따른 차별 존재 정도’에 대해 ‘심각하다’(66.1%),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27.1%)로 응답했으며, ‘한국사회에서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 존재 정도’에 대해서도 ‘심각하다’ 68.9%,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 26.0%로 나타남

약속

- 비리·부실 사립대학을 인수해 국공립대로 전환
- 서울의 대규모 사립대학 정원을 조정하고 고등교육재정 투자로 지방대학 육성
- 서열화된 대학교육 체제를 전면 혁신해, 창의력 중심의 대학교육 체제로 혁신

③ 공정 임금, 적정 임금 등으로 학력 간 임금 격차 해소

진단

- 2014년 기준 청년취업자 중 대졸 이상의 상용직 비율은 69.0%인데 반해, 고졸은 42.8%에 불과하고, 고졸 청년취업자의 월평균 임금(145만 5천원)은 대졸 이상(188만 2천원)의 77.3%에 불과함. 학력별 임금격차는 ‘고학력-공기업/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고임금·안정적 일자리-생활보장-자녀의 고학력화-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과 ‘저학력-저임금·불안정 일자리나 무직-생계불안-자녀의 인적자본 축적-부채의 상속’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나뉘는 학력별 인생격차로 연결됨. 임금 없는 성장과 고용불안 성장이 계속되

면서 학력과 학벌은 불안한 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종의 구명조끼임. 따라서 교육 기득권을 유지, 강화하는 교육 기득권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학력 간 임금격차 해소가 필수 조건임

약속

- 공기업 · 대기업 5%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시 고졸이하, 전문대졸 등 기화균형 선발
- 재벌 사내하청 정규직화 등 좋은 일자리 창출, 마이스터고 및 전문계 고교 강화
- 15~35세 미만 청년 미취업자 중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청년디딤돌급여(1년 최대 540만원)을 제공하고 내실 있는 직업훈련과 연계해 일자리 탐색의 기회 보장

정의당 20대 총선 대표 공약



- 국민월급 300만원

- 복지임금 100만원

1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 국민월급 300만원

진단

- 2000~2014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4%이나 실질임금 인상률은 더 낮은 수준
 - 파용자 1인당 보수는 연평균 1.4%, 5인 이상 상용직 임금은 연평균 2.5% 인상
 - 저임금 노동자(중위임금의 2/3 미만) 비율은 월 임금 총액 기준으로 평균 24.3%
- 2008년 이후 생산성은 증가해도 임금은 오르지 않는 '임금 없는 인상' 지속
- 2015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222만명으로 노동자 열명 중 한명 꼴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체간, 남성과 여성 간 임금 격차 및 차별

약속

- 2020년까지 전체 노동자 1,900만명의 평균월급을 300만원으로 인상
 - 각 구간별 평균임금을 똑같이 70만원씩 정액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전체 노동자 임금 구간	구간인원	2015년 평균월급	2020년 평균월급	연평균 인상률
저임금(133만원) 이하	492만명	85만원	155만원	16.2%
저임금~중위임금(200만원)	599만명	171만원	241만원	8.9%
중위임금~평균임금	73만명	216만원	286만원	7.3%
평균임금(369만원) 이상	767만명	369만원	439만원	4.4%
합계 (평균)	1,931만명	230만원	300만원	6.9%

-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 모든 노동자에 최저임금 전면 적용
- 공기업 · 대기업 고위임원 대상 임금상한제(각각 최저임금의 10배/30배 이내) 도입
- 대기업과 하청협력업체간 초과이공유제 도입으로 원하청 노동자간 임금격차 완화
- 성별 고용 · 임금실태 공시제 도입과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등 남녀 간 임금격차 해소
- 공공부문과 대기업부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2020년까지 비정규직 절반으로 감축
- 비정규직 사용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자영업자 종합대책과 병행 추진

2

또 하나의 월급, 복지임금 100만원

진단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저부담 저복지’ 국가
 - GDP 대비 복지지출은 우리나라 10.4% vs OECD 평균 21.6%
 -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우리나라 18.7% vs OECD 평균 24.7%
-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국가책임제, 고교 무상교육 등 복지공약 파기
- 노동자·자영업자 등 소득증대와 함께 교육/주거/의료 등 가계비 부담 완화 필요

약속

- 민생정책과 복지확대로 2025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 달성
- 생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평생복지 + 내 생활 부담을 덜어주는 기초복지

구 분	현행 제도	개선 방안
출산지원	국가 차원의 마더박스 없음	100만원 상당의 마더박스 지급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월 50~100만원	육아휴직급여 80~150만원으로 인상 파파쿼터제(아빠의무휴당) 3개월 추가
고교수업료	고등학교 수업료 연 170만원	고등학교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
대학등록금	2015년 사립대 등록금 연 734만원	국가표준등록금(연 350만원) 도입으로 반값등록금
미취업청년	13만명에게 청년패키지 제공	청년디딤돌급여 연간 최대 540만원 지급
통 신 비	휴대폰 기본요금 월 11,000원	휴대폰 기본요금 폐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능력보다 과다 부담	소득 중심 부과로 지역55만세대 월 46,668원 경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없음	월소득 140만원 이하 지원 (1인당 월 최대 63,000원)
고용보험	1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없음	월소득 140만원 이하 지원 (1인당 월 17,325원)
민간보험	국민의 74% 민간의료보험 가입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으로 민간보험 불필요 (가입자 1인당 민간보험료 월 83,854원 절감)
공공주택	23평 기준 월 150만원 뉴스테이	반값임대 공공주택 공급(23평 기준 월 44만원)
주거급여	총 81만 가구 대상 월평균 11만원	167만 가구 월평균 20만원으로 확대

- 법인세 인상, 사회복지세 도입 등 연간 49조 5천억원 규모의 복지증세로 책임복지 실현

정의당 20대 총선 특화 공약



5시 퇴근제/연간 30일 이상 유급휴일·휴가/청년디딤돌 급여/직장 내 괴롭힘 방지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두루누리 II /통신비 인하/CEO 임금상한제/초과이익공유제/사회복지세/
증여세 재계산 제도/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핀란드형 보육
탈핵 2040/동물복지/2025 한국형 모병제 전환/청년 취업농 지원/공천무한책임제

1

5시 퇴근제 도입

진단

- 이미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사회정책 차원에서 중요한 의제로 부각
 - ILO, OECD, EU 등 국제기구들은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의 지표로 노동시간을 제기
 - 2007년 국제노동기구는 괜찮은 노동시간을 주요 의제로 선정
- 우리나라 노동인구의 40% 가량인 약 930만명이 '시간 빈곤' 상태 (한국고용정보원, 2014)
 - 법정 초과근로 한도인 주52시간 초과 장시간 노동자는 357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9%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포괄임금제 폐지,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지, 연장·휴일근로 제한이 우선임.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적용 예외 및 이미 휴식시간의 기능을 상실한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을 노동시간에 산입시키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
 - 한국노동사회연구원 김종진은 2013년 병원 간호사, 의료기술직의 점심시간이 22.9분, 백화점 면세점 등 판매직의 점심시간이 37.7에 불과하다고 지적
- 이미 교수는 '8시 출근 4시 퇴근', 일부 교육청 공무원은 '9시 출근 5시 퇴근' 실시
 - 다수 외국계 기업 또는 외국의 경우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해 '9~5' 근무 일반화

약속

- 점심시간(현행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5시 퇴근법 제정
 - 실노동시간 8시간이 줄어들어 '9시 출근 5시 퇴근'이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
- 법정 초과근로 한도인 주 52시간을 넘어 주당 최장 68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 고용노동부의 탈법적 행정해석을 시정하도록 강제
-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실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하는 근로기준법의 독소 조항 개정
- 연 1,800시간 노동시간상한제 관련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법」 제정
- 하루에 한 시간 씩 더 일하고 주 4일만 근무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제 도입

2

연간 30일 이상 유급휴일 · 휴가 보장

진단

- 유럽연합은 1993년 근로시간편성에 관한 지침을 채택한 이후 1년에 최소한 4주의 휴가 제공
 - 독일은 6개월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18일의 연차를, 영국의 연차는 4주 이상이며 13주의 계속근로기간을 충족하는 노동자에게 부여, 일본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0일의 휴가 부여
-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의 유급휴가 적용은 60.6%에 불과하고 그나마 거의 대부분 정규직(89.2%)에게만 해당. 비정규직은 24.8%에 불과한 실정 (「직장인의 시간 불평등과 갈등해결 모색」 김종진 2014)
- 현행 유급휴가 관행상 비정규직과 단순노무직, 서비스판매직, 사무관리직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제조업 생산직과 달리 유급휴가 적용이 표준적이지 않고 제대로 이용하지도 못하는 형편
 -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와 직장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여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더더욱 어려워, 근로형태, 단체협약 유무, 입사시기와 상관없이 최소한 여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단체협약 등이 적용된 사업장의 경우 3.1절 등 국경일과 한글날 등 국경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지만, 노동조합 조직률이 부진한 비정규직의 경우 사실상 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국경일과 공휴일 등 소위 빨간 날을 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약속

- 모든 노동자에게 연간 30일 이상 유급휴가 보장
-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6개월 이상 재직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 부여
- 국경일·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해 연차휴가 외에 연간 최소 17일의 추가적 휴일 보장
 - 단체협약이 없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에 다수 종사하는 청년에게도 휴일과 휴식을 보장
- 여름휴가법 제정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연간 5일의 휴가 보장 (근로기준법 개정)
 - 취업시기, 단체협약 유무와 상관없이 여름만이 아니라 어느 계절에도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만들어 유급휴가 관행을 보완하고, 휴식 보장

3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디딤돌 급여

진단

-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2015년 청년 취업애로계층(공식실업자, 잠재구직자, 구직단념자,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등)은 116만명이나, 2013년도 기준 청년층(15-34세)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자는 29만 3천명에 불과
- OECD 국가 가운데 실업부조 제도가 전무한 국가는 한국 이외에는 미국, 멕시코 등 소수
- 실업부조와 유사한 취업성공패키지의 2014년 청년층 참가자는 6.7만명에 불과
- 취업애로계층 중 70%에 가까운 81만명의 청년들은 실업안전망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황

약속

- 실업급여 II (실업부조) 도입 및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디딤돌급여 도입

구 분	세부 내용
실업급여 II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이 미만인 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자, 실업급여 소진자, 폐업한 자영업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 60% 이하인 자 최대 1년간 최저임금의 80% 지급
청년 디딤돌급여	15~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중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이 미만인 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자, 실업급여 소진자 중 가구소득이 하위 70% 이하인 자 최대 1년간 540만원, 월 50만원의 청년디딤돌급여 제공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일자리 종사자도 실업급여 II와 청년디딤돌급여 제공
-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 지급 및 1년 미만 퇴직자에게도 퇴직금 보장
 - 자발적 이직자와 아르바이트 재학생,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 정부의 노동시장 지출액 상향(현재 0.6% → 1%)과 고용보험 개편 등으로 추가 재원 마련
 - 300인 이상 기업 중 비정규직의 임금 1.0%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 신설, 노사공동의 고용보험료 인상 등 추진

4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감정노동자 보호

진단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4년 ‘직장에서의 따돌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직장인의 86.6%가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직장 괴롭힘 1건이 개인과 회사에 초래하는 피해를 비용으로 바꾸면 최소 1,548만원에 달한다고 분석
- 한국 전체 취업자의 70%에 이르는 7-900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고객대면 노동’을 하고 있음. 공공기관, 병원 사업장, 사무금융 등 서비스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객의 폭언, 폭행 등에 의한 정신질환이 심각하고, 자살에 이르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음. 근로기준법은 제8조 폭행의 금지에서 사용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고객 또는 상급자에 대한 폭언, 폭행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음. 사업주들은 오히려 “미스터리 쇼퍼” 등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일상화하고, 진상고객에 대한 인격적 모독을 방지
-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제조업, 건설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 서비스 산업의 증가와 종사 노동자들에 대한 보건조치는 전무한 상태임. 현행 산재보상 기준의 정신질환은 감정노동 등 일상적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산재신청 건에 대하여 승인한 건이 거의 없음.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은 해당 노동자를 파괴시키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산재인정기준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

약속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
 - 직장 내 폭언·폭행을 포함한 지속적인 괴롭힘 처벌 및 산업재해 인정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 감정노동 보호 관련 법제화
 - 감정노동에 대한 사업장 내 예방조치 의무화
 -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및 자살 산재인정 법제화
 -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방지 법제화

5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진단

-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 외에도 재산, 자동차, 성·연령에도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어 실제 부담능력에 비해 과다 부담
 - 송파 세모녀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로 3700만원 전세에 살며 실제 소득이 없는 데도 평가소득(202점) + 재산(66점)으로 보험료 4만7천원 부과. 반면, 수백억 자산가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서울시장 후보 시절 저소득 직장가입자로 둔갑해 건강보험료 2만원만 부과
- 일부 고소득자 및 피부양자는 임금외 종합소득(금융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등)이 발생해도 건강보험료가 미부과 (직장가입자의 14.9%, 피부양자의 11.5%가 종합과세소득 보유)

약속

- 소득(능력)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제로 전면 개편
 - 재산, 자동차, 성·연령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폐지하고 소득 중심으로 부과
 - 전체 지역가입자의 72.8%인 552만 1천 세대가 총 3조 919억원의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 (세대당 평균 월 46,668원의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
- 금융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 등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 평범한 직장가입자(83.3%)는 건강보험료 변동 없음
 - (완전한 소득중심으로 개편시 추가보험료 수입이 더 크므로 오히려 건강보험료를 인하 가능)
 - 근로외 종합소득을 가진 상위 소득계층 16.7%은 건강보험료 월평균 68,460원 인상 효과

〈모든 소득기준 적용시 보험료 인상 인하 세대 현황〉 (국민건강보험 기획단)

(단위 : 천세대, 천명, %)

구분		계(22,138천세대)			직장(14,549천세대)			지역(7,589천세대)			피부양자(20,226천명)		
		인상	인하	무변동	인상	인하	무변동	인상	인하	무변동	인상	인하	무변동
7 (1,687)	세대	3,286	5,521	13,331	2,427	-	12,122	859	5,521	1,209	2,388	-	17,838
	비율	(14.9)	(24.9)	(60.2)	(16.7)	(0.0)	(83.3)	(11.3)	(72.8)	(15.9)	(11.8)	(0.0)	(88.2)

6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두루누리 Ⅱ 신설)

진단

- 현재 고용보험은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자발적 실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거나 전무
- 2015년 기준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의 절반수준에 불과함. 국민연금 가입률의 경우 비정규직은 37%이고 정규직은 82%
- 특히, 시간제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13.3%, 건강보험 17.5%, 고용보험 18.8%에 그쳐 대책마련이 시급

약속

- 「두루누리 사회보험 2」 신설
 - 월소득 14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및 지역가입자에게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동일하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지원
- [현행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 (직장가입자만 지원)]

 -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하여 40%~60%까지 지원 (신규가입근로자 60%, 기존가입근로자 40%)

※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10억원 미만이고, 근로자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원
- 2015년 9월 2일, 김제남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7

휴대폰 통신비 인하

진단

- 우리나라는 전세계 1위의 단말기 가격과 높은 가계 통신비 부담
 - 값비싼 휴대폰, 고가 요금제 = OECD 3위 가구당 가계통신비 월 14만 7천
- 통신3사가 지출하고 있는 수조원에 달하는 마케팅비와 삼성이 주도하고 있는 고가폰(프리미엄폰)중심의 시장 구성이 이러한 문제를 양산
 - 가트너 자료에 따르면 프리미엄폰(고가폰)과 베이직폰(일반폰)은 세계 1위의 가격 형성 (2014.3)
 - 전세계 1위의 단말기 교체율(약 16개월로 1위)로 휴대폰 교체 속도 역시 세계 최고 수준
- 연 7조원에 달하는 기본요금을 의무적으로 부과 (월 1만 1천원 의무 부과)
 - 기본료는 유선통신에서 가입자 선로 비용을 위해 부과된 요금체계인데, 무선통신에서는 가입자선로에 해당하는 설비 없이 무선으로 연결되므로 기본료라는 요금체계 자체가 부당
 - 통신3사는 마케팅비로만 7조원 이상 쓰고 있어 기본요금제 인하 여력은 충분한 상태
 - 결합상품을 통해 독점사업을 강화하면서 소비자도 알수 없는 다양한 요금제로 착시 효과

약속

- 휴대폰 통신비 기본요금 폐지
 - 1인당 월 11,000원, 4인 가구 기준 연간 53만원 가계비 절감
- 모든 국민에게 최저 데이터 요금 1GB 보장
 - 현재 데이터요금제 3만원에서 300MB 보장
- 마케팅비 등 통신비 원가 공개로 통신비 인하
 - 마케팅비 중 단말기 보조금, 대리점 보조금 등 공개
- 알뜰폰 활성화로 휴대폰 단말기 값 거품 제거
 - 대기업의 알뜰폰 사업 진출을 억제하고 제도적 지원
-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석하는 통신비심의위원회 설치해 통신비 가격 조절

8

공기업 · 대기업 임원 임금상한제 도입

진단

- 2014년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최고액을 받는 경영자들의 보수는 24억 5000천만원으로 일반직원들의 35배, 최저임금의 180배. 경영실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보수(한겨레, 2015.4.3)

이름	기업	당기순이익	보수	비 고
김준기 회장	동부제철/동부매탈	-13,410억/-747억	10.3억/12.1억	구조조정 중
장세주 회장	동국제강	-2,298억	14.2억	100억대 비자금 조성
장세욱 사장			11.1억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
박지원 부회장	두산중공업	-483억	17.6억	2014년 250여명 명예퇴직
황창규 회장	케이티	-11,418억	5.1억	2014년 8300여명 명예퇴직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2,054억	26.2억	
조현아 전부사장			14.7억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
최은영 회장	한진해운/유수홀딩스	-4,634억/-197억	57억/12.2억	한진에 경영권 넘김
현정은 회장	현대엘리베이터/로지스틱스	-2,207억/-529억	10.9억/6억	구조조정 중
이재성 전 회장	현대중공업	-17,546억	37억	2015년 15천여 명예퇴직

- 전체적인 소득격차와 임금격차를 해소하려면, 장기적인 조세제도나 복지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나, 단기적으로는 대기업 임원보수 제한을 통해 그 폐해를 일부나마 완화할 필요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에서는 기업 임원들에 대해 최고임금제 도입 논의 활성화
 - 2009년 독일 총선에서 수상 후보로 나선 사민당의 프란츠 발터 슈타인마이어는 임원 임금 상한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20배로 제안. 2012년 프랑스 대선에서 좌파당의 장 뢰 멜랑송 역시 세금제도를 개선해 임원 임금이 중간 소득의 20배가 넘지 못 하도록 하자고 제안

약속

- 공기업/대기업 CEO와 고위임원은 최저임금 연동 임금상한제 도입
 - 2016년 기준 공기업은 10배(약 1억5천만원), 대기업은 30배(약 4억5천만원)로 설정
 - 2014년 기준 4억 초과 근로소득자는 총 11,500명이고 이들의 근로소득 총 8조 9,351억원. 최고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4억 초과분은 4조 3,3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2014년 기준 323개 공기업 중 이사장 연봉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한 곳은 총 130 곳

9

대기업-하청 · 협력업체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진단

- 2012~2014년 대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율과 매출액세전이익율은 4.4~4.7%과 3.0~4.0% 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3.1~3.2%, 2.4~2.7%으로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 집중. 대기업이 누리고 있는 초과이익은 불공정거래에 연유하거나 비용절감 등을 위한 협력기업의 공동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성과를 함께 나누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
- 대기업-하청 · 협력업체간 수익성 격차가 늘면서 기업 간 임금 및 노동조건 격차도 확대
 - 자동차 대기업 직원의 평균 월급에 비해 1차 부품협력업체들의 월급은 절반, 3차 협력업체는 1/3 수준. 전자, IT업종 역시 대기업은 평균 월급이 493만원이나 1차 협력업체는 263만원, 2차 협력업체는 253만원, 3차 협력업체는 172만원 (2013년 한국노동연구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은 원가절감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목표를 달성할 경우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했으나 실효성은 미미. 이에 수탁-위탁 기업 간에 합의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위탁기업(원청기업)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함께 나누는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할 필요

약속

- 위탁기업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배분규칙에 따라 수탁 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 모델인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
 - 하청 ·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관련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 대기업 초과이익 공유의 일정액은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액에 사용하도록 유도
- ※ 초과이익공유제 도입과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대책 병행

10

사회복지세 도입

진단

- 모든 정치세력들이 복지 확대를 주장하나, 그에 걸맞는 책임 있는 복지재정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특히 박근혜 정부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영유아 보육 완전 국가책임제, 고교무상교육 실시 등 대표적인 복지공약을 잇따라 파기
-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민부담률이 매우 낮는데, 2013년 기준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GDP 24.3%에 불과해 OECD 평균 34.1%에 비해 무려 9.8%나 부족함. 2015년 GDP 약 1,546조를 적용하면 OECD 기준 약 151조원이 부족분인데, 이는 2015년 중앙정부 복지지출(보건·복지·고용) 120조원 보다 더 많은 재원
- 정의당이 도입하려는 사회복지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추가로 부가되는 세금으로(surtax), 여기서 조성되는 세입은 모두 복지에 사용되는 목적세
 - 이미 우리나라는 1970년대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세, 80년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세, 1990년대 WTO 가입에 따른 농어촌 지원을 위한 농어촌특별세 등의 목적세 도입

약속

- 안정적인 사회복지 재정을 위해 사회복지세 및 사회복지교부금 신설
 - 사회복지세법 제정(2013. 6. 27 법안 발의),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액의 10~20% 해당하는 사회복지세 신설 시 연간 20조원의 공공복지재원 마련

11

증여세 재계산 제도

진단

- 한미약품의 사주가 지난 2012년 미취학 아동인 손주 7명에게 각각 증여한 25억원 상당의 주식 가액이 최근 신약개발에 따라 주가가 폭등한 1천억대로 급증, 금수저 논란 기증
 - 사주 등 회사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있거나 내부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 신약개발과 같은 기업가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공개 정보를 증여세 회피수단으로 악용할 여지
- 2013년 기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예금계좌는 1천320개로 예금액이 2,012억원에 달하고, 심지어 5억원 이상 예금계좌도 92개로 예금액이 1,696억원
- 최근 5년간 18세 미만 미성년자 3,717명에게 증여된 부동산만 1조 4254억 원 2014년 기준 10세 이하 임대사업자는 817명이고, 10세~20세 임대사업자는 2,288명

약속

- 증여 이후 주식이나 부동산 폭등 시 증여세 재계산제도 시행 강화
 - 회사 대주주나 임원 등이 해당 주식을 증여한 이후 일정기간 이내에 주식가격이 폭등할 경우 그 시점에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는 “증여세 재계산 제도”를 도입
- 할아버지, 할머니가 미성년자 등 손자, 손녀에게 바로 상속 및 증여를 하는 세대생략 상속·증여의 경우 할증과세를 일괄 50%로 강화

〈상속·증여세 강화방안 적용 시 한미약품 손주의 증여세 부담액 추정〉

구 분	현 행	정의당안	
	세대생략 할증 30%	재계산만 적용	재계산 + 할증 50%
주식가액	25억원	1천억원	1천억원
과세표준액	24억 80백만원	999억 80백만원	999억 80백만원
총납부세액(합계)	10억 81백만원	693억 42백만원	742억 95백만원
산출세액	8억 32백만원	495억 30백만원	495억 30백만원
세대생략 할증과세액	2억 50백만원	198억 12백만원	247억 65백만원

주) 손주 1명에 대한 총 증여액을 기준으로 추정. 증여시점인 2012년 기준 할증과세 30% 적용

12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

진단

- 2014년 15세 미만 어린이의 입원 병원비는 1조 7천억원, 환자 본인부담금 5,215억원

[2014년 15세 미만 입원 진료비 현황] (자료 : 통계청)

구 분	진료비 총액	건강보험급여비	환자 본인부담금	
			법정본인부담	비급여본인부담
입원병원비	1조 7,053억	1조 1,901억	1,306억	3,846억
총 병원비	6조 3,937억	3조 8,823억	1조 1,606억	1조 3,508억

[2014년 15세 미만 4대 중증질환 진료비 현황] (자료 : 통계청)

구 분	진료실 인원	총병원비	건강보험급여비	본인부담(법정+비급여)
암환자	5,149명	806억	592억	214억
뇌혈관질환	399명	46억	34.5억	11.5억
심장질환	2,379명	396억	311억	85억
희귀난치성	31,119명	1,259억	1,071억	188억
합 계	40,417명	2,618억	2,042억	576억

- 2014년 진료비(건강보험 급여)가 연간 1천만원 이상인 어린이 17,424명, 1억 이상 1,008명
- 「2014년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에 따르면, 10세 미만의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84.9%, 10~19세의 경우 80%. 전체 민간의료보험 가입율 74.3%를 훨씬 상회
 - 민간의료보험료로는 가입가구원 기준으로 10세 미만 월평균 57,056원, 10~19세 49,060원

약속

-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 도입하고 우선 병원 입원비부터 전액 국가 책임
- 보험료 인상 없이 국민건강보험 흑자분 17조원의 3%를 재원으로 사용
 - 국민건강보험 흑자분 17조원의 3%면 어린이 병원입원비 본인부담금 5,125억원 해결

13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 핀란드형 마더박스

진단

- 고령산모의 출산이 증가하고, 인공수정의 증가에 따른 다태아 임신 증가로 산전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출생아수 감소에 따라 태아기부터 건강한 아기를 출생하고자 하는 관심이 커져 산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2012.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 서울시는 2013년 3개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서울시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현재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으로 명칭 변경)을 올해 20개구로 확대해 가고 있음
 - 호주시드니에서 효과가 입증된 프로그램으로, 영유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는 인식 하에 간호사가 지속적인 가정 방문을 통해 산모 및 아이의 건강관리, 산모의 양육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건강관리사업

약속

- 모든 출산가정에 핀란드형 마더박스 선물
 - 출산 시 양육에 필요한 100만원 상당의 종합물품을 국가가 직접 지급
-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제도 도입
 - 1단계 : 전국 건강취약지역 → 2단계 : 전국 확대

[참고]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 ① 보편적 방문 서비스 : 모든 임부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 모유수유 교육, 신생아 달래기·돌보기 교육, 신생아 건강평가, 산후우울평가, 사회심리평가
- ② 지속적 방문 서비스 : 25회 방문 (분만 전 3회, 출산 후 만 2세까지 22회)
 - 산전 ~ 만2세까지 동일한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엄마와의 파트너십을 기초로 건강 발달, 양육역량 강화, 그룹활동(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사회서비스 연계(소아정신과적 문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다른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방문유형평가 항목중 2개 이상 해당된 대상자 또는 방문간호사 자체평가 통해 다각적으로 문제가 필요한 가족 선정

14

한국 탈핵 2040

진단

-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은 전력수요 과다예측 → 대규모 발전설비 확대 → 공급과잉에 따른 전력수요 충족을 위해 전력소비 확대의 악순환 반복
-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핵발전소 보유국이며, 핵발전소 밀집도는 세계 2위, 10기 이상의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국가 중에서 핵발전소 밀집도는 세계 1위
- 반면, 재생에너지공급비중은 OECD 최하위인 34위이며, OECD 34개국의 재생에너지공급 비중은 평균 17.4%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2.1%에 불과

약속

- 2040년까지 핵발전소의 점진적 축소를 통한 한국탈핵 실현

도약기	전환기	완성기
2016~2020년	2021~2030년	2031~2040년
핵발전소 2기 폐쇄	핵발전소 10기 폐쇄	핵발전소 13기 폐쇄

※ 설계수명이 만료된 노후원전 폐쇄를 원칙으로 하고, 완성기에는 모든 핵발전소 폐쇄

- OECD · 독일 수준의 전력수요관리 및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발전용연료 불공정과세 조정
- 대형 신재생(공급의무화) 및 소형재생(발전차액지원) 등 재생에너지의 다차원적인 발전
 - 100kW이하 태양광, 비태양광 1MW이하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비율 확대 및 에너지다소비산업 재생에너지 의무소비제도 도입
- 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 금지, 고준위핵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 총량 결정 이후 진행
- 방사능 피폭 취약계층인 영유아·어린이·청소년 건강을 위해 방사능안전 공공급식법 제정
- 국가공공토론기구를 구성해 환경성과 사회성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수립
- 기후정의세 도입, 기후변화영향조사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15

또 하나의 가족, 동물복지

진단

- 우리나라의 법률체계상 동물은 생명을 지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물건(동산), 형법상 재물에 해당되어 타인 소유의 동물에게 해를 가한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
- 1988년 오스트리아와 1990년 독일, 2002년 스위스 등은 민법을 개정하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 권리의 주체와 객체로만 분류하던 2분법적 체계에서 권리의 주체인 사람과 권리의 객체인 물건, 그리고 생명이 있는 동물로 분류하는 3분법적 체계로 전환
-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전체의 21.8%에 달함. 「201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물고통 최소화를 위한 법제화에 찬성하는 비율이 94.1%로 나타나는 등 국민들의 생명윤리 의식 강화
- 동물복지는 동물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고 고통의 최소화되는 행복한 상태로, 동물에게 적절한 주거 환경의 제공, 영양분의 제공, 질병 예방 및 치료, 학대금지 등을 포괄

약속

-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 개정
 - “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②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 동물복지법 법제화 및 실험동물법 등 관련 법률에 동물보호 및 복지적 가치 강화
 -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전부개정, 동물정책기본법으로서의 위상과 역할 강화
 - 동물살상금지 명시 및 동물학대유형 구체화, 길고양이/동물원동물/야생동물 등 보호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동물복지행정 일원화 및 동물구조핫라인 설치
-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에 우리동네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 공공기관 ‘육류 없는 채식의 날’ 실천으로 채식식단 선택권 부여
- 감금사육(공장식축산)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10개년 계획 마련

16

2025년 한국형 모병제 전환

진단

- 징병된 병사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부과하는 비합리성
 - 전방 초소의 경우 20대 초반의 동년배 소초장(소·중위), 부소초장(하·중사), 병사 등
 - 이로 인해 노크귀순(2013년), 숙박귀순(2015년), 목함지뢰사건(2015년)과 같은 사건 초래
 - 징병 병사에게 중요한 전투임무를 부여한 결과, 재래식 병력집약적 전근대성 장기간 지속
 - 전쟁이 일어나 제1방어선에서 선방어개념 고수시 군작전계획상 전방병력의 40% 손실
- 부대배치와 직무에서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이 박탈된 비전문가 집단
 - 지상군 대부분이 개인의 희망, 선호부대, 선호 직능을 고려하지 않고 근무환경 부여
 - 전시에 인명이 경시되는 소모전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아전의 전투원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
 - 전문교육과정이 없이 단순반복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 조직의 효율성이 극도로 저하

약속

- 2025년까지 전방부대 전투임무를 직업군인으로 전환하는 한국형 모병제(징병+모병 혼합)
 - 간 부 : 장교 10만명, 부사관 10만명
 - 징집병사 : 10만명, 의무복무기간 6개월, 교육과 훈련, 행정·지원 업무만 수행
 - 전문병사 : 10만명, 징집 의무복무자 중에서 선발, 4년 의무복무 후 간부지원 자격 부여
 - *전문병사 인건비에 연간 2조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나 국방개혁으로 예산마련 가능
 - 현재 지상군 전방경계 소요병력 10만 명에서 징집병사를 전문병사로 대체
- 고숙련 직업군인 위주로 병력을 재편하면서 방어개념을 현대적으로 전환
 - 전방 상시 경계투입 병력을 최소 필수인원만 잔류시키고 후방으로 재배치
 - *현대 무기체계의 발전으로 후방에서 장사정 무기 동원이 가능
 - *전방전투지역(휘바 알파)후방으로 병력을 재배치하면 전시 초기 병력 손실율이 40%에서 17%로 감소 (2013년 김병관 예비역 대장의 연구)
 - 전방경계 과학화로 인력 위주에서 장비 위주로 경계 및 방어개념 전환

17

청년 취업농 지원제도 도입

진단

- 정부의 농업인력육성은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이 주요정책이나 매년 1,500명 내외로 목표한 5,000명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젊은 사람들이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의 불안정임. 젊은 후계인력의 농업·농촌 유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농업소득이 뒷받침 되어야함.

약속

- 매년 신규농업인력 5,000명 육성으로 지역공동체 복원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유지
- 일본이나 유럽처럼 새로 농사를 시작하는 후계농업인들이나 승계농, 창업농 등에게 최대 3년간 매월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취업농 지원제도> 도입
 - 지원대상) 만 18세~45세의 신규자 또는 영농종사 3년 이하의 청년
 - 지원내용) 준비기간(최대 1년) 및 독립기간(최대 2년) 등 최대 3년간 월 100만원 지급
 - ▶ 준비단계는 영농을 목적으로 상담 및 연수를 받을 경우 훈련수당으로 지급
 - ▶ 독립단계는 영농계획을 제출하고 소득이 안정화될 때까지 소득보전 형태로 지급
 - 지원조건) 취업농은 지원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영농종사 의무를 이행
- 농지(논, 밭, 초지) 시설(비닐하우스, 축사), 농기계 등의 농업생산기반을 무료 혹은 저리에 중장기 임대(최장 10년 이상)해주는 리스제도를 조기 도입

[정부의 청년창업농 vs 정의당의 청년취업농]

정부의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구분	정의당의 청년취업농 지원
만18세~39세 영농경력 3년 이내 신규 영농창업(예정)로서 '청년 농산업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자	지원대상	만18세~45세 신규자 또는 영농종사 3년 이하의 자
2016년 300명 선발	지원규모	매년 5,000명 육성
창업기간(준비포함) 동안 최대 2년간 월 80만원 지급	지원내용	준비기간(1년), 독립기간(2년)을 포함해 최대 3년간 월 100만원 지급

진단

- 정치부문의 윤리성은 다른 부문보다 높아야 하며, 국회에 대한 신뢰는 결국 사회변화를 선도하는 국회의 정치적 역량임. 한국의 낮은 정치 신뢰가 사회 진보와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국회의원이 선량이 되지 않고서는 다른 부문의 변화를 요구할 수 없음.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국회에게 행정부를 감사견제하고 사회적 갈등 해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19대 국회의원만 15명에 달하는 등 우리 정치의 고질병인 부패한 ‘돈정치’, 국회의원 자녀와 친인척, 인턴 및 지인, 지역구 인사 자녀에 대한 취업 청탁 비리인 ‘금수저정치’, 의원실 보좌직원 열정페이와 월급상납, 쌀 판매나 시집 강매 등 ‘부정축재정치’, 국회의원 본인 및 아들 병역기피와 소득 세금 탈루 등 ‘무자격정치’, 성추행과 논문표절 같은 ‘부도덕정치’ 등이 대표적인 불량정치임
- 5대 불량 정치 등 인해 의원직을 상실해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어도, 해당 후보를 공천했던 정당은 그 책임을 전혀 지고 있지 않음

약속

- 20대 총선 5대 불량정치 공천 배제 등 ‘국민 눈높이 공천’ 실시
- 재보궐 공천 포기와 선거비용의 50% 부담 등 ‘불량공천 무한책임제’ 실시
 - 부정부패 등의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공천 포기
 -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안 해당 선거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 삭감
- 20대 국회 개원 즉시 불량정치 퇴출과 불량공천 무한책임제 관련 법안 입법화
 - 불량공천 무한책임제를 위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 부정청탁 등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김영란법 전면 개정
 - 병역기피 등 금수저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

국민 눈높이 공모 공약

우수상 · 장려상

정의당은 지난 1월 7일부터 30일까지
'국민눈높이' 총선정책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 당선작으로 뽑힌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국민들과 소통하며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제안취지

- 최근 구직자, 이른바 ‘취준생(취업준비생)’에 대한 ‘채용 갑질’이 문제가 되고 있음. 채용과정에서 평가를 빌미로 직원들이 해야 할 영업 업무를 떠맡기는가 하면 자기소개서로 회사의 전략을 요구하기도 함. 그러나 채용은 없으며, 취준생들은 열정과 아이디어, 노동력을 착취당한 채 다시 채용시장에 내몰리게 됨
- 구직자는 채용이 확정될 때까지 합격 시 자신의 초봉이 얼마인지 알지 못함. 기업은 수많은 면접자들에게 아이디어 제사를 요구하고선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음. 불합격자들은 자신의 채용 여부도 확인하지 못한 채 오매불망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음.
- 학생과 직장인의 경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취준생들은 분명 사회적 약자임.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얼마 전 마련되었지만,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함

정책내용

- 취업준비생 보호법(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제안
 - 제1조(목적)을 개정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안 목적 명시 필요
- 채용 모집 과정에서 연봉(초봉) 공개 의무화
 - ‘연봉, 업무내용 등의 근로조건 정보는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 채용을 빙자한 노동력 착취 제한 (제4조 제2항 개정)
 - ‘구인자는 채용 과정을 이유로 구직자에게 부당한 노동을 요구할 수 없다’
 -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불합격 통보 공지 의무화, 필기전형 점수 공개
 - ‘구인자는 불합격자에 대해서도 불합격 여부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면접 응시자에 대한 최저교통비 제공 의무화
 - ‘구인자는 면접 과정에 참여하는 구직자에게 최소한도 이상의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안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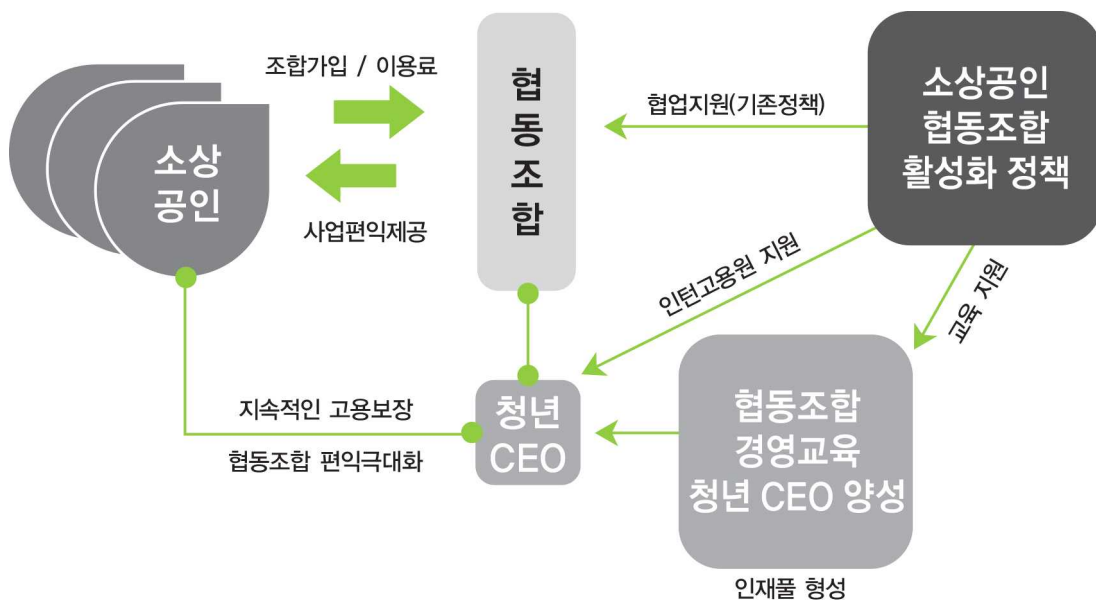
- 군 의무복무는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서 공동체의 존립을 위한 국민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운용되고 있음
- 그럼에도 군 의무복무 사병들은 2016년 1인가구 월 최저생계비 64만 9,932원에도 못 미치는 월 19만 7,000원(2016년 병장 월급 기준)의 봉급을 받고 복무 중이며, 군복무로 인해 학업 및 취업 활동 등이 단절되는 사회적 공백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국방전직교육원은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에게 제공하는 5개 과정의 체계적인 진로·취업 교육을 단기복무(5년 미만)에 해당하는 부사관급 전역예정자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있음
- 이에 군 의무복무 사병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취업 컨설팅 과정을 신설하고 부사관급 이상 전역예정자에 대한 전직 지원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군복무로 인한 학업·경력 단절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며 나아가 군 장병의 원활한 사회 진출·적응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책내용

- 군 의무복무 사병에 대한 체계적인 진로·취업 컨설팅 실시
 - 현행 국방전직교육원 내 컨설팅 과정 신설
 - 군복무 기간 18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시행 (시행 초기 대학 미재학 사병 우선 지원)
 - 사단 단위로 진로·취업 컨설팅 전문 강사를 파견, 1박2일(공휴일)씩 주 1회 총 12주 실시
- 부사관급 이상 전역예정자에 대한 전직지원 확대 및 관련 교육예산 증액
 - 단기복무(5년 미만)에 해당하는 부사관급 전역예정자도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방전직교육원 내 소집교육 대상 분류를 '장기복무자/중기복무자/부사관급 단기복무자/단기복무 사병'으로 수정 (현재 '장기/중기/단기'로만 분류)

제안취지

-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로 6천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설립됨. 이 중 소상공인협동조합이 60% 이상으로 한국사회 자영업자가 겪는 고통의 현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 사업자협동조합은 77.5%이며 프리랜서 협동조합 등 사실상 노동자협동조합을 제외하면 약 60%가 소상공인협동조합으로 추정(기획재정부 협동조합 2차 실태조사, 201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연 600억을 출연하여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을 통한 협업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그러나 워낙 영세한 규모이기 때문에 전문경영인 채용에 소극적이며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공동구매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또한, 협동조합 경영에 도전할 수 있는 인재가 극히 드문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경영인을 고용하고 싶어도 인재풀이 없는 한계가 있음
- 청년실업의 대안으로 무분별한 창업정책을 남발함해 청년들을 창업시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문제임. 새로운 고용모델로서 소규모 협동조합 기업에서 전문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형성함



정책내용

- 청년 협동조합 경영자 양성 교육
 - 광역시도별 <협동조합 청년경영인 양성센터>를 설치하고 취업연계형 교육(3~6개월) 진행
- 소상공인협동조합 청년인턴 지원
 - 센터 교육을 이수한 청년인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협동조합 인턴십 프로그램 제공
 - 3개월 인턴십 운영 후 성과 달성 시 3개월 추가 지원 (조합에서 계속 고용 조건)
 - 조합별로 1~3명 규모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
- 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화 성과 연계 지원
 - 협업화 지원(기존 정책사업)의 성과 목표(조합원인 각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등)에 조합 자체의 고용창출 성과 목표를 제시하여 우수 협동조합 표창 및 후속 지원

장려상 아동청소년 국공립박물관·과학관 무료입장(요약)

제안취지

-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아이들에게 박물관 등 입장료를 받지 않음
-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들과 함께 박물관, 역사유적지, 과학관 등을 자주 가며, 요즘에는 지자체에서도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있음

정책내용

- 아동 청소년 국공립 박물관·과학관 무료 입장 법제화
 - 학부모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후 무료 입장 실시
- 농산어촌 거주 아동 청소년부터, 유초등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 20대총선 10대정책
- 정의당VS새누리당
- 공약발표자료
- 19대국회의정활동 보고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정당명: 정의당]



1.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
2.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3. 재벌개혁과 '을' 살리는 경제민주화 실현
4. 정의로운 조세개혁으로 서민 복지재정 확충
5. 정의로운 복지로 OECD 평균복지국가 달성
6. 농촌과 지방이 잘 살아야 진짜 선진국
7. 한국탈핵2040과 국토환경 보존, 생명존중 안전사회
8. '중견 · 평화 · 가교국가'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달성
9. 인권사회(여성 · 다문화 · 빈민 · 성소수자)와 언론문화사회
10. 국민을 닮은 국회, 잃어버린 민주주의 회복

정책
순위

1.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

내용

① 2020년까지 국민 평균월급 300만원 실현

가. 현황과 문제점

-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 의존 경제에서 낙수효과는 더 이상 없음. 이윤주도 성장 체제에서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건 ‘고용 없는 성장’, ‘임금 없는 성장’. 다양한 형태의 비 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222만명에 달하며, 해고는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음.
- 특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4%이나, 1인당 피용자 보수총액 인상률은 1.4%에 그치고 있음.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실질임금 인상률은 실질생산성 증가율만큼 올라가지 않았음.
- 전체 노동자 중에서 중간 이하는 2005년에 751만6천명(50.2%)에서 2010년에 884만4천명(51.9%)이 된 뒤 2015년에 1091만2천명(56.5%)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특히 평균임금 이상 받는 노동자들은 지난 10년간 임금이 108만원 인상되었으나 저임금이하 계층은 25만원 인상되는데 그쳐 임금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음

나. 목표

- 2020년까지 국민 평균월급 300만원 실현

[국민월급 300만원 공약에 따른 4년 후 임금구간별 변화]

현재 (2015년 기준)			4년 후 (2020년 기준)		
구 분	인 원	2015년	2020년	총인상액	연평균인상률
저임금 이하	492만명	85만원	155만원	70만원	16.2%
전일제	288만명	106만원	176만원	70만원	13.5%
시간제	204만명	57만원	127만원	70만원	22.2%
저임금~중위	599만명	171만원	241만원	70만원	8.9%
중위~평균	73만명	216만원	286만원	70만원	7.3%
평균 이상	767만명	369만원	439만원	70만원	4.4%
합계/ 전체평균	1,931만명	230만원	300만원	70만원	6.9%

다. 이행방법

- ① 최저임금 시급 1만원으로 인상과 실질적인 적용 확대(☞정책2 참조)
- ②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한 '좋은 일자리' 보장(☞순위2 참조)
- ③ 공기업과 대기업 임원 임금상한제 도입(☞정책2 참조)
- ④ 초과이익공유제 도입과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정책3 참조)
- ⑤ 성별, 고용형태별 차별금지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정책4 참조)

라.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② 최저임금 1만원으로, CEO 등 고위임원 임금상한제

가. 현황과 문제점

- 2016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월 환산 1,260,270원)으로 2013년 미혼단신 노동자 실태생계비 약 1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2014년 기준 법정 최저임금은 5인 이상 사업체 상시고용 노동자 정액급여 대비 41.1%, 임금총액 대비 32.7%에 불과함.
- 2013년 최저임금은 전일제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35%, 중위임금 대비 43%에 불과해 비교 가능한 OECD 회원국 중 각각 20위, 21위로 하위권. 2015년 8월 기준 최저임금 수혜자(최저임금의 90~110%)는 182만명이고 최저임금 미달자는 222만 명(전체 노동자의 11.5%)으로 이들은 모두 취약계층 노동자였음.
- 2014년 10대 재벌 등기이사 1인당 평균연봉은 16억 81백만원이며, 전체 정규직 노동자 평균임금은 35백만원, 최저임금은 13백만원임. 2014년 8월 기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서 전체 노동자 평균연봉은 2,676만원(월 223만원)으로 188명의 등기이사 평균연봉과 62.8배 차이임.
- 2014년 기준 4억 초과 근로소득자는 총 11,500명이고 이들의 근로소득 총 8조 9,351억 원. 최고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4억 초과분은 4조 3,3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또한 2014년 기준 323개 공기업 중 이사장 연봉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한 곳은 총 130곳임.

나. 목표 및 이행방법

①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최저임금 결정절차 개혁

- 최저임금법 개정(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함.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공익위원을 선출하고, 회의 공개 등 결정 절차 개선함)

② 공기업/대기업 CEO와 고위임원은 최저임금 연동 임금상한제 도입

- 최고임금법 제정
대기업 고위임원은 최저임금의 30배(약 4억5천만원)로 상한제 실시
공기업 이사장 등은 최저임금의 10배(약 1억5천만원)로 상한제 실시
국회의원과 장관 등은 최저임금의 5배(약 7천500만원)로 상한제 실시

다. 이행기간

- 20대 국회내 2019년까지

③ 재벌 일가의 특혜와 기득권 근절

가. 현황과 문제점

- 2012~2014년 대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율과 매출액세전이익율은 4.4~4.7%과 3.0~4.0%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3.1~3.2%, 2.4~2.7%으로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 집중. 대기업이 누리고 있는 초과이익은 불공정거래에 연유하거나 비용절감 등을 위한 협력기업의 공동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성과를 함께 나누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함.
- 대기업-하청 협력업체간 수익성 격차가 늘면서 기업간 임금 및 노동조건 격차도 확대. 자동차 대기업 직원의 평균 월급에 비해 1차 부품협력업체들의 월급은 절반, 3차 협력업체는 1/3 수준. 전자, IT업종 역시 대기업은 평균 월급이 493만원이나 1차 협력업체는 263만원, 2차 협력업체는 253만원, 3차 협력업체는 172만원 (2013년 한국노동연구원)

- 2013년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은 OECD 평균 보다 중졸이하는 12.1% 높고, 고졸은 8.4%, 대졸은 17.4% 낮은 수준. 고학력 여성은 자녀출산과 양육 등 경력단절로 인해 취업을 포기하고, 저학력 여성은 생계를 위해서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취업.
- 2013년 우리나라의 남녀간 임금격차는 36.6%로 남자가 100만원 받을 때 여성은 63만원의 임금 수준. 반면 OECD에서 조사한 11개국의 남녀간 임금 격차는 평균 15.5% 수준임.

나. 목표 및 이행방법

① 원하청 초과이익공유제 실시와 초과이익 공유시 세제 지원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및 운영방안)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공유한 초과이익에 대해 30%의 세액공제 적용)

② 성별, 고용형태별 차별금지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비정규직 고용 개선으로 여성 일자리 개선
- 성별 고용·임금실태 공시제 도입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 공기업·대기업에 5% 청년의무고용 시 30% 이상 여성할당 병행
- 임신휴직 도입, 파파쿼터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확대

다.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④ 재벌 대기업 규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인 지원과 육성

가. 현황과 문제점

- 현재 고용보험은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고

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자발적 실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거나 전무한 상황으로 전국민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임.

-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 비중이 매우 낮아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이마저도 감소한 상황임. 특히 시간제의 사회보험 가입 비중은 국민연금 13.3%, 건강보험 17.5%, 고용보험 18.8%에 그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나. 목표 및 이행방법

①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두루누리사업Ⅱ도입

- 특수고용노동자(1인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②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및 지원기간 확대

- 특수고용노동자,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등 고용보험가입자로 전환
- 자발적 이직의 경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실업상태일 경우 구직급여 지급
- 실업급여 기간 확대 : 최대 1년

③ 실업부조(구직촉진수당) 도입

-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 단 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등
- 최저임금액의 80%, 최대 1년 지원 (※ 청년실업자의 경우 '청년디딤돌급여'로 별도 지원)

다.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라. 이행기간

① 두루누리Ⅱ도입

내용

- 1인 자영업자고용보험료 지원 2016년 24억 → 2020년까지 258억원
- 국민연금료 지역가입자 지원 연 5천억원
- 재원조달방안: 사회복지세 도입 등 증세

② 고용보험 실업급여

- 추가 재정 소요: 연 3조원
- 재원조달방안: 고용보험료 인상

③ 실업부조(구직촉진수당) 도입

- 추가 재정 소요: 연 2조원
- 재원조달방안: 사회복지세 도입 등 증세

정책 순위	2.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내용	① 비정규직 사용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일자리 정상화 가. 현황과 문제점 • 2015년 8월 통계청 기준으로 우리나라 비정규직 868만명(전체 노동자의 45.0%). 그러나 사내하청노동자는 정규직으로, 특수고용노동자는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규모는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 • 2014년 8월 임시직 비율은 21.7%로 OECD 평균 임시직 비율인 11.1%의 2배. 나. 목표 및 이행방법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간접고용 형태도 차별적 처우 금지 • 기간제 사용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사용기간 역시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 • 파견법 3단계 폐지: 파견대상업무 단계별 축소 → 하도급업무 등 직업안정법 적용 확대 →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파견업 금지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 확대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다.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② 공공부문 대기업부터 정규직 전환으로 비정규직 절반 감축 가. 현황과 문제점

- 201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33만명. 2015년 3월 현재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182만명, 10대 재벌기업 비정규직은 49만명.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세액공제가 도입되었고, 19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노력으로 정규직 전환 1인당 세액공제액이 일부 확대되었으나 유인효과는 제한적임.

나. 목표 및 이행방법

- 202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비정규직 감축
 - 2015년 현재 863만명인 비정규직을 매년 107.8만명씩 정규직으로 전환해 4년내 절반인 431만명으로 축소
- 공공기관 간접고용 상한제, 간접고용 현황 공시제 도입. 상시 지속적 일자리면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 원칙
-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확대

다.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③ 5시 칼퇴근법 도입으로 저녁이 있는 삶

가.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2014년 연 2,240시간으로 OECD 중 멕시코에 이어 2위. OECD 평균(1,770시간)에 비해 354시간, 가장 짧은 독일(1,302시간)보다 930시간 더 일하는 상황.
- 법정 초과근로한도(주52시간)로 제한하면 최대 62만개 일자리 창출. 유럽연합 지침대로 주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일소하면 일자리 105만개 창출 가능.

나. 목표 및 이행방법

내용

- 주당 최장 68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 고용노동부의 탈법적 행정해석 시정
-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실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하는 근로기준법 독소조항 개정
-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5시 칼퇴근법(9to5) 도입
- 연 1,800시간 노동시간상한제 관련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창출 지원법」 제정
- 하루에 한시간 쉼 더 일하고 주 4일만 근무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제 도입

다.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④ 선진국형 연차휴가 한달 도입으로 휴식이 있는 삶

가.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 유급휴가 제공. 반면, ILO 관련 협약에 따르면 선원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에게 1년 근속기간에 대해 3주 이상 휴가 부여 및 2주간 최소 휴가기간 명시. 유럽연합은 1년에 최소한 4주의 휴가 제공. 독일은 6개월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18일의 연차 제공.

나. 목표 및 이행방법

- 모든 노동자에게 연간 30일 이상 유급휴가 보장
-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공휴일/국경일 유급휴일화
-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6개월 이상 재직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 부여
- 입사 첫해부터 여름휴가 1주일 의무제 실시, 최소 2주 휴가제 도입
-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공휴일제도 도입

다.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⑤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감정노동자 보호

가. 현황과 문제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4년)에 따르면, 직장인의 86.6%가 괴롭힘을 당한 적 있음.
- 이미 스웨덴은 1993년 ‘직장괴롭힘 조례’ 채택, 핀란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직장 괴롭힘과 기타 부적절 행동에 관한 특별조항’ 추가. 국제노동기구는 직장내 괴롭힘을 직장 내 폭력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음.
- 고객대면 노동자가 7~900만 명임. 병원, 사무금융 등 서비스직 노동자들은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자살에 이르기도 함. 게다가 오히려 사업주들이 “미스터리 쇼퍼” 등으로 노동자를 감시하고, 고객의 인격적 모독을 방치하고 있음.
-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인정기준 역시 정비되어 있지 않음.

나. 목표 및 이행방법

-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
 - 직장내 폭언 폭행을 포함한 지속적인 괴롭힘 처벌 및 산업재해 인정
 -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 감정노동 보호 관련 법제화
 - 감정노동에 대한 사업장 내 예방조치 의무화
 -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및 자살 산재인정 법제화
 -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방지 법제화

다.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⑥ 공기업 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와 기회균형채용

가. 현황과 문제점

- 2015년 9월 청년(15~29세) 실업률 8.5%, 청년 실질실업률 작년 상반기 22.4%
- 현행「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3% 고용의무 부과 중.

나. 목표 및 이행방법

-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대기업에 매년 정원의 5%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
- 2014년 공공부문 정원 30만명 기준 5% 할당 시 약 1.5만개 일자리
- 2014년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 459만명 기준 5% 할당 시 약 2.3만개 일자리
- 청년고용 인원의 일정 비율을 고졸 이하, 전문대 및 지방대 졸업자 등에게 할당하고, 여성 비율도 30% 이상으로 하는 기회균형채용제도 병행

다.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⑦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디딤돌급여 지급으로 구직활동 지원

가. 현황과 문제점

- 지난해 청년 취업애로계층은 116만명. 반면, 재작년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청년은 29.3만명에 불과. 고용노동부의 ‘청년성공패키지’는 신청자가 6만 7천명에 불과. 80만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공식적인 실업안전망 밖에 있음.

나. 목표 및 이행방법

내용

- 15~34세 미취업자 중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청년디딤돌급여 지급
-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월 50만원, 연간 최대 540만을 제공하는 청년급여는 청년세대의 위기에 특성화된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임.
- 민간위탁 학원 중심의 정부 정책과 달리 공공 위주의 내실 있는 직업훈련과 연계
- 자발적 이직자와 아르바이트 재학생,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 1년 미만 퇴직자에게도 퇴직금 보장

다.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정책 순위	3. 재벌개혁과 ‘을’ 살리는 경제민주화 실현
내용	①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금산분리 강화 가. 현황과 문제점 •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순환출자가 상당수 감소하였으나 순환출자 해소가 재벌의 소유구조의 개선을 가져왔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61개 대기업집단 중 순환출자가 있는 경우는 8개 그룹, 이 중 순환출자가 총수의 지배권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는 현대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 현대산업개발 등 3곳에 불과 • 비지배주주의 감시기능 강화 관련 소액주주 등이 독립적으로 사회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집중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재계 반발로 제도화되고 있지 못한 상황 • 금산분리 강화 관련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은 진척이 없으며, 산업자본이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축소하도록 「은행법」을 개정하였으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등 금융개혁을 빌미로 관련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음.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하였으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비판 제기 나. 목표 및 이행방법 ① 3년 내 기존 계열사간 순환출자 해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 ②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및 소액주주/근로자 대표 추천 이사 선임 - 상법 개정 ③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상법 및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

	④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공익적 의결권 행사 강화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 ⑤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및 제재방안 강화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다.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② 재벌 대기업의 갑질(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내용 가. 현황과 문제점 • 불공정한 갑을관계의 대표적인 6대 갑질은 ①대리점업체의 밀어내기 판매 강요 행위, ②가맹점업체의 고가 인테리어 강요 행위, ③제조하도급에서 부당한 원가산정 요구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④건설하도급에서 추가공사비 미정산 행위, ⑤대형유통점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반품 행위, ⑥기술설명회 등을 빙자한 기술 편취와 탈취 행위 등 • 이와 관련 입법화는 △ 대형유통업체의 납품 입점업체와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등은 부분적 반영,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조달청장에게도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질,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하도급법에만 일부 적용하고 집단소송제 도입은 미처리, △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는 미처리 등의 문제 나. 목표 및 이행방법 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 등 징벌적 조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손배 적용범위 확대 및 한도 증액)
--	--

② 공익적 시민단체 고발권 부여 및 집단소송제 도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

③ 소비자 보호 및 피해 당사자 권리 강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불공정거래 피해자 해당행위 금지 청구제)

- 소비자기본법 개정(소비자보호기금설립 및 피해규제 명령제)

다.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③ 재벌 일가의 특혜와 기득권 근절

가. 현황과 문제점

- 재벌의 사익편취 행위는 이사 또는 총수일가가 지배권을 이용하여 기업의 이익이나 자산을 빼돌리는 행위로, 부당주식 거래와 회사기회 유용 일감몰아주기가 대표적임. 특히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는 재벌 일가의 '편법 증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왔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임. 2015년 경제개혁연구소 분석에 의하면 삼성 현대차 등 5대 그룹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와 회사기회 유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이 13조 8,088억원으로 추정됨. 그럼에도 2015년 기준 삼성 현대차 등 5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50%가 넘는 계열사가 112개에 달하고 있음.
-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과 조현준 사장은 분식회계, 탈세, 횡령, 배임, 위법 배당 등 7939억원 규모의 비리 혐의로 기소되어 올해 1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됨. 한화 김승연 회장은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201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최종 선고 받음. 이재현 CJ 회장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 받음. SK 최태원 회장은 계열사 자금 465억을 횡령함 혐의로 2014년 징역 4년을 최종 선고 받았으나, 2015년 생애 두 번째 사면을 받아 형기 중에 풀려남. 또한 재벌 일가는 형기 중에도 일반 국민과 달리 황제면회에 이어 형집행 정지나 가석방 또는 특별사면을 받고 있음.

나. 목표 및 이행방법

① 재벌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행위 근절

- 상속·증여세법 개정(정상거래비율, 한계지분을 차감 없이 전제 적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규제대상 지분 요건 20%로 하향)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업무상 배임· 횡령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적용)

② 조세포탈, 횡령, 배임 행위 형량 강화 등 유전무죄 근절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50억 이상 배임 횡령죄 집행유예 불가)
- 재벌 일가 황제면회/황제노역 금지, 형집행정지와 가석방 및 사면 제한
- 상법 개정(특가법 상 징역형 이상 선고 받은 자 기업체 임원 등록 제한)

다.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④ 재벌 대기업 규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인 지원과 육성

가. 현황과 문제점

- 수출 재벌대기업 위주의 경제전략이 지속되면서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성장 둔화와 기술개발 투자여력 약화, 계층적인 하도급 분업 생산구조의 최말단에 위치한 영세 소기업의 퇴출, 제조업의 창업률 저하 현상이 고착화
-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의 대표적 원인인 하도급 납품단가 결정제도는 ① 협력사업 성공시 혁신이익은 대기업이 가져가고 협력기업은 기본이익만 제공, ② 협력기업의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보상 미흡 및 투자유인 부족, ③ 원자재 가격 인상분에 대한 낮은 납품 가격 반영률, ④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단가 인가로 하청업체의 수익성 악화, 투자위축

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 수는 901개이고 조합원 업체 수는 6만5,558개로 전체 산업조직화율은 2.1%, 이가운데 제조업 조직화율은 9.5%에 불과. 일본은 조합수가 4만7,207개이고 조직화율이 70.5%.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조직률이 낮은 것은 중소기업이 단체에 가입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는 것이 원인
- 「공정거래법」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예외 규정이 있으나, 까다로운 사전인가절차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실제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 하지만,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구매, 공동판매 및 공동연구개발이 필요
- 일본과 대만이 중소기업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중소기업에게 사업조합 단위로 공동납품· 공동해외진출· 공동기술개발 등을 허용했기 때문. 독일의 하도급거래 관련 법도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행위를 카르텔 적용에서 제외하여 허용

나. 목표 및 이행방법

① 중소기업인 보호를 위해 재벌대기업의 갑질(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 대리점공정화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

② 중소기업인 보호를 위해 재벌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규제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 및 강제 조정권)
- 국토계획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대형마트 허가제 및 영업 제한)

③ 대기업의 초과이익, 혁신이익을 공유하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및 운영방안)

④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소상공인단체 집단적 교섭권 보장

- 공정거래법, 대리점공정화법 개정

⑤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이익공유제 실시

- 대리점공정화법과 하도급법 개정

⑥ 중소기업인 카드수수료 인하 및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신용카드 1% 이하, 체크카드 0%)

⑦ 소상공인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소상공인보호및지원법 개정(보험료 50% 지원)

다.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정책 순위	4. 정의로운 조세개혁으로 서민 복지재정 확충
내용	① 튼튼 재정으로 복지 확대, 공평과세로 격차 해소 가. 현황과 문제점 • 2015년 기준 국민부담률은 GDP대비 24.7%에 불과해 OECD 평균 34.1%(2014년)에 비해 무려 9.4%나 부족. 2015년 GDP인 1,546조원에 적용하면 OECD 평균에 비해 약 145조원이나 부족, 이는 작년 중앙정부 복지지출 예산 120조원 보다 더 많은 재원. 이는 재벌과 부유층이 소득만큼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과 부동산 투기, 고소득 전문직 탈루, 편법 증여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 MB정부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를 인하함. 법인세 인하 이후 사내유보금은 30대 재벌 기업만 710조원이 쌓임(2015.3 기준)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소득에서 기업소득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 비해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현행 소득세의 세율 구간간 격차가 불규칙하고 복잡함. 특히 OECD 대부분 국가의 소득세 최고 세율은 40~50% 수준인데 우리의 최고세율은 38%에 불과함 • 부동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비해 평균 65%에 불과, 과세표준도 공시가격의 60~70%에 불과해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매우 낮아짐. • 2015년 현대차 정몽구 부자는 현대글로비스 주식 팔아 1조 5000억원의 소득을 얻었으나 세금은 20%만 부담함. 이자배당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천만원으로 너무 높음. 나. 목표 및 이행방법 ① 안정적인 사회복지 재정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세 신설 - 사회복지세법 제정(소득·법인·상속증여세 세액 등에 10~20% 부과)

내용

② 법인세 최고세율 MB정부 감세 이전인 25%로 환원

- 법인세법 개정(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2%에서 25%로 개정)

③ 기형적인 소득세 세율 체계 전면개편, 누진세율 강화

- 소득세법 개정(소득세율 체계 [5-15-25-35-45%]로 개편)

④ 부동산 보유세 과세 체계 전면 개편 및 과세강화

-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현행 평균 65%에서 80%로 상향
-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인 종부세로 단일화. 합산 과세 및 최고 세율은 2008년 종부세 수준으로 상향함
- 종합부동산세법 폐지, 지방세법 개정

⑤ 금융소득에 대한 특혜성 세율적용 폐지

- 소득세법 개정(주식양도소득 누진세율 적용,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1천만원으로 인하)

다.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② 경제민주화 지원, 부의 대물림 억제

가. 현황과 문제점

- 2012~2014년 대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세전이익율은 4.4~4.7%과 3.0~4.0%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3.1~3.2%, 2.4~2.7%으로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 집중. 대기업이 설정한 목표이익을 초과해서 달성한 이익은 협력기업의 기여도에 따라 함께 나누는 초과이익공유제의 도입이 필요

내용

- 법인세 감세 이후 기업의 사내유보금 급증했지만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업무와 무관한 투자 자산 증가로 이어짐. 비업무용 자산에 따른 이자 및 배당수익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한미약품의 사주가 지난 2012년 미취학 아동인 손주 7명에게 각각 증여한 25억원 상당의 주식 가액이 최근 신약개발에 따라 주가가 폭등한 1천억대로 급증, 금수저 논란가 증시킴. 최근 5년간 18세 미만 미성년자 3,717명에게 증여된 부동산만 1조 4254억 원. 2014년 기준 10세 이하 임대사업자는 817명이고, 10세~20세 임대사업자는 2,288명
- 2013년 전체 피상속인수 282,232명 중 실제 상속세를 납부한 피상속인은 6,275명, 2.2%에 불과. 과도한 상속공제로 인해 상속재산이 수십억이 넘는 경우에도 상속세 한 톨도 안 내는 경우가 다수 발생

나. 목표 및 이행방법

① 대·중소기업 공유이익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하청·협력업체와 공유한 초과 이익에 대해 30%의 세액공제 적용)

② 사내유보금 10% 할증과세 도입

- 법인세법 개정(사내유보금의 이자·배당·임대료 수익 등에 10% 할증 과세)

③ 거액 편법 증여에 대한 증여세 재계산제도 확대 강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증여 재산 폭등시 재계산제 강화, 세대생략 상속·증여의 경우 할증과세를 일괄 50%로 강화)

④ 상속공제 5억으로 축소, 고액상속 과세 강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상속공제 단순화하고 한도를 5억원으로 하향)

다.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③ 청년 기 살리고 서민 지갑 채우는 조세감면

가. 현황과 문제점

- 취업 이후에는 학자금 대출 상환 등의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지만 현행 소득세는 미혼 가구에 대한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되는 등 청년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미흡한 실정
- 사실상의 생활필수품인 승용차, 특히 사치품이라 할 수 없는 중소형 승용차에 일종의 사치세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임
- 현재 전월세 부담에 대한 세제지원은 월세 지출액에 대한 10% 세액공제가 전부 이다 시피 한 상황
-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위한 세액공제가 도입되었고, 19대 국회의 노력으로 정규직 전환 1인당 세액공제액이 일부 확대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기업들에 대한 유인 효과는 제한적임

나. 목표 및 이행방법

① 생애 최초 소득자에 대한 “파이팅”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생애최초 소득자에 1백만원까지 세액공제)

② 중소형승용차 대상 개별소비세 폐지

- 개별소비세법 개정(배기량 2천CC 미만의 중소형 승용차 폐지)

③ 세입자 전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이사비 공제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월세 세액공제율 15%로 확대, 전월세 이사비용 적용)

④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현행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세액공제 확대)

다.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④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물망식 탈세·예산낭비 방지대책 수립

가. 현황과 문제점

-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법인세 인상 등 주요 재정현안을 둘러싼 국민적 갈등과 예산낭비 논란이 반복됨.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고위직 공무원과 일부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정책자문회의나 일회적인 공청회 등에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
- 2015년 고액 상습 체납자(5억원 이상 1년 이상 체납)는 2,226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3조7832억원(1인당 평균 17억원)에 달함. 또한 2014년도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270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1인당 평균 9억 7천만원(소득적출률 32.9%)의 소득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남
- 예산심의 때마다 이른바 쪽지예산 카톡예산 논란이 되풀이 되면서 국회 예산심의가 밀실에서 몇몇 힘있는 실세 의원들과 정부간의 줄다리로 결정되면서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음.

나. 목표 및 이행방법

- ① 대규모 예산 사업 등에 전국민 참여예산제 실시
 - 국가재정법 개정(연말정산 시 재정 현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내용 포함)
- ② 탈세 및 부정당입찰에 대한 처벌 강화
 -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계약법 등 개정
- ③ 예산실명제 도입, 쪽지예산 카톡예산 근절
 - 국회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증액예산은 의원 실명과 함께 증액 필요성을 서면으로만 제출)

다.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 정의당 조세개혁[안] 세수 증감액 추계

	세목	주요 내용	세수 증감
증액 세목	사회복지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중부세액에 10~20% 부과	20조원
	법인세	법인세 최고세율 25%	8조원
		사내유보금 10% 할증과세	3조원
	소득세	5-15-25-35-45% 세율 개편	3.4조원
		주식양도소득 누진세율 등	2조원
		월세소득 종합과세 등	3조원
	재산세 중부세	과세표준 누진세율 상향(4조원),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4.5조)	8.5조원
	상속· 증여세	공제 5억 제한 등 실효세율 강화	1.6조원
		증여세재계산제, 세대생략 할증	추계 미정
		증액 세수 합계	+49.5조원
감액 세목	조세특례 제한법	생애최초 소득자 백만원 세액공제	추계 미정
		월세 세입자 주거비 세액공제 등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확대	
	개별소비세법	중소형 승용차 개별소비세 폐지	-0.5조원
		감액 세수 합계	-0.5조원
		전체 증액 세수	49조원

정책 순위	5. 정의로운 복지로 “OECD 평균복지국가” 달성
내용	① 요람에서 무덤까지 내가 행복한 평생복지 가. 현황과 문제점 •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은 불행하고, 청년의 고용은 불안하고 노인은 빈곤한 대한민국. ① 태아 영유아 -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증가, 여성 중심의 육아휴직 사용(남성 4.5%) - 국공립 어린이집 부족으로 이용률이 10.6%에 불과하고 90%가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 - 열악한 보육교사 처우(2012년 기준 월 평균 임금 155만원) ② 아동 청소년 - 6~18세 건강보험보장률 53.9%에 불과하고 아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의료관리시스템 부재 - 늘어나는 아동학대, 특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 및 인력부족 (2014년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 51개소, 상담원 364명에 불과) - 2013년 기준 근로청소년은 22만명으로 중고생 1/3이 알바를 경험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율은 25%에 불과, 임금체불, 초과수당 미지급 등 부당한 처우 경험이 31.9% ③ 청년 - 청년취업애로계층은 116만명이나 실업급여를 받은 청년은 29.3만명에 불과 - 반값등록금 공약 불이행, 사립대학 고액 등록금으로 학생과 학부모 부담 증가 - 청년의 14.7%는 주거빈곤 상태이나 임대료는 비싸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은 5%에 불과 - 2015년 현재 청년실질실업률 22.4%, 고졸취업자 월평균임금 145만원(대졸의 77.3%) 수준

④ 중장년

- 2011~2015년 은행권 매각 부실채권은 총34.2조원이나 이중 2.7조(8%)만 공적자산관리 회사에 매각, 90% 이상이 민간자산관리회사 등을 통해 재매각되면서 악성부실채권 으로 변질
- 소득에 비해 과도한 4대 가계비 부담. OECD 국가 중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14년째 1위, 전월세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상승 가속화, 가계의 연간 보건의료비 증가(2008년 157 만원→2014년 205만원), 가계 통신비는 OECD 3위.

⑤ 노년

- 노인 빈곤률 OECD 1위(2013년 49.6%)이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공적연금 미비, 부양의무자 기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으로 노인빈곤층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 고 있음.
- 평균수명(2014년 82.4세) 증가, 독거노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버주택 부재, 국공립장 기요양시설 부족 등 노후정책은 미흡

나. 목표

- 생애주기별 복지지원책으로 향후 10년 내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 달성

다. 이행방법

① 태아 영유아

- 산모 영유아 방문간호사제 도입, 핀란드형 마더박스 제공
-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파파키퍼제 도입, 출산전후휴가 확대, 가족돌봄휴가제 신설
- 국공립어린이집 비중 확대, 민간 어린이집 교사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

② 아동 청소년

-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 및 자녀담당의사 도입
- 아동학대 신고시스템 정비, 학교사회복지사 및 전문상담교사 확충 등
- 초중고학교 10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 안심알바신고센터 확대 등 알바 권리 보장

③ 청년

- 미취업 청년에게 디딤돌 급여 지급
- 국가표준등록금 도입으로 진짜 반값 등록금 실현
- 반값임대 공정주택 건설, 만19세 이상 안심대출제도 도입, 주거급여 확대
- 공기업 대기업 5% 청년고용할당제, 여성 고졸 지방 기회균형채용 제도 도입

④ 중장년

- 저소득층 부채탕감과 악성 부실채권 규제
- 4대 가계비(통신 주거 교육 의료) 절감

⑤ 노년

- 부양의무제 폐지, 공적연금 하나로 OECD 수준 노후소득 보장
- 공공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및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공공실버주택 확대

라. 이행기간

-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 발의 및 개정 추진

②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한 전 국민 기초복지

가. 현황과 문제점

- 의료, 주거, 교육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받는 대한민국.

① 의료

- 건강보험 보장률 60% 수준, 국민 74.3%가 민간의료보험 가입(2012년) 등 의료비 부담 증가
- 열악한 공공의료체계, 3차 병원 쏠림 현상 심각, 계속되는 의료영리화 정책

내용

② 주거

- 높은 집값, 전세의 월세전환 가속화로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증가(RIR 29%)
-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분양원가 공개거부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거품을 방조

③ 교육

-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불이행, 국고지원 거부로 누리과정 보육대란 초래
-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 고등학교 학부모 납입금 부담, 반값등록금 공약 불이행

④ 장애

- 장애인을 천편일률적 등급화하고 있는 장애인등급제, 수용시설 중심의 장애인 정책
- 유명무실한 장애인 의무고용제, 최저임금법 적용제외로 노동조건 열악

⑤ 복지인프라

- 사회서비스 분야 과도한 민간의존. 종사자 처우 심각 등 질 문제 발생 및 지역간 공급 격차.
- 복지공무원 부족으로 1인당 담당인구 3,919명(2005년 기준 영국 284명, 호주 806명).

나. 목표

- 기초복지 강화로 향후 10년 내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 달성

다. 이행방법

① 의료

- 건강보험 보장률 80% 이상 확대로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실시
- 전국민건강 담당의사 도입, OECD 수준 보건의료 인력 확충
- 의료영리화 추진 반대, 공공병원 확충

② 주거

- 주거비지원 확대 및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stay) 연간 15만호 공급(OECD 평균 12% 목표)

내용

-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공정임대료 도입
-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상시공개 및 분양가상한제 민간아파트 확대

③ 교육

- 어린이집, 유치원 누리과정 100% 국가책임제
- 초등학교 2배 확대, 고교 무상교육 도입, 대학균형발전

④ 장애

-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탈시설 지역거주 종합정책 수립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의무고용제 개편으로 새로운 고용모델 발굴

⑤ 복지인프라

-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두루누리Ⅲ 도입(지역가입자 국민연금 • 고용보험료 지원)
- 복지공무원 대폭 확대로 찾아가는 국민복지 실현
- 질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로 복지강국 진입

라. 이행기간

-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 발의 및 개정 추진

마. 재원조달 방안

- [정책순위 4번] 조세개혁방안으로 복지증세

정책 순위	6. 농촌과 지방이 잘 살아야 진짜 선진국
내용	① 농촌과 지방이 잘 살아야 진짜 선진국 가.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13년 기준 23.6%로 매년 하락하고 있으나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자급농정을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농지를 유지, 보전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경자유전의 원칙은 유명무실해졌으며 농지가 전체 국토 면적의 17%에 불과할 정도로 줄어 들고 있음. • 농촌 고령화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39%에 달하며 후계농업인이 없는 농가는 90%에 이르고 있음. • 농가소득은 1991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97.4% 수준에서 2013년 62.5% 수준으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빠르게 벌어지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도 심각한 상황으로 그동안 시행되어온 지역발전정책은 중앙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거나 지방정부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유사한 특구를 남발하면서 선택과 집중에 실패하였음.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교육기반을 강화해야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 일률적인 대학구조조정 정책으로 비수도권 대학이 고사 위기에 처해있음. 나. 목표 • 식량주권 확보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농민의 삶의 질 개선 •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실현 • 농민의 농정참여 확대로 민주농정 실현 •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내발적 지역발전 • 일자리-교육-복지의 선순환 구조로 살맛나는 지역 실현

다. 이행방법

① 식량자급률 50% + 적정농지 확보 법제화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부활로 농산물 가격 지지
-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적정가격보장제로 가격 안정
- 무역이득부담금제 도입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 보전

② 농가소득 보장과 교육복지 투자로 살기좋은 농촌

- 목표소득 직불제로 소득증대, 청년취업농지원제도 도입
-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1마을 1그룹홈 등 복지농촌
- 농부증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농업노동재해 보상 확대

③ 전국적 차원에서 미래산업과 뿌리산업의 전략적 배치

- 중앙-지방정부의 상호협업, 민관협력을 통해 선택과 집중
- 지역 과학기술 역량에 따라 공공 R&D 투자 확대 등 지원
- 지역별 제조업 첨단연구소 설립과 혁신클러스터 구축

④ GDP 10% 수준을 목표로 풀뿌리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시도별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
-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활성화로 복지확대 + 일자리 창출
- 광역도에 도민은행 및 사회연대은행 설립 추진

⑤ 지방대 균형발전, 공공병원 확충 등 생활격차 해소

-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대학 육성
- 정부책임형 대학 구조개혁으로 대학 양극화 해소
- 혁신형 공공병원 확충 및 기존 지방의료원 국립병원 전환

라. 이행기간

-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 발의 및 개정 추진

정책 순위	7. 한국탈핵 2040과 국토환경 보존, 생명존중 안전사회
내용	① 한국탈핵 2040과 국토환경 보존, 생명존중 안전사회 가. 현황과 문제점 ① 거꾸로 가는 고위험·고갈등·고탄소 에너지 정책 - 체르노빌 사고 이후 세계는 안전성·경제성·수용성 문제로 원전을 줄여가는 추세이며, 2000년 이후 세계적으로 원전의 설비용량은 20기가와트 증가한 반면, 태양광은 원전의 9배, 풍력은 18배가량 설비용량이 증가하였음. -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35년까지 최대 41기의 원전을 확대를 결정하였으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2029년까지 신규원전 13기, 석탄화력발전소 20기를 확대해 고탄소·고위험·고갈등 전력시스템이 유지될 전망이다. ② 4대강 사업의 후유증 방지와 산으로 간 제2의 4대강 사업 추진 - 4대강사업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부실한 설계·시공으로 인한 보의 안전성문제, 감사원 감사와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 의해 하천의 체류시간 증가로 인한 녹조발생 외에도 자연환경 훼손과 주민피해, 건설공사의 비리담합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지만 방치되고 있음. - 박근혜 정부는 보호구역이 포함되는 지역에 대해 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산지관광특구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률 제·개정 절차를 시작하였으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으로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사업이 확산될 전망. ③ 암 발생의 증가와 환경유해인자·환경취약계층·환경취약지역·환경피해국민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 - 1990년부터 2011년까지 OECD 국가에서 암에 의한 사망률이 증가한 국가는 한국·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 슬로베니아 4대국에 불과하며, 직업 및 환경 위험 요인으로 인한 발암물질 노출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발암요인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임.

- 미세먼지·방사능·전자파 등 환경유해인자에 장기간 노출됨에 따라 국민건강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환경취약계층 및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나아가 환경피해로 인한 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라 2차·3차 피해 발생.

나. 목표

- 한국탈핵: 원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2040년 완전폐쇄하고 전환수단으로 OECD·독일 수준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 국토보호: 4대강복원을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강화.
- 안전사회: 발암물질과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사전예방의 원칙을 강화하고 환경피해에 대한 사후구제를 확대해 국민안전과 국민건강 증진

다. 이행방법

① 2040년까지 원전의 점진적 축소를 통한 한국탈핵 실현

- 에너지법제개편: 탈핵에너지전환법, 녹색성장기본법·에너지법·전기사업법 등 에너지법제에 탈핵에너지전환 원칙 반영
- 에너지계획수정: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2040년까지 원전의 점진적 축소 원칙 반영
- 선진국수준의 수요관리: OECD·독일수준의 전력수요관리를 위해 에너지상대가격을 조정하고, 이를 위해 전기요금산정위원회 신설 및 기후정의세 도입
- 재생에너지의 확대: 소규모의 경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의 경우 공급 의무비율을 확대하며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는 소비의무제도 도입.
- 핵재처리 금지: 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 하지 않고 직접처분을 원칙하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사용후핵연료 총량 결정 이후 진행

② 4대강 복원과 지속가능한 물 관리 및 국토환경보호

- 4대강 복원과 제2의 4대강사업 중단: 인공구조물의 해체와 4대강 및 하천습지복원여부를 결정하는 4대강복원위원회 설치, 친수구역 활용특별법 폐지.

- 지속가능한 물 관리시스템 구축: 물기본법 제정을 통해 통합적·체계적·참여적인 유역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순환법 제정을 통해 물순환사회 실현
-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에 보호강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 재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끌어 난개발을 방지
- 노후하고 위험한 댐의 철거와 댐건설 계획시 사용기한 및 철거계획을 수립토록하고, 댐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을 위해 댐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 정비법 등 개정

③ 발암물질 관리 강화와 환경유해인자의 사전예방원칙에 따른 관리, 환경피해구제 수단 강화

- 「발암물질 등의 관리 및 암 예방법」 제정: 대통령 직속 국가암예방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암예방연구센터 설치, 암예방평가지표개발과 암예방정책추진을 위해 중장기 단계별 목표 설정 및 관리.
- 방사능과 전자파를 환경유해인자로 지정해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른 관리 강화
- 환경피해에 대한 사전예방관리 및 사후구제조치 강화를 위해 환경피해자구제에 대한 요건 완화와 환경피해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지역주민에 대한 노출규제 및 건강보호 강화
-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상향하고, 위해성 관리 강화

라. 이행절차 및 기간

- 한국탈핵2040은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녹색성장기본법·에너지법·전기사업법 개정, ♣수요관리는 기후정의세법 제정, 전기사업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재생에너지확대는 전기사업법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2018년 이내 모두 발의할 예정이다.
- 4대강복원특별법은 2016년에 발의할 예정이며, 물기본법·물순환 기본법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법제화할 예정이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립공원위원회 재심의와 민관공동조사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 발암물질 등의 관리 및 암 예방법은 2017년 이내 제정할 예정이며, 국가산업단지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도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법제화할 예정이며, 기타 환경보건 관련 법제도 함께 병행할 예정임.

마.재원조달방안

- 대부분의 사업은 정책 및 행정 변화수단으로 특별히 소요되는 예산이 없으며, 소규모 재생에너지의 경우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경우 70원을 기준으로 하면 1408억, 100원을 기준으로 하면 2011억, 150원 기준 시 3014억 비용이 소요되며, 인입비용 지원의 경우 연간 3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정책 순위	8. '중건·평화·가교국가'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달성
내용	가. 현황과 문제점 ① '가짜안보'의 파탄 - 안보를 앞장 세웠으나 총체적 안보위기의 현실. 균형외교 실종과 강대국 관리 대상으로 전략한 '소외' 외교, 구타·관심병사-무기조달 비리·비효율성에 의해 기능 부전과 불신에 빠진 국방, '개성공단 폐쇄'로 대표되는 대북 지렛대 약화와 완충지대(및 부문) 소멸의 남북관계 등. - 특히 북의 핵-미사일 능력이 크게 증강되었으나, 정부여당은 즉자적 강경 대응으로 일관 : 정부의 대책은 즉자적이고 실효성을 전혀 담보 못함.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사드 배치 추진,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 '강력하지 않고 강경할 따름인' 대북 압박과 제재 추진, 거기에 '북한붕괴 추진' 속내의 노골화, '핵무장론' 등 폭주하는 대통령과 정부여당 - 통일대박'을 내세우나 정작 남북관계는 쪽박 상황이 되고 외교·안보 모두 위태로워진 것은 북한붕괴-흡수통일에 대한 집착, 정권안보와 대통령 심기경호 추구의 파멸적 결과라고 할 수 있음. ② 화해협력정책 위기의 한 축, 무능한 야당 - 박 대통령은 2월 16일 국회연설에서 마치 화해협력정책이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의 원인이 된 것처럼 호도하며,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합리화하고, '북한 붕괴' 등을 거론하며, 대북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이야기 함. 이는 비단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만이 아니라, 노태우 정부의 7.7선언 이후의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화해협력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지금의 위기가 더 심각한 것은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한 비판, 대안적 정책에 대한 사회적 열망과 합의가 크지 않은 점. 이것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의 무능과 혼선에 크게 기인함. 그들은 당의 공식 입장으로는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여당의 논리와 정책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는 등 혼선을 빚음. - 그들은 대중의 안보불안 심리에 편승해 '안보는 보수적으로'라는 기치를 들고 있음. 그들이 경협 등 교류협력과 안보를 분리시키는 것은 안보위기가 심화되는 국면에서는 정

내용	협 등 교류협력의 필요성 및 그것을 위태롭게 하는 정부여당의 행태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약화시키게 됨. 나. 목표 • 평화공존과 접근을 통한 변화의 원칙을 견지해 남북관계 개선, 위기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를 되살려 가능한 한 조기에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달성. 이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비전으로서 ‘중견·평화·가교 국가’ 대한민국을 제시함. • 중견국가: 한반도 정세 주도, 주변 강대국들이 지정학적 대립에서 벗어나 지정학적인 이익 조화를 꾀하도록 선도, 세계적 차원 불평등 해소 및 비핵화-군축에 기여 • 평화국가: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변, 동북아에 평화공존의 새역사를 만드는 다자안보협력 주도, 군복 입은 시민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적 군대와 인간안보 구현 • 가교국가: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통상과 교통의 중심, 다양한 문명과 가치가 교류하고 융합의 꽃을 피우는 가교, 북한을 미국 등 국제사회와 연결하는 가교 역할 수행 다. 이행방법 ① 평화 환경 조성 중견국 외교 - 미·일·중·러 간 균형외교, 이익의 조화외교 - 동아시아 차원 전통적·비전통적 다자안보협력 증진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SOFA 전면개정 등 수평적 한미관계 구축 - 과거사 철저 반성 기초한 평화로운 미래 구축의 신한일관계 정립 - 제3세계발전 기여외교, 세계의 비핵화·평화군축 이바지 평화외교 ②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 북한 핵·미사일 동결과 공격적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 비핵화-평화협정 회담 병행, 북미수교 지원 등 포괄적 타결 실행 - 남북 핫라인 재구축과 협의기구 운영
-----------	--

내용

- 중장기 군비통제 회담 실시

③ 정예강군 목표 강력한 국방개혁

- 적정병력 40만명으로 군 병력 감축
- '한국형 모병제' 실시: 6개월 의무복무 + 의무복무 이행 자원에서 직업군인 지원과 선발
- 예비전력 현대화: 군 전력의 20%를 예비군화
- 부대 구조 단순화: 부대 통폐합으로 경쾌하고 단순한 지휘구조
-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임명 등 국방 문민화
- 방산비리 척결과 무기획득체계 개선

④ 군복 입은 시민의 권리 보장

- 군 입대 대기기간 제로화
- 적정 급여 50만원, 보급품 완전 지급으로 빈부격차 없는 병영
- 군 의료와 민간위탁 의료 완전 무상으로 치료비 걱정 없는 병영
- 그린캠프·관심병사 제도 폐지
- 군 옴부즈맨 도입 등 군인 인권 관련 법 개정

⑤ 남북 경험 등 교류협력의 활성화·제도화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철회와 조속한 재가동 추진
-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상설화
-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체결로 경제공동체 형성의 제도적 뒷받침
- 유라시아대륙 경제시대 구축으로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의 가교화
- 특사 파견 혹은 조속한 당국회담 재개, 국회·지자체·민간의 교류 재개 → 정상회의 등 각급 당국회의의 정례화

라. 이행절차 및 기간

- 2016년 총선 직후 개성공단 재가동과 5·24조치 철회 등 남북교류·협력 복원 등을 위한 국회 결의, 남북관계 역진 방지를 위해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법 개정

내용

- 경협이 이전 수준 복원과 함께,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체결로 경협의 제도화 뒷받침, 개성공단의 2,3단계 확충,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인프라 투자,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해당 안보리 제재 해제 필요), 북한의 특구와 연계된 제2·제3 개성공단 건설 등 경협의 단계적 활성화
- 당국회담의 조기 재개, 특사 파견 등으로 최악의 남북관계 타개. 이후 고위급 당국회담의 정례화를 추진하는 것과 함께, 정상회담 추진. 정상회담 성사 후에는 정상회의 등 각급 당국 간 회의의 정례화
- 비핵화-평화체제 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우선은 핵동결과 공격적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비핵화-평화협정 회담 병행 등을 교환하며 대화 재개. 적절한 시점에 비핵화 6자 회담-평화협정 4자회담-북미수교 양자회담 등 병행

마. 자원조달방안

- 대부분의 사업은 정치적 결단과 법률 개정 등이므로 특별히 재원을 소요치 않음.
- 다만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및 대륙의 북방 및 남방 교통로와 연결, 남북러 가스관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 등에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 동 재정 마련을 위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중국 주도 AIB를 적극 활용할 필요. 그리고 북한의 AIB 등 국제 금융 및 경협 기구 가입 추진, 남북협력기금 자원 확충,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조건에서 민간의 대북투자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등 병행.
- 남북협력기금은 최근 몇 년간 계획 대비 집행이 1/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2015년에는 기금 자체가 전년에 비해 4.8% 줄어듦. 우선은 현 협력기금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교류협력을 활성화. 추후 교류협력이 확대되면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자연스럽게 협력기금도 확충.
- 사병임금 50만원으로 인상에는 현재 병력 기준 연 1조 9천억원 가량 소요 예상됨. 적정 병력 40만명으로의 감군과 병력 수 대비 비대한 장군과 고위장교 수 감축 등을 통한 인건비 감축, 방산비리 척결 등을 통해서 충분히 조달 가능. '한국형 모병제'는 인구절벽에 처한 우리나라에서는 병력 조달과 적정 병력의 정예화를 위해서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대안으로, 소요예산은 전문병사 10만명 인건비에 연 2조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그 정도는 2016년 현재 국방예산이 약 39조원이므로 방만한 무기획득체계의 개선 등으로 충분히 조달 가능함.

정책 순위	9. 차별없는 인권사회(여성, 다문화, 빈민, 성소수자)와 다양한 언론문화사회
내용	• UN 인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차별금지 관련 법률 제정 권고함에도 박근혜 정부는 국정 과제에는 포함시켰으나, 정부안은 미제출하는 등 전반적인 인권정책의 후퇴를 보여줌 ① 여성분야 - 세계경제포럼(WEF)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에 따른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를 보면 조사 대상 145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115위로 하위권에 있음. 정책결정 및 관리자 직위에서 여성의 낮은 비율을 보이며, 여성 노동자가 많은 사회서비스업은 처우가 열악하며 감정노동과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해도 심각함. 질 낮은 일자리와 여성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 남녀 간의 임금격차가 좁혀지지 못하고 있으며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 여성의 몸에 대한 상품화와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한 사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최근 급증하는 데이트 폭력과 온라인 폭력의 급증이 이뤄지는 등 여성인권의 후퇴가 이뤄짐. ② 빈민분야(노점 중심) - 도시의 역사와 함께 해온 노점은 도시 빈민과 서민의 주요한 생계수단이자 전통적인 생계형 자영업의 일종이며, 노점에 대한 정부 정책은 없는 가운데 지자체는 여전히 단속 위주의 행정으로 일관함.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노점의 존재를 인정하고, 노점상의 생존권과 주민의 권리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 ③ 이주민과 이주아동 분야 - 2004년 8월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자발적인 사업장 이동 불가능 등 이주노동자는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결혼이주여성들은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 시에도 체류권 보장이 어려우며,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큰 어려움으로 꼽는 경제적 취약계층임. 또한 부득이하게 체류 자격을 상실해 보육, 교육 등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아동 2만명으로 추산됨(법무부, 2013.2) 현행법에서는 외국인 부모가 강제 퇴거 대상이 되는 경우 이들의 자녀를 배려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족 결합권 보장 등이 주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 규정이 없어 이주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등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④ 소수자 분야

- 차별금지법안이 제19대 국회에서 3개 발의되었으나, 보수 단체의 극렬한 반대로 2개 법안이 철회되어 사실상 제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은 제정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현재 이성간의 혼인 외에 동성커플, 비혼 동거커플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전혀 없음. 성소수자는 최근에서야 인권위 차원에서 실태조사가 이뤄졌으며, 고용 영역에서는 응답자의 44.8%가 정체성 때문에 차별이나 따돌림, 성희롱 등을 경험했다고 답하는 등 차별과 폭력의 현실에 놓임(성적지향 ·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5)

⑤ 언론 분야

- 정부는 인터넷에서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인터넷에서 권력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억누르고 언론을 획일화하기 위한 포털의 손목 비틀기 및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가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심의 강화 등 법제도 개악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짐.

나. 목표

- 차별없는 인권선진국 달성
- 다양한 문화와 소수자가 존중되는 사회

다. 이행방법

① 여성분야

- 사회서비스 종사자 임금 인상과 좋은 일자리 보장
- * 감정노동보호 및 예방조치, 인격적인 노동문화 형성
- 일 · 가정 양립 정착으로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소
- * 임신부터 보육까지 국가책임제 : 방문건강관리 등
- * 3대(임신,육아,돌봄) 휴가제 확대 : 임신 초기 휴가지원 등
- 성폭력 관련 법 · 제도 개선, 직장내 성희롱예방 강화
- 데이트폭력, 스토킹, 온라인폭력 등 3대 폭력 대응
- * 한국형 클레어법(영국의 가정폭력전과 공개제도) 도입

내용

- * 스톡킹 처벌 강화, 온라인 인권교육본부 설립
- 과도한 마용 · 성형산업 및 과장광고 규제 강화
- * 성형수술시 의료진의 설명의무 준수, 외모지상주의 조장 개선

② 빈민분야(노점 중심)

- 노점상과 지역이 상생하는 노점기본법 추진
- * 노점단체, 시민단체가 노점실태조사 및 기본정책 마련
- * 국회에 지자체의 상상대책을 뒷받침하는 위원회 구성
- 식품위생법, 행정대집행법 개정 및 과태료 남용 금지
- * 노점의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와 위생기준 마련
- * 노점에 대한 과도한 행정대집행 최소화, 집행절차규제
- * 지자체의 과태료 남용 제한, 전통시장내 노점상 보호

③ 이주민과 이주아동 분야

- 이주여성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
- * 제도적 기본권 침해 구제
- * 국제결혼 중개 과정에서의 국적취득 및 체류권의 문제 해소
- 미등록 이주아동, 무국적 아동의 권리보장 강화
- * 출입국관리법 개정

④ 소수자 인권 분야

- 파트너십제도 도입으로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 혐오표현 · 혐오범죄 처벌 법제화,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 제정
- 인권교육기본법 제정, 국가인권위원회내 인권교육원 설치
- 차별금지법 제정

⑤ 언론분야

- 권력기관을 비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 MB 악법으로 실종된 언론독립과 시민주권 회복
- 디지털시대에 맞는 방송통신의 시민권리 실현
- 지역미디어센터, 공동체라디오 · TV 등 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내용

라.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지속적으로 관련법 발의 및 개정 추진)

마. 재원조달방안

- 대부분 정치적 결단과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사항으로 특별한 재정이 소요되지 않음

정책 순위	10. 국민을 닮은 국회, 잃어버린 민주주의 회복
내용	① 정치기득권 해체로 국민을 닮은 국회 가. 현황과 문제점 • 정치인의 부정부패, 과도한 특권으로 국민의 정치불신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기존 양당은 선거 때마다 공천혁신, 특권폐지를 약속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음. • 근본적인 정치혁신을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적임. 하지만 선거법 개정은 비례대표 의석만 54석에서 47석으로 줄이는 정치개약으로 끝남. • 현재 원내 의석 20석 이상을 기준으로 한 교섭단체 제도는 철저하게 다수당 중심의 국회 운영으로 소수당의 참여를 봉쇄함으로써 다양한 국민의사의 반영을 막고 있음. •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능장대응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임.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대책 구축과 관피아 척결 등의 과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나. 목표 • 정치혁신과 기득권 해체로 국민의 정치불신 해소 • 정부혁신과 관피아 척결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 다. 이행방법 ① 돈/금수저/부정축재/무자격/부도덕 5대 불량정치 퇴출 - 불량정치인에 대한 20대 총선 공천 배제 등 ‘국민눈높이 공천’ - 재보궐 원인제공 정당의 공천 포기과 선거비용 50% 부담 등 ‘공천 무한책임제’

내용

② 국회의원 세비와 고위공직자 보수의 최저임금 연동제 도입

- 국회의원과 장차관급 위상 고위공직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
- 의원 세비는 현재 연봉 1억 4천만원에서 7,562만원으로 삭감
- 의원 수당 중 목적과 사용처가 불투명한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폐지 등 세비삭감으로 절감한 187억원은 국회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입법지원 강화에 사용
- 국회의원 세비의 투명한 공개 및 독립적인 민간심사기구에서 세비 산정

③ 국민을 위한 선거개혁으로 양당독점체제 타파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국민 의사를 반영한 국회
-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다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
- (피)선거연령 인하, 노동자 투표권 보장 등 정치 참여 확대

④ 국민을 닮은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

- 교섭단체제도 개혁으로 다수당과 소수당이 공존하는 정치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상설화, 예결특위의 상임위원회 전환

⑤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책임지는 정부

- 국가재난안전협업체계 구축과 고위공직자 관피아 방지
- 김영란법 재개정으로 부정청탁 방지, 묻지마 특수활동비 축소
- 무분별한 규제완화 반대, 공공기관 개혁과 공공성 회복

라. 이행기간

- 2016년 국회법,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김영란법 등 개정안 발의

마. 재원조달방안

- 국회의원 세비 삭감으로 연 187억원 예산 절감 효과

② 박근혜 정부에 맞서 민주주의 회복

가. 현황과 문제점

- 국정원의 2012년 대선개입 논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공개 등 정치개입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테러방지법을 일방적으로 제정함
- 국정원 외에도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도감청과 SNS 등으로 인한 국민 인권과 사생활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반면, 고(故) 성완중 리스트,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사청탁 논란 등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나. 목표

-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 후퇴한 민주주의의 복원

다. 이행방법

① 테러방지법 폐지,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 국정원을 해외정보원으로 전면개혁하고, 국내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

②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찰과 도감청 방지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통신제한조치 요건강화, 긴급통신제한조치 남용방지 등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③ 검찰 개혁과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확보

- 특별검사를 상설기구로 운영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구성

④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국정교과서 제도 폐지

한눈에 보는 정의당 vs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이 포기한 공약
정의당이 지키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나쁜 정책
정의당은 반대로 하겠습니다!

- 경제민주화 분야
- 노동 분야
- 복지 분야
- 주거 분야
- 안보(외교-국방-남북관계) 분야
- 여성 분야

1

경제민주화 분야

“박근혜 대통령의 실종된 경제민주화,
정의당이 되찾아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 정책	결 과	정의당의 약속
● 특가법상 횡령 집행유예 불가능 하도록 형량 강화	불이행	● 특가법상 배임·횡령 5년 이상 유기징역 적용
●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 중대범죄 사면 제한	불이행	● 재벌 일가의 형집행정지, 가석방, 사면 제한
●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불이행	● 적용범위·배상한도 확대, 집단소송제 즉각 도입
● 소비자보호기금설립 및 피해구제 명령제	불이행	● 보호기금 설립,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 도입
● 소액주주 사외이사 선임 등 감시 강화	불이행	● 소액주주와 함께 근로자대표 추천 이사 선임
●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불이행	● 집중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불공정거래 피해자 해당행위 금지 청구제	불이행	● 피해 당사자 해당 불공정행위 금지청구제 도입
● 금산분리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불이행	●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인터넷은행 규제 강화
●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강화	불이행	● 국민연금 등 연기금 공익적 의결권 행사 강화
● 대형마트 지역협업체와 합의해야 허용	불이행	●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	불이행	● 사업이양 강제 명령권 부여 등 실효성 강화

2

노동 분야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 정의당은 반대로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정의당의 노동개혁
● 저성과자 등 쉬운 해고 시대 개막 - 성과주의 따른 직장내 괴롭힘 조장	● 정리해고 제한법 등 해고 요건 강화 및 제한 - 직장 상사 등 괴롭힘 방지법 제정
● 임금 깎는 취업규칙 변경도 사장님 멋대로	● 취업규칙 등 노동조건은 노사가 공동결정
● 기간제 4년 연장으로 평생 비정규직	● 기간제 사용제한,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 고령자와 뿌리산업 등 파견제 전면 확대	● 간접노동 노예노동인 파견제 단계적 폐지
● 정부 들러리, 재벌 편향의 노사정위원회	● 경제 전반 실질적 논의기구로 전면 재구성

3

복지 분야

“박근혜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뒤집은 약속,
정의당이 지키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결 과	정의당의 약속
● 누리과정 국가완전책임제	● 불이행 - 교육청에 떠넘기기	● 누리과정 100% 국가책임제
● 고교 무상교육 실시	● 불이행	● 2020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 실천	● 국가장학금 확대를 반값등록금이라 강변	● 모든 대학 표준등록금 연 350만원(고지 서상 진짜 반값등록금)
●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 파기	● 의료비 상한제로 보장률 80%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포기	● 지역가입 552만 세대 건보료 인하
● 모든 어르신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 파기	● 어르신 노후소득 60% 보장
● 중세 없는 복지 가능	● 불가능 입증	● 사회복지세 등 연 50조 복지재정

4

주거 분야

“부동산부자와 건설사 배만 불리는 박근혜 정부,
정의당은 세입자 편에 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결 과	정의당의 약속
● 시세 1/2~1/3 수준 행복주택 20만호 공급	● 시세 대비 60~80%	● 반값임대 공정주택 - 국공유지·시유지·공기업이전자·뉴스테이 용지 등 활용 - 연간 15만호 (재고율 5%→12% 목표) - 시세 대비 반값 이하 (서울 25평 월44만원) - 환매조건부(분양, 분납) - 50년 임대(토지임대, 임대 및 전세)
●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 2018년까지 120만호 - 재고율 10~12% 달성	●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5% ● 영구·국민·전세임대 공급량은 12만호 (2013~2014)	
● 뉴스테이 공급 활성화 -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 지자체 중심 임대료 심의기구 신설 - 공공 또는 민간임대 토지를 장기임대(토지임대부 건물분양 제도 확산) -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및 저소득층 임대시 세액공제	● 뉴스테이 특혜 확대 - 최초임대로 규제 삭제 - 택지·세제·재정지원 확대 - 공급확대(2017년 목표 7만호→13만호 부지 확보)	● 뉴스테이 공급 중단
● 제한적 전월세상한제 도입 - 전월세 상승률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 특별신고지역(1단계), 특별관리지역(2단계) 지정 - 임대료 초과인상분 무효 - 종전계약 정보제공 요구권 인정 - 지정기간은 1년(2회 연장)	● 전월세 상한제 도입반대	●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권 - 3년 임대, 3.3% 인상제한 - 계약갱신청구권 1회보장 ● 공정임대로 도입
●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전세보증금을 조달하고, 세입자가 이자 납부	● 시행 2개월만에 파기 ●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 실적 2291건(2014.9월 기준)	●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전월세 대출 지원확대 - 지원대상 확대, 수수료 인하

5

안보(외교-국방-남북관계) 분야

“박근혜 정부의 안보무능과 갈팡질팡외교, 정의당이 바로잡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 정책	결 과	정의당의 약속
● 북핵문제 억지를 바탕으로 협상의 다각화를 통해 해결	● 북의 핵미사일 능력 크게 증강 ● 6자회담 등 비핵화 대화 부재	● 선(先)핵미사일 동결 목표 대화재개 ● 비핵화 평화협정 회담 병행 ● 핫라인 재구축-군비통제 회담
● 동북아평화구상 ● 유라시아이니셔티브	● 한일갈등에서 굴욕적 12.28합의 ● ‘역대최상’ 자화자찬 한중외교, 사드 배치로 갈등관계 ● 국제정치의 ‘홀로 전략’	[평화 환경 조성 중견국 외교] ● 미일중러 간 조화외교 ●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 ● 수평적 한미관계 ● 반성 바탕 평화 지향 신한일관계 ● 기여외교, 평화외교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차질 없는 이행 ● 미래지향 국방혁신 ● 국방의료 체계 개선 등 보람있는 군복무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무기연기 ● 만연한 무기조달 비리 ● ‘곽중서’ 사건, 구타 관심병사	●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 비리척결, 무기획득체계 혁신 ● 군병력 40만으로 축소, ‘한국형모병제’ ● 군입대 대기기간 제로화 ● 국방장관 민간인 임명 등 안보 민주화
● 한반도신뢰프로세스 ● ‘통일대박론’	● 개성공단 폐쇄 ● 모든 대화채널 단절 ● 상호 비난과 적대감 고조	● 개성공단 재가동, 5.24조치 해제 ● 남북경제사회협정 체결로 경험 제도화 ● 남북경제공동체-유라시아대륙경제시대 ● 당국회담 재개와 정례화

6

여성 분야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 파기한 약속,
정의당이 제대로 실현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 정책	결 과	정의당의 약속
저소득층가구의 경우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	- 대폭 축소 - 시범사업으로 진행	- 마더박스 제공 - 모든 출산가정 100만원 상당 출산용품 지급
찾아가는 산전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미이행	-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제도 도입 - 1단계: 전국 건강취약지역 시작 - 2단계: 전국 확대
‘아빠의 달’ 도입을 통한 아빠의 육아휴직 장려	- 부분이행 - 임금 100%지원 약속에서 축소	- 아빠 육아휴직제 3개월 할당제 실시 -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및 임금인상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 미이행 - '16년 시급 6500원에 불과	- 돌봄 노동 종사자의 임금인상 - 교통비, 야간휴일 서비스 할증 단가 적용 및 수당제 현실화

공약발표자료

1. 정의로운경제론 기자회견문(2016.2.17)
2. 정의로운복지론 기자회견문(2016.2.24)
3. 주거 공약 기자회견문(2016.2.26)
4. 국토환경 공약 기자회견문(2016.3.2)
5. 중소기업·자영업 공약 기자회견문(2016.3.3)
6. 조세·재정 공약 기자회견문(2016.3.8)
7. 보육·교육 공약 기자회견문(2016.3.9)
8. 노동 공약 기자회견문(2016.3.9)
9. 탈핵·에너지 공약 발표문(2016.3.10)
10. 보건의료 공약 기자회견문(2016.3.11)
11. 청년 공약 기자회견문(2016.3.15)
12. 농업 공약 기자회견문(2016.3.16)
13. 장애인 공약 정책기조(2016.3.16)
14. 국방 공약 정책기조(2016.3.17)
15. 지방자치균형발전 공약 기자회견문(2016.3.20)
16. 외교·통일 공약 기자회견문(2016.3.21)
17. 동물복지 공약 기자회견문(2016.3.22)
18. 언론미디어 공약 기자회견문(2016.3.28)
19. ICT 공약 기자회견문(2016.3.29)

심상정 상임대표,
「정의로운 경제론」
“국민 평균 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 이보다는 나아야 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우리 국민들 지금보다는 더 잘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경제론은 이런 고민의 결과입니다.

압축성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재벌주도 수출경제는 더 이상 국민경제를 지탱하지 못합니다. 국가적 지원이 없다면 자력생존이 가능한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정책결정자들이 금과옥조처럼 받들던 거시경제지표는 더 이상 보통사람의 삶을 요약하지 못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을 넘어 저성장이 뉴노멀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소비여력은 떨어지고, 그 만큼 기업의 투자여지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이 꿈도 희망도 잃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펙을 더 해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일자리가 아니라 부채입니다. 이전 세대가 당연시 했던, 좋은 사람과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고 애를 키우는 행복이 지금 청년들에겐 넘볼 수 없는 사치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는 내수수출부진과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기성 정치권은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벌대기업의 투자파업에 불모 잡힌 정부는 이미 오류로 확인된 낙수경제만 부여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재계의 민원 대리인을 자임하며 재벌 2-3세의 손쉬운 돈 벌이 보장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노동악법과 양대지침 추진에서

보듯 너무나 고단한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그 직접적 결과가 바로 지금의 불평등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부문에서 격차는 날로 커지는데 상후하박의 보상체계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부와 지위의 대물림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금권정치가 도래했다는 한탄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전면적 변화가 요청됩니다. 경제가 효율성의 가치에 더해 정의의 관념을 튼튼히 바탕에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의로운 경제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경제를 지향합니다. 누구나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이 훼손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기본선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경제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노동의 가치와 몫이 정당하게 보상되는 경제를 지향합니다. 부모가 누구든, 출신이 어디든, 또 성별을 떠나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셋째,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지향합니다. 이윤추구의 논리가 폭주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될 것입니다. 경제발전은 사회공동체와 지구와 공존과 함께 할 때 의미를 갖습니다. 지구온난화, 신종전염병, 전쟁과 같은 위험에 맞서 공동체를 지키는 생태, 평화경제가 필요합니다.

정의로운 경제의 두 가지 실천과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경제민주화 전략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도 부정하지 않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주요 정당의 공통공약이었습니다. 아마도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의 경제공약이 같은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시기 격차는 더 벌어지고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은 더욱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두 아당이 말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공정성장론에서도 경제민주화는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당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추진 동력에 관한 관점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체의 문제입니다. 민주화는 핵심 이해관계자에게 합당한 권력과 참여의 통로를 제공할 때 비로소 실현돼 나갈 수 있습니다. 경제도 정치만큼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에 대항하는 발언권을 가진 경제민주화 주체 형성 없이 경제민주화는 진척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리점의 교섭권이 빠진 채 제정된 '남양유업법'이 좋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 주체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느냐 여부는 진짜 경제민주화의 의지를 판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의로운 경제가 노조의 조직률 확대와 교섭력 강화, 협동조합을 비롯한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처럼 권력을 가진 몇 사람이 내리놓는다고해서 민주화가 추진되지 않습니다. 사회경제민주화 주체형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제민주화는 구두선에 그칠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과제는 사회연대 전략입니다. 누구나 불평등과 격차를 말하면서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은 변화에 강력히 저항하는 기득권 카르텔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기성정치 세력은 기득권 카르텔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풍찬노숙하며 일관되게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고 싸워온 정의당만이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정당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정당의 힘만으로 부족합니다. 기득권 카르텔에 맞서는 강고한 사회민주화 세력의 연대를 형성해 갈 것입니다. 사회민주화세력을 정치세력화 하는 제2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알바와 골목사장들이, 또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농민과 도시 소비자의 경제적, 정치적 연대의 틀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정의로운 경제」가 추구할 중장기적인 4대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0년까지 국민들의 평균 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 2025년까지 현재의 소득격차 10배를 서유럽 수준인 5배로 줄이겠습니다.
- 향후 10년 내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2040년, 탈핵시대를 열고, 녹색국가, 평화국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이를 실현하는 정의당의 핵심 공약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평균 월급 300만원 실현을 위해 ‘시급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전면 적용’, ‘기업/대기업 CEO 및 고위임원 대상 임금상한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기업·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로 23만개 일자리 창출,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청년디딤돌 급여’, 고졸·지방대 졸업자, 여성취업자를 위한 ‘기회균형채용제도’의 도입 등 약속합니다.

소득격차 축소와 상생을 위한 정책으로 ‘대기업-하청업체간 초과이익공유제’로 임금격차 해소, ‘성별 고용, 임금실태 공시제’를 통한 여성일자리 개선, ‘비정규직 사유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조세개혁 실시로 상위 부유층의 비근로소득(부동산·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대기업의 비업무용 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 강화, 복지에만 지출되는 ‘사회복지세’ 도입 등으로 소득·자산 불평등 완화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사회적경제 혁신 네트워크 구축, ‘식량자급률 법제화’, ‘청년 취업농 육성’ 등으로 지역경제와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의 노동조합을 자임하는 정의당은 정의로운 경제를 기치로 인간의 존엄성, 노동의 가치,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내 야권지도자들이 샌더스 열풍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에 이어서 오늘 이종걸 원내대표도 샌더스를 닮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참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샌더스가 내세운 대형은행 해체, 부자증세, 사회보장제 부과, 건강보험 확대, 단체교섭권 강화, 공립학교 무상교육 등은 사실 저와 진보정당이 오랫동안 풍찬노숙하며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내용과 거의 같은 기초입니다. 따라서 야당들은 샌더스를 이미지 채용하는데 관심을 두시기보다 정책과 가치에서 샌더스를 진정으로 닮기를 바랍니다. 야당들이 샌더스가 내놓은 정책을 수용할 의사가 있고 의지가 있다면 사실 야당들이

따로 정치할 이유도 없지 않나란 생각을 해봅니다. 정책과 가치에서 샌더스를 진정으로 닮고자 한다면 사실 따로 정치할 이유도 없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더불어성장과 정의경제가 어떻게 대비될 수 있느냐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정의이고 공정성장은 시장의 정의라고 규정한 김종인 위원장의 말씀을 전용하면 저희 정의당은 인간존엄성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정의도, 시장의 정의도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되는 삶을 지키는 기본선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두 번째 경제민주화를 다 이야기하지만 경제민주화가 위에서 권한 가진 사람 내리쬐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경제민주화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 동력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제 주체형성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두 당은 그 주체가 없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 확대라든지 노사공동결정제도라든지, 노동자들의 경영 참가 같은 것이 없습니다. 지난 번 남양유업법에서 확인됐듯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가맹점주들에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그것을 맥없이 양보해버렸습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주체형성은 외면하면서 결과적으로 야당이 소수당이라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진정한 경제민주화 의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녹색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경제적 환경 요소인 생태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점을 가장 큰 차이점으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 2월 17일

정의당 대표 심 상 정

「정의로운 경제」의 비전과 과제

「정의로운 경제론」개념도.

비전과 목표

정의 경제비전

1. 2020년 국민 평균 월급 300만원 시대
2. 2025년 소득격차 10배에서 서유럽 수준 5배로
3. 2025년 OECD 평균수준의 복지국가 실현
4. 2040 탈핵, 신재생에너지 혁신경제 실현

추진전략

소득주도 성장 전략 (시장분배의 정상화)

- 노동조합 교섭권 강화
- 최저임금 1만원, CEO 최고 임금제
- 공정임대료 제도, 통신료 절감 등
-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등
- 실업급여 적용 및 기간 확대

정의 선진 복지 전략 (자산/소득 재분배, 복지 투자)

- 고교 무상교육, 어린이 주치의제
- 청년임대, 공공임대주택 확충
- 사회복지세로 년 20조 복지재정
- 상위 대기업, 부유층 과세강화
- 돌봄, 재활 등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미래 녹색 평화 성장 전략 (투자/신성장동력 창출)

- 생태, 녹색 인프라 투자 확대
- 미래성장산업 인프라 투자 확대
- 중소기업,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탄소세 도입, 국토에너지 환경부 신설
- 평화경제 구축

실천과제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와 기득권 카르텔 해체

- 가계부채 해소와 서민중심 재정, 금융정책
-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하도급간 차별철폐
- 재벌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이익 공유제 도입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산업법 개정
- 이해관계자 권익 증대를 위한 개혁입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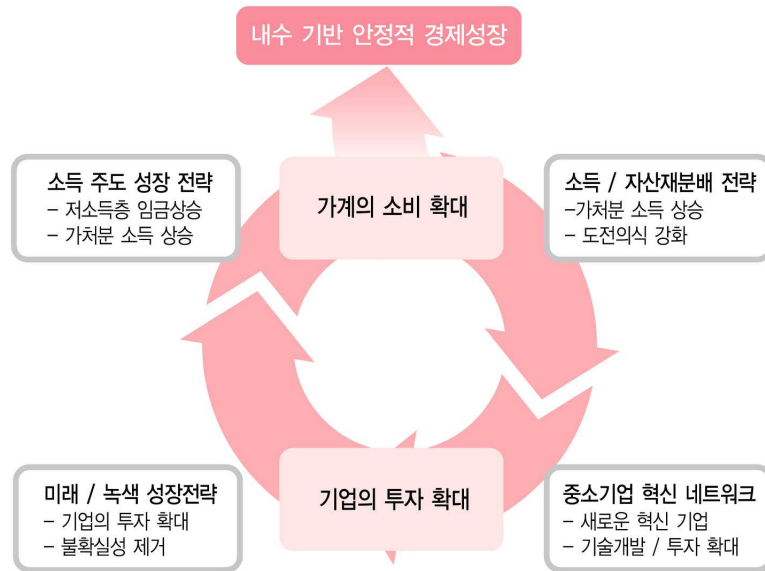
사회연대

공동체 강화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등 일자리 정상화
-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지원확대로 지역 가입자 등 부담경감 및 사각지대 해소
-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 대기업 청년의무 고용제 실시

I. 「정의로운 경제론」의 목표

1. 단기적 목표



- 뉴노멀,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소멸된 상황에서 임금인상, 복지확대를 통한 아래로부터(bottom-up) 경제 선순환을 도모
- 신기후체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유인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일관된 녹색산업, 4차산업에 대한 공공 인프라 투자
- 아래부터의 소비확대, 불확실성 제거를 통한 투자촉진을 통해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

2. 장기적 목표

① 2020년까지 국민 월급 300만원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 저성장 시대, 국민 월급이 올라야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어야 투자가 되어 경제성장이 가능. 아래 소득을 끌어 올리고, 위 소득을 경제 전반으로 환류시켜 붕괴된 중산층을 복원

② 2025년까지 현재 소득격차 10배를 서유럽 수준의 5배로 줄이겠습니다.

- 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 상위 10% 평균소득이 하위 10%의 소득이 10.1배에 달하고 그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를 2020년까지 현재의 10배에서 서유럽 수준으로 격차를 해소

③ 향후 10년 내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인 저부담-저복지 국가로 저출산-고령화 시대 복지수요를 감당하고,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가진 취약계층의 복지확대가 필요
- 2015년까지 복지지출은 GDP대비 10.4%에서 OECD 평균인 21.6%로, 조세부담율은 GDP 대비 18.7%에서 OECD 평균 24.7%에 도달해야

④ 2040년, 미래녹색산업을 한국경제의 중심 성장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 녹색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일관된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기침체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과소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유도
- 2040년 탈핵,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신기후변화 체제에 선도적으로 대응

II. 「정의로운 경제론」의 의미

1. 정의로워야 성장한다.

- 불균등을 완화하려는 정부개입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며, 소득불평등은 경제위기 때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증폭시키고, 교육에 대한 빈곤층의 저투자를 초래하여 경제성장을 저해 (IMF,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2014.2)
- 소득불평등이 오히려 경제성장을 방해하며, 낙수효과의 환상에서 벗어나 양극화를 해소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OECD, 2014.12)
- 정의당의 정의로운 경제정책은 시장의 정의, 사회적 정의를 넘어 ‘인간적 가치들의 회복’과 훼손된 존엄성이 치유 될 때 불평등 해소는 물론 공동체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협조와 그에 따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의미
 - 1%의 소수 대기업과 부자의 번영을 위해 99%가 불모로 잡힌 경제는 정의롭지 못한 경제
 - 출발선이 다른 공정한 시장의 정의만으로는 불평등을 막을 수 없으며, 주체 형성 없는 사회적 정의는 공허

2. 시장실패에 따른 사회적 투자

- 한국경제는 변화와 혁신을 말하면서도 그동안 불균등 발전전략에 기반 한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 즉 과거의 관행이 고착(locked-in)되어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
- 또한 한국경제의 경제적 지배를 하는 재벌의 3대 세습이 진행되면서, 숨팩터적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의 약화되는 상황은 한국경제가 미래를 대비하는 데에 커다란 장애
-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도 불확실성을 이유로 경제혁신과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과소투자로 한국경제의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이는 미래에 대한 시장실패 상황

3. 주체형성과 참여의 경제

-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실현한 주체의 형성이 필요하며, 따라서 경제민주화는 경제주체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 잡는 한국판 구조개혁이며, 주체를 형성하는 과제
 -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안한 것이 아니라 기득권에 막혀 사실상 못한 것
 - 더불어민주당, 공정성장론에는 사실상 주체형성의 문제가 없거나 배제
- 정의로운 경제정책들은 일부 대기업이나 소수 관료들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연대에 기반해야
 - 예산의 수립 및 결정, 정책수립 및 집행, 공동투자와 수익공유, 공동체의 자산공유를 통해 자산기반 공동체 발전을 도모

4.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

- 녹색인프라 투자를 통해 기후변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기후체제에 선도적으로 대응
 - 전기자동차 인프라 투자,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강화 등 제도 변화를 통해 관련 기술투자 및 사업기회 창출
- 고탄소, 고갈등, 고위험 에너지 기반 경제를 저탄소, 저위험, 친환경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 새로운 경제적 기회 창출

◦ 2040년까지 탈핵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발전차액지원제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다차원적인 발전

심상정 상임대표, 정의로운 복지론 발표

질 좋고 공평한 복지를 추구하는 복지국가 2.0 버전
더 많은 복지와 더 좋은 복지, 공평한 재정의 두 가지 개혁방향 제시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오늘은 저희 당의 복지국가 비전과 핵심공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가는 어느 정당, 어느 세력도 부정하지 못하는 시대정신입니다. 지금 17-18세기와 같은 '야경국가'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복지국가가 공통의 정치적 화두가 됐고, 그에 따라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복지에서 상당히 뒤쳐져 있습니다. 복지지출 규모는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할 때 절반에 불과합니다. 진보정당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시대를 선도하는 문제제기로 복지국가의 경로를 개척해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복지국가 원조정당으로서의 책임감과 복지민심의 분출로 변화된 복지정치 지형에 대한 고민을 반영한 업그레이드된 복지국가 2.0 버전이라고 자부합니다. 또 첨부된 공약들은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우리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는 실천적 해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 구상을 고안하면서 가장 고민한 것은 바로 지속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해야 복지국가로의 항해는 중단 없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질 좋고 공평한 복지'라는 표현은 지속가능성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더 많은 복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마는 '더 많은 복지'와 함께 이제는 '더 좋은 복지'에도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즉 복지의 ‘양’만큼 ‘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보육문제를 예를 들어봅시다. 적지 않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젊은 엄마, 아빠들이 체감하는 보육 서비스는 크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환경이 좋은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이 10%에 머무르니, 대기자 수만 26만 명에 달합니다. 국공립에 들어가는 것을 로또당첨에 비유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국공립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국공립 시설확충으로 수요를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90%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민간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는 과제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국공립 비중을 장기적으로 확대하면서 민간시설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과 민간의 보육서비스 질적 격차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은 어린이집 교사들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우수교사를 양성하고 훈련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육교사들의 임금과 처우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월 평균 138만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 평균 188만원 수준인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의 임금도 하는 일에 비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고도의 집중력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수고에 비해 너무나 열악합니다. 이 래서는 좋은 선생님들이 들어올 수도 없고, 또 오래 버틸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방향은 공평한 복지입니다. 복지국가를 만들고 지탱하는 부담이 공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평성을 재원 조달의 견지에서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복지를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로 자리매김 시키는 것이 공평한 복지의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누리과정을 고의적으로 파행시키는 박근혜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복지를 돈의 문제로 돌려놓으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습니다. 복지가 권리가 아니라 비용의 문제가 되고, 시민들이 너도나도 비용 대비 편익의 주판을 두드리게 되는 상황에서는 보편복지는 들어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민간 서비스를 소비할 여력이 되는 중산층과 굳이 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부자들은 복지동맹에서 급속히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자원과 재정이 한정돼 있는 만큼 재정적인 고려가 빠질 수는 없습니다. 저는 복지비용 구조의 획기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사적 영역에 맡겨진 필수적인 지출을 공적 영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국민들이 공공복지를 늘리는 것이 사적비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믿음을 갖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소득이 높은 중산층들도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복지국가가 담당하는 교육, 의료, 노후 등의 지출이 전적으로 개인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내면서도 민간보험에 많은 지출을 합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사교육비 부담에 허리가 휘 정도입니다. 건강보험, 공적연금, 공교육으로도 추가 지출의 필요를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재정의 공평성도 손봐야 합니다. 소득과 경제력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담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부자도 주어진 재정 책임을 다하고, 보통의 시민들도 사회복지세와 같은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사례에서 보듯 불공평한 사회보험료 체계도 시급히 손질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복지는 개인에게 부담이 아니라 혜택이 될 것입니다. 또 시혜성 지출이 아니라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인식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질 좋고 공평한’ 복지국가의 순조로운 향해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의로운 복지론」 5대 대표 공약

첫째, 국민 가계비에 월 100만원씩 보태지는 사회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정의당은 교육·주거·의료·통신 등 4대 가계비 부담을 평균 100만원씩 덜어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대학교의 등록금 자체를 반값으로 낮추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반값공공임대주택 ‘정의스테이’를 통해 전월세난을 해결하겠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와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벌 통신사가 매달 11,000원씩 꼬박꼬박 빼가는 휴대폰 기본요금을 폐지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월급 300만원이 시장임금이고 노동소득이라면, 가계비 절감대책은 사회임금이고 복지소득입니다.

둘째, 건강보험료를 소득 기준으로 부과, 552만 가구의 보험료를 인하하겠습니다.

송파 세모녀는 3,700만원 전세에 소득이 없는데도 건강보험료는 47,060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은퇴 후 소득이 없어도 3억원 집 한 채만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119,580만원을 납부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수백억 재산을 보유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2만원만 납부했었고, 5억원 재산과 2천만원 연금 소득 있지만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 한푼도 안 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공평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정의당은 건강보험료 소득(능력)에 따른 부과체제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552만세대에게 평균 월 46,668원(연 56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복지 구조개혁으로 모든 어린이에게 질 좋은 보육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보육정책 투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공 영역의 비중을 늘리는 것과 함께 90%의 아동이 이용하는 민간 보육의 질 역시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어린이들에게 질 좋은 보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수 26만명을 해소하고,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보육시설의 교사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우수교사 양성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역 보육거점센터를 운영해 민간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준보육비용의 100%까지 시설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지금처럼 아동 1명당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적정 비용을 시설에 직접 지원해 보육의 질을 고루 향상시키겠습니다.

넷째, 복지 공무원 등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대한민국을 사회서비스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 가속, 여성 경제활동 증가, 가족 역할 및 구조 변화, 국민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현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05년 이후 증가한 취업자의 약 42%(81만명)가 사회서비스산업에서 창출되었으나 여전히 전산업 대비 고용 비중은 5.4%(2011년)로 OECD 평균(10.2%)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반면, 사회서비스산업의 월평균 임금은 188만원으로 전체 산업 평균인 210만원보다 낮은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민간 공급 의존으로 지역간 불균형, 종사자 처우 열악, 질적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전환하는 등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로 대한민국을 사회서비스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사회복지세 신설 등 복지증세로 연 50조원의 복지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입니다. 누가 얼마나 부담해서 복지에 얼마나 어떻게 쓸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정 의당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액 등에 10~20%의 사회복지세를 부과해 연간 20조원과 법인세 최고 세율을 MB감세 이전인 25%로 회복하고, 사내유보금 중 이자, 배당, 임대료 수익 등에 대해 10% 할증 과세를 통해 연간 11조원의 법인세 추가 세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행 소득세의 누진세율을 강화하고, 주식양도소득과 임대소득을 종합과세 함을 통해 8.4조원을, 부동산 최고세율 신설과 과세표준 공시가격으로 현실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80%로 상향해 8.5조원을 추가 확보할 것입니다. 상속 증여세에 공제액을 축소하고 실효세율 강화, 증여세재계산제 적용과 세대생략 할증과세 50%로 상향해 1.6조원 이상 추가 재정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자증세 더하기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부담하는 사회복지세 신설로 50조원의 복지재정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2016년 2월 24일

정의당

「정의로운 복지」 대표 공약과 11대 정책 과제

I. 「정의로운 복지」기조와 배경

II. 「정의로운 복지」대표공약해설

- ① 국민 가계비에 월 100만원씩 보태지는 사회복지
- ② 건보료 소득기준 부과, 지역 552만 세대 보험료 인하
- ③ 복지 구조개혁으로 모든 어린이에게 질 좋은 보육을
- ④ 사회복지세 등 복지증세로 연 50조원 복지재정 확충

[별첨 자료1] I. 「정의로운 복지」기조와 배경

1. '질 좋고 공평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론

2010년 보편/선별 복지 논쟁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에 복지 민심이 등장했습니다.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향한 시대적 열정이 타올랐습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이 도입되고 기초연금도 두 배 올랐습니다. 복지민심이 만들어낸 중요한 성과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갈 길이 멍니다. 근래 복지가 늘고 있지만 우리가 가입한 OECD 기준에서 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는 OECD 국가 평균 대비 절반에 불과합니다. 우선 대한민국이 OECD 평균 수준의 복지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구성된 국민부담률 역시 국제 수준으로 상향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발전도 중시합니다. 시민들이 공공복지에 만족할 수 있어야 복지는 지속가능한 토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공평한 기여를 요청합니다. 그래야 복지재정도 순조롭게 조성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질 좋고 공평한' 복지국가를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2. 박근혜정부 장벽에 막힌 복지민심

현재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길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과거로 되돌리는 일조차 시도되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여러 복지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운영을 위임받는 대통령선거에서 국민과 행한 약속이었음에도 인수위원회부터 손바닥을 뒤집듯 복지공약을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위반은 복지공약의 축소 후퇴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감액하고 물가와 연동해 인상을 더디게 하도록 훼손했습니다. 고교무상교육, 저임금노동자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은 아예 백지화했습니다. 두 번째 위반은 교육청, 지자체에 복지 예산을 떠맡기는 반칙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운영을 교육청에 위임하면서 재정은 지원하지 않아 매년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두 배로 올리면서도 국고보조율을 그대로 두어 지자체들이 심각한 예산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반은 그나마 있는 복지에 대한 구조조정입니다. ‘유사 중복’이라는 미명아래 지자체 자체 복지를 줄이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의 칼끝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겨눌 수 있다는 우려마저 듭니다.

박근혜정부가 보여준 복지정책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 복지민심에 찬물을 붓는 일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에서 보듯이 정부의 비상식적 조치는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낳을 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엄중하게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을 심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복지국가 원조정당, 정의당

20대 총선을 맞아 각 정당들이 복지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통령선거 공약을 무참히 위반한 정당입니다. 무슨 낯으로 또 국민에게 복지를 약속할지 의문입니다.

야당들도 복지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제대로 만들고 고교무상교육도 실시해야 한다는 주

장에 정의당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야당들의 복지공약에선 지금 복지민심이 정녕 무엇을 생각하고 근심하는지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방향과 조응해야만 복지정책이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을 이어오는 정의당은 대한민국 복지국가 정당의 원조입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비롯해 무상의료, 복지증세 등 복지국가를 향해 가는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이 처한 격차, 빈곤, 불안 상태를 생각하면 더욱 신발 끈을 매고 복지국가로 달려가야 합니다. 복지국가 책임정당으로 정의당은 더욱 성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복지국가 길을 열어 가겠습니다.

2010년 이후 부족하지만 복지의 양적 확대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제는 양적 확대와 함께 복지구조의 전면적 개혁을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복지국가 전략이 '더 많은 복지'와 함께 '질 좋고 공평한 복지'로 한단계 상승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의 미래로 '정의로운 복지국가' 길을 제안합니다.

4.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위한 6대 개혁

1) 믿음직한 질 좋은 복지!

2010년 복지바람은 조세를 토대로 삼는 복지에서 양적 확대를 이루어 왔습니다. 급식, 보육 등 사회서비스, 기초연금 등 사회수당이 이에 해당됩니다. 모든 시민이 '권리'로서 복지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선별'하지 않고 '(준)보편'적으로 복지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영역의 복지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육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믿을 만한 질 좋은 보육서비스입니다. 재정 측면에서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엄마, 아빠들은 보육에 충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 긴 줄을 서고, 정작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사들은 열악한 환경에 힘들어 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경우에도 요양보험이 재정을 지원하지만, 당사자 어르신이나 가족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의료서비스는 어떻습니까? 왜 재벌회장님만 주치의를 가져야 합니까? 일반 시민들도 마음 편히 만날 수 있는 가족 주치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지를 통해 누려야할 궁극적 목표는 ‘평안한 삶’입니다. 복지제도, 복지예산 모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국민들이 복지 서비스에 만족하고 신뢰할수록 복지 토대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또 앞으로 확대할 복지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 복지인프라 개혁을 위한 투 트랙

정의당은 복지의 질적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개혁은 한국이 지닌 복지인프라의 특수성을 감안해 진행돼야 합니다. 산업화에 비해 뒤쳐진 공공복지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민간복지 인프라가 넓게 구축돼 있습니다. 특히 의료, 보육, 요양 등의 복지서비스 인프라가 그렇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복지인프라를 설계한다면, 서구처럼 공공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가겠지만 이미 민간인프라 존재하는 한국에서 지혜롭고 정교한 전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복지인프라 개혁을 위해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인프라에 공공성을 부여하는 투 트랙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이 지역거점센터 역할을 수행해 국공립과 민간시설의 서비스 체계와 질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겠습니다. 엄마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뢰하는 이유는 그만큼 보육서비스 여건이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민간보육시설에선 운영방식에 공공적 원리를 담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와 업무 환경도 개선될 것입니다. 공공과 민간을 결합하기 위해, 지역별로 공공이 보육거점센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혁 모델은 요양서비스에도 유사하게 적용해 가겠습니다. 의료의 경우에도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3) 복지거버넌스 개혁: '아래로부터 시민참여형 복지'

복지의 질을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복지를 누리는 시민 당사자입니다. 지금까지는 공공복지는 정부 주도의 관료주의적 통제에 종속되고, 민간복지는 사적 인프라라는 이유로 시설 소유 법인이나 개인이 의사결정의 좌우되어 왔습니다. 이제 복지거버넌스에 시민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우선 공공, 민간 보육시설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물론이고

민간 보육시설에 학부모, 지역 시민 등이 참여하는 운영구조를 강화하겠습니다. 나아가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동육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요양서비스 역시 보육과 비슷하게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4) 복지비용 구조의 전환: 사적 부담에서 공적 기여로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으로 중간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조차 살기 어렵다 합니다. 가계지출 구조를 보면 그 이유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공적 복지가 빈약하다보니 사적 지출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가계가 지출하는 의료비의 총량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내지만 동시에 본인부담금을 감당해야 하고, 민간의료보험에도 별도로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 역시 그렇습니다. 공적연금이 취약한 탓에 많은 사람들이 사적연금에 높은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사교육비도 심각합니다. 공교육이 제자리를 잡지 못한 탓에 아이들이 사교육 시장에 내맡겨지고 가계는 사교육비 부담에 허리가 휩니다. 언제까지 가계의 필수적 지출을 사적 영역에 내맡겨야 하겠습니까?

공적 복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당장 가계 부담을 추가로 늘리지 않고도 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지출되는 사적 의료비, 개인연금 보험료, 사교육비를 공적 영역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공공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복지비용의 전환' 개혁이 절실합니다.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개인연금 대신 공적연금, 사교육 대신 공교육으로 비용 구조를 전환해 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편적 성격을 지닌 의료, 연금, 교육 등의 영역에서 공적 복지가 확대 강화될 것입니다.

5) 사각지대와 취약지대가 없는 복지

지난 시기 보편/선별 복지 논쟁은 급식, 보육, 기초연금 등 사회서비스, 사회수당 복지 영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공공부조는 애초 선별복지입니다. 이러한 공공부조는 보편복지와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지난 시기 보편주의 성격의 복지는 늘어나고 있으나 가난한 사람의 복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송파 세모녀가 죽음으로 고발됐건만 아직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가난함에도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제

대로 공공부조가 자리잡아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 확대에도 더욱 힘써하겠습니다.

불안정노동자를 위한 노동복지도 강화해야 합니다. 부당한 계약해지를 당하고서도 수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활의 압박이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비정규노동자도 실업급여를 받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에서 전세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저임금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영세자영업자에게도 사회보험을 지원하는 '두루누리2 사업'을 도입하겠습니다.

6) 복지재정 책임이 공평한 복지!

시민들이 복지를 권리로 인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복지는 공평해야 합니다. 복지가 확대되는만큼 시민들도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정 기여가 공평해야 합니다. 그래야 '강한 복지 / 강한 재정'의 선순환이 가능합니다.

복지국가에서 재정의 공평성은 소득과 경제력에 따라 누진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대기업, 상위계층들의 자신의 재정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복지를 누리는 시민들도 복지에만 사용하는 세금인 사회복지세 도입에 나서야 합니다.

사회보험료도 공평히 내야 합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문제가 심각합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기에 금융, 사업 등 근로외 추가소득을 가진 상위계층들이 제대로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들은 재산, 자동차에 보험료가 부과되어 과도하게 보험료를 냅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미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도 상위계층 반발이 무서워 개혁에 나서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전면 전환해 국민들이 공평하게 보험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자료2] II. 「정의로운 복지」 대표공약 해설

1. 국민 가계비에 월 100만원씩 보태지는 사회복지 실현

❶ 사례1 : 4인 가족 기준. 월 136.9만원, 연 1,642.8만원 절감

- A씨(54세. 남)와 B씨(54세. 여) 부부와 대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자녀
- A씨는 집 근처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 B씨는 보험설계사로 근무

구분	현재 가계 부담	정의당 개선방안	추가 경감 혜택	
			매월	연간
통신비	기본요금 월 11,000원	휴대폰 기본요금 폐지	가족 4.4만원	52.8만원
건강 보험	지역가입자는 부담능력에 비해 보험료 과다 부담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552만 세대 월평균 46,668원 ↓	세대당 4.7만원	56.4만원
민간 보험	국민의 74% 민간의료보험 가입, 부부 합산 29.3만원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시 민간의료보험 가입 불필요	부부만 29.3만원	351.6만원
국민 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미지원	월소득 14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월 최대 63,000원 ↓	남편 6.3만원	75.6만원
교육비	고교수업료 연 170만원 대학등록금 연 734만원(사립)	고교 무상교육 실시 반값등록금 연 350만원 (사립대)	자녀2명 46.2만원	554.4만원
주거비	아파트 전세 2억원, 30평 월세 100만원(전환율 6%)	정의스테이 50년 임대, 30평 월 임대료 54만원(전환율 6%)	임대료 46만원	552만원
합계	-	-	136.9만원	1,642.8만원

※ 민간보험료는 한국의료패널(2012)의 가입가구원의 연령별 월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

❷ 사례2 : 3인 가족 기준. 월 162.9만원, 연 1,954.8만원 절감

- 신혼부부 C씨(33세. 남), D씨(32세. 여) 부부와 생후 2주된 아이
- C씨는 일반 회사에 취업한 지 3년이 지났고, D씨는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로 근무

구분	현재 가계 부담	정의당 개선방안	추가 경감 혜택	
			매월	연간
통신비	기본요금 월 11,000원	휴대폰 기본요금 폐지	부부 2.2만원	26.4만원
민 간 보 험	국민의 74% 민간의료보험 가입, 3인 가족 34.2만원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시 민간의료보험 가입 불필요	3인 34.2만원	410.4만원
주거비	다세대 전세 1.5억원, 20평 월세 75만원(전환율 6%)	정의스테이 50년 전세, 20평 월 임대료 36만원(전환율 6%)	임대료 39만원	468만원
출 산 육 아	국가 차원의 마더박스 없음 육아휴직시 월50~100만원	100만 상당의 마더박스 지급 육아휴직 3개월 확대, 80~150만원	최대 87.5만원	1,050만원
합 계	-	-	162.9만원	1,954.8만원

㉓ 사례3 : 2인 가족 기준. 월 38.8만원, 연 465.4만원 절감

- E씨(72세. 남), F씨(67세. 여) 노년 부부

구분	현재 가계 부담	정의당 개선방안	추가 경감 혜택	
			매월	연간
통신비	기본요금 월 11,000원	휴대폰 기본요금 폐지	부부 2.2만원	26.4만원
민 간 보 험	국민의 74% 민간의료보험 가입, 부부 합산 14.1만원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시 민간의료보험 가입 불필요	14.1만원	169만원
주거비	주거급여 평균 11만원 2인가구 최대 월22.5만원	주거급여 평균 20만원 지급대상 완화, 주거급여 2배 인상	2인가구 22.5만원	2인가구 270만원
합 계	-	-	38.8만원	465.4만원

④ 사례4: 1인 가구 월 59.1만원, 연 709.6만원 절감

- G씨는 27세 취업준비생

구분	현재 가계 부담	정의당 개선방안	추가 경감 혜택	
			매월	연간
통신비	기본요금 월 11,000원	휴대폰 기본요금 폐지	1.1만원	13.2만원
민간 보험	국민의 74% 민간의료보험 가입, 월 83,854원 납부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시 민간의료보험 가입 불필요	9.8만원	117.6만원
주거비	보증금 1천 월세40, 10평 월부담 45만원(전환율 6%)	정리스테이 50년 임대, 10평 월 임대료 18만원(전환율 6%)	임대료 27만원	임대료 324만원
청년 급여	청년 내일찾기 패키지 월 28.4만원(2~3개월) 지급 연200만원 직업교육 수강료	소득하위 70%의 15~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 디딤돌급여 지급 1인당 연간 최대 540만원	21.2만원	254.8만원
합 계	-	-	59.1만원	709.6만원

2. 건강보험료 소득(능력)별 부과로, 552만 지역 세대 보험료 인하

진단

• 소득(능력)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과다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들

-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 외에도 재산, 자동차, 성·연령에도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어 실제 부담능력에 비해 과다 부담하고 있음.

[현행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 연 종합소득 500만원초과 세대 : 종합소득+ 재산+자동차
- 연 종합소득 500만원이하 세대 : 평가소득(성·연령·가구원수+재산+자동차)+재산+자동차

※ 저소득층 재산, 자동차에 '이중 부과' 효과

- 지역가입자의 80% 정도인 종합소득 500만원이하 세대는 (실제)소득 대신 경제활동참가율(성·연령·가구원수)와 생활수준(재산·자동차)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을 적용함. 따라서 실제소득(부담능력)을 반영하지 못하며, 재산과 자동차에는 '이중부과'하고 있음.

〈사례〉 [송파 세모녀(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의 건강보험료 과다 산정 사례]

□ 송파 세 모녀 세대의 보험료 ...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세대원		재산(주택)과표	자동차	연간 소득금액
세대주 박00(여) 60세 자녀(여) 35세 자녀(여) 32세		전월세 3,699만원	-	1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 산정				
계	경제활동참가율 점수	재산 가산점수	생활수준 점수 자동차 가산점수	소득금액 가산점수
	여 60세 : 3.0점 여 35세 : 5.2점 여 32세 : 5.2점	900초과 1,500이하	-	1
19.8	13.4	5.4	-	1
○ 보험료부과점수 합산				
계	생활수준 등 등급 점수	재산등급 점수	자동차등급 점수	
268점	202점(16등급)	66점(3등급)	-	
○ 월 보험료 산정(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보험료 부과점수		점수당 금액	월 보험료액	
268점		175.6원	47,060원	

- 부과 요소별 역진성도 매우 심각한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차지하는 재산기준은 주로 서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음. (임대)소득이 발생하기 어려운 전월세 세입자나 1주택 소유자에게도 과중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음.

[재산 구간별 점수, 2014년 기준, 1점=175.6원]

등급	재산 금액	점수	보험료	과표 대비 보험료
3	1천만원	66	11,580	1
11	5천만원	268	47,060	4.06
18	1억원	439	77,080	6.65
28	3억원	681	119,580	10.3
33	5억원	812	142,910	12.31
39	10억원	1012	177,770	15.35
50	30억원 초과	1,475	259,010	22.37

▶ 은퇴 후 소득 없이 3억원 집 한 채만 있어도 재산점수(681점)로 건강보험료 12만원이 부과

- 소득기준 또한 정률 부과 방식이 아니라 총합소득 500만원 이상부터 4억9,900만원 초과까지 75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과하면서, 고소득자일수록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함.

[소득별 건강보험료의 예]

등급	소득 구간(연 총합소득)	점수	보험료	소득 대비 보험료
1	600 만원	380	66,720	13.3%
7	1200만원	552	97,150	9.7%
22	3000만원	981	172,260	6.9%
31	5000만원	1,240	217,740	5.2%
43	10000만원	1,687	296,230	3.6%
60	25000만원	4,740	832,340	4.0%
75	49,900만원 초과	11,625	2,041,350	4.9%

▶ 연 소득 600만원은 소득의 13.3%를 보험료로 내나, 1억원은 소득의 3.6%만 보험료로 납부

• 소득(능력)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과소 부담하고 있는 고소득자

- 대다수 직장가입자는 유일한 소득의 원천인 임금소득에 대해서는 100%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 반면, 일부 고소득자 및 피부양자는 임금외 종합소득(금융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 않음.

< 소득 보유 현황 및 건보료 부과 기준 >

전 체	구분	소득구분	대상자 (비중)	부과가능 연간소득금액	현행 부과대상 자비율
건강보험 전체가입자 (4,976만명)	직장가입자 (1,455만명, 29.2%)	보수	1,455만명 (100.0%)	518조 3,724억원	100.0%
		종합과세소득	217만명 (14.9%)	24조 5,984억원	1.5%
	피부양자 (2,023만명, 40.7%)	종합과세소득	233만명 (11.5%)	12조 2,337억원	0%
	지역가입자 (1,498만명, 30.1%)	종합과세소득	402만명 (26.8%)	35조 2,230억원	100.0%

주) 표본자료(건강보험 전체대상자의 10%) 전체 환산 기준

- ▶ 임금 외 종합과세소득 7,200만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미부과
임금 외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강보험료가 미부과
- 현재 직장가입자 중 217만명은 근로소득외 종합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절반인 약 104만명은 연간 종합소득이 336만원 이상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233만명은 종합소득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음. 연간 합산 소득이 336만원 이상으로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약 80만명으로 추정됨.

- 수백억 자산가 MB 건강보험료 2만원 (서울시장 후보시절 저소득 직장가입자로 둔갑)
- “5억원 재산과 2천만원 연금소득 있지만,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 한푼도 안내” -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약속

• 건강보험료 소득(능력)에 따른 부과체제로 전면 개편.

“지역가입자의 72.8%인 552만 1천세대, 평균 월 46,668원(연 56만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
 듦. 552만세대 전체로는 연간 3조원의 건강보험료가 경감됨”

- 소득(능력)비례 원칙에 맞게 ‘모든 가입자’의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①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재산, 자동차 기준은 폐지

② ‘모든 소득’의 범위를 일정소득(예, 연 336만원이상) 이상의 종합소득(금융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으로 확대하여 고소득층의 무임승차를 방지

③ 양도소득, 상속·증여세와 같은 재산소득(과세표준 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를 검토

-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등의 설정은 가능한 제한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온전한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가 성립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폐지.

-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연령, 자동차 기준은 폐지하되, 재산기준은 3억을 기준으로 공제방식을 적용할 경
 우, 지역가입자는 3조 919억원의 건강보험료 부담 감소

[모든 소득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시 보험재정 추계 결과]

기준 금액	총 재정 변동 (a+b)	보수 외 별도 종합소득자 / 피부양자			지 역				
		보수외소득	피부양자	재정 변동 (a)	소득 (최저보험료 포함)	재산	성·연령	자동차	재정 변동 (b)
336만원 (모든 소득)	1,687	336만원 초과 (5.89%)	총소득 336만원 (5.89%)	32,606↑	5.89% (정률)	3억원 공제	폐지	폐지	△30,919
		19,939↑	12,667↑		16,034↑	△29,568	△8,501	△8,884	

※ 모든 소득의 범위에 양도소득, 퇴직소득, 상속증여소득은 제외하고 추계한 자료

- 지역가입자의 11.3%, 직장가입자의 16.7%, 피부양자는 11.3%가 보험료가 인상되며, 저소득 지역가입
 자(15.9%)와 평범한 직장가입자(83.3%)의 건강보험료는 변동 없음

[모든 소득기준 적용시 보험료 인상인하세대 현황, 자료: 기획단]

구 분		계(a+b) (22,138천세대)			직장(a) (14,549천세대)			지역(b) (7,589천세대)			피부양자 (20,226천명)		
		인상	인하	무변동	인상	인하	무변동	인상	인하	무변동	인상	인하	무변동
7	세대	3,286	5,521	13,331	2,427	-	12,122	859	5,521	1,209	2,388	-	17,838
(1,687)	비율	(14.9)	(24.9)	(60.2)	(16.7)	(0.0)	(83.3)	(11.3)	(72.8)	(15.9)	(11.8)	(0.0)	(88.2)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시 주요 사례]

- 송파 세모녀 월 50,140원 → 1만 6천원 미만
- 소득 없는 70대 노부부 월 13만5,030원 → 1만 6천원 미만 (또는 경감)
- MB를 비롯한 고소득층 편법 무임승차 → 269만원 이상 최고 건강보험료 부과

• 실현 방안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15.12.22 정진후 의원 발의)

3. 복지 구조개혁으로 모든 어린이에게 질 좋은 보육을

■ 공공 비중 확대, 민간 공공성 강화로 모든 어린이에게 안심보육 제공

투트랙	주요 내용	방법
공공 비중 확대	국공립 대기자수 26만명 해소	- 초등학교 빈교실, 공공기관, 공원, 대학 활용 - 민간매입 및 리모델링 전환 등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에 국공립 우선 설치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445개에 우선설치('14.12)
민간 공공성 강화	교사 처우 개선	1단계로 교사임금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인상(월 평균 155만원 → 188만원. '12년기준)
	우수교사 양성시스템 도입	- 보육교사 양성과정 개선 - 원장 및 교사 교육훈련 지원 강화
	국공립 전환시 인센티브 부여	민간 →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시 원장 자격 일정 기간 동안 유지, 보육교사 고용승계 등
	지역거점 보육지원센터 운영	지역거점 보육지원센터를 두어 민간어린이집에 필요한 교재, 기자재 대여 등 지원 강화
지원방식 개선	보육비용을 시설로 직접 지원	- 보육시설 운영 비용 현실화 (표준보육비용100%) - 바우처 지급이 아니라 시설 직접 지원으로 전환

진단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은 16만명으로 전체 보육아동의 10.6%에 불과함(현원, '14.12월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부족으로 국공립 대기자 수는 26만 명에 달해 서울시의 경우 입소에 1년, 길게는 3년까지 소요되고 있음.
 - * 서울 국공립 대기자수 9만9천명 (14년 9월, 서울시 보도자료) / 서울 제외 16개 시도 국공립 대기자수 15만8천명 (15년 2월, 박원석의원실 제출자료)
- 국공립어린이집은 원아수에 상관없이 인건비와 운영비가 고정적으로 지원됨. 이에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에 따라 부모 선호도가 매우 높으나, 수요에 비해 공급률이 매우 낮음.
-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90%가 민간보육시설 이용 중.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10.3%에 불과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20명 이하의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24.4%,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중이 51.8%를 차지함.

- 보육교사 처우도 심각한 문제임. 2012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월 평균임금은 155만원에 불과함.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임금은 월평균 188만원인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145만원, 가정어린이집은 138만원을 받고 있음.
- 최근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보육교사의 자질과 인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양성과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열악한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양성과정을 개편한다 하더라도 질 좋은 보육환경을 기대하기 어려움.

약속

- 국공립어린이집 비중 확대
 - 국공립 대기자수 26만명 해소
 -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에 국공립 우선 설치
 - 민간매입, 리모델링 전환, 공원 활용, 공공기관 유휴공간,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 등
- 민간어린이집 공공성 확대
 - 교사 처우 개선: 1단계로 교사 임금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인상
(월 평균 155만원→188만원, '12년기준)
 - 우수교사 양성시스템 도입: 교사 양성과정 개선 / 원장 • 교사 교육훈련 지원 강화
 - 국공립 전환 시 인센티브 부여: 원장 자격 일정기간 동안 유지, 보육교사 고용승계 등
 - 지역 보육거점센터 운영: 민간어린이집에 필요한 교재, 기자재 대여 등 지원 강화
- 지원방식 개선
 - 보육시설 운영 비용 현실화: 표준보육비용 100% 지원
 - 바우처 지급이 아니라 시설 직접 지원으로 전환

4. 사회복지세 신설 등 복지증세로 연간 50조원 복지재정 확충

■ 정의당 복지증세 방안

주요 세목	주요 내용	연간 추가 세수
사회복지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액 등에 10~20% 부과세	20조원
법인세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원상회복	8조원
	이자 배당 소득 등 사내유보금 할증과세	3조원
소득세	5-15-25-35-45% 세율체계로 개편	3.4조원
	주식양도소득 누진세율 적용 등	2조원
	3주택 전세소득 과세, 월세소득 종합과세 실시	3조원
재산세	과세표준 누진세율 상향,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 등	8.5조원
종부세	현 시가표준액 대비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 2배로 강화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최대 5억으로 제한해, 실효세율을 강화	1.6조원
	증여세재계산제 적용, 세대생략 할증과세 50%로 강화	추계 미정
합 계		49.5조원

진단

- 모든 정치세력들이 복지 확대를 주장하나, 그에 걸맞는 책임 있는 복지재정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특히 박근혜 정부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영유아 보육 완전 국가책임제, 고교무상교육 실시 등 대표적인 복지공약을 잇따라 파기해 왔음.
-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민부담률이 매우 낮은데, 2015년 국민부담률 GDP대비 24.7%에 불과해 OECD 평균 34.1%(2014년)에 비해 무려 9.4%나 부족. 2015년 GDP 1,546조원 적용하면 OECD 기준 약 145조원이 부족분임인데, 이는 2015년 중앙정부 복지지출(보건·복지·고용) 120조원 보다 더 많은 재원임.

- 현재 법인세의 주요 문제점은 ① 지난 MB정부 출범 후 법인세 최고세율 3% 인하로 정부 재정 적자 폭 커짐. ②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고, 전체 국민소득에서 기업소득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 ③사내유보금은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투기형 자산 증가에 따른 이자 및 배당수익이 증가
-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 38%는 OECD 국가중 동구권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가 소득세 최고세율이 40~50% 수준임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임
2015년 초 정몽구 부자 현대글로비스 주식 팔아 1조 1,500억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만 부담. 전세보증금에 대해선 3주택자 이상에 한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월세소득도 주택보유와 상관없이 연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
- 부동산 보유세는 약 10조원으로, 공시가격 대비 실효세율은 시가표준액 대비 0.233%에 불과함. 또한 2013년도 공시가격(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비율(한국감정원 공시가격 및 국토교통부)은 아파트(공동주택)는 71.5%, 단독주택은 59.2%, 개별토지는 61.2%로 부동산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비율은 65%임.
- 상속재산 50~100억 중 9명, 30~50억 중 13명, 20~30억 중 28명, 10~20억 699명이 상속세를 한 톨도 안낸 상황.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나, 상속재산 10~100억대의 실효세율은 12%, 상속재산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효세율은 35%에 불과함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은 2012년 미취학 아동 7명에게 25억 상당의 주식을 증여했으나 신약개발로 주식 시세가 1,000억원까지 급등. 한편 최근 5년간 18세 미만 미성년자 3,717명에게 증여된 부동산만 1조 4254억 원에 달하고, 2014년 기준으로 10세 이하 임대사업자는 817명이고, 10세~20세 임대사업자는 2,288명임.

약속

- 안정적인 사회복지 재정을 위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추가로 부가되는 세금으로(surtax) 사회복지세 신설로 연간 20조원 확보
- 법인세 최고세율을 MB감세 이전 25%로 회복. 연간 8조원 수준의 신규재원 마련
사내유보금 중 업무무관 자산의 운용수익(이자, 배당, 임대료 수익 등)에 대한 10% 할증과세 도입. 10% 할증과세 도입시 매년 3조원의 추가 세입 기대

- 현행 소득세율 [6-15-24-35-38%]체계에서 [5-15-25-35-45%] 체계로 개선으로 연간 3.4조원 정도의 세수증대

주식양도소득도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누진세율 적용하고, 상장주식양도소득 부과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인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로 연간 2조원의 신규 재원 확보됨

현행 3주택자 이상에게 적용되는 전세소득 과세를 2주택자 이상으로 확대하고, 월세 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폐지해 종합과세를 실시 등 3조원 추가 세수 확보.

- 현 시가표준액 4,342.1조원 대비 부동산 보유세 10.1조원의 실효세율 0.233%를 대폭 인상함(부동산 보유세 관련 증가분 8.5조원)

-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으로 현실화(공정시장가격비율 적용 축소 등)하고 2008년 이전 종부세 수준의 누진세율을 강화함(약 4조원 추가 세수 확보)

- 표준지와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결정제도를 개선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현행 평균 65%에서 80%로 상향시킴(부동산 관련세 증가분 약 4.5조원)

- 현행 복잡한 상속공제를 배우자 유무에 따라 3억 내지 5억으로 단순화. 만약 상속인 중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함. 이 경우 상속증여세 1.6조원 추가 세수 확보.

증여세 재계산제도를 강화하며, 세대생략 상속·증여에 대해 할증과세 강화(세수 미정)

「정의로운 주거」 “반값 임대 공정주택(정의stay), 주거비 지원, 분양원가공개·분양가상한제 확대”

“주거불안, 부동산 투기, 무분별한 개발”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700만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의 내집 마련의 꿈은 멀어진 지 오래이고,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월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률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청년세대와 독거노인 등 1인 가구의 주거불안도 매우 심각합니다.

2004년 이후 폭등한 집값거품을 제거하지 않은 채 박근혜 정부가 연이어 부동산 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무주택 서민이 아닌 부동산투자와 재벌을 위한 특혜에 치중하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다릅니다. 주거불안으로 고통받는 서민은 보호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은 뿌리 뽑아야 합니다. 주택은 자산증식 수단이 아닌 거주공간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해야 합니다. 주택을 만드는 노동자들도 땀 흘리는 만큼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당의 ‘정의로운 주거’이며, 이를 위한 13개 정책을 약속합니다.

첫째, 촘촘한 주거지원 정책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① 뉴스테이 대신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stay)을 공급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만 특혜받고 서민부담 주거비는 줄어 들지 않는 뉴스테이를 폐지하고, 다양한 유형의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stay)을 공급하겠습니다.

② 소득하위 20% 이하 무주택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생계급여 연계방식을 폐지하여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여 현재의 81만 가구, 월평균 11만원에서 소득하위 20% 이하에게 월평균 2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③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공정임대료를 도입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임대료 상승률은 5%에서 3.3%로 인하, 계약갱신권 1회 보장, 개별주택에 대한 공정임대료로 전월세 세입자를 보호하겠습니다.

④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의무화로 깡통전세 발생시 세입자 피해를 방지하고, 저소득층 세입자에게는 보증수수료를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땅값·집값 거품을 제거하겠습니다.

① 과세기준을 시세(실거래가) 기준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시세 반영률이 낮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과세기준을 정상화하고, 시세(실거래가)기준으로 전환하여 보유한 부동산 자산만큼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② 임대소득과세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임대소득 과세 대상을 2주택자 이상으로 확대, 월세 소득 분리과세 폐지, 임대차등록제 의무화로 임대료 착취를 근절하겠습니다.

③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아파트의 모든 분양원가 상세내역을 인터넷에 상시공개하고,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아파트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주택 수명을 연장하겠습니다.

① 공공아파트 후분양제를 이행하겠습니다.

모든 공공아파트는 80% 완공 후인 골조공사 진행 후 분양하여 선분양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주택 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② 감리비 예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감리비를 사업자(민간건설사)가 아닌 공공이 지급하게 함으로써 감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겠습니다.

③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재건축 허용연한을 50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안전진단 기준 강화, 조합설립 동의요건 강화로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겠습니다.

④ 재개발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으로 확대하고, 부과율을 50%까지 상향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불로소득을 환수하겠습니다.

⑤ 공정임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따뜻한 건설노동자에게 최소한 법정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교육훈련 수당을 보장함으로써 숙련된 건설 노동자를 양성하겠습니다.

⑥ 직접시공제를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공공사업에 대해 75% 이상 직접 시공을 의무화하여 뭇땅하청에 의한 건설노동자 의 노동착취를 근절하고 건설사가 품질제고를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재벌·기득권과 타협하지 않고 부동산 부자·투기꾼의 불로소득을 좌시하지 않는 유일한 민생정당

입니다. 주거불안 없는 사회, 부동산 투기 없는 사회, 무분별한 개발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국민과의 약속 실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2016년 2월 2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김 용 신** 의장

4대강 복원, 발암물질 걱정없는 대한민국 “생명의 강을 되살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정의당은 치유와 회복, 그리고 예방을 통해
국토환경과 국민건강을 지키는 20대 총선 국토환경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수질 만족도는 OECD 중간 수준이고, 대기환경 만족도는 34개국 중 31위로 꼴찌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선진국 국민들에 비해 더 나쁜 공기를 마시고 있고, 더 나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어떻습니까? 지난 2월 시민환경연구소가 환경에너지분야 전문가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은 5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만천하에 드러난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대표적인 환경파괴사업, 예산낭비사업, 부정부패사업, 부실공사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감사원이, 2014년에는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하천의 체류시간 증가로 녹조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낙동강 원수에서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건수가 늘고 있고, 정수 10곳 중 9곳에서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이 증가했습니다.

4대강의 생태계도 여지없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 이후 흰수마자, 줄납자루, 참중고기, 돌마자와 같은 고유어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4대강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 이후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28종이 자취를 감춰 버렸습니다. 특히 4대강 전역에 걸쳐 대형 무척추동물의 발견종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양서파충류·포유류·어류 전반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4대강만이 아닙니다. 산에서도 4대강사업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보호지역을 포함한 산 정상부에 호텔 같은 위락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산악특구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을 포함해 해안관광개발을 허용하는 해안관광특구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토의 10.4%에 불과한 보호구역마저 개발 광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 경제성도, 환경성도 없는, 총체적인 부실덩어리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되더니,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관리와 사후구제도 후진적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 국민들의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50.9명으로 사망 원인 1순위입니다. 2004년에 비해 불과 10년만에 18.3명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OECD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1년까지 OECD 국가에서 암 사망률이 증가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브라질, 남아프리카, 슬로베니아 등 4개국에 불과합니다.

물론 암 발생 원인은 흡연, 식생활 등 생활습관에 관련된 요인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암물질 노출로 인한 직업 및 환경 위험 요인도 중요합니다. 핵발전소나 송전탑 주변지역 주민에게서 발암위해도가 더 높게 나타는 것처럼, 화학물질 등 인체유해물질을 다루는 공장지대와 산업단지 주변 주민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절실합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망원인이라고 밝혔지만, 가해 기업들은 오랜 소송을 통해 유가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가정이 파탄나는 등 제2, 제3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사후구제도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상정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김제남 의원은 환경에너지 전문가들로부터 가장 모범적인 환경정책을 펼친 의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도 국민안전과 국토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전국을 새로운 '녹색벨트'로 연결하겠습니다.

첫째, 생명의 강「4대강복원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의 추진 과정과 효과를 검토해, 인공구조물의 해체와 4대강 및 하천습지의 복원 여부를 결정하는 4대강 복원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지하수 관정 및 작은 농업용 저수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부족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하천난개발법·수공특별법인「친수구역활용특별법」을 폐지하겠습니다.

4대강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적자를 보전하기위해 친수구역개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에코델타시티, 구리의 월드디자인시티, 대전의 갑천지구 등은 경제성과 환경성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업이 진척된 곳은 생태적으로 추진하고, 다른 곳은 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 검토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셋째, 국립공원을 포함해 전국토의 10.4%에 불과한 보호구역을 지키겠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 재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끌어내 난개발을 방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파괴법인 산악특구법과 해안관광특구법을 막고, 국회에 보호지역포럼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보호구역관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넷째, 발암 걱정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사전예방과 사후구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발암물질 등의 관리 및 암 예방법」을 제정해 발암물질과 발암가능물질을 등급별로 관리하겠습니다. 산업현장과 생활환경에 대해 체계적인 사전예방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특별법」을

제정해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환경보호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환경피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확실히 묻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예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의당 예비내각 국토환경부

맘 편히 장사하는 대한민국! 중소상인·자영업 지킴이, 정의당

재벌 대기업에 맞서 골목경제와 서민경제를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중소기업·자영업자 여러분,

오늘 정의당은 재벌 대기업 주도의 경제구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정의로운 경제론’ 핵심적인 분야 중 하나인 중소기업·자영업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벌의 탐욕에 골목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서민경제가 파괴되었습니다. 대기업들이 분야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자영업자들의 골목 상권을 잠식해 왔습니다.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악용해 중소기업인들의 맘의 뱃가를 빼앗아 왔습니다. 상가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고 권리금을 가로채는 횡포까지 시달려야 합니다.

지난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경제민주화는 실종되었습니다. 거짓 공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들에 돌아온 건 줄어든 소득과 늘어난 빚입니다. 이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규제 프리존’을 통해 대기업들이 동네 이미용업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려 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정의당은 우리 모두를 위해 골목경제와 서민경제를 지키겠습니다. 그동안 19대 국회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이 힘을 모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대리점공정화법 등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권리장전 소상공인보호지원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 많습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지킴이로서 실천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재벌 대기업에 맞서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를 지키겠습니다.

첫째, 복합쇼핑, 대형마트 등의 무분별한 출점과 영업을 확실히 제한하겠습니다.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등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고, 개설할 수 있는 입지를 제한해 문어발식 확장을 막겠습니다. 의무휴일제를 월 4회로 확대하는 등 무차별적인 영업을 제한하겠습니다. 사업조정제도를 강화해 변종 SSM인 상품공급점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편법 출점 행위 등을 규제하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재벌 대기업의 착취를 근절하겠습니다.

더 이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습니다. 대기업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직접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등이 적합업종에 진출할 경우 강력한 제재 조치를 통해 바로 잡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적 교섭제도 등을 통해 야만적이고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맘의 댕가를 보장하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정의당은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하청·협력업체들과 나누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본사의 이익 역시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맹본부·본사와 가맹점·대리점·납품업체 간에 실질적인 상생 협력방안인 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겠습니다.

넷째, 상가세입자들이 맘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영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임대차 보장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최소 10년 이상으로 늘리겠습니다. 환산보증금제도를 폐지해 모든 상가세입자를 보호하고, 전통상가 등을 제외한 권리금보장제도를 고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임차상인들이 맨 몸으로 쫓겨나지 않도록 퇴거보상제도를 법제화하고, 상가임대차영향평가제도 등을 도입해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섯째,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겠습니다. 걱정과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불합리한 카드수수료를 더 인하하겠습니다. 우대수수료를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동네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도 낮추겠습니다. 중소기업인과 영세자영업자, 1인자영업자에 대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안정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지원센터,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의당 중소기업·자영업자위원회

「정의로운 조세·재정 개혁」

“튼튼한 재정으로 복지확대, 공평과세로 격차 해소 부의 대물림 막고, 서민 지갑 채우는 조세·재정 개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정치세력들이 복지 확대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복지재정 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영유아 보육 완전 국가책임제, 고교무상교육 실시 등 대표적인 복지공약을 잇따라 파기해 왔습니다. 특히 누리사업 예산에 대한 지방정부와 교육청으로의 책임전가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 부족을 이유로 기초연금 확대 공약도 반쪽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입니다. 정의로운 조세개혁을 통한 복지증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민부담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2015년 기준 국민부담률은 GDP대비 24.7%에 불과해 OECD 평균 34.1%(2014년)에 비해 무려 9.4%나 부족합니다. 이를 2015년 GDP인 1,546조원에 적용하면 OECD 평균에 비해 약 145조원이나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중앙정부 복지지출(보건·복지·고용) 120조원 보다 더 많은 자원입니다. 이는 재벌과 부자들이 소득만큼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 고소득 전문직 탈루, 편법 증여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조세개혁을 통해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복지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정의로운 조세 재정’을 위한 16개 정책 공약을 약속합니다.

첫째, 튼튼한 재정으로 복지를 확대하고, 공평한 과세로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❶ 사회복지세를 신설해 복지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증부세 세액에 10~20%를 부과하는 사회복지세를 신설해, 연간 20조원의 안정적인 사회복지 재정을 확보하겠습니다.

❷ 법인세 최고세율, MB감세 이전인 25%로 환원시키겠습니다.

MB 정부가 인하해 준 법인세 최고세율을 감세 이전인 25%로 환원시켜, 정부의 재정적자도 줄이고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❸ 소득세 체계 전면 개편하고 누진세율을 강화하겠습니다.

현행 소득세 세율 체계를 <5-15-25-35-45>로 10% 간격으로 단순화하고, 현행 38%의 최고세율은 선진국 수준인 45%로 강화하겠습니다.

❹ 부동산보유세 과세 체계 전면 개편 및 과세 강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현행 평균 65%에서 80%로 상향하고, 부동산세를 종합부동산세로 단일화하여 최고세율은 MB감세 이전으로 상향하겠습니다.

❺ 금융소득에 대한 특혜성 세율적용을 폐지하겠습니다.

다른 소득과 같이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하겠습니다.

둘째, 정의로운 조세개혁으로 경제민주화를 지원하고,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겠습니다.

❶ 대·중소기업 공유이익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초과이익 공유에 대해 30% 세액공제를 적용, 하청(협력)업체의 지급여력 확대와 임금 인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❷ 사내유보금의 비업무용 수익에 10% 할증과세를 적용하겠습니다.

사내유보금 중 이자, 배당, 임대료 수익에 대한 10% 할증과세를 도입해, 사내유보금이 생산적 투자나 원하청 이익 공유제 등으로 환류되도록 하겠습니다.

③ 증여세 재계산제도와 할증과세 강화로 편법증여를 막아내겠습니다.

증여 이후 주식이나 부동산 폭등 시 증여세 재계산 제도의 시행을 강화하고, 세대 생략 상속증여 시 할증과세를 일괄 50%로 강화하겠습니다.

④ 상속공제는 5억으로 축소, 고액상속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습니다.

상속공제를 5억으로 축소해 상속세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고액상속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청년 기살리고 서민들 지갑 채우는 조세 감면,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① 생애 최초 소득자에 대한 “파이팅” 세액공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및 경제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생애최초 소득자에 1인당 1백만원의 “파이팅”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② 중소형승용차 대상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겠습니다.

고가 수입승용차 등 대형승용차의 개별소비세는 현행을 유지하되, 판매 배기량 2천CC 미만의 중소형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전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이사비 공제를 신설하겠습니다.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다른 공제와 동일한 15%로 확대 하고, 전월세가구의 이사비 및 부동산 수수료 등 이사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추가 적용하겠습니다.

④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현행 1인당 2백만원에서 청년고용증대세제와 동일한 수준인 5백만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탈세와 예산낭비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물망식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❶ 대규모 예산 사업 등에 전국민 참여예산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대규모 예산사업, 증세 등 주요 재정 현안, 분야별 지출 우선순위 등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결정하는 국민 참여예산제를 실시하겠습니다.

❷ 탈세 및 부정당 입찰에 대해서는 징벌적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세무조사 비율을 다른 나라 수준으로 확대 강화하고, 부정당 입찰은 징벌적 과징금을, 부당 내부 거래는 거래비율 전체에 증여세를 적용하겠습니다.

❸ 예산실명제 도입하고 쪽지예산 카톡예산을 근절하겠습니다.

증액 예산은 의원 실명과 함께 증액 필요성을 서면으로만 제출할 수 있게해,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원천적으로 증액이 불가능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소득에 따른 누진과세 강화와 서민감세로 소득격차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재벌부유층의 금고는 열고, 서민 중산층의 지갑은 채우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완화시키겠습니다. 불로 소득과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내겠습니다.

2016년 3월 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우리 아이가 행복한 보육·교육」 2대 국가책임제로 「아이가 먼저인 선진국형 혁신보육」 균등한 교육기회로 「수저계급론 없는 대한민국」 실현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보육이 대세인 시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에서 ‘한국형 복지국가’ ‘생애주기형 복지국가’를 내세운 바 있습니다. 대표공약으로 0~5세 무상보육 실현, 고교무상교육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반칙입니다. 파기입니다. 교육청과 지자체에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겼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고교무상교육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반값등록금은 반값이 아니라 대학생의 절반에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단해야 할 초과보육은 탄력보육으로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면서도 정작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아 대학까지 기르는데 드는 총 양육 비용이 2012년 기준으로도 자녀 1인당 3억 1천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보육비, 교육비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대책없이 가다가는 보육대란, 교육대란에 이어 출산파업까지 일어날 판입니다.

아이가 먼저인 [선진국형 혁신보육]

아이가 먼저인 「선진국형 혁신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문제 등 자녀양육의 이중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정의당은 2대 국가책임제로 안심보육 공공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❶ 첫째, 「영유아보육 국가책임제」로 “아이안전 부모안심” 공공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26만 명에 달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수를 해소하기 위해 보육균형발전지표를 도입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비중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는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거점센터를 설치해 지역사회 보육의 질을 함께 높이겠습니다.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교사 처우 문제도 시급히 개선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를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올리고,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탄력보육 시행을 중단하겠습니다.

부모들의 가장 큰 근심거리인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를 막겠습니다. 보육119 제도를 도입해 익명의 내 부고발에도 긴급 출동할 수 있게 하고, 일상적으로 보육시설을 지도·관리하며 부모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읍면동마다 ‘보육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겠습니다.

❷ 둘째, 「자녀양육 사회책임제」로 “무한돌봄 · 공공돌봄” 사회양육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임산부 ·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제를 실시하고, 모든 출산가정에게 핀란드형 마더박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 휴가를 1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파파쿼터제 3개월 의무도입 및 육아휴직급여를 월 80~150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자녀나 가족이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돌볼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제를 신설하겠습니다. 3대 육아 휴직제 보장으로 직장 때문에 자녀양육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자녀양육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관리해 주는 아이 담당의사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를 실시해 돈이 많이 드는 입원비만큼은 중학생까지 무상의료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흑자분 17조원의 3%만 사용하면 어린이 무상의료 충분히 실현가능합니다.

균등한 교육기회로 [수저계급론 없는 대한민국]

균등한 교육기회로 [수저계급론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2.1조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율 1% 더하기 특별교부금 1% 하향하는 원플러스원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올해는 긴급지원으로 중앙정부 추경과 일반예비비에서 2.1조원

을 긴급투입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농산어촌부터 시작해 도시 전학년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가정의 한달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국가표준등록금제를 도입해 진짜 반값등록금 역시 실현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반칙하고, 파기한 정책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❶ 첫째, 대입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수능수학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사회적논의를 거쳐 다른 교과에도 절대평가를 도입하겠습니다. 대학입시에 고등학교 성취평가제를 반영하고, ‘고른기회 대입전형’을 2배로 확대하겠습니다. 여러 대학을 연합해 통합전형을 실시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해 대학을 균형발전시키겠습니다.

❷ 둘째,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겠습니다

중2와 일반고 1학년부터 한반 25명제를 도입해 개개인 맞춤지도 교실이 되도록 하고 고등학교 기초 역시 튼튼히 쌓겠습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확대해 스스로 공부법을 신장시키겠습니다. 입시를 개편하고, 학원 선행학습을 금지하며, 초중고 방과후학교를 내실화하겠습니다.

❸ 셋째,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주시민 및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로 다양성을 존중하겠습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의 상생으로 배려·소통하는 학교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어울림 프로그램과 회복적 생활지도로 인성을 함양시키고,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늦출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근본적 개혁을 실시해야 합니다. 과감한 복지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정의당이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국민의 노동조합 정의당’이 노동개악을 막고 노동존중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노동자 서민 여러분,

지난 3년간 박근혜 정부의 실정으로 우리는 소득절벽과 고용절벽 앞에 서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근로자의 삶의 질을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건, 쉬운 해고 고용불안입니다. 평생 비정규직법, 전국민 비정규직법입니다. 일주일에 68시간까지 일해도 된다는 탈법적인 행정해석입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근속년수가 OECD에서 가장 짧고, 칠레 다음으로 장기근속자는 적은 고용불안 국가입니다. 전체 노동자 중 임시직 비율이 OECD 평균의 두배에 달하고, 파견 노동자는 가장 많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며, 성별 임금격차 역시 OECD 최악 수준입니다. 연간 노동시간 역시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만성피로 국가입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노동자들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국민의 노동조합 정의당은 박근혜 정부와 반대로 하겠습니다.

우선 노동 개악을 막는데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장 눈 앞에 닥친 쉬운 해고를 막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정부의 일방적이고 위법한 행정지침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일반해고를 규제하고, 정리해고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회사의 경영실패에 대해서는 최고 경영자들이 우선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 누구나 먹고 살만한 최저시급 1만원, 평균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 220만명이 넘는 저임금 일자리를 일소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종합대책을 동시에 추진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 활성화를 통해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공기업과 대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연동한 임금 상한제를 도입해 임금격차를 줄이겠습니다. 재벌대기업에 초과이익 공유제를 도입하고,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하청협력업체와 중소기업노동자들의 임금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셋째,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를 달성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해 고용관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공공부문과 재벌대기업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2020년까지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5시 칼퇴근법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고, 일자리도 나누겠습니다.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6개월 이상 재직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여름휴가 1주일 의무제를 도입하는 등 모든 노동자들이 선진국처럼 일년에 한달은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과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해 회사와 상사, 고객의 의한 괴롭힘을 예방하겠습니다.

넷째,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편의점 알바부터 빌딩 청소원까지 어디서나 사람대접 받는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생애 첫노동부터 황혼노동까지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초·중·고 학교 교육에서부터 노동인권교육을 받고 생애 첫노동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보호체제를 내실화하겠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과 가사사용인,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 모든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헌법과 국제기준에 맞게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완전한 참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야만적인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겠습니다.

다섯째,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로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나 빈번한 지하철 사고의 주요 원인인 안전업무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최우선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각종 사고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묻는 산재사망 및 재난사고 처벌강화 특별법과 기업살인법을 제정해 OECD 산재사망 1위라는 오명을 벗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직업안전보건법으로 전면개정하고 직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해 모든 업종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을 전면개정해 모든 산재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특수고용노동자나 농민, 1인 자영업자 등에게도 산재보

힘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벌대기업에게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이미 파탄난 노사정위원회를 대신해 경제, 사회문제 전반을 다루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에 따른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이 스스로 임금을 지키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선진국처럼 산별교섭을 법제화하고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하겠습니다. 노사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해 회사의 일방적인 정리해고나 근로조건의 불이익을 막고, 공격적인 직장폐쇄나 손배가압류를 금지해 노조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의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한다면 청년과 여성은 시간제 알바를 전전하고, 기존 직장인들은 쉬운 해고의 불안에 시달려야 합니다. 55세 이상 중장년층과 전문직은 파견 회사에 임금을 떼이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노동조합 정의당에 던지는 한표는 땀의 가치를 지키는 한표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노동존중사회를 만드는 한표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의당 노동선대본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한국탈핵 2040

I. 기조와 배경

1.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유산 그리고 핵발전소 주변주민의 위험

올해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핵사고로 불리는 후쿠시마 참사 발생 5주년, 체르노빌 참사 발생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두 참사는 국제원자력사고등급 최악의 단계인 7등급 사고로, 제3의 불이라 불리며,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아래 무분별하게 확대되어 온 핵에너지가 인류의 종말을 앞당길 수 있는 재앙의 불이 될 수 있음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30년이 다되고 5년이 다되었지만,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는 여전히 통제되고 있지 못하며, 방사능 누출로 인한 위험과 고통도 계속되고 있다.

체르노빌은 사고 직후 급조된 콘크리트 차폐막이 수명이 다해 새로운 차폐막을 씌우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065년경이 되어서야 체르노빌 제4호기를 해체하고 정화작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후쿠시마도 마찬가지다. 후쿠시마 제1호기에서는 여전히 삼중수소가 함유된 방사능 오염수가 매일 300톤씩 발생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수습은 이제 겨우 간신히 1부 능선에 왔다고 한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고통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005년 UN이 발표한『체르노빌의 유산-사고 20년 후 피해규모의 진상』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4,000명의 방사능 피폭자들이 방사능 물질로 발생한 암으로 사망하였으며, 2056년까지 약9000명이 체르노빌 사고로 인해 사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반면에 국제환경 민간단체에서는 2005년도의 UN 평가보고서는 과소평가 된 것이며, 2056년까지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약93,000명 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 특히 반감기가 가장 긴 세슘137의 영향이 가장 심각하였으며, 특히 신생아의 피해가 막대했는데, 그 이유는 모체의 감염, 선천성 기형, 유산, 기형아, 사산아를 출산하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2)

후쿠시마도 마찬가지다. 일본 오카야마대 연구진이 201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누출 사고 이후 지역의 미성년자 암 발병률이 일본 평균의 30~50배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후쿠시마현의 현민 건강조사검토위원회가 2015년 11월 3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18세 이하 주민을 대상으로 2014년 4월부터 시행한 2차 갑상선 검사에서 암 확진자는 15명, 암 의심환자는 24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1차 검사에선 대부분 '문제없음' 진단을 받았다. 참고로 체르노빌의 사례에선 사고발생 4~5년 후에 아동의 갑상선암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3)

또한 핵발전소는 위험은 중대사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핵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은 상시적인 방사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2015년 언론을 통해 공개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용역보고서『원전 주변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에 따르면, 핵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서도 갑상선암 발병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령 코호트에 비해 최근 출생 코호트에서 이러한 연관성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성 유방암과 방사선 관련 암, 그리고 전체 암의 경우 핵발전소 주변 지역 거주와 암 발생의 연관성은 없었으나, 최근 출생 코호트로 올수록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암 발생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핵발전소로 인한 방사선 노출이 젊은 연령대에서 민감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고찰하고 있다.4)

1) 심창섭 · 홍지연, 『방사능 재해에 따른 환경 및 인체 영향 분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1, 13~14쪽. 같은 보고서 18쪽에 따르면 Malko는 2007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Chernobyl Generation 방법을 통해 1986~2056년까지 평균 사망자를 계산하였다. 이 방법에 따르면 암 환자는 62,206~196,611명, 사망자 수는 40,427~121,277명으로 추산되었다. 갑상선 암 환자는 4,000명, 악성 종양 환자는 4,000~120,000명, 백혈병 환자는 5,000~14,000으로 추정하였다.

2) 심창섭 · 홍지연, 2011, 37쪽.

3) 연합뉴스, (2015.12.01.), 「'원전사고 4년' 후쿠시마, 어린이 갑상선암 다른 지역보다 많아」, JTBC, (2015.09.17.) 「[단독] 일본 국립대 "후쿠시마 청소년 갑상선암 발병률 50배"」

4) 주영수 · 김명희 · 하미나 · 황승식 · 김정민 · 백도명, 「원전 주변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연구: 코호트 내 환자대조군 연구」, 『2015년 제55차 대한직업환경의학회의 가을학술대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2015.11, 35-36쪽. 요약, 본 논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용역보고서의 요약발표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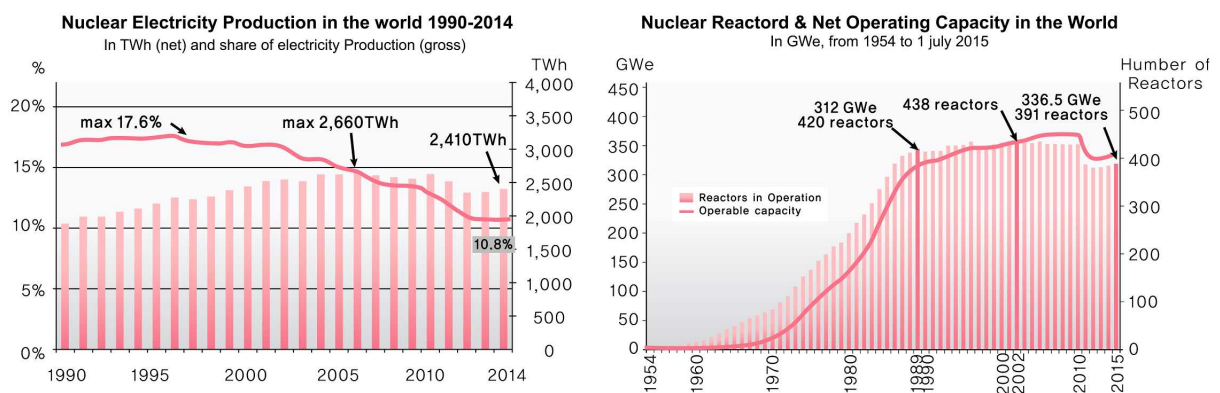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핵발전 확대 정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세계는 핵 발전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하였지만, 전두환 정부는 “후진국에서나 일어나는 사고다.”, “우리나라는 핵반 응로 방식이 달라 안전하다.”, “멀리 떨어져 있어 피해가 없다”며 핵발전 확대에 박차를 가했다.⁵⁾ 그리고 25년 이후 발생한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우리나라는 편서풍 영향으로 방사능 위험에서 안 전하다.”, “후쿠시마 원전과 우리나라 원전은 다르고 안전하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그리고 후쿠시마 다 음해에 실시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수렴, 향후 20년간의 전원믹스를 원 점에서 재설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공약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⁶⁾

2. 변화하는 세계: 핵발전은 줄고 재생에너지는 늘고 있다.

그러나 세계는 변화하고 있다. 핵발전에 의한 전력생산분담률이 줄고 있다. 핵발전에 의한 전력생산분담 른은 1996년 17.6%였지만, 2014년에는 10.8%로 감소했다. 그리고 실제 핵발전소도 줄어들고 있다.

2015년 391기의 핵발전소가 30개 국가에서 가동되고 있지만, 이는 1989년 대비 29기, 2002년 대비 47기 가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최근의 경향이 아니다. 실제 핵발전은 1980년대 절정기를 맞이했지만 1990년대부터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1980년대 연간 신규로 건설되는 핵발전소 수는 20기 이상이었으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5개 내외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표. 1990~2014년까지 핵발전소 전력생산량과 핵발전소 설비용량



출처: Mycle Schneider · Antony Froggatt 외, 『The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5』, 2015, 23쪽? 2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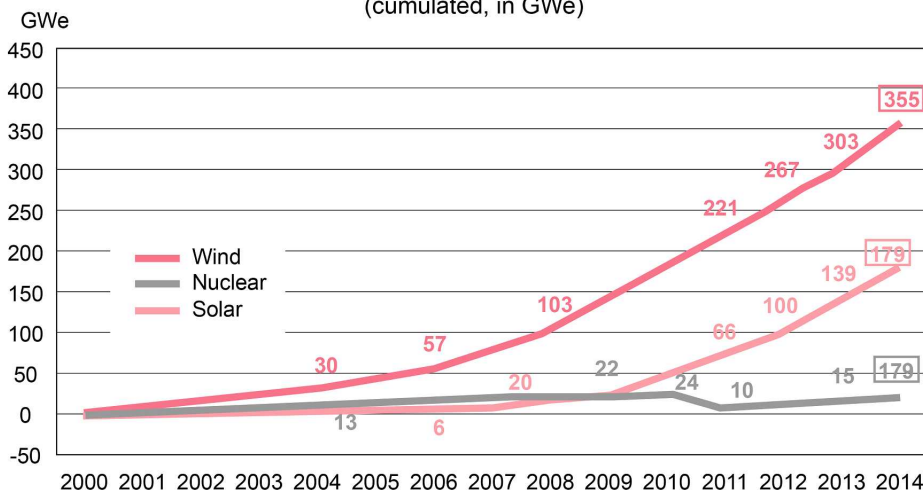
5) 이성로, 『원자력정책과 핵마피아』,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759-782』, 한국정책학회, 2012, 759쪽.

6)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 319쪽.

그리고 2015년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62기의 핵발전소가 14개 국가에서 건설 중에 있지만, 10개 중 8개는 중국(24기), 러시아(8기), 인도(6기), 미국(5기), 한국(4기)로 5개 국가에서 건설하고 있다. 그리고 62기의 건설 중인 핵발전소 중 47기는 공기가 지연되어 온 것이며, 5기는 30년 동안 건설 중인 상태로 파악되는 핵발전소이다. 또한 다른 전력원과 비교할 경우 2000년 이후 전력망에 연결된 가동 중인 발전원별 설비용량을 보면 풍력은 335GW, 태양광은 195GW였지만, 핵발전소는 20GW에 불과했다.

표. 2000~2014년 전력망에 연결된 풍력, 태양광, 핵발전소

wind, Solar and Nuclear Grid Connections in the World 2000-2014
(cumulated, in GW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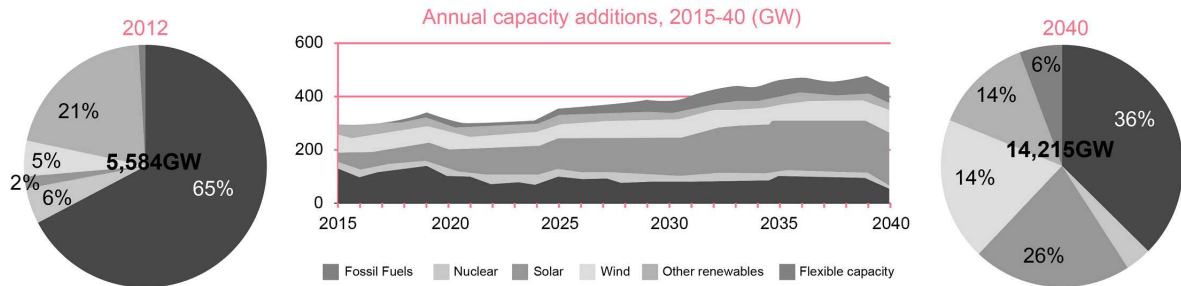
출처: Mycle Schneider, Antony Froggatt 외, 『The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5』, 2015, 93쪽.

2040년 국제에너지전망에서도 핵발전소 비중은 줄고 재생에너지비중은 확대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에너지 전망 2014』를 통해 전 세계 핵발전소 설비용량은 2013년 392GW에서 2040년 620GW를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나, 전 세계 발전량에서 핵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1% 증가한 12%에 불과하며, 발전량 증가분의 45%를 중국이 차지하고, 그 밖에는 인도, 러시아, 한국 등이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7) 즉 2040년까지 핵발전소의 확대는 특정국가에 한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간기구인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NEF)는 오히려 전 세계 전력에너지믹스 비율의 변화를 전망하면서, 핵발전소는 2012년 6%에서 2040년 4%로 감소하는 반면,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설비용량의 절반 이상인 54%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표. 2014-2040년 발전원별 설비용량과 설비용량증가량 예측

Figure 1 : Global installed capacity in 2014 and 2040 and projected capacity additions, by technology (GW)



Source :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출처: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New Energy Outlook 2015: Executive Summary』, 2015, 5쪽.

또한 이미 많이들 알려진 사실이지만 에너지 벤데(Energiewende,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독일은 20GW 규모의 핵발전소를 가동 중이었으나, 핵발전소 폐쇄정책에 따라 2023년 이후 모든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 독일의 2018년 이후 핵발전소 가동 용량은 10GW 미만으로 떨어질 계획이며, 2022년 내에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할 예정이다. 세계 최대 핵발전소 보유국인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2015년 현재 104기의 핵발전소를 운영 중이고, 30기 이상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준비 중이었지만, 2025년 이후 기존 핵발전소 폐쇄가 증가하면서 핵발전소 비중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2035년 이후에는 가동 핵발전소가 60기 미만으로 감소할 전망이다.⁸⁾

5) 이성로, 『원자력정책과 핵마피아』,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759-782』, 한국정책학회, 2012, 75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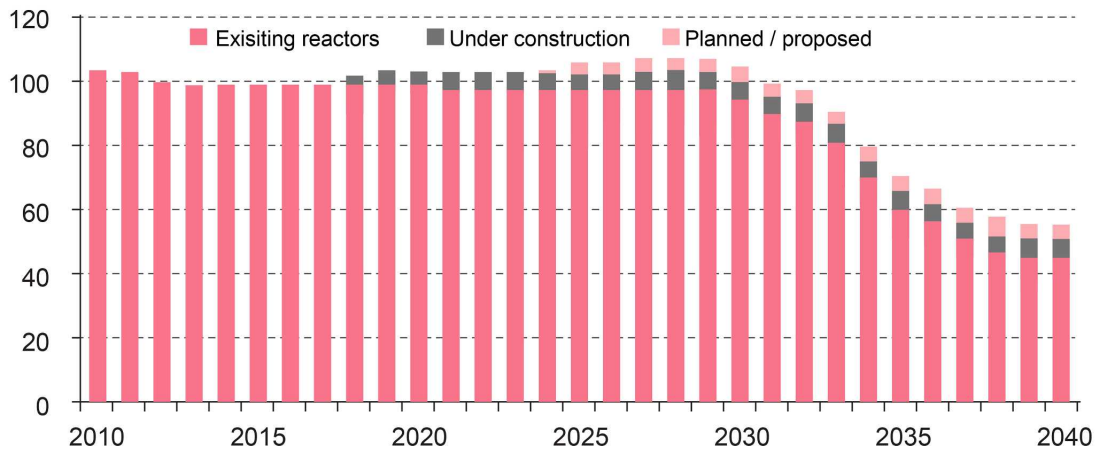
6)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 319쪽.

7)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2호』, 2014.11.21., 24쪽.

8) 강정화, 『Issue Paper Vol. 2015-산업이슈-0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5.02.12., 8~9쪽.

표. 미국의 핵발전소 가동 및 전망

#of reactors



(출처) 강정화, "Issue Paper Vol. 2015-산업이슈-0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5.02.12., 8쪽.

3. 거꾸로 가는 한국 : 핵발전소 늘어나고 고탄소 · 고위험 · 고갈 등 시스템 고수한다.

그러나 한국의 에너지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 1년차와 2년차인 2013년과 2014년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중앙행정기관들의 중점갈등관리 과제를 살펴보면 우리사회 주요 갈등현안 10건 중 1건은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했다. 특히 에너지 분야 갈등은 장기화되고 있으며, 투쟁과 갈등의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여기에는 정부가 신규 핵발전소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주민투표를 통해 압도적 반대의사까지 표출된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 지역의 갈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표. 2013~2014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중앙부처별 중점갈등관리 과제

연 도	과제번호	과 제 명	부 처
2014	5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산업통상자원부
	10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	산업통상자원부
	16	밀양송전선로 건설	산업통상자원부
	29	월성원전1호기 계속운전	산업통상자원부
	31	북당진-신탄정 송전선로	산업통상자원부
2013	22	밀양송전선로 건설	산업통상자원부
	23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산업통상자원부
	24	월성원전1호기 계속운전	산업통상자원부
	25	신중부 변전소 건설	산업통상자원부

출처 : 국무조정실 제출자료

이처럼 에너지, 특히 전력문제가 우리사회의 주요 갈등원이 된 것은 대형발전소와 고압송전선 건설과 같이 대규모 설비계획을 수반하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때문이다. 이는 공급위주의 물량확대 에너지 정책 때문이다. 2013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연구용역보고서9)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보고서10), 그리고 2015년 환경부의 연구용역보고서11)에는 연이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과다한 수요 예측은 수요관리의 실패 → 그로인한 에너지 수요 급증 → 미래수요전망 과다예측 → 과다한 공급계획 → 소극적 수요관리 → 수요관리 실패”의 악순환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OECD 34개국과 비교한 한국의 에너지성적표에서 잘 드러난다. 국가에너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OECD 34개국과 비교해본 결과, 한국은 전형적인 에너지다소비비효율 국가다. 에너지와 전력 소비는 상위를, 에너지와 전력효율성은 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소비량은 OECD 34개국 중 4번째로 높았으며, 전력소비량은 5번째로 높았으며, 1인당 1차 에너지소비량과 1인당 전력소비량은 8번째로 높았다.

에너지효율도 떨어진다. 에너지원단위는 에너지소비를 GDP로 나눈 값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된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는 2000억 달러당 0.182toe로 OECD 평균인 0.141보다 높았으며, 최하위 수준인 30위에 머물러 있다. 전력원단위는 더 심각하다. 전력원단위는 2000달러당 0.47kWh로 OECD 평균인 0.31kWh보다 높으며, 에너지원단위보다 더 낮은 32위에 머물러 있다.

표. OECD 34개국과 비교한 최근 5년간 한국의 에너지소비 성적표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차 에너지소비 (Mtoe)	6위 (229.25)	6위 (249.99)	4위 (260.47)	4위 (263.44)	4위 (262.23)
1인당 1차 에너지소비 (Mtoe/인)	11위 (4.66)	10위 (5.06)	10위 (5.23)	9위 (5.27)	8위 (5.22)
전력소비량 (Twh)	6위 (437.73)	6위 (481.47)	5위 (505.86)	5위 (517.33)	5위 (521.88)

9) 강희찬 외 5인,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미래 사회 비전 마련 연구: 연구기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3, 21쪽.

10) 진상현, 『해외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 관련 규제의 사례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3, 1쪽.

11) 심상열 외 11인, 『환경 · 기후변화를 고려한 에너지정책 대안 연구: 제3분과(전력)』, 환경부, 2015, 4쪽.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력소비 비중 (전력소비/최종에너지소비%)	10위 (23.60)	8위 (24.51)	9위 (25.06)	10위 (24.88)	
재생에너지소비 비중 (신재생/최종에너지소비%)	34위 (0.7)	34위 (0.7)	34위 (0.7)	34위 (0.7)	
1인당 전력소비량 (kWh/인)	10위 (8,900)	9위 (9,475)	9위 (10,162)	8위 (10,346)	8위 (10,382)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 (ktoe/인)	27위 (100.9)	27위 (106.7)	27위 (106.9)	26위 (109.9)	
에너지원단위 (toe / 2000억 US\$ PPP)	31위 (0.184)	30위 (0.189)	30위 (0.19)	30위 (0.188)	30위 (0.182)
전력원단위 (kWh/2000US\$)	31위 (0.457)	32위 (0.472)	32위 (0.479)	32위 (0.48)	32위 (0.47)

출처: 국가에너지종합정보시스템 가공

특히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와 비교 시 우리나라의 에너지다소비비효율화 경향은 여실히 드러난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는 24,329달러로 일본보다 1.58배, 영국보다 1.02배, 독일보다 1.85배, 프랑스보다 1.78배가 낮았다. 그러나 한국의 전력원단위는 0.47로 영국 0.09, 독일 0.109, 일본 0.112, 프랑스 0.13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OECD 평균인 0.31보다도 1.5배 이상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후쿠시마 참사 이후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전력원단위가 개선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후쿠시마 이전부터 꾸준히 전력원단위를 개선해 왔으며, 전력이용을 합리화하는 적극적인 수요관리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표. 주요국과 비교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전과 이후 전력원단위 추이 (kWh/2000US\$)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한국	0.457	0.472	0.479	0.48	0.47
일본	0.225	0.23	0.217	0.211	0.213
영국	0.151	0.152	0.145	0.145	0.141
독일	0.197	0.201	0.191	0.19	0.187
프랑스	0.219	0.228	0.21	0.214	0.217

출처: 국가에너지종합정보시스템 가공

특히 우리나라 전력다소비·비효율 경향은 국가 전체적인 경향이라기보다는 제조업부문 때문이다. 2012년 기준 OECD 34개국과 비교 시,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5위수준이지만, 가정용 1인당 전력소비량은 26위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제조업 부문 전력소비비중은 5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력소비 증가율이 에너지소비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이후 석유·화학 업종과 1차 금속의 경우 에너지소비증가율은 연평균 각각 4.1%와 4.5%였지만, 전력소비증가율은 5%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 부문별 전력소비판매량 (단위 Gwh)

연도	합계	주택용	공공용	서비스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1990	94,383	17,735	3,292	14,109	1,458	1,011	56,779
1995	163,270	28,303	5,109	33,422	3,370	1,020	92,046
2000	239,535	37,102	8,663	63,547	5,306	1,003	125,952
2001	257,731	39,211	9,425	73,304	5,985	1,074	128,732
2002	278,451	42,278	10,534	81,186	6,156	1,155	137,143
2003	293,599	44,572	11,235	87,405	5,944	1,205	143,238
2004	312,096	48,615	12,417	92,726	6,511	1,269	150,557
2005	332,413	50,873	13,741	100,987	7,007	1,317	158,489
2006	348,719	52,521	14,589	106,948	7,296	1,393	165,972
2007	368,605	54,174	15,579	110,168	7,795	1,484	176,973
2008	385,070	56,228	16,577	117,635	8,389	1,446	184,795
2009	394,475	57,595	17,932	121,203	9,145	1,350	187,249
2010	434,160	61,194	19,872	129,923	10,042	1,683	211,447
2011	455,070	61,564	20,539	130,762	10,575	1,928	229,701
2012	466,593	63,536	21,422	130,249	12,074	1,616	235,445
2013	474,849	63,970	21,982	132,055	13,062	1,478	242,301

출처 : 한국전력통계 84호

년도	'95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A) 제조업 에너지 전력비중(%)	56	53	50	49	49	48	48	48	48	48	47	4	50	50	51
(B) 에너지 다소비 업종 전력비중(%)	38	40	40	40	40	39	39	39	39	40	40	41	41	41	41

※ (A)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소비량 대비 제조업 소비비중.
(B)는 전체제조업 전력소비량 대비 전력다소비업종(석유·화학, 1차 금속) 소비비중임

특히 이들 전력다소비업종의 경우 소비비효율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업종의 2013년 전력원단위는 0.92로 100만원을 생산하는데 0.92Mwh의 전력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업종의 2013년도 전력원단위는 1995년 대비 17.9%, 2000년 대비 17.9%, 2005년 대비 19.5%, 2010년 대비 15% 악화되었다. 1차 금속의 2013년 전력원단위는 0.78으로 100만원을 생산하는데 0.78Mwh의 전력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금속의 2013년도 전력원단위는 39.3%, 2000년 대비 39.2%, 2005년 대비 56%, 2010년 대비 5.4%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1차 금속은 2.7%씩 전력원단위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제조업별 전력원단위 (단위: Mwh/백만원)

연도	계	식품 담배	섬유	목재	제지 인쇄	석유 화학	요업	1 차 금속	조립 금속
1995	0.737	0.42	0.94	0.92	0.92	0.78	1.41	0.46	0.55
2000	0.675	0.46	1.02	1.20	1.20	0.78	1.16	0.56	0.46
2001	0.668	0.46	1.02	1.27	1.27	0.76	1.16	0.54	0.47
2002	0.651	0.47	0.97	1.22	1.22	0.74	1.20	0.53	0.46
2003	0.648	0.49	1.02	1.24	1.24	0.79	1.17	0.53	0.46
2004	0.621	0.50	1.01	1.33	1.33	0.80	1.14	0.51	0.45
2005	0.617	0.52	0.91	1.33	1.33	0.77	1.11	0.50	0.47
2006	0.600	0.53	0.82	1.31	1.31	0.76	1.13	0.54	0.45
2007	0.590	0.53	0.80	1.31	1.31	0.76	1.16	0.56	0.44
2008	0.594	0.52	0.73	1.27	1.27	0.79	1.14	0.63	0.44
2009	0.605	0.55	0.73	1.20	1.20	0.82	1.09	0.70	0.44
2010	0.601	0.58	0.73	1.21	1.21	0.80	1.05	0.74	0.43
2011	0.613	0.62	0.73	1.26	1.26	0.89	1.08	0.80	0.42
2012	0.614	0.66	0.65	1.25	1.25	0.94	1.01	0.77	0.43
2013	0.610	0.67	0.63	1.26	1.26	0.92	0.97	0.78	0.43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2015년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통계 핸드북」, 48~57쪽.

우리나라의 에너지 다소비?비효율 경향, 특히 전력 다소비 업종의 전력소비실태는 우리의 전력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잘 드러내는 대목이다. 바로 수요관리가 답이다. 박근혜 정부도 2014년 발표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6대 중점과제 중 첫 번째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을 제시했다. 그러나 2030년 기준으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전력수요전망은 이명박 정부가 수립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대비 30% 이상 높은 수준으로 과다 산정되었으며, 핵발전소 비중을 2035년 29%로 확정하였으나 7GW분을 2035년에 국내 핵발전소는 39기~41기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2015년에 확정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9년까지 신규핵발전소 13기가 추가 증설될 전망이다, 석탄화력발전소도 20기나 확대될 전망이다. 고탄소?고갈등?고위험 전력시스템이 앞으로든 계 속되는 것이다.

표. 1차에너지기본계획과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전력수요전망 비교

(단위: TWh)	2006	2010	2020	2030	2035
1차	349	404	510	585	-
2차	349	434	610	762	816

II.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한국탈핵 2040」 목표

정의당, 거꾸로 가는 전력정책의 정상화 : 2040년 한국탈핵을 위한 4가지 시나리오
- OECD · 독일 수준의 수요관리목표와 LNG와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한 전환 -

정의당은 2040년까지 핵발전소를 점진적으로 폐쇄하는 전략을 제18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정책기조인 정의로운 경제론의 하나로 2040년까지 노후핵발전소 폐쇄, 신규핵발전소 중단으로 한국탈핵 실현을 견지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먼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 · 건설 중 · 계획 중인 핵발전소의 수명만료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5년~2020년 사이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핵발전소는 2기이며, 2021년~2030년은 10기, 2031년~2040년은 4기, 2041~2050년 5기, 2051년 이후 7기의 핵발전소가 설계수명이 만료되며, 건설 중인 신한울 2호기의 설계수명만료년도는 2078년이며, 2026년과 2027년 준공될 예정인 천지1 · 2호기와 2028년과 2029년에 준공될 예정인 천지3 · 4호기 또는 대진1 · 2호기의 설계수명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2015년 기준 가동 · 건설 · 계획 중 신규핵발전소 설계수명

수명만료 연도	2015~2020	2021~2030	2031~2040	2041~2050	2051 이후
수명만료 기수	가동 2기	가동 10기	가동 4기	가동 5기	가동 4기 건설 3기 계획 4기

※ 2015~2020년 2기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이며, 2051년~2060년 3기, 2070년~2080년 4기

그렇기 때문에 한국탈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설비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2016~2020년을 한국탈핵실현을 위한 도약기로 설정하고, 2021~2030년은 전환기로, 2031~2040년은 완성기로 설정했다. 도약기엔 가동 중인 핵발전소 2기와 건설 중인 핵발전소 신고리 4호기 · 신한울 1호기 · 신한울 2호기 폐쇄하고, 그리고 계획 중인 천지1호기, 천지 2호기, 천지3 · 4호기 또는 대진1 · 2호기를 취소하고자 했고, 전환기에는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 10기를 폐쇄하고 완성기엔 가동 중인 핵발전소 13기를 모두 폐쇄하고자 했다.

그렇다면 핵발전소의 점진적 폐쇄를 위한 핵심열쇠는 무엇일까? 바로 선진국 수준의 전력수요관리이다.

환경부는 2015년 『환경·기후변화를 고려한 에너지정책 대안 연구: 제3분과(전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OECD, 나아가 독일 수준의 전력원단위 효율을 달성하면 2040년까지 충분히 핵발전소의 점진적 폐쇄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가 독일 및 OECD 수요추세를 벤치마킹한 목표추종형 전력수요관리를 실시할 경우 1,000MW급 핵발전소 15.7개를 폐쇄할 수 있다. 2030년까지 가동 중인 핵발전소 설비용량은 9,716MW이고, 건설 중인 4,200MW를 폐쇄하고도 최대전력수요가 OECD 추종모형은 1,774MW, 독일 추종모형은 1,783MW가 남게 된다.

표. 전력소비량 및 최대전력 전망 비교

구분	7차 전기본	OECD 2℃ BMBC	독일 BMBC
전력소비량 목표안 GWh	656,883	585,078	563,140
최대전력 목표안 MW	111,929	96,239	92,630

BMBC=BenchMarking BackCasting, 벤치마킹에 의한 후방예측
출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5. • 김제남 의원실 환경부 요구자료 『환경·기후변화를 고려한 에너지정책 대안 연구: 제3분과(전력)』 중 시나리오별 전력수요 및 최대전력 전망결과, 2015.

그렇기 때문에 2040년 탈핵에너지전환 목표 실현을 위해 수요측면에서는 OECD 2℃ 추종 시나리오와 독일 추종시나리오, 공급측면에서는 다음 표와 같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표. 2040년 한국탈핵 실현을 위한 정의당의 설비목표

도약기	2016 ~ 2020	핵발전소 2기 폐쇄	▶핵발전소 영구정지: 고리1호기, 월성1호기 건설중단: 신고리4호기, 신한울1호기, 신한울2호기 계획취소: 신고리5호기, 신고리6호기, 천지1호기, 천지2호기, 천지3·4호기 또는 대진1·2호기
전환기	2021 ~ 2030	핵발전소 10기 폐쇄	▶핵발전소 영구정지: 2030년 이전 수명만료 발전소 폐쇄 ▶석탄/석유 1995년 이전 준공된 수명만료 발전소 폐쇄 (약 35년 가동전제) ▶신재생 실효용량 최소 10% 확대안 또는 최대 20% 확대안
완성기	2031 ~ 2040	핵발전소 13기 폐쇄	▶핵발전소 영구정지: 2040년 이전 수명만료 발전소 폐쇄 4기 ▶석탄/석유 2005년 이전 준공된 수명만료 발전소 폐쇄 (약 35년 가동전제) ▶신재생 실효용량 최소 20% 확대안 또는 최대 40% 확대안

이에 따라 2030년과 2040년의 전원믹스목표를 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수요) OECD 2℃ 추종시나리오, (공급) 신재생에너지 2030년 실효용량 10%, 2040년 20%

(특징) LNG 역할 최대화

2030년 설비비중은 석탄·석유는 36%, LNG가 32.1%, 핵발전소가 10.8%, 신재생 10%순으로 높았으며, 2029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대비 핵발전소 설비용량은 26,239MW, 석탄·석유는 5,275MW 감소한 반면, LNG는 1,972MW증가했다. 또한 2040년엔 LNG가 42.1%, 석탄·석유가 26.8% 신재생 20% 순으로 높았으며, 2029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비 석탄·석유설비용량은 1,4629MW 감소하고, LNG 설비용량은 13,970MW 증가했다.

연도	핵발전소	석탄·석유	LNG	신재생	기타	계
2015년 (정부)	21,716	28,246	9,275	23.5	30.6	10.5
	31,304	2,167	88,155	35.5	2.3	100
2029년 (정부)	38,329	33,767	12,575	28.2	24.8	9.2
	45,103	6,323	136,097	33.1	4.6	100
2030년	12,000	39,828	35,739	11,127	12,575	111,269
	10.8	36.0	32.1	10.0	11.3	100
2040년	0	30,411	47,737	22,681	12,575	113,404
	0	26.8	42.1	20.0	11.1	100

② (수요) OECD 2℃ 추종시나리오, (공급) 신재생에너지 2030년 실효용량 20%, 2040년 40%

(특징) 신재생역할 최대화

2030년 설비비중은 석탄·석유는 36%, LNG가 22.1%, 신재생 20%, 핵발전소가 10.8%순으로 높았으며, 2029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대비 핵발전소 설비용량은 26,239MW, 석탄·석유는 5,275MW 감소하고 LNG도 9,155감소했다. 또한 2040년엔 신재생 40%, 석탄·석유가 26.8% LNG 20.1% 순으로 높았으며, 2029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비 석탄·석유설비용량은 1,4629MW 감소하고, LNG 설비용량은 8,716MW 감소했다.

연도	핵발전소	석탄·석유	LNG	신재생	기타	계
2015년 (정부)	21,716	31,304	28,246	2,167	9,275	88,155
	23.5	35.5	30.6	2.3	10.5	100
2029년 (정부)	38,329	45,103	33,767	6,323	12,575	136,097
	28.2	33.1	24.8	4.6	9.2	100
2030년	12,000	39,828	24,612	22,254	12,575	111,269
	10.8	36.0	22.1	20	11.3	100
2040년	0	30,411	25,051	45,367	12,575	113,404
	0	26.8	22.1	40	11.1	100

③ (수요) 독일 추종시나리오, (공급) 신재생에너지 2030년 실효용량 10%, 2040년 20%

(특징) 최고수준의 수요관리, LNG 역할 강화

2030년 설비비중은 석탄·석유는 36%, LNG가 29.4%, 핵발전소가 10.8%, 신재생 10%순으로 높았으며, 2029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대비 핵발전소 설비용량은 26,239MW, 석탄·석유는 5,275MW 감소하였고 LNG도 2,451MW 감소했다. 또한 2040년엔 LNG가 37.5%, 석탄·석유가 30% 신재생 20% 순으로 높았으며, 2029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비 석탄·석유설비용량은 1,4629MW 감소하고, LNG 설비용량은 4,141MW 증가했다.

연도	원자력	석탄·석유	LNG	신재생	기타	계
2015년 (정부)	21,716	31,304	28,246	2,167	9,275	88,155
	23.5	35.5	30.6	2.3	10.5	100
2029년 (정부)	38,329	45,103	33,767	6,323	12,575	136,097
	28.2	33.1	24.8	4.6	9.2	100
2030년	12,000	39,828	31,316	10,636	12,575	106,355
	10.8	36.0	29.4	10.0	11.3	100
2040년	0	30,411	37,908	20,223	12,575	101,117
	0	30.0	37.5	20.0	11.1	100

④ (수요) 독일 추종시나리오, (공급) 신재생에너지 2030년 실효용량 20%, 2040년 40%

(특징) 최고수준의 수요관리, 신재생 역할 최대화

2030년 설비비중은 석탄·석유는 36%, 신재생20%, LNG 19.4% 핵발전소가 10.8%순으로 높았으며, 2029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대비 핵발전소 설비용량은 26,239MW, 석탄·석유는 5,275MW 감소하였고 LNG도 13,087MW 감소했다. 또한 2040년엔 신재생40% 석탄·석유가 30% LNG 17.4% 순으로 높았으며, 2029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비 석탄·석유설비용량은 1,4629MW 감소하고, LNG 설비용량도 16083MW 감소했다.

연도	원자력	석탄·석유	LNG	신재생	기타	계
2015년 (정부)	21,716	31,304	28,246	2,167	9,275	88,155
	23.5	35.5	30.6	2.3	10.5	100
2029년	38,329	45,103	33,767	6,323	12,575	136,097
	28.2	33.1	24.8	4.6	9.2	100
2030년	12,000	39,828	20,680	21,271	12,575	106,355
	10.8	36.0	19.4	20	11.3	100
2040년	0	30,411	17,684	40,447	12,575	101,117
	0	30.0	17.4	40	11.1	100

〈참고〉 환경부의 「환경·기후변화를 고려한 에너지정책 대안 연구」, (2015), 설비비중 시나리오

시 나 리 오			2030년 설비비중		2035년 설비비중	
1	기준 수요	발전부문 온실가스 BAU 대비 감축 18.9% 석탄을 LNG로 대체	원자력	44,329 MW	원자력	45,390 MW
			석탄·석유	36,668 MW	석탄·석유	30,269 MW
			LNG	33,056 MW	LNG	39,988 MW
			신재생	31,122 MW	신재생	41,934 MW
			기타	3,500 MW	기타	2,900 MW
2	수요 관리	발전부문 온실가스 BAU 대비 감축 26.7% 석탄을 LNG로 대체	원자력	38,329 MW	원자력	40,890 MW
			석탄·석유	36,668 MW	석탄·석유	30,269 MW
			LNG	18,356 MW	LNG	17,288 MW
			신재생	28,354 MW	신재생	37,215 MW
			기타	3,500 MW	기타	2,900 MW
3	기준 수요	발전부문 온실가스 BAU 대비 감축 18.9% 석탄을 LNG로 대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35년 20% 목표	원자력	44,329 MW	원자력	45,390 MW
			석탄·석유	37,668 MW	석탄·석유	31,269 MW
			LNG	27,456 MW	LNG	29,888 MW
			신재생	46,281 MW	신재생	67,936 MW
			기타	3,500 MW	기타	2,900 MW
4	수요 관리	발전부문 온실가스 BAU 대비 감축 26.7% 석탄을 LNG로 대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35년 20% 목표	원자력	38,329 MW	원자력	40,890 MW
			석탄·석유	36,668 MW	석탄·석유	30,269 MW
			LNG	14,856 MW	LNG	12,388 MW
			신재생	42,443 MW	신재생	61,463 MW
			기타	3,500 MW	기타	2,900 MW
5	기준 수요	발전부문 온실가스 BAU 대비 감축 18.9% 석탄을 LNG로 대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35년 30% 목표	원자력	44,329 MW	원자력	45,390 MW
			석탄·석유	36,668 MW	석탄·석유	30,269 MW
			LNG	27,456 MW	LNG	27,088 MW
			신재생	65,289 MW	신재생	100,077 MW
			기타	3,500 MW	기타	2,900 MW
6	수요 관리	발전부문 온실가스 BAU 대비 감축 26.7% 석탄을 LNG로 대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35년 30% 목표	원자력	38,329 MW	원자력	40,890 MW
			석탄·석유	36,668 MW	석탄·석유	30,269 MW
			LNG	16,956 MW	LNG	13,088 MW
			신재생	55,995 MW	신재생	89,914 MW
			기타	3,500 MW	기타	2,900 MW
7	기준 수요	발전부문 온실가스 BAU 대비 감축 18.9% 석탄을 LNG로 대체 신재생에너지 정부목표	원자력	44,329 MW	원자력	45,390 MW
			석탄·석유	36,668 MW	석탄·석유	30,269 MW
			LNG	32,756 MW	LNG	37,988 MW
			신재생	31,122 MW	신재생	41,934 MW
			기타	3,500 MW	기타	2,900 MW
8	수요 관리	발전부문 온실가스 BAU 대비 감축 26.7% 석탄을 LNG로 대체 신재생에너지 정부목표	원자력	38,329 MW	원자력	40,890 MW
			석탄·석유	36,668 MW	석탄·석유	30,269 MW
			LNG	17,256 MW	LNG	16,488 MW
			신재생	28,354 MW	신재생	37,215 MW
			기타	3,500 MW	기타	2,900 MW

※ 환경부 용역보고서는 모든 시나리오의 설비에비율은 15%를 기준으로 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문헌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크기여도를 산정하여
실효용량을 반영하였다고 밝혔음. (317쪽)

메르스참사로 드러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민낯!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대개혁」 정의당이 보건의료대개혁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대개혁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르스참사로 드러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민낯

지난해 메르스 참사는 대한민국 의료의 병폐를 낱알이 드러내었습니다. 메르스는 낙타가 아니라 국내 보건 의료체계를 숙주삼아 확산되었다는 냉혹한 평가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뿔뿔린 국가방역체계는 제외 하더라도 국민건강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일차의료시스템은 메르스 앞에 무력했습니다. 닥터쇼핑이 일상화되고 의료기관간 환자의뢰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습니 다. 비좁은 병실에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거주 하는 후진적인 병실구조가 감염을 키웠고, 병원내 감염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지방환자가 몰 리는 서울의 대형병원은 오히려 메르스 확산의 진원으로 전락하였고, 격리병상은 제대로 동원하지 못해 환 자의 혼란은 가중되었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몰린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과중한 노 동강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지만 메르스에 즉각 대응할 공공의료체계는 작동되지 않았습니 다. 메르스 앞에 우리의 보건의료체계는 혼란과 무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건강보험 17조원 흑자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외면하는 정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흑자는 17조원으로 역사상 유례없이 재정이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건 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은 건강보험 보장 성이 취약해 과중한 병원비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가계파탄의 위협이 커 어쩔 수 없이 수십조에 이르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남아도는 흑자재원으로 보장성 확대를 하게 되면,

병원비 걱정이 사라질 뿐 아니라 실손의료보험과같은 민간의료보험도 필요하지 않게 되어 국민의 가계부담을 대폭 줄일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서민에게 가혹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저버린 정부

정부는 1500만 지역가입자의 요구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요구도 저버렸습니다.

서민들에게는 소득이 없어도 재산과 자동차, 심지어 가족수에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등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가진 일부 고소득층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의당은 메르스로 드러난 한국의료체계의 병폐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첫째, 의료전달체계 개편, 보건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의료영리화 중단으로 메르스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하는 의료 공공성을 실현하겠습니다.

의료전달체계 구축으로 병원과 의원간 역할을 정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해결하겠습니다. 전국민의 포괄적인 건강 및 질병관리를 위해 건강담당의사제도를 도입해 일차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키우겠습니다. 신종감염병, 중대 재해 및 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OECD 평균 수준으로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인프라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건강불평등을 해소해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가계의 직접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현행 62%에서 80%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병원비 부담이 큰 입원진료비는 15세 미만 아동 100%, 전국민에게는 90% 이상 보장하겠습니다. OECD 평균 수준으로 의료비의 사적 부담을 줄이고, 공적 부담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겠습니다.

건강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서울과 전남의 기대여명이 남성은 평균 5년, 여성은 1.4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수준에 따라 30~44세 남성은 중졸 이하와 대졸의 사망 위험 격차가 8.4배입니다. 사망률 격차 해소를 위해 범부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건강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지방교부세 교부시 건강불평등 지수를 반영해 계층간, 지역간 사망률 격차 등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출산 전부

터 초중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과정에 걸친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고소득층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겠습니다

정의당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엉터리 건강보험료 체계를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재산, 자동차, 성연령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소득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서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반면 근로의 소득인 금융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 등 과표소득 기준으로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일부 고소득층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72.8%가 월 4.7만원의 건강보험료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넷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실손의료보험 규제로 민간의료보험에 드는 가계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현행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하락, 도덕적 해이, 보험사 규제완화로 인해 갱신 시마다 보험료가 급증해 국민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실손의료보험을 포함해 민간의료보험에 월 평균 26만원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없애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국민의 가계비 부담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처참한 참사 앞에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왔지만, 불과 얼마되지 않아 잊혀졌고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채 그대로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의료체계의 병폐를 뜯어 고치기 보단, 오히려 병폐를 악화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의료영리화 정책입니다. 현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 원격의료 도입,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으로 의료체계의 공공성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려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지 의료를 수익창출의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보건의료 대개혁'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의 메르스참사는 없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공공성을 실현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며,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는 보건의료대개혁의 길을 정의당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1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

청년의 삶을 바꾸는 20대 국회 청년의 다른 삶을 위한 정의당의 스무 가지 대안 “청춘, 걱정하지 말아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야흐로 대한민국 정치는 청년의 시대입니다. 청년을 말하지 않는 정당이 없고, 청년실업의 심각함과 청년 노동의 위태로움을 말하지 않는 정당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조차 노동개혁을 몰아붙이는 이유로 청년 일자리 확대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10년, 청년정책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일 뿐입니다. 작년 청년실업률은 9.2%로 IMF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공식 실업자일 뿐이며,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 취업애로계층은 정부 공식통계로도 115만명입니다. 30세 미만 가구의 평균 부채 규모는 2960만원이며, 창문도 화장실도 없는 주거빈곤에 놓인 청년은 서울만 36.3%입니다. 급기야 청년들은 이런 현실을 지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0대 국회는 달라야 합니다. 20대 국회는 청년정책 실패의 역사를 끝내야 합니다. 정의당은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20대 국회를 청년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국회로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20대 청년공약을 실천할 것입니다.

첫째, 고용의 사회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채용규칙을 세우겠습니다

청년고용할당제를 5%까지 확대하고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도 5% 할당을 실현해 연 24만 5천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청년고용할당제와 기화균형채용을 함께 도입해 여성, 고졸이하 학력, 전문대와 지방대 출신 청년들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취업청탁을 강력히 처벌하겠습니다. 부모 소득과 출신대학 등 불합리한 차별요소를 없앤 표준이력서 사용을 의무화하며 서류 심사만이 아니라 면접 과정에서도 관련 질문을 금지할 것입니다.

둘째,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선진국형 실업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1년 최대 540만원의 청년디딤돌급여를 제공하고 내실 있는 직업훈련과 연계해 일자리 탐색의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스스로 사표를 쓴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나쁜 일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아르바이트)는 물론 방송작가와 학습지 교사 등 최근 청년들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 분야의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연계하여 두루누리사업 지원 대상자를 월 180만원 이하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청년 일자리 현실에 맞는 새로운 노동시간단축 모델을 실현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5시에 퇴근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가족, 친구들과 보낼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국경일과 공휴일 등 빨간 날을 모두 <근로자의 날>처럼 유급휴일화 하고, 연간 최소 17일의 유급휴일을 단체협약이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도 보장하겠습니다. 어느 계절에나 쓸 수 있는 5일 여름휴가를 의무화하여 신입사원은 물론,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청년노동자에게도 휴가를 제공할 것입니다.

넷째, 생애 첫 일자리를 개혁하고, 젊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사실상 단기계약직인 공공기관 인턴을 모두 계약직으로 전환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하며, 청년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인턴 확대에서 정규직 전환 촉진으로 바꿀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2배 증원해 최저임금 위반과 인턴위반 사용 등을 강력 감시하며, 임금체불,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성차별, 산업재해가 빈번한 사업장에 대한 바로 검색시스템을 도입해 구직자가 나쁜 일자리를 선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30세 미만 고용보험가입자에 대한 실업급여 1달 삭감, 수습사원에 대해 최저임금 90% 지급 허용과 같은 청년세대에 대한 부당한 제도적 차별을 끝까지 찾아내 폐지하겠습니다.

다섯째, 1인가구 34% 시대에 맞는 새로운 주거 정책으로, 청년들이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를 탈출해 인간다운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규제 없는 월세시장에 질서를 세우겠습니다. 공정임대업자로 등록된 임대업자에게 주거환경개선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공정임대료를 준수하도록 해 월세가격을 낮출 것입니다.

월세 보증금 안심대출을 실시해 청년들의 고시원 탈출을 돕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前 대한주택보증)가 보증하는 최대 2000만원 미만의 소액 보증금 대출제도로 500만원 1000만원이나 되는 보증금 부담을 덜 것입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해 또 하나의 주거비인 원룸관리비를 공정화하고, 수선문제 등 임대차 분쟁에서 청년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집을 만들 것입니다.

여섯째, 진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정부책임 대학개혁으로 대학의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국가표준등록금(2015년 기준 350만원)을 도입해 진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인재양성의 최종 수혜자인 대기업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위원 및 교직원위원의 추천권을 법령에 명시해,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학내 구성원들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실질적인 심의기관으로 바꿀 것입니다.

전문대와 지방대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고 기초학문을 붕괴시키는 무책임한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정부책임 대학개혁으로 지역균형발전과 대학간 양극화를 해소하며 기초학문을 육성하겠습니다.

일곱째, 백년을 내다보고 미래세대의 더 나은 삶을 계획하는 20대 국회를 만들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미래세대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자리, 실업, 주거 등 2030세대의 현안만이 아니라 래세대가 곧 마주할 노후와 연금 등에 대한 장기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청년활동지원, 청년공간지원을 더 체계적으로, 더 규모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0대 국회는 달라야 합니다. 정의당은 청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다른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정의당이 청년의 현재와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15일

정의당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4대 혁신농정」 우리농업을 지키고 농민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11월 14일 ‘쌀값 보장’과 ‘쌀수입 반대’를 외치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 농민께서 넉 달째 생사의 기로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우리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4대 혁신농정 공약’ 발표에 앞서 백남기 농민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폭력진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합니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사료용 곡물을 포함한 식량자급률은 24%에 불과합니다. 매년 1%씩 올라도 모자랄 판에 매년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소득과 농가소득은 점점 줄어들어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 커지고, 농촌내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농산물 시장개방과 농업 구조조정으로 농업과 농촌과 농민이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농업은 우리 모두의 식량주권이 달린 국가기간산업입니다. 우리농촌의 문화적, 생태적, 사회적 가치 등 다원적 가치를 지닌 우리 모두의 자산입니다. 농사만으로 먹고 살만하고, 농촌에서도 교육, 주거, 의료에서 차별없는 복지를 누릴수 있어야 선진국입니다. 정의당은 4대 혁신농정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을 살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국가기간산업인 우리농업을 지키고, 우리국민들의 먹거리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식량자급률 50%를 달성을 중장기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법률적 의무로 강제해 단계적으로 높여가겠

습니다. 농지 공개념을 강화해 식량자급의 기반인 적정농지를 확보하겠습니다. 농업 후계인력 육성을 위해 최대 3년까지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청년 취업농지원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귀농·귀촌인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WTO, FTA 등 농업개방 관련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농업피해영향평가를 실시해 대책을 마련하고, 무역이득부담금제를 도입해 농업 피해보전을 의무화하겠습니다.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기초농산물 현물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늘림으로써, 우리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면서 국민들의 먹거리안전도 지키겠습니다.

둘째,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를 목표로 농민들의 농업소득과 농가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주요 농축산물에 품목별 생산비를 반영한 적정가격보장제를 도입해 가격폭락으로 농민들의 손실과 가격 폭등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막겠습니다.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를 곡물류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산물가격을 지지하겠습니다.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유지하고 농민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논과 밭의 고정직불금을 1ha당 150만원과 80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중소협업공동체를 육성하고 농산물의 가공·유통을 지원해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셋째,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민의 교육, 주거, 의료를 책임지겠습니다.

농어촌교육특별지원법을 제정해 농어촌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1마을 1공동생활주택 운영으로 어르신 노후를 살피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의 직업성 질환인 농부증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해 농업재해 예방과 함께 농업재해시 적절한 손실보상과 재활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농민참여로 민주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하고,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자주적인 농협'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여성농민을 생산의 주체로 인정해 그에게 맞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장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실시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처럼 농업회의소를 법제화해 협치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2016년 3월 1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의당 농민선거대책본부

꼴찌 수준의 장애인복지를 OECD 평균 국가로 장애인 권리보장 '5대 비전 20대 정책'

●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지출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

-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지출은 2000년 GDP 대비 0.38%에서 2005년 0.54%를 거쳐 2009년 0.6%까지 증가했으나, 2011년 현재 오히려 0.49%로 하락한 상황임. 이는 2011년 OECD 국가 평균 2.19%의 5분의 1 수준이며, OECD 조사국 30개국 중 멕시코와 터키에 이어 28위로 꼴찌 수준. 장애인복지지출이 가장 높은 나라인 덴마크 4.71%, 스웨덴 4.28% 등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임.
- 예산은 정책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 할 수 있음. OECD 평균 복지지출을 위한 로드맵 마련 필요

● 장애인 정책의 기본 패러다임 전환 필요

- 2000년대 들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이 일부 확대되고는 있으나, 대규모 수용시설 중심의 정책은 여전한. 대규모 수용시설 중심의 정책은 그 자체로도 인권침해적이며 장애인의 개인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정책임.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정한 '장애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와 통합'을 이루려면 시설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탈시설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장애인 복지 체계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등급제는 행정편의적 정책의 대표적 예로 장애인을 천편 일률적으로 등급화해 개인의 욕구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임. 이는 맞춤형 복지 시대로 나아가는 현 시대상과도 맞지 않음.
-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기본법적 역할을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변화된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에 맞춰 장애인 자립생활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체계 정비가 필요함.

●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기본권과 소득보장 정책 마련해야**

-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권리 보장법을 제정해야 함. 탈시설 · 지역사회 거주 종합대책 및 장애인 복지예산을 OECD 평균 국가로 만들기 위해 국회 내 특위 및 포럼을 구성해 장애인당사자, 정당, 정부가 모여 종합로드맵 마련 필요.
-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로 활동보조, 이동권, 주거권, 교육권, 참정권을 확대함은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지역복지사업 준비의 즉각 중단과 함께 오히려 맞춤형 지역복지사업을 장려해야 함. 이밖에도 장애인의 문화생활 및 건강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인가족 지원을 확대해 장애로 인해 전가족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또한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는 장애여성과 정신장애인 등 성별과 장애유형에 따른 인권을 보장해야 함.
- 장애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제를 폐지함은 물론 1차 소득보전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만 적용제외되어 있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효성있게 개편하며 장애인친화공기업 등 새로운 장애인고용모델을 발굴하는 노력도 다해야 함.

2016년 3월 1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I. 모두발언

“정의당 국방공약, 6대 중심과제로 우리 군의 성격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국방개혁의 원대한 밑그림 제시”

전쟁이 중단된 상태로 반세기를 지나오며 대한민국은 안보국가였습니다. 안보는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번영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안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습니다. 국민에게 과도한 의무와 희생을 요구해, 인권을 제한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권위주의형 안보입니다. 그 결과 국민을 위한 안보가 아니라, 안보를 위한 국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가짜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남북이 경쟁적으로 선제공격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전쟁을 억제하는 이렇다 할 안전장치가 남아있지 않는 상황에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강경발언은 한반도로 파멸로 이끌 불씨에 다름 아닙니다. 이것은 ‘실패하는 안보’입니다.

자살 우려자로 분류돼 연간 3000명이 넘는 병사들이 그린캠프에 수용됩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병의 수가 연 평균 100여명에 달합니다. 사회에서 ‘열정페이’에 시달리던 청년들이 군에 와서는 ‘애국페이’를 강요받습니다. 월급 15만원 주고서는 보급품을 사서 쓰라고 합니다. 사비를 들여 군복무 하라는 말입니다. 병사 한 명이 군 복무기간에 집에서 타서 쓰는 돈이 평균 271만원입니다. 국가가 장병 부모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군을 유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인구감소로 부적응자까지 마구잡이로 징집하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군은 신체허약자, 심리이상자, 인지능력저하자를 포함해, 입영대상자 중 무려 89%를 징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도한 징병으로 병영은 거대한 집단 수용소가 돼버렸습니다. 끊임없이 병사들을 감시하고, 타이르고, 억박지르는 것이 초급 간부들의 주된 일과가 돼버렸습니다. 최전방 근무자들 경우 밤 10시가 되어도 퇴근하지 못하며, 하루 평균 15시간을 근무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병영이 또 하나의 헬조선이 돼버렸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군은 인구절벽에 따른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될 것입니다. 2020년대 중반에 이르면 50만 명 수준의 기존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됩니다. 우리 군은 아래로부터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병사 30만 명을 포함해 50만 명의 병력 규모를 유지하겠다고합니다. 오직 현재 병력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국방

정책인 것처럼 호도하고, 장비 숫자에만 집착하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은 안보를 위협하는 정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 복무체계를 잘못 관리한데 따른 폐단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한국노동패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졸 청년이 졸업 후 군 입대까지 걸리는 대기기간은 평균 24개월입니다. 또 제대 후 첫 직장을 구하기까지 평균 31개월이 소요됩니다. 이런 군 복무를 전후로 한 손실 기간에 21개월의 군 복무기간을 합하면 76개월입니다. 우리나라 20대 청년들이 6년 넘는 기간 동안 사실상 실업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국방의 의무라 강변하기에 개인이 감내해야 할 손실이 너무 과도합니다. 청년들의 손실은 곧 사회적 비용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국방, 이런 안보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발표될 정의당의 국방공약은 우리 군의 성격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국방개혁의 원대한 밑그림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6대 중심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간 출신을 국방장관에 임용하는 ‘안보 민주화’ 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장관 및 주요 보직은 군 출신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럼으로 국방부는 국민을 대리하여 군을 통제하는 역할이 아니라, 군을 대리하여 국민을 통제하는 조직으로 군림해 왔습니다. 국민안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안보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소속 공무원을 원칙적으로 문민화 할 것입니다. 단, 제복을 입은 군인의 전문성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합동참모본부 등에 합당한 의견개진 권한과 통로를 마련할 것입니다.

둘째, 적정 군 병력을 2025년까지 4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할 것입니다.

2025년 21세가 되는 남아의 수는 22만5000명으로 현재보다 11만 명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50만의 군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입니다. 과감한 감축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군 병력 감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전력, 부대, 인력구조를 일대 혁신하는 ‘2025년 목표군’을 기획하고, 지금부터 준비해나가야 합니다. 군 병력감축에 따른 전력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군의 과학화

현대화를 서두르고, 예비군 전력에 대한 활용도를 효과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소수 정예화 군으로도 충분히 안보를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2025년까지 모병제를 주축으로 해 병역제도를 전환하겠습니다.

우리 군을 고도의 직업의식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 집단으로 변화시키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복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2025년에는 징병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의무복무자는 후방과 비전투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할 것입니다. 의무복무자 중 매년 2만5000명을 모집해 4년 간 전투 및 전문분야에서 전문병사로 복무토록 하고, 다시 이들 중 장기복무자를 선발함으로써, 사실상 전투와 전문분야는 완전히 직업군인으로 충원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2025년 40만 명 규모의 우리 군은 간부 20만, 전문병사 10만, 의무병 10만으로 구성되는 전문 직업군대로 전환하게 됩니다.

넷째, 만 18세에 군 입대가 가능하도록 ‘군 복무 예약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졸 입대자의 경우 군 복무 21개월을 포함해 총 76개월을 사실상 사회적 잉여로 살아가게 됩니다. 대학 진학자들 역시 군 복무로 인한 학업단절과 제대 후 취업을 위한 경력보완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해 31개월이 소요됩니다. 단순히 군 복무기간이 아니라 군 복무에 따른 총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의당은 고졸의 경우 군 복무 총비용을 76개월에서 27개월로, 대학진학자의 경우 31개월에서 26개월로 획기적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개인 맞춤형 군 복무 안내를 통해 18세가 되면 고등학생이라도 원하는 부대에 입대를 예약해 졸업 후 바로 군 입대가 가능하도록 ‘입대 예약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졸자들이 전혀 모르는 낯선 부대에 강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부대와 근무환경을 충분히 검토하고, 원하는 시기 원하는 부대를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총비용을 줄여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빨라지면 경제활동인구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습니다. 군 복무 비용 축소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키는 청년·병영 융합정책입니다.

다섯째, 인권과 정의가 실현되도록 병영문화를 혁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군은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낸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과 불안에 잠을 설칩니다. 정의당은 군사법원을 폐지하여 장병들에게도 민간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 소속의 군 인권감독관을 운영하여, 상시적으로 군의 반인권 사건에 대한 조사권을 행사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살자 수용소로 전락한 그린캠프는 즉시 해체하고 군 복무 부적응자는 군에서 조기 제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인권이 보장된 개방형 병영으로 대전환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헌신과 희생을 합당하게 보상하는 ‘전역디딤돌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군 의무복무는 공동체의 존립과 번영을 위해 헌법에 부여된 국민의 의무입니다. 국민들에게 높은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면서도 합당한 대우와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의무복무에 대해 자긍심보다는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의당은 장병의 원활한 사회진출과 적응을 돕는 ‘전역 디딤돌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중장기복무자에게만 제공되고 있는 진로취업교육을 5년 미만 단기 복무자와 의무복무 장병들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고의 안보정책은 바로 평화정책입니다. 전쟁의 공포가 높아지게 되면 아무리 국방을 개혁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분단된 한반도 상황에서 국민에게 최고의 복지는 바로 평화입니다. 그 어떤 국방·안보 정책보다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실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이 비핵평화 한반도를 구현하는 평화국가, 중견국가, 교량국가로 동북아시아에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도록 국가의 외교·안보 전략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평화로 가는 멀고 험난한 여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물샐틈 없이 지키는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는 국방정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17일

정의당

Ⅱ. 정의당의 국가안보 정책기조

◎ 목표

- ◆ 안보의 주주이자 고객은 시민임을 재확인하며 모든 국방운영에 있어 시민적 통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문민 국방장관 임명, 국방운영에서 헌법과 법률의 준수를 통해 국방을 정상화 한다.
- ◆ 지난날 국방이 시민을 군인화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군인을 시민화하는 것이 정의당 안보정책의 핵심 방향이다. 지난날 군대가 높은 효율성으로 한국의 산업화를 선도했다면 이제는 시민이 군대의 민주화·정보화를 선도해야 한다.

◎ 정책기조

◆ 국민의 안보로 전환

지난날의 안보는 보수 정치권력이 안보를 독점하면서 국민에게는 오직 의무만을 부과하는 통치를 위한 이데올로기의 산실이었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어 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부패와 부조리가 만연된 국방, 반인권적인 관행이 엄존하는 병영을 방치하여 국민의 심각한 희생과 아픔을 감수해야 했다. 안보는 보수의 전유물이 아닌 국가 공동체의 가치이다. 안보의 주주이자 고객은 누가 뭐래도 국민이다. 북한을 정치에 악용하는 정권안보는 반드시 이 시대에 끝내고 안보를 시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국민이 안보의 주체가 되고 안전의 결과를 누리는 것이 바로 국민안보다.

◆ 혁신하는 안보

우리 국방은 현대 분쟁의 발전 추세와 국민의 개혁 요구를 외면한 채 오직 재래식 군사력에만 의존하는 혁신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고비용 저효율의 재래식 국방시스템으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 똑똑한 군대, 민첩한 군대, 작은 군대로 결과에 책임지며 행동으로 말하는 선진 국방의 청사진이 요구된다.

◆ 포괄(comprehensive) 안보

국가의 권위와 이익을 수호한다는 전통적 관점의 안보에서 시민 안전 그 자체가 중시되는 현대적 포괄안보로 전환한다. 우리는 군사력에만 의존해서 안전을 도모할 수 없다. 전쟁을 억제할 능력 있는 군과 분쟁

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외교를 양대 축으로 중견 평화국가의 상을 정립해야 한다. 또한 유능한 위기관리체계를 갖춘 안전의 선진국으로 거듭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거버넌스의 상을 정립해야 한다. 지난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그리고 전방의 지뢰사건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위기만 터지면 어김없이 무능했다. 복지와 더불어 안전은 시민 생존권의 핵심가치다. 이제는 국민 안전 그 자체를 중시하는 포괄안보로 전환되어야 한다.

◆ 미래 세대를 위한 안보

안보의 주인공인 청년들의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병영문화, 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의 병영, 학업과 취업과 병역이 일직선상에서 관리되는 청년 생애주기에 맞춘 병역제도를 도입한다. 병영은 인권과 정의의 바탕 위에서 전문 직업주의가 정착된 전문가 집단으로 재창조되어야 한다.

자치와균형의 미래전환! 권력은 나누고 집중은 분산시켜 지역을 주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1년째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성년을 맞이한 한국의 지방자치는, 주민이 아니라 관료가 주도하고, 민주성이 아니라 효율성이 중심이 된 반쪽짜리 단체자치에 머물러왔습니다. 더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간섭과 통제가 오히려 강화되고 지방재정 압박이 가중되면서 지방자치가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청'이나 '연락소'에 불과하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또한 후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는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은 이제 '식민지'를 넘어 착취할 자원조차 남아있지 않은 황무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중앙집권과 수도권집중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국사회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만 '지역불평등'을 해결하지 않는 한 한국경제의 재도약은 불가능합니다.

정의당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은 지방과 나누고, 수도권에 집중된 부와 자원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시켜 지역을 지역주민들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현재의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바꾸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재정자율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국책사업은 중앙정부가 전액을 책임지도록 해서 지방의 재정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20%로 확대하는 등 지방세수를 늘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시 재원보전대책 마련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내국세 총액의 24.24%로 늘리고 사회복지지출로 재정부담이 큰 특별·광역시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는 등 교부세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자체 길들이기에 활용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부의 짬짜미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특별교부세를 폐지하는 대신 재난안전교부세는 증액하겠습니다.

둘째,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행정자치부 장관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중앙-지방 협의회를 상설기구화하겠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 정책에 대해 지방 4대 협의체에 거부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중앙정부 사업 시행에 앞서 협의절차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사전 협의·조정을 의무화한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조정제도를 폐지하고 일방적인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사업을 중단하겠습니다.

셋째, 과감한 지방분권으로 자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사무는 과감하게 이양해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 비율을 7:3에서 6:4로 개선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의한 인사권·조직권 통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겠습니다.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개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시·군·구 단위로 자치경찰을 설치하고 자치경찰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운영하여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확보하겠습니다.

넷째,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중앙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지방의회와 주민에 의한 통제로 예산낭비를 근절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부터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주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의석배분에 반영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도입, 감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투명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시키고 정책지원기구 설치 및 공동보좌관계 도입으로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조례 제·개정 청구,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제도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하고 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 만들고 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해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일자리·교육·복지를 통한 선순환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개발정책, 투자유치와 국비확보에 목매다는 토건개발로는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발전이 실현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미래산업과 뿌리산업, 풀뿌리 사회적경제를 육성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공공사회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주민복지도 향상시키고 일자리도 늘리겠습니다. 지방대를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인재 배출의 요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자란 청년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좋은 일자리를 얻고 질 높은 복지혜택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의 일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핵심입니다. 정의당은 주민의 참여에 의한 민주적 지역 공동체를 구현하고 어느 곳에서 태어나도 행복하게 교육과 취업과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20일

정의당

‘중견·평화·가교 국가’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평화·상생의 한반도와 동아시아’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봄은 오지만 한반도에는 거센 북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핵실험, 제재와 압박, 반발의 악순환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남북관계도 모든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주고받는 말만 보면 전쟁 직전의 파탄상태입니다.

정부여당은 이런 위기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처방을 제시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경하기만 할뿐, 북핵을 해결할 강력한 효과는 전혀 없는 즉자적 대책과 발언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말로는 북핵 해결을 최우선에 놓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능력이 증강되는 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개성공단 폐쇄 등 우리에게 해가 훨씬 큰 자해적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한 술 더 뜹니다.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외교도 동맹도 고려하지 않는 핵무장론을 제기하는 등 선 거용 안보포퐁리즘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외교도 엉망이 되어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현재 언뜻 보기에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만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대화 재개와 그 방법을 둘러싼 치열한 모색 역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 2270호도 49항에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50항에서 ‘6자회담과 9.19공동성명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주변 강대국들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에 따라 북한문제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맡겨진 대북 강경 제재에 합의하면서도 사드 배치는 서두르지 않는 주고받기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한국은 대통령이 앞장서 폭주하다가 한편으로는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강경책과 대화 등 다양한 패를 가진 미국의 강경책 전위부대로나 쓰이며 협상의 측면

에서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12.28 위안부 합의와 그 이후 일본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굴욕적 상황에 이는 외교 참화입니다. 내외에서 돌고래 정도는 된다면 한국이 고래 싸움에 등터지는 새우 신세로 퇴보했습니다. 국제정치라는 거대한 장기판에서 ‘줄’로 전략했습니다.

현재의 위기가 더 심각한 건 정부여당의 무능과 그릇된 정책에 대한 비판, 제대로 된 대안 정책에 대한 사회적 열망과 합의를 크게 만들어내고 있지 못한 점입니다. 이것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두 야당의 무능과 혼선에 크게 기인합니다. 양당은 호남에서는 햇볕정책, 화해협력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의도에서는 새누리당과 다를 게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북한 궤멸론’을 이야기하고, 그 당의 남북관계 정책을 총괄하는 이수혁 한반도경제통일위원장은 정부의 강경기조가 필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의 ‘햇볕정책은 실패했다’고 선언하고, 이성출 안보위원장은 “햇볕정책에 따른 지원이 북한의 대량파괴무기개발 사용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죽하면 백낙청·임동원 등 민주당 정권에서 대북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분들이 “평화·통일의 시대적 사명감을 통감하지 못하는 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겠습니까? 언론이 ‘야당의 존재 의의 없어진 안보 우클릭’이라는 사설과 기사를 내겠습니까?

두 야당,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권력을 잡는 게 중요하고, 승패는 경제에서 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경험 재개는 이야기하면서도 안보 영역은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권세력이 강 대 강 대결을 거의 의도적으로 조장하며 북풍을 창끝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자세는 방패를 놓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정권을 맡길만한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외교안보에서도 유능해야 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말로만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떠들고, 서류에 따라 혼선을 보여서는 정권을 담당하겠다는 정당의 자격이 없습니다.

정의당은 위기에 빠진 비핵화와 남북관계, 한국외교를 구출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평화공존’과 ‘접근을 통한 변화’의 원칙을 확실히 견지하겠습니다. 전쟁위협과 극단적 갈등의 현재를 딛고, ‘평화 · 상생의 한반도와 동아시아’라는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중견 · 평화 · 가교 국가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중견국가란 한반도 정세 주도, 주변 강대국들이 지정학적 대립에서 벗어나 지정학적 이익의 조화를 이루도록 선도, 세계적 차원 불

평등 해소 및 비핵화-군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평화국가란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동북아에 평화공존의 새역사를 만드는 다자안보협력 선도,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인간안보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가교국가란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통상과 교통의 중심, 다양한 문명과 가치가 교류하고 융합의 꽃을 피우는 가교, 북한을 미국 등 국제사회와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에 입각해 다음의 3대 과제를 제시하고 실천해가겠습니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담대한 실천을 제안합니다.

우선은 북한과 한미 당국이 폭주의 악순환을 멈추고 대화를 재개해야 합니다. 대화 재개를 위해 가칭 ‘신 2.29합의’ 등 여건 조성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시점에 비핵화 6자회담과 평화협정 4자회담을 병행해야 합니다. 비핵화-평화체제 전환-북미 적대적 관계 청산과 수교 등 포괄적 해법은 9.19공동성명에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서로가 선 비핵화 대 선 평화협정의 점점 없는 평행선을 달리지 말고, 합의했던 바에 입각해 담대한 실천을 해나갈 때입니다.

둘째, 평화로운 환경 조성을 위한 중견국 외교를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지정학적 이익을 노려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 이익을 공유, 확대할 수 있도록 균형외교·조화외교를 일관되게 전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미국 일극시대에서 미중 양강 시대로 전환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생존과 경제적 안정 등 안보를 지키는 금도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SOFA 전면개정 등 수평적 한미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것이 국제사회 중견국가로서의 위신에 부합하는 것이고, 한미관계를 보다 성숙화시키는 것입니다. 12.28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사협력이 아닌 평화와 공생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 신한일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지구촌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제3세계발전 기여외교를 적극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윤을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대외파병 금지와 세계적 비핵화-군축에도 적극 기여하는 평화주의 외교를 관철하겠습니다.

셋째, 경협 등 남북교류협력을 부활·활성화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우선 자해적인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철회하고 조속히 재가동되도록 할 것입니다. 특별법 제정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 기업주와 노동자들에 대한 실효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상설화 등의 교환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남북 경

제협력이 우선 복원되면,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체결로 경협의 제도화를 보장하고 부작용은 예방하겠습니다. 중국-대만 간 경협의 교훈에 입각해 빛은 계승하고 그림자는 극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경제공동체와 유라시아대륙경제시대를 이루어내겠습니다.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 세력 충돌의 전위가 아니라 융합과 번영의 가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외교·통일 정책 추진으로 한반도에 사는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위협에 시달리지 않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대박의 허상을 쫓다 쪽박상황인 남북관계를 개선하겠습니다. 화해와 협력을 통한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정의당

1. 위기에 처한 외교안보와 남북관계

◎ 한반도 비핵화·평화의 위기, 남북관계의 파탄

- 현재 북핵 능력의 증강, 제재와 압박, 반발 등의 악순환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큰 위기에 봉착. 남북관계도 개성공단 폐쇄 등 경제협력·교류협력이 전면 중단되었고, 모든 대화채널이 단절된 파탄 상태에 처함.
-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는 4차 핵실험-광명성4호 로켓발사 성공으로 핵무기의 다종화와 미국을 사정권에 두는 장거리 투발 능력 과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핵탄 경량화” 발언을 하고,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갖추었다고 표명하는 것으로 보아 미사일에 탑재하는 소형화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북한이 이런 능력을 갖기 전에 비해 한국의 안보가 위기 상황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며,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가 커짐.
-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데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큼. 그런데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아닌 즉자적 강경 대응으로 일관
: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사드 배치 추진, 개성공단 전면중단,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 포함 독자 대북 제재 등 ‘강력하지 않고 강경할 따름’이며, ‘북에 대한 압박을 내세우나 오히려 자해적인’ 일련의 정책 추진. 거기에 ‘북한붕괴 추진’ 속내를 노골화한 대통령, ‘핵무장론’을 제기하는 원내대표 등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폭주.
- 박 대통령이 표방해왔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평화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남북관계와 외교 3대 정책은 대통령과 정부에 의해 스스로 막을 내린 상태. ‘통일대박’을 (여전히) 내세우나 정착 남북관계는 ‘쪽박’ 상황이 되고, 외교·안보 모두 위태로워짐.

◎ 강대국의 ‘관리 대상’으로 전락한 한반도, 국제정치 장기판의 ‘줄’로 전락한 한국

-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 통과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음. 한미는 제재뿐만 아니라 역대 2번째의 미군 병력이 참가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사드 배치 실무협의 약정에 서명한 반면, 북은 핵 선제타격, 핵탄 경량화 운운하며 맞받아치고 있음.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긴장 고조

행동을 하는 모두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고 있음. 한·미·일·중·러의 5자가 북한이 비핵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가 형성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있음.

- 현실을 좀 더 냉정히 보자면, 강대국들은 일단 강력한 제재를 실행하면서도 자국의 이해 침해는 최소화하고 한반도 위기가 비등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합의했다고 할 수 있음.

안보리 결의안 2270호는 미·중이 주도하고 러시아도 동조해 통과됨. 결의안은 전문에서 북한 주민에 ‘부정적 인도적 영향’을 의도한 게 아님을, 49항에서 ‘한반도 평화안정의 중요성’을, 50항에서 ‘6자회담과 9·19공동성명 지지’를 명시하고 있음. 제재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면 석탄·철·철광석 수출은 민생 목적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되어 있음. 즉 민생 목적이라고 중국이 판단하면 수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임.

미국은 사드 배치 실무협약에는 들어갔지만, “협약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지만 배치에 합의한 것은 아니다”(미 태평양사령관)고 말하고 있음. 아마 미국은 중국의 제재 이행에 대해 사드 배치를 지렛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즉, 미·중은 중국에 재량권이 크게 맡겨졌다 할 수 있는 대북 강경 제재에 합의하는 한편, 사드 배치는 일단 유보하는 타협을 행했다고 할 수 있음. 한편 중국은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을 제기하고 미국의 일정한 반응을 이끌어냄. 이로써 첫째, 제재뿐만 아니라 대화가 병행되며 타결을 이룬 이란 핵 해결 모델을 북 핵 해결에 적용시킬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으며, 둘째, 제재결의 이후 대화 추진과 그 대화의 방법 및 주제 등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쥐게 됨.

- 끝장 제재, 즉 북한을 붕괴시킬 정도의 강력한 제재를 추구하는 한편, 안보 위협을 내세워 사드 배치를 추진하던 한국 정부는 대화가 병행되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가능성이 높음. 국제사회에서 중견국가임을 자부하던 한국은 스스로 폭주하다가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다양한 패를 가진 미국의 강경책과 군사적 전위부대로나 쓰이며 협상의 측면에서는 소외되고 많. 12.28 위안부 합의와 그 이후 일본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굴욕적 상황에 이은 외교 참화임. 내외에서 돌고래 정도는 된다면 한국이 고래 싸움에 등터지는 새우 신세로, 국제정치라는 거대한 장기판에서 ‘줄’로 전략함.

⇒ 비판 : 외교·안보의 총체적 위기는 ‘북한붕괴론’에 대한 집착, 정권안보와 대통령 심기경호 추구의 결과

- 한국이 국제정치 장기판의 ‘줄’로 전략하고 있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 우리 외교의 지렛대를 확대하기 위해 필수적인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것임. 그러면, 왜 북한

과 군사적 긴장 상태에 빠지고, 강대국의 개입을 호출하며 그들의 '관리 대상'으로 전락했는가? 북 핵 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냉전적 대결체제를 항구적 평화질서로 전변시키는 가운데 풀어가야 한다는 것은 관련 국가 모두가 동의했던 비전이자 해법임. 그것을 버리고 '선 비핵화-경제 지원'을 내세우며, 속으로는 북한붕괴-흡수통일의 미망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임.

- 현 정부는 '통일대박론'을 내세우며 통일준비위를 설치하는 등 대대적 통일 캠페인을 전개함. 그러나 통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노력은 전개하지 않은 채 통일이 되면 대박이 될 것이라는 말만 하고 있었음. 정부는 '드레스덴 선언' 등을 내세우나, 드레스덴은 독일 흡수통일의 상징지역이었고 북한을 자극하는 대통령 발언으로 반발만 산 바 있음. 아시안게임 당시 북 고위급의 방문 등 몇 차례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도 다 날려버림. 그러더니 대북 적대적 정책의 전면화를 표방하면서도 지금도 '통일대박론'을 고수하는 것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결국 북한붕괴-흡수통일론에 입각한 것임을 스스로 실토했다고 할 수 있음. 과정 없는 결과만의 통일은 대박이 아닌 쪽박일 것임.
- 일련의 악순환은 나의 안보를 강화시키려는 행위가 상대의 반발을 낳아 도리어 안보위기를 심화시키는 '안보딜레마'의 전형적 현상. 상대의 안보를 인정함으로써 나의 안보도 강화시키는 공동안보가 아니라 나만의 절대적 안보를 계속 추구한 결과임.
- 특히 2016년 들어 현 정부의 외교·국방·통일 정책이 전반적으로 크게 요동치고 퇴행적 모습을 보이는 까닭은 첫째, 총선 승리를 위해 북풍을 이용하려는 의도를 국가이익에 우선. 둘째, 국방부장관이 반대한 대북 방송 재개, 통일부장관이 반대한 개성공단 폐쇄, 외교부(장관)의 의견을 듣지 않는 사드 배치 추진 발표 등 대통령의 일방적 독주 때문으로 판단됨. 하지만 누구도 직위를 걸고서 직언을 하지 않음. 정권안보를 위해 국가안보위기를 호도하고,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우선한 유신의 퇴행적 현상 연상됨.

◎ 화해협력정책 위기의 한 축, 무능한 야당

- 박 대통령은 2월 16일 국회연설에서 마치 화해협력정책이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의 원인이 된 것처럼 호도하며,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합리화하고, '북한 붕괴' 등을 거론하며, 대북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이야기 함. 이는 비단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만이 아니라, 노태우 정부의 7.7선언 이후 대한민국이 표방해왔던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화해협력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작금의 위기가 더 심각한 것은 정부여당의 무능과 그릇된 정책에 대한 비판 및 대안의 정책에 대한 사회적 열망과 합의를 크게 만들어내고 있지 못한 점. 이것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의 무

능과 혼선에 크게 기인함. 그들은 정부여당의 정책의 문제점 및 그 근거에 있는 그릇된 기초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합리적 대안을 설득력 있게 열심히 제시하지 못해옴. 심지어 그들은 당의 공식 입장으로는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아래의 사례에서 보듯,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체제 궤멸’, ‘정부 강경기조 불가피’, ‘햇볕정책 따른 지원이 북한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사용’ 등 정부여당의 논리와 정책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는 등 혼선을 빚음. 그들의 무능과 혼선이 어디에 연유하는 것인지, 대안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 발본적인 모색과 실천 필요.

• 더불어민주당

: 김종인 대표, 2월 9일 “언젠가 북한 체제가 궤멸하고 통일의 날이 올 것을 확신한다.” 이수혁 한반도경제통일위원장, 2월 17일 YTN 인터뷰에서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를 “비난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했으니까 직접 피해 당사국인 한국이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필연적이다.” 등

• 국민의당

: 이성출 안보위원장, 2월 14일 “햇볕정책에 따른 지원이 일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 지원을 포함한 군사력 증강에 사용됐다는 부분에 대해 유감.”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 2월 17일 “김대중·노무현의 햇볕정책은 실패했다. 당은 대북정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 등

- 여론의 우경화에 반응?

“한국갤럽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55%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광명성 4호 발사에 따른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잘못한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3%다. 또 국민 55%는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면 '모든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대북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35%다.”

* 출처: MBN뉴스, “정부 개성공단 가동중단 ‘잘한 일 55% > 잘못된 일 33%,” 2016.2.19일자.

- 진보개혁진영 원로·학계 및 언론의 우려와 비판

- 백낙청·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2월 18일 “평화·통일의 시대적 사명을 통감하지 못하는 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성명 발표. 한겨레 등 언론은 “야당의 존재 의의 없어진 ‘안보 우클릭’”이라

는 사설과 기사를 내기도 함.

- “여론의 대북 강경책에 대한 지지는 정부여당의 무능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야당의 무능에 기인”(폴리뉴스, “김연철 교수 인터뷰”, 2016.2.26)

⇒ 비판 : ‘남북관계는 전향적으로, 안보는 보수적으로’ 접근법은 성립 불가능

-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모두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비판하지만, 대중의 안보불안 심리에 편승해 ‘안보는 보수적으로’라는 기치를 들고 있음. 한편으로는 호남여론을 의식해 햇볕 정책 계승의 공식 입장을 표방하고 이것에서 벗어난 상대당의 발언에 대해 공격함. 그러면서도 내부에서 대북 강경론이 빠져나오며 파열음 발생시키고 있음. 정부여당 대북정책의 문제점, 안보무능 등을 제대로 비판하고 진화된 화해협력정책의 제시를 통해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는커녕, 혼선이나 보이는 이런 현상은 최근에 두드러지지만 사실 지난 몇 년간 지속적인 것이었음.
- 주요 야당의, 남북 경협과 안보를 분리하는 이런 접근법과 혼선은 ‘경제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그것이 발전되면 평화와 안보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기능주의적 접근법이 이제는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 기인한다고 판단됨. ‘경협은 필요하지만, 경협을 해도 북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지는 못하지 않았는가?’, ‘경협을 한다고 해서 현재의 북이 과연 비핵화에 나설까?’,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우리도 군비를 강화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것이 우클릭을 하는 사람들의 속내라고 할 수 있음.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코뮤니케의 선순환이 결과를 맺지 못하고 좌절된 이후, 남북 경협이 북미 적대관계 청산과 북의 체제 보위에 대한 불안감 해소책이 되거나 남북한 군축과 평화의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임. 참여정부 시절 북의 1차 핵실험, 남한의 첨단전력 증강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반발 등.
- 그러나 햇볕정책이 비핵화와 평화의 구조화로 나아가지 못한 한계가 있었으나, ‘햇볕정책으로 북이 핵-미사일을 개발할 시간적 여유와 자금을 확보했기에 이제 그것을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논리는 말도 안 됨. 야권이 그런 논리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경협과 평화(안보)의 관계 등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와 현 상황에 부합하는 진화된 화해협력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됨.
- 특히 ‘안보는 보수적으로’라는 논리와 정책은 안보란 무엇이고,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라는 올바른 관점이 전제되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과 부작용을 초래. 대북 압박과 억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 사드 배치 및 대대적 군비증강 정책에 대해 대중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만들고, 다시 이런 여론에 편승하기 쉬움. 또 이런 정책들에 대한 북의 반발과 대응을 낳아 북은 지금의 ‘핵 능력 증강 정책에 대한 합리화’를 고수하며, 비핵화에 대해서도 부정적 접근이 공고화될 가능성.

- 두 야당,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권력을 잡는 게 중요하고, 승패는 경제에서 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단지 현재 권력을 잡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님.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했을 때 권력도 잡을 수 있는 것임. 그들은 안보 영역은 정부의 자율성이 커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변명을 하기도 함. 그러나 현재처럼 집권세력이 강 대 강 대결을 거의 의도적으로 조장하며 북풍을 활용하고 있고 중도층 등이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안보 영역을 포기하다시피 할 때 국민으로부터 정권을 맡길 만한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움.

II. 「중견·평화·가교 국가」의 비전과 기조

1. 「평화·상생의 한반도와 동아시아」 실현을 위한 국가 비전, 「중견·평화·가교 국가」

- ◎ 적대적 대립과 상호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 위기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를 되살려 가능한 한 조기에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달성. 그리고 요동치는 동아시아 질서와 국제정세 속에서 흔들리는 평화를 정착시키고 공동번영을 추구. 이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비전으로서 ‘중견·평화·가교 국가’ 대한민국을 제시함.
- 중견국가 : 한반도 정세 주도, 주변 강대국들이 지정학적 대립에서 벗어나 지정학적 이익의 조화를 꾀하도록 선도, 세계적 차원 불평등 해소 및 비핵화-군축에 기여
- 평화국가 :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동아시아에 평화공존의 새역사를 만드는 다자안보 협력 선도,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인간안보 구현
- 가교국가 :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통상과 교통의 중심, 다양한 문명과 가치가 교류하고 융합의 꽃을 피우는 가교, 북한을 미국 등 국제사회와 연결하는 가교 역할 수행

2. 「중견·평화·가교 국가」 실현을 위한 외교·통일 정책의 기조

◎ 평화공존과 ‘접근을 통한 변화’의 원칙 견지

- 급격한 현상 변경 추진이 아닌 평화공존은 평화적 통일을 규정한 헌법 4조의 정신에 입각한 것이고 남북한 주요 합의의 근간.

- 압박이 아닌 접근을 통한 상호의 긍정적 변화와 신뢰 증가를 통한 점진적 통일의 원칙 견지.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달성을 위한 대타협, 포괄적 해법의 담대한 실천

- 북한의 핵과 긴장 고조 행동 불용 : 핵무기는 단지 북이 보유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님.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는 반드시 완전 폐기되어야 함. 체제안보 혹은 국가안보의 명목으로 자행되는 긴장 고조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 비판함.

- 그런데, 북 핵 문제의 연원은 동북아의 냉전체제, 한반도의 전쟁과 정전체제에 있음. 그러므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북-미와 북-일의 적대적 관계를 일반적인 국가관계로 정상화해야 함. 또한 동아시아에서 미·일과 중·러의 대결체제를 예방하고 평화·상생 공동체의 초석을 형성해야 함. 남북이 해양세력 대 대륙세력 대결의 전위에 설 것이 아니라, 태평양과 유라시아대륙의 가교로서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함.

- 비핵화 6자회담-평화협정 4자회담-북미수교 2자회담-남북관계 정상화 남북회담 등 한반도 비핵화 및 대결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한 대타협,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정책을 실천할 필요.

◎ 안보와 경제의 선순환에 입각한, 햇볕정책의 발전적 계승

- 경제로 안보를 살 수는 없음. 남북 경협과 남북관계 개선은 꼭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북의 핵정책을 변화시킬 수는 없음. 또한 '정냉경열'의 미중관계·중일관계와 '동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에서 보듯 경제에서 안보로의 기능주의적 접근법은 한계에 봉착.

- 그러나 IMF체제와 '헬조선'으로 통칭되는 삶의 위기가 보여주듯 경제가 빠진 '안보' 역시 한계가 있거나 무의미. 경제적 안전(및 풍요)까지 포함된 '포괄안보'의 접근법 필요. 포괄안보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자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 수호 및 창출을 위한 능동적 접근법 역시 필요.

- 비핵화와 평화협정 및 북미수교 등 안보와 안보의 교환 +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경협("경제협력은 (박 대통령)이 규정했듯이 안보를 구걸하기 위한) '퍼주기'가 아닌 경제적 실익의 교환과 더 큰 이익의 창출"이라는 논리를 확산할 필요)

- '군사안보에서 포괄안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권에 따라 경제협력이 흔들리지 않는 '정경분리' 원칙을 지켜야 함. 그리고 평화와 경협의 엄격한 1:1 기계적 연계가 아닌 '평화-경제의 선순환적 병행'의 원칙을 견지해야 함. 이것이 남북 경협 등 교류협력의 일관된 전개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고 했

던 햇볕정책의 발전적 계승이라고 할 수 있음.

◎ ‘공동안보’, ‘조화(균형)외교’

- ‘나만의 (절대)안보’를 위한 대대적 군비증강과 핵개발, 한미동맹 유지·강화를 위한 동맹의 성격 변환 및 한미일 3각동맹화 수용. 남북 상호간의 안보딜레마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의 반발을 초래해 외교는 물론 안보와 경제도 위태롭게 함. 상대의 안보도 인정하고 우리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의 안보를 신장시키는 ‘공동안보’로 관점의 전환 필요.

- 냉전시대 안보를 위한 대미 편중외교에서 벗어나 탈냉전시대 혹은 미중 양강 시대 미(일)-중(러) 사이 조화(균형)외교 필요. 대륙세력에 대항하는 해양세력의 전초기지가 아니라 ‘공동안보’에 입각한 다자안보 협력, ‘지정학적 대립 대신 지정학적 이익 창출과 번영의 공유’를 선도하고,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의 가교’를 자부하는 ‘중견·평화·가교 국가’의 외교 전개해야.

- 명실상부한 중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와 그에 입각한 자주적 국방정책과 전략 수행능력을 갖추야 함.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동물복지를 통한 생명존중 사회실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동물문제는 우리사회를 들쭉이는 빅 이슈가 되었습니다. 충격적 동물학대 사건들이 SNS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구제역과 AI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무차별적으로 실시한 살처분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노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문제를 성찰하고 이제 구체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2월 2일 국내 정당 사상 최초로 예비내각을 출범시킴과 동시에 동물복지부를 신설했습니다. 동물복지를 국가차원의 문제로 끌어올리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동물복지를 통한 생명존중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약을 제시합니다.

첫째,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동물은 생명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물은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고, 형법상 재물에 해당됩니다. 이 때문에 누군가 타인의 동물에 해를 가한 경우 그는 재물손괴죄의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1988년 오스트리아와 1990년 독일, 2002년 스위스는 민법을 개정해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물건만으로 구분하던 이분법 체계에서 권리의 주체인 사람과 권리의 객체인 물건, 그리고 생명이 있는 동물이라는 삼분법 체계로 전환한 것입니다.

둘째, 동물복지법을 법제화하고 관련 법률에 동물보호 및 복지적 가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을 전면개정해 인간의 책임을 바탕으로 동물복지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은 기본법이 아니라 일반법이라 타법에 대한 규율이 약하며, 동물복지에 대한 고려도 부족합니다. 또한 구체적이지 못하고 실효성도 약해 규율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물보호법을 생명존중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해 그 위상을 격상시키겠습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과 같은 다른 동물관련 법안들도 생명존중의 원칙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보호의 사각지대도 해소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보호의 대상에 동물원 동물과 길고양이, 그리고 투견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하고 나아가 개체조절과 유해동물이라는 이유로 잔인하게 사살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및 동물복지의 원칙을 마련하겠습니다.

동물복지주관을 신설해 국민의 생명존중의식을 함양하고,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생명존중과 동물윤리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동물보호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전담부서는 방역정책과에서 소수의 인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등을 모두 관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입니다. 또한 현재 동물이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방서가 아닌 일선 지자체가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현재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6.9%에 불과하고, 지자체별로 부서도 다르고 홍보도 부족해 시민들이 위기에 처한 동물을 발견하면 어디에 구조요청을 하고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체계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국을 설치하고 동물구조 핫라인을 설치하겠습니다. 정부직영 중앙동물보호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동물과 공존하는 생명존중의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고 야외활동이 가능한 제3의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화공원, 수변공원 등 일정규모 이상 공원에 우리 동네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일주일 중 하루는 ‘육류 없는 채식 식단’을 제공해 채식하는 이들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학교급식에 우유와 두유 선택권도 보장하겠습니다. 감금사육(공장식축산) 방식을 지양·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10개년 전환계획(축산농가 지원대책 중심) 수립하고 시행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독일의 한 철학자는 현대문명을 소외의 역사라고 명명한 바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소외시켰고, 다음으로 타인을 소외시켰는데, 그러다보니 자기마저 소외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은 소외를 극복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동물복지법 제정을 통해 20대 국회를 동물복지를 실현하는 국회로 만들고 다양한 생존이 공존하는 생명존중의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2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의당 예비내각 동물복지부

MBC녹취록 청문회 실시, 해직언론인 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언론공공성 강화와 개혁을 위한 10대 과제〉로
언론공공성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요즘 TV를 틀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민생이 바닥을 향해 질주하고, 살려달라는 외침이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지만, 우리의 TV에선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앞으로 4년간 나라의 입법을 책임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한창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TV속 풍경은 어떻습니까? 지상파를 장악한 막장드라마와 그것을 방불케 하는 보수정당들의 공천싸움, 그리고 언론이 확대재생산하는 북한의 위협만이 있습니다. 보수종편과 공영방송, 보도전문채널들이 국민들의 정치협오를 부추기고, 여당 그것도 꼭 찍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실정입니다. 이미 혼탁한 선거구도에, 앞장서서 흠을 뿌리고 있는 게 오늘날 언론의 현실입니다.

언론계의 자정능력에 기대기에는 이미 미디어 생태계의 구조가 심각하게 망가졌습니다. 기존의 정치세력들은 언론장악을 정권교체의 전리품처럼 여기는가 하면, 선거철 마다 언론 눈치를 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권력과 재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지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2015년 9월 정의당은 언론개혁기획단을 설치하고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언론개혁을 정당의 이슈로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언론이 외면하면 타격이 큰 소수진보정당의 입장에선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한 언론절벽 앞에서 국민과 민생을 위하는 진보정치를 실현하는 것은, 언론개혁 없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은 공동체의 여론조성과 토론을

위한 공적책임이 있으며, 그것이 작동하지 않으면 사회는 불통과 고립으로 향하게 된다는 문제에도 주목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언론공공성 강화와 개혁을 위한 10대 과제]는 그간 언론운동과 시민사회 진영에서, 또 언론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도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직된 언론인들의 복직을 돕고 재발을 방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MBC녹취록 파문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가릴 청문회를 20대 국회에서 열겠습니다. 정권의 낙하산 인사와 자본의 입김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지상파와 국가의 지원을 받는 방송/통신사들의 구조적 독립성을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상파에 불공정하게 작동하는 규제들을 완화하는 한편, 특혜를 받고 있는 종편의 재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의무전송을 폐지하겠습니다.

시청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정부기관의 일방적인 행정 규제가 아니라 시청자들의 자율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시청자위원회 설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민간독립기구화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방송의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과 관련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신문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도록 신문에 대한 지원방안을 현실화하고 특히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역신문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콘텐츠 산업에 뿌리 깊은 병폐인 비정규직 남용과 노동인권침해를 뿌리 뽑기 위하여 방송콘텐츠산업 노사정협의체를 구축하고 표준계약서와 표준보수지침을 만들어 적용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또 제작비 최소쿼터제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방송콘텐츠 사업장에서도 성희롱예방교육과 출산육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식의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출판산업을 진흥하고, 출판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융합의 시대에 걸맞지 않는 입법상의 공백을 통해 방송을 지배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이 공적의무를 담보할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노동권과 공정경쟁부문에서의 공적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이나 방통위와 방통심의위의 행정적인 결정만으로 검열이 강화되고 있는 인터넷 공간의 공론장을 다시 열겠습니다.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정상화하고, 언론중재위와 방통심의위 등의 개입을

철폐하며, 소수 인터넷 독립 언론들에 대한 폭거인 "신문법 개정안 시행령"에 맞서 활성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언론의 유사언론행위와 광고의존성의 근원이 되는 불투명한 영업 및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거래투명성과 정당한 단가책정 솔루션을 제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을 위해서는 공정한 언론과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가 필수적입니다. 권력과 자본이 무서워하는 언론,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언론들이 더 많아지도록 새 틀을 만들겠습니다.

2016년 3월 2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의당 예비내각 언론개혁부

‘초고속인터넷의 보편 서비스화, 테러방지법 폐기 및 정보통신인권법 제정’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는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의당 ICT 공약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얼마 전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벌였던 대결에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비록 바둑이라는 종목에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인공지능의 발전 수준이 전문가들도 놀랄 정도로 진척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첫 대결이 시작된 이후 누리꾼들이 정부에서 한국형 알파고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할 것이라는 예언을 내놓은 것 입니다. 그리고 대결이 끝나자 정부는 6개의 기업들과 함께 5년간 3.5조원을 투입하여 한국형 알파고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아니나 다를까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일화는 한국 ICT산업이 처해있는 위기의 제도적 본질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문성이나 중요도에 대한 고려가없이 이벤트성 산업정책을 남발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ICT관련 정책에 대한 현업종사자들의 신뢰는 매우 낮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이벤트성 정책으로는 위기를 겪고 있는 경쟁력을 살리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근혜 정권은 오히려 ICT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정책들을 많이 펴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수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이루어진 웹상의 검열과 감청의 강화입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습니다. 국정원은 수 년 동안 인터넷과 IT디바이스를 감

청할 권한을 얻어내려 했고, 테러방지법을 통해 마침내 결실을 얻었습니다. 방통위는 웹상의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조치를 계속해서 시행해왔습니다.

이는 헌법상의 권리인 통신비밀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임과 동시에, 보안에 치명적인 결함을 끌어안고 기술을 개발해야하는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카카오톡과 안드로이드 탈출 러시아에서 보듯, 언제 감청과 검열의 대상이 될지 모르는 국산 기술과 기기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경쟁력의 약화도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정의당은 이벤트성 투자와 허황된 목표가 아닌 기본적인 영역들에서의 틀을 잡는 ICT공약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서비스로 지정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방송통신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 테러방지법을 폐지하고, 정보통신인권법을 만들어 통신비밀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지키겠습니다. 자본의 논리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망중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오픈소스 육성책을 정비하여 국내 중소기업과 개인 개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자원이 배분되도록 하고, 웹표준의 도입을 강화하여 이용 및 개발에 있어서의 편리함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과 임금체불, 살인적인 노동 강도 등으로 유명한 ICT업계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ICT노동인권센터를 설립해 ICT노동문제의 컨트롤 타워로 만들겠습니다. 또 국내 업체들이 세제에 있어서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국제적인 ICT사업자들에게 정당한 과세기준을 적용하는 일명 ‘구글세’를 도입하겠습니다.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는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의당의 ICT정책에,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3월 2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의당 예비내각 언론개혁부



19대 국회 의정활동 보고

- 19대 국회 의안 발의 현황
- 19대 국회 주요 의정활동

1

19대 국회 의안 발의 현황

● 노동

의안 번호	의안명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처리 현황
190046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상 지위 보장과 기간제 고용의 사용사유 제한, 직접고용 정규직 고용의 원칙 재확인, 차별 시정신청권의 확대, 임금 등 차별적 요소를 제거	계류
19004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상시적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의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정리해고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 해고 노동자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규정, 우선 재 고용 원칙 명시, 사영양도와 근로관계를 명문화.	계류
19054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포괄임금계약 금지. 휴식시간 보장 법제화. 청소년 근로 주5일제 적용	계류
19096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이하의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조항들을 만18세 이상의 현장실습생들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	계류
190630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산업체 현장실습제도’ 관련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기준 등 현장 실습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하고, 현장실습을 유형별로 분류하 여 체계적으로 운영	처리
190530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통상임금의 기준 과 범위에 대한 논란 해소	계류
190047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투표에 의해 공정하게 공익위원 선정, 최저임금위반 사업주에 대 한 처벌 강화, 청소년 단시간 농농자에 대한 최저임금고지의무 위반시 사업주에 과태료 부과	계류
191465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 5% 이상으로 하고, 300명 이 상의 민간기업에까지 확대하며, 청년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에 게 고용부담금을 부과	계류
190046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3인)	신규실업자(청년실업자)에 대해 구직촉진수당제도 도입	계류
190779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결의안(정진후의원)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명령에 대한 즉각적 인 취소와 정부 및 교육부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	계류
190733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 보장’과 ‘사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자격 인정’을 법제화	계류
190046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노조법상 노조가입·설립의 제한, 이를 이유로 한 노동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등을 개선,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등과 관 련된 조항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되도록 함.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폐지, 산별교섭 법적 보장	계류
1900471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명도 변경	계류
19119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원석의원)	2014년 말에 일몰되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 제의 일몰기한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인상에 대한 세액공제와 초과이익공유제를 실시하는 내국법 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	처리

● 중소기업

의안 번호	의안명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처리 현황
191694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대규모 점포등의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해당 대규모 점포등의 개설이 주변 소상공인의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계류
190961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등 10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상한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	계류
190786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등 10인)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보완 요청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주민공고·공람 및 설명회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계류
190640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등 10인)	상품공급점을 대형유통기업이 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상품발주 및 대금결제, 판매방법, 매장운영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지도를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로 정의하고 현행법상 준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 영업시간 제한 등의 법적 규제를 받도록 함	계류
191694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이 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모 등의 요건을 삭제.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단체가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강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대상을 확대하되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이상의 수수료율을 적용	계류
190177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가맹점수수료 산정심의위원회를 설치,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 단체 외의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 의무화	계류
190640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상품공급점을 대기업이 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상품발주 및 대금결제, 판매방법, 매장운영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지도를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로 정의하고 현행법상 사업조정 신청의 대상에 포함시킴	계류
19096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려워지지 않는 경우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중소기업청장에게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대기업 등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것을 제한하며, 위반 시 사업조정을 규정	계류
190498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등 13인)	사업조정에 따른 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	계류
190565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금지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대상에 가맹계약을 불이행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액에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행위를 신설	계류
1905090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심상정의원)	대리점 거래 정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마련	처리
1904985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심상정의원)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마련	처리
190996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현행법상의 불공정한 임대차관계 개선함. 현행 최우선 변제범위 결정요인의 개정을 통해 그 대상범위를 확대함.	처리
190213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상가건물의 임대차 적용범위를 사행행위영업과 같이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확대.	계류
191670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소득액이 일정 수준 미만인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처리
1911214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현행법 중 소기업에 관한 내용을 삭제. 소상공인 창업, 경영안정, 공동사업 등의 지원과 소상공인 사업영역의 선정·공표와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의 설치 등의 내용을 신설.	처리

191121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경영안정 지원, 공장설립 특례, 창업지원 특례 등 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문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반영	처리
19112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관련 조문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반영	처리

● 중소기업/재벌개혁

의안 번호	의안명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처리 현황
191198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의원)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위탁기업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함께 나누는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	계류
190279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현행법에 이익공유제의 개념을 규정하고 추진본부 설치, 공공기관의 입찰자격제한,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지원 등 이익공유제 관련한 시책을 정부가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	계류
190177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4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하여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계류
190177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4인)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에 대한 규제를 강화.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의 실질적 환수를 위하여 과징금 상한을 상향 조정. 3배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순환출자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재도입.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압수·수색 권한을 부여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일부를 폐지하는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및 공정거래 실현을 위한 규제제도를 보완	계류
190177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4인)	하도급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게 하고 수급사업자 등에게도 고발권을 부여.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	처리
191618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개방형 혁신 모델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발 모델을 보장.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특허권이 부여되더라도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	처리
1916184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한도를 구분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런 부분이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의결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함	계류
190633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진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을 촉진하고 이들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고급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정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	처리
190676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의원)	이사 및 감사 등 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등을 도입	계류
19068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의원)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여 지배회사의 주주가 피지배회사의 이사들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보유 비율에 상관없이 모든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계류

● 서민금융/민생

의안 번호	의안명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처리 현황
19148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통신요금 산정 시 기본요금은 제외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전기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	계류
190344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 제출 등 대부업 등록요건으로 강화	처리
190325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추심 전문업을 대부업의 정의에서 삭제. 여신금융기관에도 과잉대 부 금지의무를 부과.	계류
190192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금융이용자의 공박 내지 무경험을 악용한 악탈적 대출을 규제. 대 부업체, 미등록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기관에게 적용되는 현행 법 령상의 최고 이자율을 적정수준으로 규제. 불법 고금리 양산을 실 질적으로 규제.	처리
190192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특별사과역사도 소속 공무원이 대부업자 및 대부업체에 대해 현 장조사를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조사 및 검사하여 불법 사금융 피해, 불법 고금리 피해, 불법채권추심 등의 불법행위로부터 금융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경찰권을 부여	처리
190160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의원)	파산절차에서도 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 를 보호, 회생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주거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개선. 채무자의 사업소 등 소재지와 근무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개인회생을 신 청할 수 있도록 개선, 무담보채무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원칙적으 로 3년으로 단축.	계류
1901604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 의원)	아무런 대가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의 경우에 보증의 최고한 도를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계류
190365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소비자 권리를 강화. 선불식 할부계약업 체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유도. 당국의 규제범위를 확대.	처리
190353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보험 사업자 등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여 작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를 신속히 규제	계류
19055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의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로부터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부당공동행위 근절 및 소비자보호기금'을 조성하여 사업자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피 해를 입은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계류
19055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원석의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로부터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부당공동행위 근절 및 소비자보호기금'을 조성. 사업자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피해 를 입은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비용을 지원.	계류
190188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의원)	사업자가 부당하게 국내와 국외의 상품 가격 등을 다르게 결정·유 지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	계류

● 여성

의안 번호	의안명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처리 현황
1905532	스토킹 방지법안(김제남의원)	일정한 행위를 스톱킹으로 규정하여 형사처벌함과 동시에, 스톱킹 사건에 대한 응급조치, 신변안전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의 근거를 규정.	계류
191038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우리 사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을 통해 범죄 피해자의 신상 노출로 인해 발행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함.	처리
19096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요청시 근무 장소 변경 등 사업주의 책무 강화	계류
190534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성매매피해자 등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실질적인 독립이 가능하도록 지원시설에 최대 입소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처리
1903897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성희롱 예방교육 기관장 미참석 등 부실한 성희롱 예방조치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 정기적인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를 법률에 명시	처리
19056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록 시 최근 5년간 받은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선거공보에 기재	계류
190565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등 10인)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등의 첨부 서류에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증명에 관한 사항을 추가	계류
190565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공직자윤리의 범주를 양성평등 및 준법외식 확립에 기반한 올바른 행위규범의 준수로 확대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재산 등록 및 변동신고를 할 때 성희롱예방교육 이수증명서와 범죄경력 조회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함	계류
190998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승급 휴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금지	계류
19099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	계류
191648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하고, 남성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함	처리
191159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사용자에게 산전·산후의 여성이 임신한 기간과 출산 또는 유산·사산 후 18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게 하고, 임신기간 또는 출산전 후휴가 등의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이 끝나는 경우 출산 후 90일 또는 120일이 되는 날까지 근로계약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이 연장되도록 규정	계류
191106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항을 규정	계류
191040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인원, 근속 기간 및 임금을 포함하는 성별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	계류
190869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은 지침에 따라 여성임원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수립·이행하고 이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작성·공표하도록 하는 등 여성임원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 개선	계류
1904915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여성정책조정회의를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정례화·활성화 함.	처리

● 장애인

의안 번호	의안명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처리 현황
190241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통합교육에서 청각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을 위하여 양질의 전문수 화통역사 확보와 문자통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함	계류
90048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의원)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	처리
190694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의원)	장애인용 경사로 등 편의시설에 대하여 도로 점용료를 면제함으로 써 경사로 설치 시 도로 점용허가를 받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장애 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함	처리
1908058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 (정진후의원)	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의 공식언어임을 밝히고, 수화언어 의 발전과 교육보급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	처리
190214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의원)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함.	처리
19182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의원)	점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시각장애인의 공식문자인 점자로 책자 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전자적 표시는 점자의 대체 수단이 아닌 점자 미해독자들을 위한 보완적 수단으 로 함	계류

● 인권

의안 번호	의안명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처리 현황
1912764	군인권기본법안(심상정의의원)	군인인 기본적인 권리의 법적 관계를 구축	처리
190935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임의번호 체 계로 개편. 필요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함	계류
191469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 기호의원)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 니한 사람을 제외함.	계류
191469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 의원)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지정, 평가대행자 등 록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함.	계류
1914698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도선사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 외함.	계류

● 교육·교육비용

의안 번호	의안명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처리 현황
190667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누리과정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납입금을 표준유아교육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방과후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납입금의 인상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	처리
19024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무상 지원의 범위를 기존의 수업료 외에 입학금과 학교급식비 등으로 확대 지원.	계류
190667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대학 입학금을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고액의 등록금 분할납부 허용. 수업연한 초과 등록 학생에 대해 학점 수에 비례하여 등록금 산정. 기숙사 수용률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고등교육법에 명시.	계류
190035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등록금기준액을 책정하여 대학이 등록금기준액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있는 교원산출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연차별로 교원확보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교원확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계류
190034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연구·강학시설 개보수 목적의 적립금 외에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의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적립금으로 인한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요인을 제거	계류
190667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무상지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학금제정의 재정상황, 학생의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연령 등을 감안하여 대상 학생을 선발하되 성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	계류

● 교육·인권/안전

의안 번호	의안명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처리 현황
191396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유아에 대한 체벌 금지, 유아의 학생인권 보장	계류
19073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육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에 맞추어 이원화되어 있는 재심청구기관을 같은 법률안에 따른 사·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	계류
190420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조치사항의 기재 기준 및 그 방법과 운영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에 대한 지도가 교육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함	계류

191122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학교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으로 수립하여 추진. 학교시설 안전점검 등의 결과를 공개. 안전교육을 강화. 학교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학교시설의 시설보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교재·교구의 개발과 전담인력 배치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	처리
191058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한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해당 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의무로 부여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뿐 아니라 관계 기관의 지원 책무까지 명확하게 규정. 또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 의무적인 실시횟수를 명시	처리
191058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안팎에서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수련활동 등 학교 밖에서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	처리
190614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교육공무원이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처리
1911479	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 중단 및 종합적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박원석의원)	용산 화상경마장의 즉각적 영업중단과 도박 산업 규제의 실질적 대책 수립을 촉구	계류
191801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의원)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에 포함	계류
190680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의원)	개발제한구역에 증축된 불법건축물인 학교시설 양성화	계류

● 교육 학교운영/교육행정

의안 번호	의안명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처리 현황
190034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본연의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교육과정의 파행 및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자 평가방식을 표집의 형태로 전환	계류
190535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특성화중학교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 특성화중학교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학교의 범위를 제한	계류
190630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학교법인의 이사장,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등이 개방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제한.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제재.	계류

191125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등 10인)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강화. 임원의 선임에 대한 관할청의 승인을 보다 엄격히 하도록 하고,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임원승인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	계류
190575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사립학교 임원취임 승인취소의 요건을 추가하고, 회계 담당 직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요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	계류
190034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금을 지원 받으면서 법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당해 학교경영기관에 대해서 교부금 지원을 제한토록 하여 사립학교의 운영자의 책무성을 강화	계류
190035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금을 지원 받으면서 법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당해 학교경영기관에 대해서 교부금 지원을 제한토록 하여 사립학교의 운영자의 책무성을 강화	계류
1907309	학교교육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안 (정진후의원)	교육분쟁을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기관, 시도 및 학교에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분쟁의 조정절차 등을 마련	계류
191284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서울대학교 교원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및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	계류
1909369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 평의위원회의 구성원에 학생을 포함하고 평의위원회 및 재경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규정.	계류
1918052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국립대학의 장이 지급할 수 있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립대학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보장	계류
1911209	국립대학법인(정진후의원)	국립대학법을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고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임	처리
1915474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학술활동 지원비 사후관리 및 사업수행 과정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처리
190576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시·도 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등 투명하고 민주적인 인사위원회를 운영	계류
190575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계류
190420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교장 또는 원장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초빙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종래 자율학교에 국한하여 운용되어 온 공모제의 적용대상 학교를 확대함	계류
190574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전국 단위 교원 노동조합에게도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비상임이사 추천권한을 부여	계류
1905747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교원의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교원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제청될 수 있도록 허용	계류

● 교육·교육재정

의안 번호	의안명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처리 현황
19073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따른 교육적 차별대우 금지	계류
19110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시·도교육감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거나 시·도교육위원회가 이를 감액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하는 규정을 삭제	계류
191059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전입금의 전출시기 및 규모를 법률에 직접 규정,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그 기본원칙을 규정	계류
191059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균형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여 운영하도록 규정	계류
191058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균형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함	처리
19024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특별교부금 재정 비율을 축소하고 보통교부금 비율을 높임. 재해대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경우 사용잔액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계류
1900345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정진후의원)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고등교육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	계류

● 주거

의안 번호	의안명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처리 현황
190698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의원)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 차임 등의 증액 범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보호를 강화.	계류
1914610	공정임대료법안(박원석의원)	임대인에게 차임이나 보증금의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임대차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임대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임대료 등을 고려한 공정한 임대료를 산정·공시하며, 이 임대료를 초과하는 차임이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공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함.	계류
1901601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박원석의원)	만기 일시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의 장기대출로 변경을 유도.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과잉대출을 금지.	계류
19015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주민의 신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조합 등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계류

● 보건의료

의안 번호	의안명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처리 현황
191824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범위를 근로소득 이외에 양도·상속·증여소득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	계류
190240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원석의원)	현행법의 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관련 조항 중 외국인을 위한 의료기관은 지정하되 영리병원 제도 관련 조항은 삭제.	계류
191121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국립대학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현행법에 명시, 대학병원의 영리 추구 금지	계류
191120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서울대학교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영리 추구 금지	계류
190239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의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병원에 대해서 국내 의료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영리병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함. 국내 의료기관을 외국인진료소 또는 외국인전용의료센터로 지정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도록 함.	계류
1900850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안 (박원석의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함.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계류
190975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의원)	국가와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를 강화	계류

● 복지

의안 번호	의안명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처리 현황
190044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원석의원 등 16인)	국가는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 이상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계류
1909717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의원)	2014년 7월부터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계류
1900447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박원석의원)	19대 국회에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초노령연금액을 인상하고,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에 대해 논의하여 이와 관련된 「기초노령연금법」, 「국민연금법」 등을 심사처리하고자 함.	계류
1900444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원석의원)	기초노령연금액을 매년 일정 수준의 비율로 인상하도록 명시. 현행 2028년까지 달성하려는 연금액 인상 수준을 2017년까지 앞당겨 달성. 기초노령연금의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2017년 이후 연금액의 추가 인상 여부 등은 국회에서 설치·운영하는 연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함.	계류

191147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원석의원)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을 실제소득에서 제외. 사회복지전문공무원이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함. 현행법과 기초연금 제도 간의 적합성과 입법목적충실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게 함.	처리
1905693	사회복지세법안(박원석의원)	「사회복지세법」을 제정하여 복지사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조달하여 양극화 해소와 보편적 복지확대에 기여. 특히 그 재원을 지자체에 교부함으로써 지방재정 안정도 도모.	계류
190568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원석의원)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세 세원을 지자체의 복지재원으로 교부하여 지방재정 안정과 복지사업 확대를 도모.	계류

● 재난안전 (세월호)

의안 번호	의안명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처리 현황
1910842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및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정진후의원)	세월호 참사의 작간접적인 원인 및 책임소재의 명확한 규명을 통해, 책임자의 응분의 만·형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희생자 및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계류
1910614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진후의원)	세월호 침몰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유가족 및 피해지역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피해자, 유가족 및 피해지역 주민의 재기와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	계류
1915796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 (정진후의원)	대한민국 정부가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국정운영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도록 촉구	계류
191102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교육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은 경우 순직 처리 (세월호 사건과 연계)	처리
191100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선장뿐만 아니라 해원도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을 신설. 이를 위반하여 사람이 사망하면 무기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벌칙을 강화.	처리
1911007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의원)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 등이 과승 혹은 과적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함.	처리
191100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의 선령요건을 23년 이하로 제한하고, 여객선등에 화물을 선적하려는 화주는 화물의 중량이 기재된 화물선적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해상에서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규제를 강화함.	처리
191159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한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	계류
190372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소방공무원의 희생에 대해 그 예우를 다 하려는 것임.	계류
190371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3인)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기준을 군인, 경찰관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함.	처리
190372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소방지원활동 및 교육훈련중 순직한 소방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위험직무관련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도록 함.	처리

● 식품안전

의안 번호	의안명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처리 현황
1900334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중단 및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재협상 촉구 결의안(박원석의원)	미국산 소의 소해면상뇌증 발병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 및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므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중단 및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수준 또는 주변국의 수입위생조건 수준으로 재협상할 것을 정부에 촉구	계류
1906674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식품 관리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김제남의원)	헌법에 규정된 국민 건강권·행복권을 수호하고,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함과 동시에 방사능으로부터 분명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	계류

● 산업안전

의안 번호	의안명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처리 현황
1905659	산업안전보건법제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심상정의원)	산재안전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함	계류
19059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근로자 및 인근주민에게 공정안전보고서 열람권을 부여	계류
190600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에 대해 관리기관은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계류
1905396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등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심상정의원)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의한 예상치 못한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계류
190444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심상정의원)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평가, 화학물질을 유독물, 허가물질, 제한물질·금지물질 등 지정	처리
1904252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심상정의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와 기업이 가습기 살균제 재난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와 기업의 무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재난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	처리
191693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계류
190975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 추가	처리
190234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	계류

190046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의원)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개념 정의에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개정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실직적인 보호	계류
190047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로자 개념 정의를 개정하여 특수 고용 노동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 징수 관련 법률 개정	계류

● 환경/동물

의안 번호	의안명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처리 현황
1907240	4대강 및 문화재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심상정의의원)	4대강 복원 위원회 설치	계류
190449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의원)	전략환경영향 평가 대상에 국토에너지 관련 상위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전략환경평가 규정 강화	계류
190950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황사피해방지 종합 대책 및 황사대책위원회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종합대책 및 위원회로 확대 개편	처리
1904871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통상조약에 대한 영향평가 항목에 국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고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계류
1909822	발암물질 등의 관리 및 암 예방 특별법안(심상정의의원)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발암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암예방관리 체계 구축	계류
1907098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의원)	「동물보호법」의 법명을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하고, 「동물」의 개념을 확대하고 동물학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좀 더 폭넓게 마련	계류

● 에너지

의안 번호	의안명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처리 현황
191696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연구 교육용 원자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이 위치한 지역의 원자력이용시설에서 사용배출되는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에 대한 환경영향 및 안전활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환경감시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	계류
191103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방사성폐기물 처분 방법, 해체 비용 등을 포함한 해체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하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설계수명을 연장하는 경우에 주민의견수렴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처리
1906369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공론화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로 승격, 원전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을 위원에 포함, 위원의 자격요건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원자력공학 등 기술공학에 한정하지 않고, 정책까지 확대.	계류

190714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원전 주기적 안전성 평가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제시하는 국제기준을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원전의 운영자뿐만 아니라 종업원에게도 원전사고 발생 시 보고의무 및 그 상황기록 작성의무가 있음을 명확함.	계류
1900396	원자력발전소 안전대책을 위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김제남의원)	국회는 정부에 투명하고 공정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특히 노후 원전으로 지적받아 온 고리 1호기의 폐쇄를 촉구함.	계류
1910887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김제남의원)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폐쇄할 것을 촉구	계류
1914432	월성1호가·고리1호기 수명연장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제남의원)	수명이 만료된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 여부에 대해 투명하고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여야합의로 '월성1호가·고리1호기 수명연장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함.	계류
190120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진후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의의 위원 수를 7명 이상 9명 이하에서 11명으로 확대. 위원 구성을 다양화 하고,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한 감독권 부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원자로의 사용 정지 및 관계 시설의 해체에 관한 사항, 핵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보관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항 등의 업무를 추가.	계류
191212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위원회로 개편하여 그 위상을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원전 재가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 각 원자력발전소별로 지역사무소 설치하고 원자력발전의 안전규제, 방호 및 방재대책, 발전정지 후 재가동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사무를 규정.	계류
190762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원자력 이용자 등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결격사유를 현행법에서 준용하도록 함	계류
190714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방사선비상이 발생한 경우 방사선비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 상황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함.	계류
1902119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현행 원자력손해배상책임한도 규정을 폐지하여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문도록 함.	계류
1905005	발전소주변지역 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주변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에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	계류
1909351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 사업자등의 건설·운영에 관한 관리·감독법안(김제남 등)	원전산업 전 과정에 걸친 제도개선과 투명하고 개방적인 시스템이 형성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마련	처리
1908596	원전감축의 국가비전을 담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김제남의원)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기본계획안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함.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원전감축의 국가비전과 로드맵을 포함하고, 에너지 자급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실질적인 분산형 전원을 구축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함.	계류
190854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타당한 의견은 이를 반영하도록 함	계류

190781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이 법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등 8개의 분야별 계획은 서로 연계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및 의견이 반영되도록 함	계류
191704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녹색성장을 위한 국민의 참여와 권리를 명시하고 녹색성장위원회에 민간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위촉.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적극적으로 감축하고,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화석연료 외에 원자력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서비스 이용 혜택을 확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사항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내용을 포함.	계류
190396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에 부합해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에 관한 사항’을 기본항목에 추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과 협의를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함.	처리
190364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시, 해당 지역주민, 전력소비자, 전력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의 공고·공람을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함.	처리
191703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RPS제도에 따라 공급의무량을 확보하지 못해 부과 받은 과징금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계류
191228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등 10인)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를 “석유·석탄·원자력·천연가스와 이를 연료로 하여 발전할 때 생기는 온배수 등 부산물이 아닌 에너지로서”로 개	계류
190306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정의를 명확히 분류	처리
191703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소규모 산·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제도입. 대도시의 시민참여형 소규모·분산형 산·재생에너지를 보급·촉진하기 위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임대기간을 보장	계류
191703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국가에너지이용합리화위원회”로 수정.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를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포함. 불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대상에 제외되어 있는 건축물의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를 위한 제품을 포함	계류
191703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에너지복지보다 명확히 하고, 에너지위원회에서 에너지복지 사업에 대해 심의하도록 규정.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의 책무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 국민의 책무에 에너지 생산자로서의 역할도 확대. 국민이 에너지 정책결정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	계류
1905760	기후정의세법안(박원석의원)	온실가스 배출과 과세대상과의 연계성이 높으며 온실가스 배출 억제와 단계적 원자력 발전소 비중을 줄여나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세제인 기후정의세를 도입.	계류
1905929	탄소세법안(심상정의원)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탄소세 도입	계류

● 경제/금융

의안 번호	의안명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처리 현황
1909754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원석의원 등 12인)	법 목적에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추가하고 금융안정 달성을 한국은행의 명확한 목적으로 두어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관리권한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부여함.	계류
1916347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원석의원 등 12인)	금융통화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사고 등으로 궐원이 발생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추천기관이 후임자를 추천토록 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 과반 이상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임명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중 일부의 임기를 한차례에 한 해 조정.	계류
1912395	사회적경제기본법안(박원석의원)	사회적 경제의 고용 및 복지 개선, 건강한 공동체 조성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함.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함.	계류

● 공공/행정

의안 번호	의안명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처리 현황
1908798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원석의원)	철도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보유자는 주식 및 지분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도록 함	계류
1900866	수서발 고속철도 노선의 민영화 철회 촉구 결의안(심상정의의원)	정부가 수서발 고속철도 노선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기존의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통합 운영 방안을 포함하여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철도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철도 관련 정책을 재수립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대다수 국민의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	계류
1900967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정진후의원)	이 법을 폐지하여 공기업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 도모	계류
190485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의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을 내실있게 규정.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계류
190575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승진과 관련된 인사비리를 근절하고자 인사 관련 기록의 위조나 위법·부당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계류
190575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승진과 관련된 인사비리를 근절하고자 인사 관련 기록의 위조나 위법·부당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계류
191068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관련 심사과정에 투명성을 부여	처리

190364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의원)	신고자의 보호기능을 강화. 신고 절차의 간소화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기능을 강화	계류
190871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의원)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기존보다 폭넓게 정의하고, 합리적 의심에 의해 신고하였으나 불이익조치 당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법의 보호를 명문화함.	처리

● 지방자치/균형발전

의안 번호	의안명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처리 현황
1902414	농어촌교육지원 특별법안(정진후의원)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촌학교를 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계류
1911621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도 주민투표에 의해 제기된 지방정부 혹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계류
19086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경의원)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정수를 확대하고 각 정당이 하나의 선거구에 1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	계류
191050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의원)	자치구도 일반 시·군과 같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도록 하여 자치구의 재정소요 반영률을 높여 자치구의 재정여건 악화를 완화.	계류
191050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의원)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일정 기간 이내에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도록 규정.	계류
191050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의원 등 11인)	중앙관서의 장은 일정 금액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보조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나 부담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사업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계류

● 조세/재정

의안 번호	의안명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처리 현황
19004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의원)	현행 소득세법의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최고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40%로 상향 조정. 소득 재분배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복지재정의 재원 확보에 기여.	계류
19070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의원)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 삭제	계류
1903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의원)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6~38%의 누진세율로 과세. 보유기간 1년 미만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누진세율의 최고세율보다 높은 40%의 세율로 과세.	계류

19152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의원)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의 기준을 1천만원으로 하향하고 대주주의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지분율 기준을 1%(코스닥시장은 2%)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처리
19018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의원)	상장주식 대주주의 기준을 지분율 1%이상(코스닥 상장주식은 2% 이상), 시가총액 10억 이상으로 하향조정	처리
19004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의원)	현행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과세표준 금액을 1,000억 원으로, 세율을 30%로 함.	계류
191198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의원)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이 고유목적사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아닌 사내유보된 소득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배당수익, 임대료,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에 대하여는 현행 10%에서 22%까지의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세 외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도록 함.	계류
19017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의원)	현행 법률에 규정된 법인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법인의 최저한세율과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현재의 14%와 11%에서 20%와 15%로 인상.	처리
1907252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박원석의원)	국제청으로 하여금 역외탈세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조직인 국제과세정보분석원을 설립. 역외탈세집중관리대상자 및 대상지역을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규정.	계류
190443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의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과세자료에 대한 통계자료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개정	처리
19004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의원)	예비타당성제도를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정부에 과도하게 재량권이 주어진 조사 및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법률로 규정. 토건사업 등에 대한 불요불급한 예산배정을 사전에 방지	처리
19119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의원)	4대강 사업과 같이 대규모 예산낭비가 우려될 수 있는 사업의 착수 여부나 분야별 지출 우선순위, 조세정책 방향과 주요 내용 등 주요 재정운용 과제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함.	계류

● 언론/문화

의안 번호	의안명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처리 현황
191824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등 10인)	인터넷신문만 별도 시행령으로 그 기능(정의)과 등록기준 등을 정하게 하는 현재의 조항을 수정하고, 신문 인터넷신문의 등록기준을 법률에 정한 것으로 한정	계류
191824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등 10인)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그림책 출판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림책을 독립적인 복합예술문화매체로 발전시킴과 아울러 출판한류에 기여	계류
1901053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회찬의원 등 64인)	국어인 한글에 대한 존중과 국어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해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의 '國'자 표기를 한글인 '국'으로 변경하고자 함	처리

● 외교(한일관계)

의안 번호	의안명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처리 현황
190869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함.	처리
1918316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합의'의 무효 확인 및 재협약 촉구 결의안(김제남의원)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합의'의 무효 확인 및 재협약의 촉구	계류
1905421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제남의원)	원자폭탄 피해자 및 그 자손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의료와 생활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마련 시행함.	계류
1909938	유엔 사무국 및 관련 산하기관 발간 지도상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심상정의원 등 72인)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널리 알리고, 유엔사무국 및 국제사회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며,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 배가를 촉구	처리

● 국정원 · 검찰개혁

의안 번호	의안명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처리 현황
1906711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박원석의원 등 19인)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국외정보의 수집·작성·배포로 제한하여 국내정치 등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함. 직무범위 제한에 따라 조직의 명칭을 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수사권을 폐지.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의 예산결산 감독을 강화.	계류
1903961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심상정의원)	독립적인 위원회가 불법도청테이프 내용의 공개여부 등을 결정	계류
1914989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등 10인)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특별검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독립된 권한과 능력을 가진 수사인력을 확보. 검찰 등의 수사 독립을 담보하기 곤란한 국민적 의혹 사건등이 정권의 영향력을 받지 않은 독립된 특별검사에 의해 규명될 수 있도록 함.	계류
1905423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기호의원 등 22인)	상설 특별검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독립된 권한과 능력을 가진 수사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처리

● 사법개혁

의안 번호	의안명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처리 현황
191524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의원)	대법원의 법률심으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동시에 사실심으로 서의 하급심 권한을 강화함	계류
191523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의원)	대법원의 법률심으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동시에 사실심으로 서의 하급심 권한을 강화하여 충실한 사실심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함	계류
191524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의원)	대법관의 수를 현행의 소부 구성인원을 감안하여 18명으로 증원함 으로써 기존의 전원합의체 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 함. 대법원 구성 의 다양화를 위해 대법관 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고위 법관 및 검 사 출신이 아닌 법률가로 임명하도록 의무화함	계류
191400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의원)	퇴직대법원장등의 법무법인 등의 취업 및 공동법률사무소의 개설을 제한하고, 수임제한 기간 및 범위를 확대함.	계류
191394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의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 중 대법원장의 의중을 따를 수밖에 없는 선임 대법관,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을 배제하고, 의결정족수도 재적위 원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	계류
191082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처분문서가 명확하여 사실상 분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 권자가 공시송달의 청구원인을 소명한 경우 공시송달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공시송달을 통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무자는 이의신청 청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변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이 가능함	처리
191064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의원)	'재판절차 녹음의무화'와 더불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해 사건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영상녹화(녹음 포함)을 할 수 있도 록 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재판절차 녹음의무화' 규정을 준용토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계류
191064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의원)	'재판절차 녹음의무화'와 더불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해 사건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영상녹화(녹음 포함)을 할 수 있도 록 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재판절차 녹음의무화' 규정을 준용토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계류
191064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의원)	'재판절차 녹음의무화'를 도입하고 이에 부수적으로 관련규정을 보 완하고자 재판장이 '심리비공개 결정'을 하더라도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녹음, 녹화, 속기는 하도록 함	계류
190999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1일당 한형유치금액의 범위를 법원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국민 의 법감정에 맞게 100만원(최근 재판실무상 최저한도인 10만원의 10배)으로 제한. 최장 유치일수 3년을 초과하여 남은 벌금액이 있 을 경우의 별도 납부의무, 총당 규정을 마련	처리
190658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현재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는 감사위원 의 임명을 감사위원회후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하도록 함. 감사원 5급 이상의 공무원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원장이 임명하도 록 하는 함	계류
1905552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의원)	헌정질서 파괴범죄,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죄와 경합범으로 판결을 선고 받아 확정된 형에 대하여는 형의 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계류
190365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중 사건당사자가 법관 또는 검사인 경우 에는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도 록 함.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이나 통상절차 회부결정의 요 건을 보다 엄격히 규정함	계류

191707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변호사선임서등 미제출 변호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계류
190970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현직 공직자에 대해 전관 출신 변호사와의 사적인 접촉 시 보고의무를 부과함	계류
190316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변호사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 요건을 확대하고 그 기간도 연장함.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의 위원구성에서도 현직 판사와 검사를 배제	처리
190316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재판·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의 수임을 할 수 없도록 함. 수임에 있어 이러한 친족관계를 선전하지 못하도록 함. 재판·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소개·알선·유인하지 못하도록 함.	계류

● 정치개혁

의안 번호	의안명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처리 현황
19008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대통령선거에 있어 결선투표제를 도입	계류
190225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투표권 부여의 기준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의 자에서 18세 이상의 자로 낮춤	계류
19022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선거권 부여의 기준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의 사람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춤	계류
190225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권한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춤	계류
1902251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주민투표권 권한 부여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춤	계류
19090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의원)	모든 선거의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연장	계류
19087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의원)	선거벽보 게재순위를 추첨을 통하여 결정	계류
19049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부재자투표기간과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한 사전투표의 투표기간을 각각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으로 하여 중요 선거의 부재자투표를 토요일 및 일요일에 할 수 있도록 함	계류
190243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계류
190243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법」을 개정함에 따라 「정치자금법」에 관련된 조항을 수정	계류
190243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공무원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	계류
190243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공무원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	계류
191165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비리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를 위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	계류

● 기득권 해체

의안 번호	의안명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처리 현황
1902610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특정공무원범죄와 관련한 불법재산을 환수하고 그 세습을 방지하며 추징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범인 외의 자가 불법재산 등을 취득한 경우 권리관계에 대하여 스스로 선의 등을 증명하도록 하고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범인에게는 노역장유치를 하도록 함	처리
1902608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부패재산을 공정하게 환수하고 그 세습을 방지하며 추징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범인 외의 자가 부패재산 등을 취득한 경우 권리관계에 대하여 스스로 선의 등을 증명하도록 하고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범인에게는 노역장유치를 하도록 함.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의2)	처리
19026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추징금제도를 일반인의 법감정에 맞게 운영하고 추징금 납부에 강제력을 더하기 위하여 추징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도 노역장유치(한형처분)가 가능하도록 함	처리
190260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몰수대상재산을 공정하게 환수하고 그 세습을 방지하며 추징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범인 외의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권리관계에 대하여 스스로 선의 등을 증명하도록 하고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범인에게는 노역장유치를 하도록 함	처리
190555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의원)	추징에 대한 집행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의 미납추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고액 추징금 미납자의 인적사항, 미납액 등을 공개함	계류
190240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재정신청 대상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확대. 이후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고발 사건으로 넓힐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고자 재정신청 기관을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합의부로 변경하고 공소유지 담당자를 검사에서 변호사로 변경함	계류
1902685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한 조세범죄조사 촉구 결의안(박원석의원)	대통령 일가가 일상적이고도 상습적인 증여세 탈루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실망을 안겨다 주고 있음. 조세 정의와 공평과세에는 그 어떠한 성역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국세청은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함. 또한 해당 사건이 국민들에게 안겨준 충격을 고려했을 때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의무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사결과는 신속히 공개되어야 할 것임	계류
1903705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현행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함.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이 추천하는 각 3명으로 임명하도록 하여 사면위원의 구성을 다양화함. 사면위원회 회의록을 특별사면 후 즉시 공개하도록 함.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저지른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면을 엄격히 제한	계류

2

19대 국회 주요 의정활동

“선거 때만 여러분 편이라는 후보들, 정의당 의원들은 다릅니다.”

● 경제민주화 실현, 자영업자, 노동자, 집 없는 사람 편에 서다

- ▶ 박원석 의원, 박근혜 정부가 '가업'을 잇는다는 핑계로 대주주 일가의 보유주식에 대한 상속세 면제 대상 기업을 매출 5천억원의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속세법 무력화 법안을 추진했으나, 본회의 반대토론을 통하여 본회의 통과를 저지함.
- ▶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명 '남양유업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
- ▶ 김제남 의원,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전면개정)을 통과시키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50% 인하를 법제화.
- ▶ 서기호 의원, 영세상인들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임대차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2차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 ▶ 서기호 의원, 전월세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약기간 연장(2년→3년),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행복주택·주거급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의 실현 기반을 확고히 하는 등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제정에 기여.
- ▶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에 앞장 서는 정의당 의원들. 심상정 의원, 2015년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임금피크제 관련 질의 동영상 조회 수 200만 육박.
- ▶ 박원석 의원, 박근혜 정부의 철도민영화 저지 활동에 앞장섰으며,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의 철도분야 정부조달협정(GPA) 밀실추진의 문제점을 최초로 지적.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한 경찰의 무리한 진압 작전에 맞서 노동자들과 함께 함.

●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인권 실현에 앞장서다

- ▶ 심상정 의원, 삼성백혈병 문제해결을 위한 끈질긴 노력 끝에 삼성의 사과를 이끌어 내고 피해자 및 유가족과의 중재에 힘씀.
- ▶ 심상정 의원, 광중사 등 군복무 중 부상 장병의 치료비 문제를 제기해 「군인연금법」 개정
에 앞장섰고 「군인권법」을 제정.
- ▶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예방을 위한 「화학물질평가관리법」 제정.
- ▶ 정진후 의원,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고, 교육·보급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수화언어기본법을 제정.
- ▶ 서기호 의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던 헌법재판소 청소노동자의 실태를 밝혀 3년간의 미지
급 임금을 받아냄. 그리고 법사위에서 2015년 정부예산에 정부가 2012년 약속한 ‘사중노임
단가’ 적용을 관철시켜 관련 예산 69억 8,200만원 증액 의결을 이끌어냄.

● 복지국가 실현에 앞장서다

- ▶ 정진후 의원, 반값등록금 법안을 19대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정부 국가장학
금 제도의 부실함을 지적.
- ▶ 정진후 의원, 유치원비의 무분별한 인상을 억제하고 유치원비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유치원비 상한제를 도입함.
- ▶ 박원석 의원, 복지 이행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법안 대표발의 등 복지 실현을 위한 재정 확보
에 앞장 섬.

● 세월호 진상규명, 안전 사회 실현에 앞장서다

- ▶ 정진후 의원,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특
별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 제정을 이끌어냄.

- ▶ 김제남 의원, 세월호 참사의 원인의 하나인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명 ‘관피아 방지법’을 발의하여 통과시키고 관료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앞장섬.
- ▶ 박원석 의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모법인 세월호 특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잘못된 시행령임을 최초로 지적. 또한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편성 지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정상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
- ▶ 정진후 의원, 학교 인팍에서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게 하는 등 학교안전과 관련한 3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 정진후 의원, 메르스의 진원지였던 서울삼성병원 응급실을 폐쇄시키는 데 앞장서 더 이상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섬.

● 혈세 낭비 저격, 국민을 위한 예산 통과, 정의사회 구현에 앞장서다

- ▶ 김제남 의원,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혈세탕진 실태를 집요하게 밝혀내어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이바지.
- ▶ 박원석 의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같은 타당성 없는 토건 사업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 대표발의. 국회를 통과해 4대강 사업처럼 예비타당성 조사를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방지됨. 이에 따라 불필요한 토건사업 등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인 예산배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됨.
- ▶ 박원석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2014년)으로 활동하면서 토건예산이 아닌 국민들에게 필요한 노동, 환경, 교육노인 복지, 에너지, 국방, 안전 등의 분야에 걸친 민생 예산을 요구하는 〈국민 쪽지예산〉 프로젝트를 펼쳐 큰 주목을 받음.
- ▶ 박원석 의원, 여야 의원 중 유일하게 연말정산 파동을 불러온 박근혜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중산층 이하 저소득 계층에 대한 세금부담 감소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났음을 지적함.
- ▶ 박원석 의원, 조세피난처에 재산을 빼돌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등 탈세범들의 실태를

폭로하여 역외탈세 방지 제도개선 이끌어 낸. 박원석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기획재정부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을 설치해 현재 운용하고 있음.

- ▶ 박원석 의원, 한 해 100조원을 운용하는 국책금융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에 낙하산으로 임명된 안홍철 사장의 비리와 무능 실태를 파헤쳐 안홍철 사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이끌어냄. 감사원 감사 결과 박원석 의원이 제기한 문제가 사실로 드러나 안홍철 사장이 자진 사퇴함.
- ▶ 정진후 의원, 영훈국제중학교 등의 입시비리를 밝혀내 금수저로 대별되는 재벌2세, 3세의 특혜로 얼룩진 교육현장을 바로잡음.

● 무너지는 민주주의, 굴욕적 외교를 질타하다

- ▶ 박원석 의원을 시작으로 정의당 의원 5명이 모두 나서 ‘국정원 권한 강화법’, ‘테러방지법’에 불과한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토론에 나서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성원을 받음.
- ▶ 서기호 의원, 대검찰청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자료를 공개하여 검찰의 카카오톡 실시간 모니터링 행위가 의혹이 아닌 사실임을 최초로 밝혀냄.
- ▶ 서기호 의원, 국정원이 해킹을 통해 국민들을 사찰하려는 시도에 대해 ‘국정원 국민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으로서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함.
- ▶ 김제남 의원, 굴욕적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정상화하기 위해 ‘위안부 합의 무효 및 재협약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섬.

“옆에서 지켜본 정의당 국회의원”

- 국회에서 정의당의 국회의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1.7%. 하지만 상임위 활동 등 베스트 의원, 우수 의원 등에는 100% 선정됨.
- 주요내용 : 19대 국회비례대표 다면평가 1위. 19대 국회의원 성실도 평가 4명(5명 중)이 10위안에 포함됨.

1) 상임위 활동에 대한 평가

- '더300'이 뽑은 여야 각 상임위 '베스트' 의원에 심상정 의원, 박원석 의원 선정
 - 자료 : the300 [국감스코어보드], 2015년 10월 13일 발표
 - 환노위 : 권성동, 심상정 (선정 이유 : “(고용부) 장관도 임금피크제 동참하고 계십니까?” 조회 수 약 200만 건, ‘심상정 사자후’ 영상 남김)
 - 기재위 : 류성걸, 박원석 (선정 이유 : 정부 경제정책 비판은 ‘통계로, 대안제시까지. 정쟁보다는 정책국감 본연의 자세를 보여줌’)
- 상임위 동료의원들이 뽑은 ‘우수국회의원’
 - 자료 : the300 설문조사 결과, 2016년 1월 1일 발표
 - 박원석 의원(6표) (기재위 3위)

2) 본회의 출석률 등 ‘성실도’에서도 최고 수준

- 자료 : the300-더모아, 19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 2016년 1월 발표
- 정의당 전체의원 5명 중 4명이 야권 성실도 상위 10%안에 포함
- 만점 20점/ 김제남 14.4점(4위), 박원석 14.1점(5위), 서기호 13.9점(6위), 정진후 13.7점(10위)

3) 비례대표 의원들 활동에 대한 높은 평가

- 자료 : the300-더모아, 19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 평가, 2015년 11월 발표

● 19대 국회 비례대표 다면평가 부분에서 정의당이 1위

- 다면평가는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 △비례대표 의원 상호 추천 점수 △더300 기자 평가 △상임위별 보좌진 평가를 수렴해 수치화한 것임
-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들은 다면평가 점수 20점 만점에 평균 17점을 받아, 새정치연합(11.38)과 새누리당(8.5)의 의원 평균 점수를 크게 앞질렀음. 특히 가까이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는 보좌진 및 기자 평가에서 정의당은 A등급을 가장 많이 획득해 평균점수를 높였음.
- 다면평가 점수 개인별로는 박원석(3위), 서기호(10위)
- 새누리당은 '전문분야 법안 통과 실적'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법안 통과 부분에서 강점을 보임. 하지만 개정안에 비해 법안을 만들기 까다로운 것으로 평가되는 제정안 및 전부개정안 통과 실적은 정의당이 더 뛰어났음. 이번 평가에서는 법안의 유형을 세분화해 가점 및 감점 유형을 만들었고, 단순 자구수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등은 실적에서 제외했음.
- 새정치연합의 경우 3개 정당 가운데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해 '법안 발의점수' 항목에서 높은 성적을 거뒀음.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전문분야 집중성'이 드러나는 법안 발의에 있어서는 정의당에 밀렸음.
- 정의당은 '성실성'면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음. 평균 본회의 출석률의 경우 정의당이 100점 만점에 93.86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고, 새누리당(91.87)과 새정치연합(89.75)이 그 뒤를 이었음.
- 개인 부분에서는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 4명 전원이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 및 긴급현안질의, 대정부질문(가점 요인) 참여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성실성' 분야 상위 10위권 내에 모두 이름을 올렸음.

- 19대 국회 비례대표 종합 평가에서 정의당 4명의 비례대표 중 3명이 톱 10에 포함
 - 총점 100점에 △법안 발의 및 전문성(30점) △법안통과(30점) △성실도(20점) △다면 평가(20점) 등 4가지 항목별 배점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실시
 - 정진후 (62.9점, 5위), 서기호 (62.7점, 6위), 박원석 (61.8점, 7위)

- 19대 국회 비례대표 법안통과 실적 평가
 - 법안통과 실적 집계
 - : 만점 30점/ 김제남 의원 (15.6점) (10위)

- 19대 국회 비례대표에 대한 보좌진 및 기자들의 평가
 - 보좌진 평가 : 박원석 의원 만점
 - 보좌진 평가는 소속된 상임위원회 보좌진들의 평점을 기준으로 마련.
 - 기자들 평가 : 서기호 의원, 정진후 의원 A 등급

20대 총선 정의당 정책공약집

정의로운 대한민국

2016년 3월 31일 초판 1쇄 인쇄

2016년 3월 31일 초판 1쇄 발행

지은이 : 정의당

펴낸이 : 정의당 정책위원회

펴낸곳 : (주)팝콘앤파트너스

디자인 : (주)팝콘앤파트너스

[공약개발단]

공약개발단 단장 : 김용신 정책위원회 의장

공약개발단 : 고광용, 김건호, 김명정, 김성달, 김수현, 김종대, 김종명, 김창민, 류성재,
문보현, 박웅두, 박철한, 송경원, 심은정, 유의선, 윤재설, 이승민, 이승환,
이종석, 임승준, 임준, 정경은, 정미나, 조동진, 좌혜경, 추혜선

책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

“
국민월급 300만원, 복지임금 100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